

연구보고서 2018-02

# 일본 건설산업 생산시스템 분석 및 시사점

- 건설업 허가 제도를 중심으로 -

2018. 6.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연구진

조재용 선임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발 간 사

국내 건설 산업에 고착화된 생산시스템 및 관리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로 진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건설 산업이 수평과 수직적으로 배타적이고 경직된 업역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세계 건설 시장의 변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업에서는 “종합건설사가 원도급을 그리고 전문건설사가 하도급을 담당한다.”는 인식 구조가 고착화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건설업체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 시장의 투자 감소에 따른 수주경쟁이 심해질 때마다 업역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건설업의 업역 개편과 관련 된 논의는 건설업 위기 극복이나 발전방향을 검토할 때마다 주요한 과제로 항상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이해당사자 집단이 관련되어 있고,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시장 변화를 꺼려하여 실질적인 논의가 미진했으며, 대안 역시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연구는 업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사례를 확보하고자 시도되었습니다. 선진국가의 시스템이 모두 우리에게 참고가 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비교함으로써 유효한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선진국가운데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설업 허가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일본의 건설업 허가제도 및 이와 관련한 공공입찰 시장에 대하여 조사·분석하고 시사점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이 진행 중인 국내 건설 산업 생산체계 혁신에 밑거름이 되는 연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6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서 명 교



## I. 서론

- 1958년 건설업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된 우리나라의 건설업 허가 제도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와 같은 5가지 종합건설업과 25가지 전문건설업의 체계가 됨
  - 최근 해외 각국의 건설 산업에서는 통합의 개념이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은 수평과 수직의 배타적 업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세계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 특히 시공부문에서는 종합건설업=원도급, 전문건설업=하도급의 구조가 고착되어 있어, 건설기업들의 건전한 성장에 방해가 되며, 기업 성장과 함께 수주경쟁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함
  - 업역 개편에 관한 논의는 다양하고 거대한 이해당사자 집단이 관련되어 있고, 자신의 시장과 이익관계에 직결되기 때문에 크게 진전되지 못함
  - 업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진국가의 시스템을 분석하여 참고하는 벤치마킹 방법이 유효하며,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설업 허가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확한 분석의 필요성이 높아짐

## II. 일본 건설업 허가제도의 구조

- 일본의 건설업 허가제도는 1949년 건설업법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는 29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종합-전문의 수직구조가 아닌, 일식-전문의 수평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 일본에서 건설업체는 일식공사 또는 전문공사 허가 가운데 하나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능력, 전략에 따라 건설업 허가를 다양하게 취득할 수 있음
- 일본의 건설업 허가는 ① 수주 지역(국토교통성 장관허가, 도도부현 지사 허가), ② 희망 공사(29공사 분류), ③ 하도급 규모(특정건설업, 일반건설업)의 3가지 항목으로 분류됨
- 건설업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① 경영업무의 관리책임자, ② 전임기술자, ③ 성실성, ④ 재산적 기초를 만족하고 있어야 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일본 건설현장에서 시공을 진행하는 모든 건설업 허가 업체는 도급금액에 관계없이 현장에 업체 당 1명의 주임기술자를 배치해야 함.
- 특별히 원도급자에 한하여 하도급총액이 4,000만 엔이 넘는 경우에는 주임기술자 대신에 더 높은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감리기술자를 배치해야 함
- 기능자로 독립하였으나 아직 다른 기능인을 고용하지 못한 히토리 오야카타도 개인사업자로서 조건을 만족하면 건설업 허가를 취득할 수 있음
- 히토리 오야카타는 노동자인지 사업자인지 위치가 애매한 면이 있으며, 재해 보험 등에서 불리함
- 건설업법에서는 건설현장의 모든 업체의 허가 상태와 보험 가입 상태, 그리고 주임기술자 등의 상태를 명확하게 정리한 시공체 제대장과 시공체계도 작성이 의무임

### Ⅲ. 일본 건설업 허가 현황 및 통계

- 전국의 건설 허가업자 수는 약 46.5만 업체가 있으며, 이는 허가업자 수가 가장 많았던 1999년과 비교하면 약 22%가 감소한 것이고, 현재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일반건설업 허가를 획득한 업체가 특정건설업 허가를 획득한 업체의 약 10배에 이르고 있음. 특정건설업 허가를 획득한 업체가 일반건설업 허가를 획득한 업체보다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 취득 비율이 높음
  
- 업종 별로 보면 「비계·토공·콘크리트공사업」, 「건축일식공사업」, 「토목일식공사업」을 획득하고 있는 업체 수가 가장 많음
  - 전체 허가 업체 수 가운데 약 48.4%는 단일 업종만을 가지고 있으며, 획득 허가 개수가 늘어날수록 업체 수의 비율이 감소함
  
- 건설업체의 규모에 따라 허가 취득 현황이 달라짐
  - 초대형 건설업체들은 26~29개 공종을 국토교통성-특정건설업으로 취득하고 있으며, 대형 및 중형 건설사들은 14개~24개의 허가를 국토교통성-특정건설업으로 취득하고 있음
  - 소형건설업체들은 대부분 도도부현 지사 허가를 취득하고 있는 특징이 있으며, 자신들의 상황과 전략에 따라 일반건설업을 취득하는 경우도 특정건설업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음
  - 개인사업자(히토리오야)의 경우에도 조건을 만족한다면 복수의 허가를 취득할 수 있음
  
- 건설업체들은 자신들의 수주전략과 경영 상태에 맞추어 각 도도부현에 영업소를 배치하고 있음

#### IV. 일본의 공공공사 시스템

- 일본에서 공공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① 건설업 허가를 가지고 있을 것, ② 경영사항심사를 받았을 것, ③ 세금 체납이 없을 것, ④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의 4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함
  - 일본의 공공공사 입찰에는 개별 공사의 입찰 전에 각 발주기관에 명부등록을 하고 등급을 받는 자격등록 단계를 거쳐야 함
  
- 발주기관 명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사항 심사인 경영사항심사를 받아야하며, 주관적사항 심사인 기술평가점수와 합산하여 등급을 판정함
  - 경영사항심사는 국토교통성 인정 등록경영상황분석기관에서 경영규모와 경영상황을 평가하고, 기술평가점수는 과거의 해당 건설업체의 평가 기록을 활용함
  - 각 발주기관은 명부에 고유의 공사 분류와 등급 부과 방식 및 등급에 따른 공사 수주 가능 범위를 가지고 있음
  - 명부등록의 유효기간은 2년임
  
- 발주기관에서는 각 프로젝트 별로 발주등급을 평가하고, 이에 기준하여 수주할 수 있는 등급을 표기하고 있음
  - 초대형 건설업체도 도쿄 도에서 수주 가능한 업종은 12~14개에 불과하고, 중·대형 건설업체는 더 적음
  - 건설업 허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당 공공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 수평적인 건설업 구조 및 허가제도

- 일본의 건설업 허가제도는 일식공사와 전문공사 허가로 되어 있음. 특히 우리나라가 종합건설과 전문건설로 나뉘어 있고 공사에서는 원·하도급의 수직적인 구조를 갖는데 비하여 일본은 일식과 전문으로 나뉘어 있지만 일식도 허가의 일종으로써 수평적인 구조를 가짐
- 모든 건설업 허가는 수평적이며, 건설업 허가는 기업 자신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 취득하고 있음. 일식허가는 프로젝트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허가로서 이를 하나의 공사 개념(일식공사)으로 도입하고 있음. 일식허가는 다른 전문허가에 비해 우월하거나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닌 하나의 건설업 허가로 위치하며, 필요하다면 조건을 갖추어 언제든지 취득할 수 있음.

### 2) 단순하고 낮은 건설업 허가 기준

- 우리는 건설업종에 따라 등록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반면, 일본은 모든 업종의 등록기준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단순화를 지향하고 있음. 단순한 구조는 허가를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건설시장에서 발주자들이 건설업체의 기술 및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함.

### 3) 건전한 건설시장 확보를 위한 검증단계 확보

- 건설업 허가 조건이 단순하고 낮은 반면, 공공공사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 별 명부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된 심사가 매우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고, 유효 기간도 짧음. 이를 통해 공공 발주자들은 항상 자신들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들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업체를 배제하기 용이함.

### 4) 건설업 성장 루트와 성장 가능한 생태계 확보

- 건설업에 진입한 한 사람의 기능자(히토리 오야카타)가,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여 점차 소형건설업체로, 중대형 건설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루트를 확보하고 있음.
- 초대형 건설업체라도 한 번에 모든 공공발주 공사의 입찰 자격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이에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체 생존 및 성장 할 수 있는 건설시장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 - 목 차 -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5
2. 연구의 구성과 용어 정의 .....	6
1) 연구의 구성 .....	6
2) 용어 원칙 .....	8
제2장 일본 건설업 허가제도의 구조 .....	9
1. 건설업법의 목적과 변천 .....	9
1) 건설업법의 목적 .....	9
2) 건설업법의 변천 .....	11
2. 건설업 허가의 구성 .....	15
1) 건설업종 분류(29종) .....	16
2) 일반건설업허가와 특정건설업허가(2종) .....	26
3)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2종)와 도도부현 지사 허가(2종) .....	29
3. 건설업 허가 요건 .....	31
1) 건설업 허가 신청 구분 .....	38
2) 건설업자에 부과되는 허가 관련 의무 .....	40
3) 건설업 허가의 양도 .....	45
4. 건설업법에서의 요구 기술자 .....	46
1) 주임기술자, 감리기술자 .....	46
2) 전문기술자 및 현장대리인 .....	57

5. 히토리 오야카타 .....	59
1) 히토리 오야카타의 개념 .....	59
2) 히토리 오야카타의 건설업 허가 .....	61
3) 히토리 오야카타의 문제점 .....	62
6. 시공체제대장과 시공체계도 .....	68
1) 시공체제대장의 개요 .....	68
2) 시공체제대장 작성의 순서 .....	72
3) 시공체제대장과 시공체계도의 내용 .....	75
7. 소결 .....	80

### **제3장 일본 건설업 허가 현황 및 통계 .....** 83

1. 일본 건설 산업의 현황 .....	83
2. 허가업자 현황 .....	85
1) 전국 허가업자 수 .....	85
2) 도도부현별 허가업체 수 .....	87
3) 일반·특정 허가업체 수 .....	88
3. 허가업자 현황 (업종) .....	90
1) 업종 별 허가업체 수 .....	90
2) 복수 허가 업체 수 .....	92
3) 자본금 계층 별 업체 수 .....	93
4) 자본금계층 별 허가업체 .....	94
4. 건설업체의 허가 획득 현황 .....	101
5. 건설업체의 영업소 설치 현황 .....	109
6. 소결 .....	111

### **제4장 일본의 공공공사 시스템 .....** 113

1. 일본 공공공사 입찰 개요 .....	113
1) 공공공사 입찰 참가 요건 .....	113
2) 공공공사 입찰 프로세스 .....	114
2. 경쟁참가자 자격심사 .....	116
1) 객관적사항의 심사(경영사항심사제도) .....	117
2) 주관적 사항의 점수(기술평가점수) .....	124
3) 경쟁참가자격의 등록(명부등록 및 등급부여) .....	126
3. 실제 명부 운용 사례 분석 .....	135
1) 도쿄도 사례 .....	135
2) 후쿠치야마시 사례 .....	139
4. 공공공사 발주 사례 분석 .....	141
1) 도쿄도 사례 .....	141
2) 후쿠치야마시 사례 .....	146
3) 국토교통성 사례 .....	149
5. 소결 .....	152

##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 요약 및 결론 .....	155
1) 일본 건설업 허가제도의 구성 .....	155
2) 일본 건설업 허가 현황 및 통계 .....	156
3) 일본의 공공공사 시스템 .....	157
2. 정책적 시사점 .....	159
1) 수평적인 건설업 허가 .....	159
2) 단순하고 낮은 건설업 허가조건 .....	160
3) 건전한 건설시장 확보를 위한 검증단계 확보 .....	162
4) 건설업 성장 루트의 확보와 생태계 확보 .....	163

참고문헌 .....	167
부록1 일본 건설업법 .....	171
부록2 일본 건설업법 시행령 .....	271

## - 표 목 차 -

〈표 1-1〉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구분 .....	3
〈표 2-1〉 건설업법의 변천 .....	13
〈표 2-2〉 건설업종 분류(29종) .....	16
〈표 2-3〉 건설업 구분과 전임기술자가 될 수 있는 자격 .....	34
〈표 2-4〉 재산적 기초의 요건 .....	36
〈표 2-5〉 결격요건의 목록 .....	37
〈표 2-6〉 건설업허가 구분과 신청수수료 .....	39
〈표 2-7〉 신고사항과 제출기한 .....	40
〈표 2-8〉 장부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42
〈표 2-9〉 하도급 대금의 지불 .....	44
〈표 2-10〉 건설업 합병 및 사업양도 관련 규정 .....	45
〈표 2-11〉 영업소의 전임 및 현장기술자가 될 수 있는 국가자격 .....	49
〈표 2-12〉 공공성이 있는 공작물에 관한 중요한 공사 .....	54
〈표 2-13〉 전임이 요구되지 않는 기간 .....	55
〈표 2-14〉 공동기업체의 기술자 .....	56
〈표 2-15〉 건설업체와 기술자의 고용관계 .....	57
〈표 2-16〉 건설업의 노동보험, 사회보험 가입 의무 .....	63
〈표 2-17〉 시공체제대장 세트 (원도급자 용) .....	73
〈표 2-18〉 시공체제대장 세트 (각 1차 하도급자 용) .....	73
〈표 3-1〉 47개 도도부현의 허가업체 수와 1999년 대비 증감률 .....	87
〈표 3-2〉 2017년 대비 건설업종 별 허가 수 증감 .....	92
〈표 3-3〉 자본금 계층 별 허가업체 수 .....	94
〈표 3-4〉 초대형건설사(슈퍼제네콘) 5사의 허가 현황 .....	104

〈표 3-5〉 대형건설사(제네콘)의 허가 현황 .....	105
〈표 3-6〉 중형건설사(제네콘)의 허가 현황 .....	106
〈표 3-7〉 소형건설사의 허가 현황 .....	107
〈표 3-8〉 건설업체의 도도부현 영업소 설치 상황 .....	109
〈표 4-1〉 종합평정치(P)의 산출방법 .....	122
〈표 4-2〉 경영상황(Y)의 산출방법 .....	123
〈표 4-3〉 경영상황점수(A) 및 경영상황평점(Y)산출식 .....	123
〈표 4-4〉 기술평가점수 산출식 .....	124
〈표 4-5〉 공사 평정 점수 구성 .....	125
〈표 4-6〉 발주기관 별 등록 공사 구분 .....	126
〈표 4-7〉 도쿄 도 공사 업종 별 요구 허가 .....	128
〈표 4-8〉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 일반토목공사 등급 .....	131
〈표 4-9〉 도쿄도(2018) 공사 등급 별 수주범위 .....	133
〈표 4-10〉 오사카부(2014) 공사 등급 별 수주범위 .....	133
〈표 4-11〉 사이타마시(2017) 공사 등급 별 수주범위 .....	133
〈표 4-12〉 교토시(2017) 공사 등급 별 수주범위 .....	134
〈표 4-13〉 후쿠치야마시(2017) 공사 등급 별 수주범위 .....	134
〈표 4-14〉 도쿄도 공사 업종 및 등급 별 업체 수 .....	135
〈표 4-15〉 초대형 업체의 도쿄도 공사 등록 업종 및 랭크 .....	137
〈표 4-16〉 대형 업체의 도쿄도 공사 등록 업종 및 랭크 .....	138
〈표 4-17〉 중형 업체의 도쿄도 공사 등록 업종 및 랭크 .....	139
〈표 4-18〉 후쿠치야마시 공사 업종 및 등급 별 업체 수 .....	140
〈표 4-19〉 도쿄도 토목·건축 공사 발주 내역(2018년 3월, 4월분) ·	142
〈표 4-20〉 도쿄도 설비 공사 발주 내역(2018년 3월, 4월분) .....	144
〈표 4-21〉 도쿄도 기타 공사 발주 내역(2018년 3월, 4월분) .....	145
〈표 4-22〉 도쿄도 기타 공사 업종 별 등록 업체 수 .....	146

〈표 4-23〉 후쿠치야마시 공사 발주 내역(2018년 3월분) .....	147
〈표 4-24〉 국토교통성 건축공사 발주 내역(2018년 6월분) .....	150
〈표 4-25〉 국토교통성 일반토목공사 발주 내역(2018년 6월분) .....	151
〈표 4-26〉 국토교통성 도장공사 발주 내역(2018년 6월분) .....	152
〈표 5-1〉 일본 건설업 허가와 업역 .....	159

## - 그림 목 차 -

[그림 1-1] 국내 건설업의 수평·수직 업역 분절 .....	5
[그림 1-2] 연구의 구성 및 내용 .....	7
[그림 2-1] 건설업 허가가 필요한 도급금액 .....	10
[그림 2-2] 일본 건설업 허가의 변천 .....	14
[그림 2-3] 일본 건설업 허가의 구조 .....	15
[그림 2-4] 일식공사허가의 하도급 .....	20
[그림 2-5] 부대공사에서의 건설업 허가 .....	21
[그림 2-6] 일식공사허가의 하도급 .....	22
[그림 2-7] 전문공사 시공을 위한 허가관계 .....	25
[그림 2-8] 일반건설업허가와 특정건설업허가의 차이 .....	27
[그림 2-9] 국토교통성 허가 와 도도부현 지사 허가의 차이 .....	28
[그림 2-10] 건설업법 상 영업소의 범주 .....	30
[그림 2-11] 경영업무의 관리책임자와 전임기술자 .....	33
[그림 2-12] 주임기술자와 감리기술자의 배치 .....	47
[그림 2-13] 일괄하도급으로 간주되는 케이스 .....	53
[그림 2-14] 일식공사업자가 그 일부의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 .....	58
[그림 2-15] 히토리 오야카타의 겸무 문제 .....	61
[그림 2-16] 시공체제대장 작성 범위 .....	72
[그림 2-17] 시공체제대장 작성 구조 .....	75
[그림 2-18] 안전·위생 담당자 구성 .....	76
[그림 2-19] 시공체제대장 예시 .....	78
[그림 2-20] 시공체제도 예시 .....	79
[그림 3-1] 2016년도 건설투자액의 구성 .....	84

[그림 3-2] 일본 건설업 허가업자 수 개요 .....	85
[그림 3-3] 일본 건설투자액과 허가업자 수 추이 .....	86
[그림 3-4] 일본 건설 허가 신규 및 폐기 업체 수 .....	87
[그림 3-5] 일반건설업과 특정건설업의 비율 .....	89
[그림 3-6] 일반건설업 허가 획득 현황 .....	89
[그림 3-7] 특정건설업 허가 획득 현황 .....	90
[그림 3-8] 업종 별 발급된 허가 수 현황 .....	91
[그림 3-9] 획득 업종 수 별 허가업체 수 현황 .....	93
[그림 3-10] 업종 별 자본금 계층 비율 .....	95
[그림 3-11] 획득 업종 수 별 자본금 계층 비율 .....	96
[그림 3-12] 업종 별 자본금 계층 비율 (일반건설업) .....	97
[그림 3-13] 획득 업종 수 별 자본금 계층 비율 (일반건설업) .....	98
[그림 3-14] 업종 별 자본금 계층 비율 (특정건설업) .....	100
[그림 3-15] 획득 업종 수 별 자본금 계층 비율 (특정건설업) .....	101
[그림 4-1] 일본 공공공사 입찰 참가 요건 .....	114
[그림 4-2] 일본 공공공사 프로세스 .....	115
[그림 4-3] 경쟁참가자격 심사의 2가지 흐름 .....	116
[그림 4-4] 공공공사 발주기관 범위 .....	117
[그림 4-5] 종합평정치(P)의 구성 .....	119
[그림 4-6] 경영사항심사의 유효기간 .....	120
[그림 4-7] 매년 결산일부터 신속하게 신청한 경우 .....	120
[그림 4-8] 신청이 늦은 경우 .....	121
[그림 5-1] 한국과 일본의 건설업 허가 .....	161
[그림 5-2] 건설업체 평가의 중첩 레이어 .....	163
[그림 5-3] 스위스 치즈 모델 .....	164
[그림 5-4] 일본 건설업의 성장 루트 .....	165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① 국내 건설업 허가의 변천과 구조

우리나라 건설업법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면허의 실시, 청부계약의 규정, 기술자의 보유 등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과 동시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8년 3월에 제정되었다. 그 당시 전문공사업은 13개 업종으로 분류되었다. 그 후 1962년에 건설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문공사 업종이 삭제되었다가, 1975년에 건설업법이 개정되면서 건설업을 일반공사업, 특수공사업 및 단종공사업으로 세분화하였다. 이 때 「일반공사업면허 또는 특수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단종공사업면허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건설업법 제7조의2①)와 「단종면허는 동일인이 3종까지 받을 수 있다」(건설업법 제7조의2②)의 항목이 등장하여 건설업 면허의 제한이 시작되었다. 이후 1982년 건설업법 개정에서는 단종공사업이 전문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과 같은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 이후 정부는 1996년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건설 기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 관리 등 건설 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법인 건설산업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 면허를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제8조),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외에는 도급받을 수 없다」(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①)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전문공사)만을 도급받아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제16조②)와 「전문건설업자는 2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제16조③)으로 규정함으로써 업역을 설정하였다.

1999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건설업 면허제도는 등록제도로 변경되었으며, 2007년 개정에서는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①)의 항목이 삭제되면서 건설업자의 겸업제한이 폐지되었다.

현재 건설업의 종류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의 5가지 종합건설업과 실내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의 25가지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표 1-1〉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구분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1. 토목공사업	1. 실내건축공사업
2. 건축공사업	2. 토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3. 습식·방수공사업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4. 석공사업
5. 조경공사업	5. 도장공사업
	6.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8.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0. 기계설비공사업
	1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2. 보링·그라우팅공사업
	13. 철도·궤도공사업
	14. 포장공사업
	15. 수중공사업
	16. 조경식재공사업
	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18. 강구조물공사업
	19. 철강재설치공사업
	20. 석도설치공사업
	21. 준설공사업
	22. 승강기설치공사업
	23. 가스시설시공업
	24. 난방시공업
	25.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② 업역을 둘러싼 개편 요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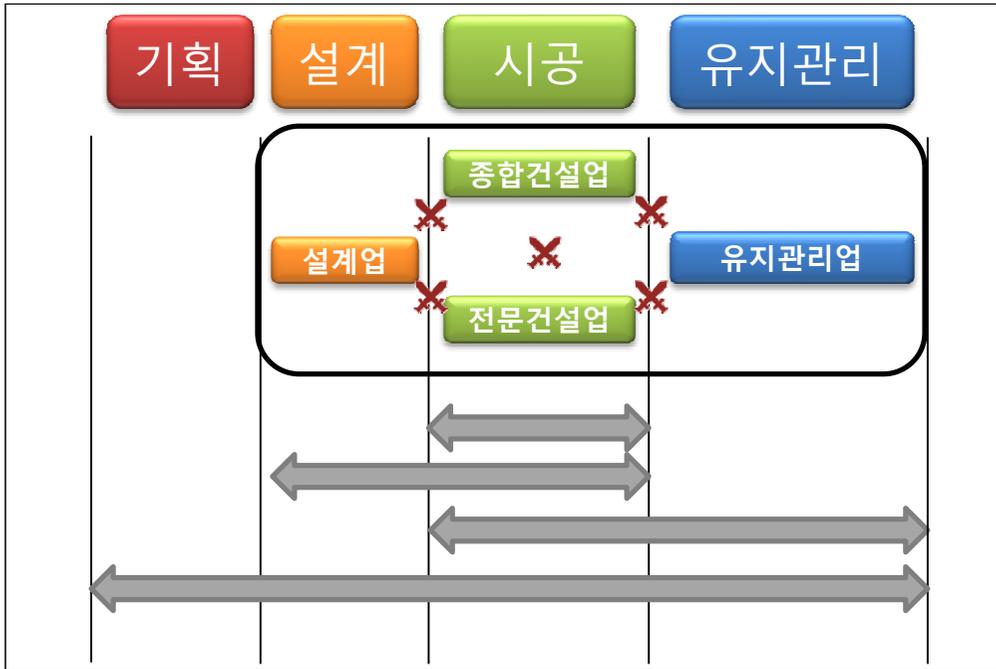
최근 수년간 해외 각국의 건설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의 하나는 세계 경제 변화에 따라 건설시장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조와 체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즉, 건설사업 주체 간의 통합적 협력이 가능한 건설생산 구조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프로젝트 수행 발주계약방식에는, 일반적인 방식으로써 설계사무소가 설계를 담당하고, 시공업체가 시공을 담당하는 설계시공분리발주(Design-Bid-Build, DBB)방식 그리고 하나의 건설업체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담당하거나, 설계사무소와 시공사가 JV를 통해 하나의 주체로서 통합 수주하는 설계시공일괄발주(Design-Build, DB)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이외에도 프로젝트 참여자 전원이 합의하여 파트너링 협정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링(Partnering)방식이나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시공사가 프로젝트 초기단계부터 참가하여 서포트하는 시공사조기참여방식(Early Contractor Involvement, ECI) 등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내 건설 산업에는 업역이 수평과 수직으로 다양하게 나뉘고 있으며, 더욱 분화되어 가고 있다. 수평 분절은 크게 설계와 시공, 시공과 유지관리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설계와 시공에 관해서는 건축사법에 의해 겸업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 건축사법 제4조①에서는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3조⑤에서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로 규정함으로써 다른 건설업체의 진입을 막고 고유의 업역을 설정하고 있다. 유지관리 분야는 1995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독립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도입되었다.

시공에 있어서는 앞서 설명한 수직 분절이 존재하고 있다. 법률에서 강제하는 시공부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수직적 분업체계는 과거 건설업이 성장하지 못한 시기에 각각의 시장을 확보하고 키워줄 수 있는 보호망의 역할을 해왔다. 현재까지도 국내 건설 산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수직적 원·하도급 구조 형성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시공기술이나 전문성, 기업규모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원도급은 종합건설업체만,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체만 가능하도록 영업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성장함에 따라 각각 추가

적인 시장을 추구하게 되고, 영세한 종합건설업은 하도급의 지위를 원하고, 성장한 전문건설업은 원도급의 지위를 원하게 되었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1] 국내 건설업의 수평·수직 업역 분절

각 업역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단체 간에 자신의 업역을 늘리고 지키기 위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업역 체계의 개편은 과거 건설 산업의 선진화, 건설 산업의 혁신의 논의가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주제이지만, 다양하고 거대한 이해당사자 집단이 관련되어 있고, 자신의 시장과 이익관계에 직결되기 때문에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2) 연구의 목적

이상의 배경에서부터 국내에서는 건설업의 업역 개편과 관련하여 한국행정연구원(2007), 한국건설관리학회(2009),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2, 2015,

2016), 한국법제연구원(2012), 국토연구원(2016)등의 기관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기존 연구 문헌에서는 국내 건설업 업역과 관련한 문제를 정리하고,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가의 시스템을 분석함으로써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설업 허가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확한 분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일본의 건설업 허가 제도를 정리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그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건설업 허가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뿐만이 아닌 실제 공공공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의 구성과 용어 정의

### 1) 연구의 구성

상기와 같이 일본 건설업 허가제도의 구조와 그 운용현황을 명확히 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본 연구는 서론을 포함하여 전체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에서 제시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이며, 연구의 배경, 목적, 방법 등의 연구 전체의 개요를 설명한다.

제2장은 일본 건설업 허가제도의 구조로, 일본의 건설업법의 허가 제도가 어떻게 변천해왔는가, 그리고 현재 건설업 허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지를 정리한다. 또한 건설업법에서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요구되어 지는 기술자에 대해 정리하고, 특수한 케이스로서 건설 개인 허가 사업자에 해당하는 히토리 오야카타에 대해 다룬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체의 허가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시공체제대장에 대해 설명한다.

제3장은 일본 건설업 허가 현황 및 통계로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본 건설 산업의 현황을 설명하고, 일본 국토교통성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건설업 허가업자의 현황을 정리한다. 또한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업 허가 조회 시스

템을 활용하여 대표적인 건설업체가 어떠한 허가를 획득하고 있는지, 영업소를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를 정리한다.

제4장은 일본의 공공공사 시스템을 다룬다. 일본 공공공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조건과 경쟁참가자 자격 심사의 구조를 설명한다. 이어서 대규모 지자체와 소규모 지자체의 사례 분석을 통해 실제 명부 운용 사례 및 공공공사 발주 사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제2장의 일본 건설업 허가제도의 구조, 제3장의 일본 건설업 허가 현황 및 통계, 제4장의 일본의 공공공사 시스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이에 기초하여 건설업 허가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1장	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의 배경 및 목적</li> <li>○ 연구의 범위</li> </ul>
2장	일본 건설업 허가제도의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업법의 목적과 변천</li> <li>○ 건설업허가의 구성</li> <li>○ 건설업 허가 요건</li> <li>○ 건설업법에서의 요구 기술자</li> <li>○ 히토리 오야카타</li> <li>○ 시공체제대장</li> </ul>
3장	일본 건설업 허가 현황 및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건설 산업의 현황</li> <li>○ 허가업자 현황</li> <li>○ 허가업자 현황(세부)</li> <li>○ 건설업체의 허가 획득 현황</li> <li>○ 건설업체의 영업소 배치 현황</li> </ul>
4장	일본의 공공공사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공공공사 입찰 개요</li> <li>○ 경쟁참가자 자격심사</li> <li>○ 실제 명부 운용 사례 분석</li> <li>○ 공공공사 발주 사례 분석</li> </ul>
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약 및 결론</li> <li>○ 정책적 시사점</li> </ul>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2] 연구의 구성 및 내용

## 2)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 원문의 용어를 한국어 표현으로 의역하는 경우 해석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본어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활용, 직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동일한 한자(일본어 표현)가 우리나라에서 가지는 의미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제2장에서는 일본 건설업법과 국토교통성 건설업허가사무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일본 건설업 허가<sup>1)</sup>제도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 정리한다. 구체적으로 1949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건설업법의 허가 제도가 어떻게 변천해왔는가, 그리고 현재 건설업 허가는 어떠한 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취득하기 위한 요구 조건을 명확히 한다. 특히 건설업법에서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자 조건에 대해 정리하고, 특수한 케이스로서 1인 허가 사업자에 해당하는 히토리 오야카타에 대해 다룬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에서 건설현장의 모든 업체의 허가 상태와 보험 가입 상태, 그리고 주임기술자 등의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시공체제대장과 시공체제도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2장에서 등장하는 법은 특별한 표기가 없는 한 일본법을 지칭한다.

## 1. 건설업법의 목적과 변천

### 1) 건설업법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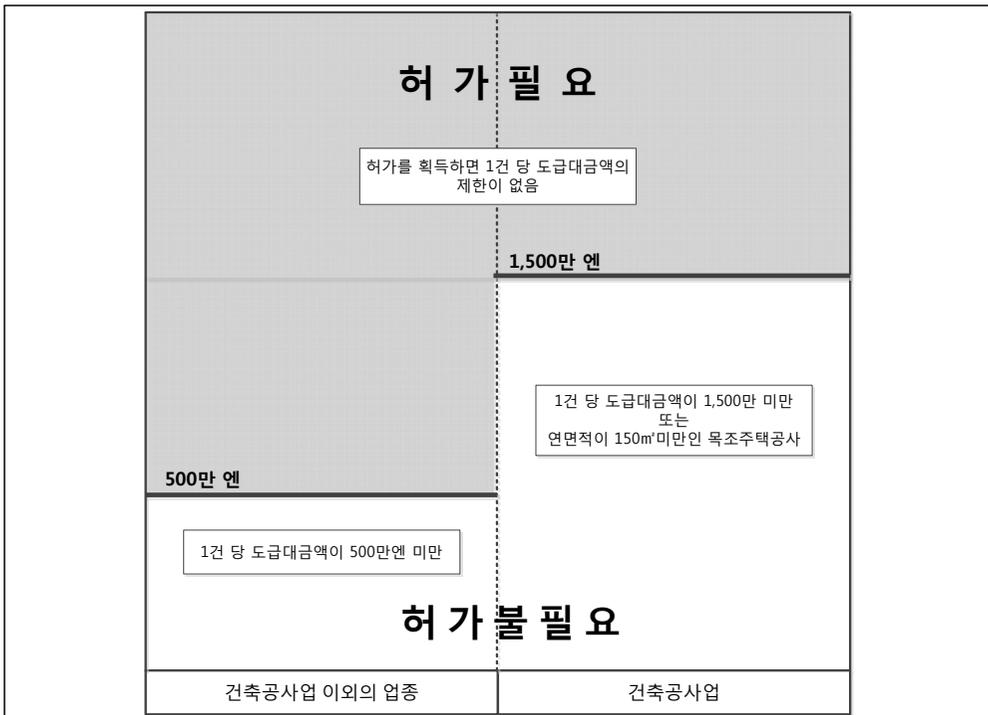
건설업법 제1조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질 향상,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적정화 등을 꾀함으로서 건설공사의 적정시공을 확보하고, 발주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건설업법은 ① 건설공사의 적정 시공, ② 발주자의 보호 및 ③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 1) 건설공사의 완성을 도급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공사가 공공공사, 민간공사에 관계없이, 건설업법 제3조에 따른 건설업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건설업 허가(建設業許可)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허가신청자(건설업자)가 허가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면 허가 기관(국토교통성, 도도부현)에서 허가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 표현을 따라 건설업 허가를 그대로 사용한다.

- Ⓐ 건설업 허가제도 실시
- Ⓑ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적정화
- Ⓒ 하도급인의 보호
- Ⓓ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해결
- Ⓔ 건설업체에 대한 필요한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공공공사 및 민간공사 모두 건설업법 제3조에 따라 건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건설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경미한 건설공사는 도급할 수 있다. 여기서 경미한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건축일식공사에 대해서 공사 1건의 도급대금이 1,500만 엔 미만 공사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1] 건설업 허가가 필요한 도급금액

또는 연면적 150㎡미만의 목조<sup>2)</sup>주택<sup>3)</sup> 공사  
(b) 공사 1건의 도급대금이 500만 엔(세금 포함) 미만의 건축일식공사 이외의 건설공사

따라서 그림 2-1과 같이 공사 1건의 도급대금이 500만 엔 이상(단 건축일식공사일지라도 1건의 도급대금이 1,500만 엔 이상이거나, 목조주택공사인 경우에도 연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업 허가가 필요하고, 무허가로 도급한 경우는 건설업법 제4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 2) 건설업법의 변천

건설업법은 1949년에 제정된 이래, 2014년 6월까지 47회 개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업종과 관련한 개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949년 제정된 건설업법은 「목공사업」, 「미장공사업」, 「토공사업」, 「석공사업(비석, 정원석 공사 제외)」, 「지붕공사업」, 「전기배선공사업」, 「관공사업(착정공사포함)」, 「조적공사업」, 「철골공사업」, 「철근공사업」, 「포장공사업」, 「콘크리트공사업」, 「준설공사업」, 「판금공사업」, 「비계공사업」, 「유리공사업」, 「도장공사업」, 「방수공사업」, 「타일공사업」, 「벽지공사업」, 「기계기구설치공사업(금속창호 포함)」, 「단열공사업」의 22업종 등록제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 「판금공사」, 「비계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방수공사」, 「타일공사」, 「벽지공사」, 「기계기구설치공사」, 「단열공사」의 9개 공종만을 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1953년에는 건설업계에서 건설업법이 적용되지 않던 9개 공종에 대해서도 건설업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함에 따라 벽지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는 건설업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이때 영업소에 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항목이 추가되어 건설업 등록 요건이 강화되었다.

---

2) 일본 건축기준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요 구조부가 목조인 것

3) 주택, 공동주택 및 점포 등의 병용주택으로,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

1961년에는 건설공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각 전문 공사에 대해 종합적인 관리와 책임을 질 주체가 필요해짐에 따라 「건축일식공사」와 「토목일식공사」가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이때부터 「건축일식공사」허가 또는 「토목일식공사」허가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를 종합건설업체로, 일식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건설업체를 전문건설업체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이때 「전기배선공사업」에서 「전기통신공사업」이 분리되었고, 「조적공사업」에서는 「블록공사업」이 분리되어 전체 26업종의 체제가 되었다.

1971년에는 건설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공능력, 자금력, 신용에 문제가 있는 건설업체에 의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대신에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특히 프로젝트에서 많은 하도급공사를 포함하는 업체의 경우 일반건설업 허가보다 높은 조건을 요구하는 특정건설업 허가 개념을 도입하였다. 업종의 변경도 있어 「토공사업」은 「콘크리트공사업」, 「비계공사업」과 통합하여 「비계·토공·콘크리트공사업」이 되었으며, 「조적공사업(블록제외)」은 「타일공사업」, 「블록공사업」과 통합하여 「타일·조적·블록공사업」이 되었다. 「관공사업(착정공사 포함)」은 「관공사업」과 「착정공사업」으로 분리되었으며, 「기계기구설치공사업(금속창호 포함)」은 「기계기구설치공사업」과 「창호공사업」으로 분리되었다. 이에 기존 26업종에서 28업종의 체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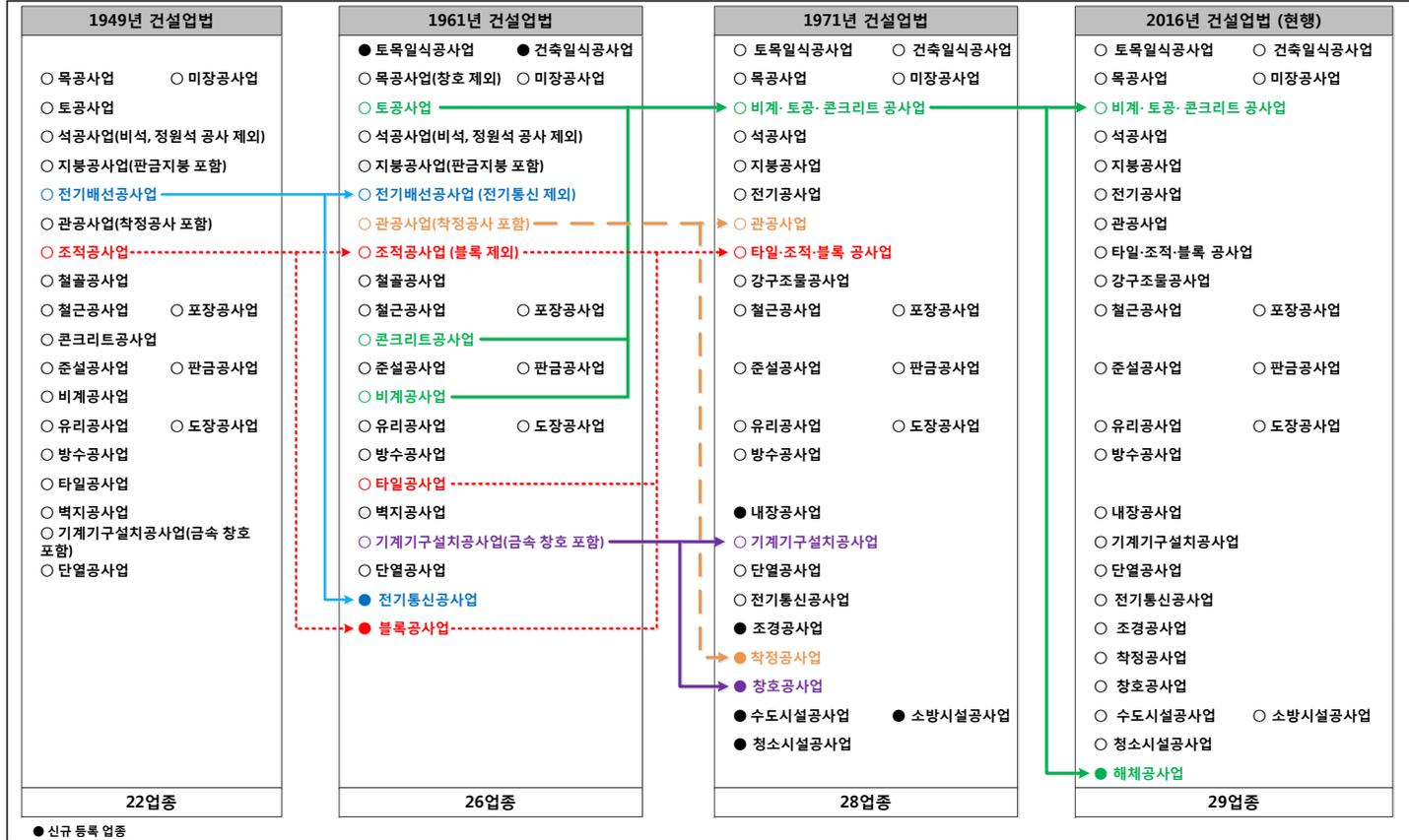
1987년에는 종합적인 시공 기술이 필요하고, 사회적 책임이 큰 7개 업종은 특정건설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자격자를 요구하도록 조건을 상향하는 지정건설업 개념이 도입되었다.

1994년에는 건설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2014년에는 유지관리 시대 도래를 맞이하여 해체공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비계·토공·콘크리트 공사업」에서 「해체공사업」을 분리하여, 45년 만에 업종이 추가되고 29업종 체제가 되었다.

〈표 2-1〉 건설업법의 변천

개정년도	요건	유효기간	주요 개정 사항
1949년 제정	<input type="checkbox"/> 기술자	2년	<input type="checkbox"/> 건설업을 등록제(국토교통성, 도도부현)로 시작 <input type="checkbox"/> 별표1에 건설공사를 22업종으로 구분함 <input type="checkbox"/> 22업종 가운데 「판금공사」, 「비계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방수공사」, 「타일공사」, 「벽지공사」, 「기계기구설치공사」, 「단열공사」만을 도급하는 자는 건설업법 적용 제외 대상임
1953년 개정			<input type="checkbox"/> 건설업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해당공사만을 도급하는 경우 건설업법 적용이 제외되던 9개 공종 가운데 벽지공사를 제외하고 모두 건설업법 적용 대상이 됨 <input type="checkbox"/> 등록요건을 강화하여 영업소에 기술자 배치가 등록요건이 됨
1961년 개정	<input type="checkbox"/> 기술자 <input type="checkbox"/> 영업소의 기술자 배치	2년	<input type="checkbox"/> 종합건설업체만이 도급할 수 있는 업종구분으로서 「토목일식공사」, 「건축일식공사」가 규정됨 <input type="checkbox"/> 도급하는 공사 업종에 대응한 자격요건이 필요하게 됨 <input type="checkbox"/> 「토목일식공사」 또는 「건축일식공사」를 종합적으로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체와 각 전문분야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로 구분됨 <input type="checkbox"/> 전문건설업의 업종구분을 재검토하여 새로이 「전기통신공사업」, 「블록공사업」을 추가하여 26업종이 됨
1971년 개정	<input type="checkbox"/> 경영업무관리책임자 <input type="checkbox"/> 영업소전임 기술자	3년	<input type="checkbox"/> 등록 제도를 폐지하고, 허가제도로 전환 <input type="checkbox"/> 허가는 건설공사의 업종 별로 부과하는 업종별허가제도가 채용 <input type="checkbox"/> 특정건설업의 허가제도가 도입 <input type="checkbox"/> 업종구분이 통합 및 추가되어 28업종이 됨
1987년 개정	<input type="checkbox"/> 성실성		<input type="checkbox"/> 지정건설업을 설정하고, 기술자를 국가자격으로 한정
1994년 개정	<input type="checkbox"/> 재산적기초		<input type="checkbox"/> 허가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2014년 개정		5년	<input type="checkbox"/> 「해체공사업」이 「비계·토공사업」으로부터 분리 추가되어 29업종이 됨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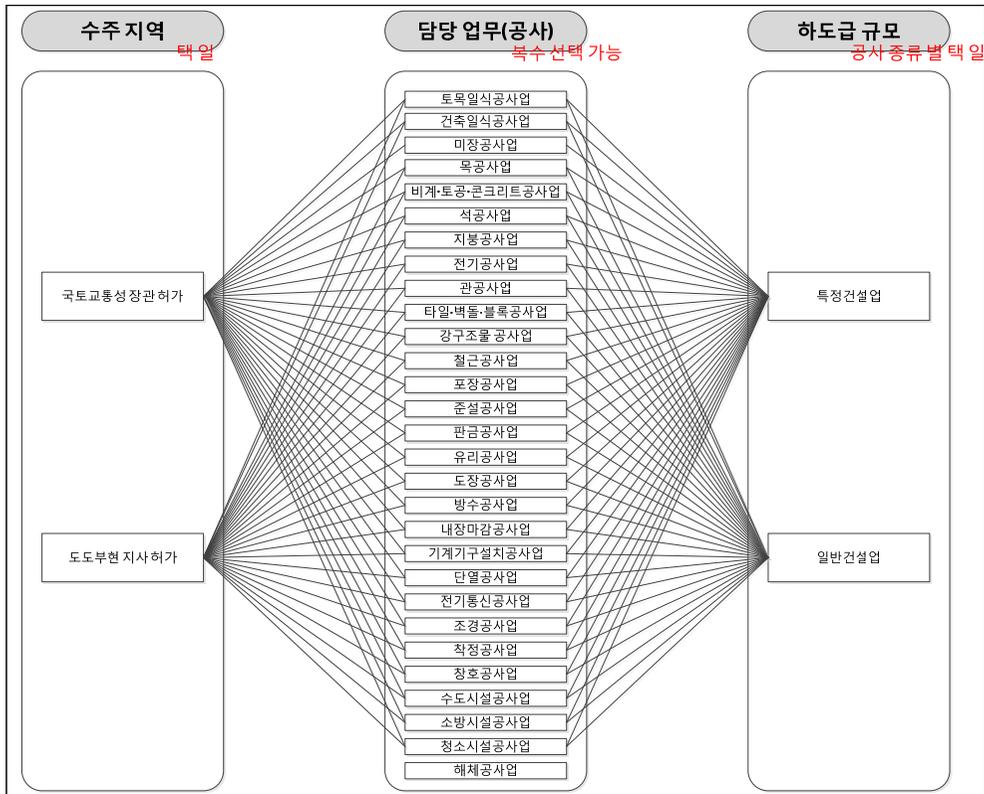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2] 일본 건설업 허가의 변천

## 2. 건설업 허가의 구성

일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설업 허가는 아래 그림 2-3과 같이 ① 담당 업무(공사), ② 하도급 규모, ③ 수주 지역의 3가지 항목으로 분류된다. ① 담당 업무(공사)는 사업자가 영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공사 종류이며, ② 하도급 규모는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맺는 원도급자가 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하도급계약을 맺는가에 해당한다. ③ 수주 지역은 사업자가 1개현에서만 건설 공사 수주를 할 것인지, 전국 47개 도도부현에서 건설 공사 수주를 할 것인지에 해당한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3] 일본 건설업 허가의 구조

## 1) 건설업종 분류(29종)

현재, 일본의 건설업종에는 「토목일식공사」와 「건축일식공사」의 2가지 일식공사와 목공사 미장공사 등의 27종의 전문공사로, 전체 29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설업 허가는 건설업자가 공사(수행)하고자 하는 업종 별로 획득해야 하며, 동시에 2개 이상의 허가를 획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추후에 현재 획득하고 있는 허가업종과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획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건설공사의 종류, 공사내용의 분류는 건설업법 제2조에 따라 별표 1에서 기재된 분류를 따른다.

〈표 2-2〉 건설업종 분류(29종)

건설업의 종류	내용
토목일식공사 (土木一式工事)	원도급자의 입장에서 종합적인 기획, 지도, 조정 하에 토목 공작물 <sup>4)</sup> 을 건설하는 공사 <sup>5)</sup>
건축일식공사 (建築一式工事)	원도급자의 입장에서 종합적인 기획, 지도, 조정 하에 건축물 <sup>6)</sup> 을 건설하는 공사
목공사 (大工工事)	목재의 가공하거나 설치하여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공작물에 나무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미장 공사 (左官工事)	공작물에 벽토, 몰탈, 회반죽, 석고를 칠하거나 분사하거나 붙이는 공사
비계, 토공·콘크리트 공사 (とび・土工・コンクリート工事)	① 족장의 조립, 기계공구, 건설자재 등의 중량물의 운반 배치, 철골 등의 조립을 하는 공사 ② 기초말뚝에 관한 공사 ③ 토사 등의 굴착, 쌓기, 다지는 공사 ④ 콘크리트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공사 ⑤ 기타 기초 또는 준비 공사
석공사 (石工事)	석재의 가공 또는 쌓아서 공작물을 축조하고 또는 공작물에 석재를 붙이는 공사
지붕공사 (屋根工事)	기와, 슬레이트, 금속 박판 등으로 지붕을 덮는 공사
전기공사 (電気工事)	발전 설비, 변전 설비, 송배전 시설, 구내 전기 설비 등을 설치하는 공사
관공사 (管工事)	냉난방, 냉동, 냉장, 공조, 급배수, 위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금속 등의 파이프를 사용하여 물, 기름, 가스, 증기 등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배치하는 공사

타일, 벽돌, 블록 공사 (タイル・れんが・ブロック工事)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공작물에 벽돌, 콘크리트 블록, 타일 등을 설치하거나 붙이는 공사
강구조물 공사 (鋼構造物工事)	형강, 강판 등 철강재의 가공 또는 조립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 공사 (鉄筋工事)	철근 등의 강재를 가공하여 접합 또는 조립하는 공사
포장 공사 (舗装工事)	도로 등의 지반면을 아스팔트, 콘크리트, 모래, 자갈,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공사
준설 공사 (しゅんせつ工事)	하천, 항만 등의 물길을 준설하는 공사
판금 공사 (板金工事)	금속 박판 등을 가공하여 공작물에 설치 또는 공작물에 금속 등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공사
유리 공사 (ガラス工事)	공작물에 유리를 가공하여 설치하는 공사
도장 공사 (塗装工事)	페인트, 도료 등을 공작물에 분사하거나 칠하는 공사
방수공사 (防水工事)	건축공사에서 아스팔트 몰탈 실링재 등으로 방수하는 공사
내장마감공사 (内装仕上工事)	목재, 석고보드, 흡음판, 벽지, 다다미, 카펫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내부를 마감하는 공사
기계기구 설치공사 (機械器具設置工事)	기계기구의 조립 등에 의해 공작물을 건설하거나 공작물을 기계기구를 설치하는 공사 단 조립 등을 요구하는 기계기구의 설치공사
단열 공사 (熱絶縁工事)	공작물 또는 공작물의 시설을 보온하는 공사
전기통신공사 (電気通信工事)	유선 전기통신시설, 무선 통신기기, 방송기계설비, 데이터통신설비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조경공사 (造園工事)	나무 와 돌 등을 설치하는 정원, 공원, 녹지 등 지역을 축조, 도로, 건축물의 옥상 등을 녹화하거나 식생을 복원하는 공사
착정공사 (さく井工事)	착정기기 등을 활용하여 천공, 착정을 하는 공사 또는 이러한 공사에 수반하는 양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建具工事)	공작물에 나무 또는 금속 창호 등을 설치하는 공사
수도시설공사 (水道設備工事)	상수도, 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취수, 정수, 배수 등의 시설을 축조하는 공사 또는 공공 하수도 또는 유역하수도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소방시설공사 (消防施設工事)	화재 경보 설치, 소화 설비, 피난 설비 또는 소방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작물에 설치하는 공사

청소시설공사 (清掃施設工事)	분뇨 처리 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해체공사 (解体工事)	공작물을 해체하는 공사 ※ 각각의 전문공사에서 건설되는 목적물에 대해 그것만을 해체하는 공사는 각 전문공사에 해당함 ※ 2016년6월1일 비계, 토공사에서 분리

자료: 国土交通省 「建設業の許可とは」

### ① 일식공사의 의미

일본의 건설업 허가에서 공종 구분은 우리나라의 건설공사 면허 체계의 공종 구분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토목일식공사」와 「건축일식공사」라고 하는 일식공사<sup>7)</sup>허가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면허 체계에 일대일 대응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면허 체계에 있는 종합건설업 면허로 오해하기 쉽다.

건설공사는 일반적으로 각각 독립되어 있는 전문공사를 종합적으로 조합함으로써 완성되며, 이에 건설업은 타 산업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업종이 다양하고, 중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원도급자의 위치에서 전문공사를 중

- 
- 4) 인위적인 공작을 가하여 토지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5) 이 표에서의 공사는 프로젝트 단위가 아닌, 단일 작업을 의미한다. 즉 토목공작물을 완성하는 모든 작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 지도, 조정 작업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하 건축일식공사도 동일
  - 6)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가운데 지붕 및 기둥, 벽체를 가진 것(이에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것을 포함)
  - 7) 토목일식공사, 건축일식공사는 종합적으로 기획·조정·지도 업무(공사)를 수행함으로써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작물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다. 공작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공사를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자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벽을 다시 칠하거나, 벽을 설치하거나, 바닥을 고치는 정도라면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일식공사와 전문공사는 같은 공사라도 그 형태, 성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일식공사를 도급하는 업자는 도급전문건설업자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일식공사라고 불리는 공사는 종합적인 기획·조정·지도 아래에 이루어지는 공사이며, 공사의 규모도 어느 정도 크다. 토목일식공사라면 도로공사나 터널공사, 사방공사나 댐공사, 하수도공사 등 금전적으로 수 천 만 엔을 넘는 공사가 일반적이다. 건축일식공사에서는 신축주택 1건을 도급하거나, 빌딩 건설공사를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허가신청 등을 취급하는 실무 현장에서는 공종이 복합적이면 일식공사로 인정받기 때문에 수십만 엔의 토목작업공사도 토목일식공사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공공공사 발주자에서조차 이러한 실수가 자주 발생한다. (全国建設関係行政書士協議会)

합적으로 종합하는, 건설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일식이라고 하며, 각각의 공종을 ○○공사로 부르는 건설업 허가 명칭 구조에 맞추어 일식업무를 하나의 공종으로 인식하여 일식공사로 부른다. 즉 일식공사란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의미하며, 목적물을 종합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토목일식공사 및 건축일식공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종합적인 기획, 지도, 정리(시공계획의 종합적인 기획, 공사전체의 정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공사목적물, 가설물, 공사자재 등의 품질관리, 하도급자 간의 시공 조정, 하도급자에 대한 기술지도, 감독 등)가 필요한 건설 프로젝트
- ㉡ 대규모이며, 복잡하여 전문공사만으로는 시공이 어려운 건설 프로젝트
- ㉢ 복수의 전문공사를 조합하여 시공하는 건설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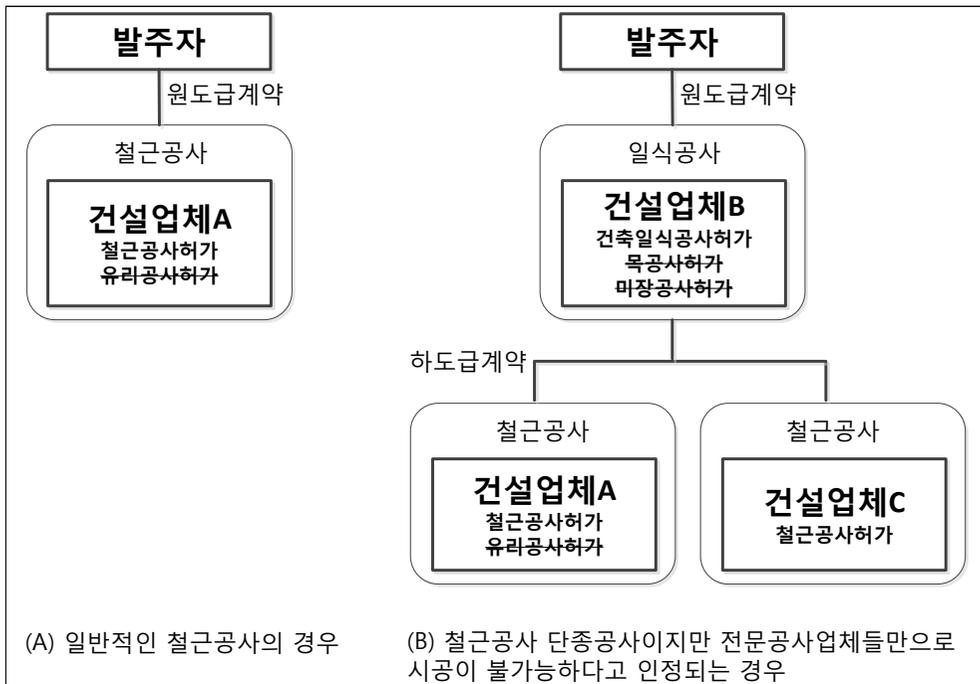
자료: 長崎県土木部監理課 「土木一式工事及び建築一式工事の考え方」

㉠에서 볼 수 있듯이 일식공사는 기본적으로 원도급자의 입장에서 종합적 매니지먼트를 수행하는 건설업자를 위한 것이다. 여기에 소규모 공사는 포함하지 않으며, 부대공사 범위를 넘어서는 복수의 전문공사를 조합하는 공사에 해당한다. 단 여기에 대규모와 소규모를 구분하는 금액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1개의 전문공사로 이루어진 건설공사,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이루어진 건설공사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개의 전문공사로 이루어진 건설공사는 공사의 규모, 복잡성의 측면에서 종합적인 기획, 지도 및 조정이 필요하여 개별 전문공사만으로 시공하기 어려운 공사는 일식공사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전문공사만으로 시공이 가능한 경우는 일식공사가 필요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발주자는 「철근공사」허가를 가지고 있는 전문공사업체와 철근공사만을 독립적으로 원도급계약을 맺을 수 있다(그림 2-4(A)). 그러나 해당 프로젝트가 대규모인 경우, 복수의 철근공사를 담당하는 업체가 참가할 수도 있고, 복수의 철근공사 업체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식공사를 수행할 업체가 필요할 수도 있다(그림 2-4(B)). 이러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일식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업체와 원도급 계약을 맺고, 철근공사 업체들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도 있다. 물론 철근공사 업체 가운데 일식공사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이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 일식공사업체가 포함되면서 일식공사로 인한 관리 비용이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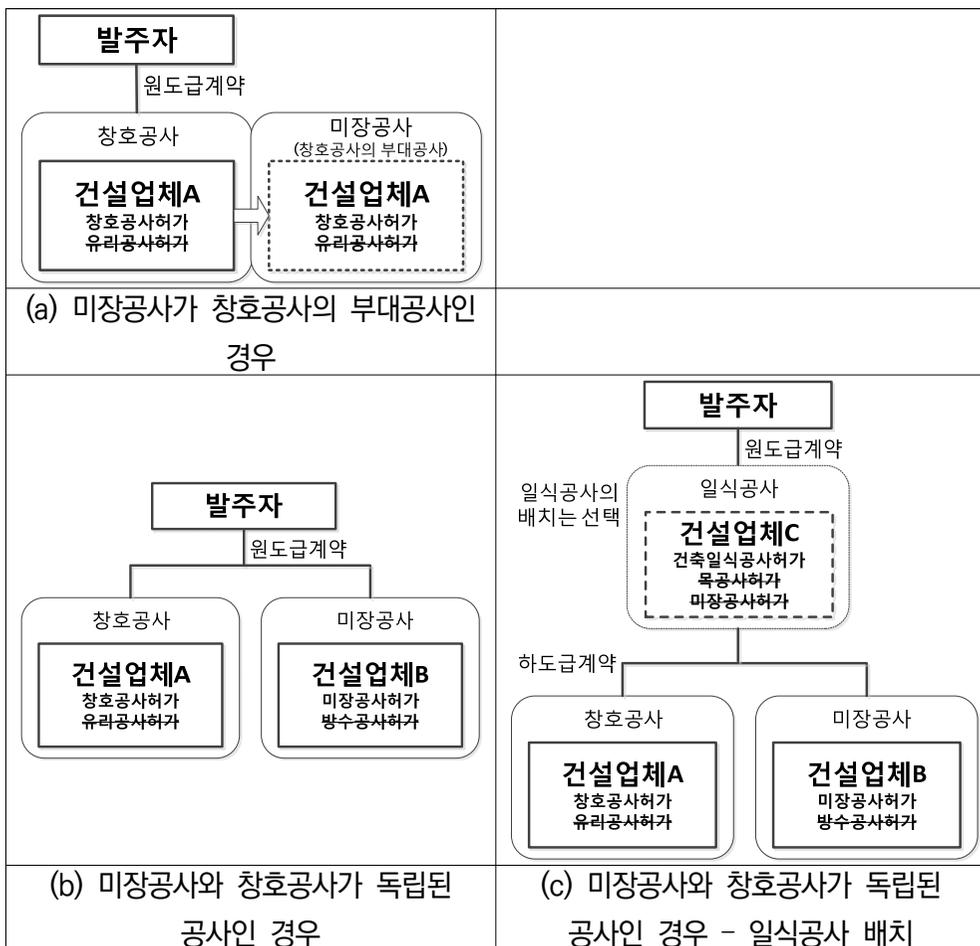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4] 일식공사허가의 하도급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이루어진 건설공사는 각각의 전문공사가 부대공사인 경우와 독립적인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전문공사가 메인 전문공사 및 메인 전문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의 전문공사인 경우는 건설업법 제4조에서 정하는 부대공사에 해당한다(그림 2-5(A)). 메인 전문공사 이외의 전문공사가 ① 메인 전문공사 시공에 의해 필요하게 된 다른 공종의 전문공사, ② 메인 전문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발생하게 된 다른 공종의 전문공사인 경우는 건설업법 제4조의 부대공사로 인정되며, 메인 전문공사의 전문공사허

가만으로 해당 전문공사의 수행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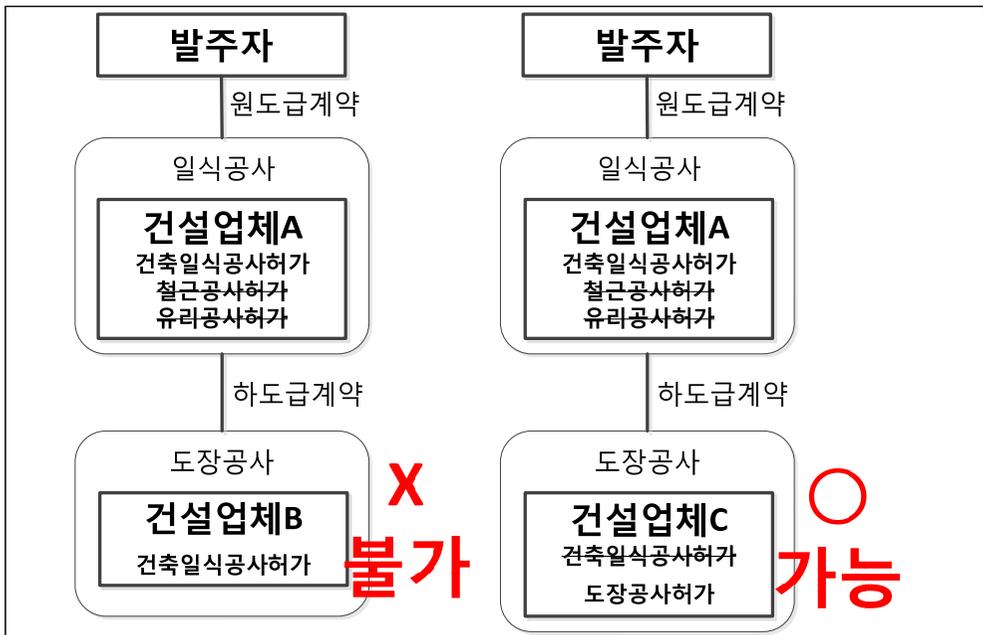
두 번째 각각의 전문공사가 독립된 공사인 경우 발주자는 아래의 (b)와 같이 직접 원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그러나 (c)와 같이 공종의 종류가 많고 규모가 커지면서 발주자의 편의를 위해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식공사가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발주자의 선택이며, 법적 요구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복수의 공종이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일식공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5] 부대공사에서의 건설업 허가

종합적인 기획, 지도, 정비 업무(일식공사)는 일반적으로 원도급자가 복수의 하도급자에 대해 수행하는 업무(역할)로 규정되고 있다. 따라서 하도급 공사는 일식공사가 될 수 없으며, 일식공사허가만으로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위법사항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다. 여기서 하도급자가 시공관리를 수행한다면 원도급자가 수행해야만 하는 종합적인 기획, 지도, 정비 업무를 하도급자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구조는 일괄하도급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하도급 이하의 시공 경력은 종합적인 기획, 지도, 정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식공사 공사경력에 추가할 수 없다(일괄하도급 금지에 대해, 1992년 12월 17일 건설성 제379호). 또한 전문공사허가 없이 일식공사 허가만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가 하도급으로서 시공하는 전문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그 공사금액이 건설업 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넘는다면 무허가 영업으로 인정되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즉 일식공사 허가만으로는 어떠한 전문공사 시공도 불가능하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6] 일식공사허가의 하도급

## ② 부대공사

건설업법 제4조에서 「건설업자가 허가를 받은 건설업에 관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해당공사에 부속된 다른 건설업에 관한 건설공사를 도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를 부대공사라고 하며, 국토교통성 건설업허가업무 가이드라인에서는 아래와 같이 부대공사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있다.

- ㉠ 메인 공중에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일련의 공사일 것
- ㉡ 주문자의 편의 상 또는 공사의 관행 등의 관점에서 일련의 공사시공이 필요한 것
- ㉢ 메인 공사의 가격보다 낮을 것

상기의 판단 기준에 따라 부대공사로 인정될 수 있는 2가지 공사를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① 허가업종의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이고, 두 번째는 ② 허가업종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발생하는 공사이다.

첫 번째는 허가업종의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사로, 에어컨 설치공사(「관공사업」, 「전기공사업」)와 함께 이루어지는 에어컨 설치의 단열공사를 들 수 있다. 이 공사의 메인 목적은 건물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지만, 에어컨의 단열은 에어컨의 냉난방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 필요한 공사이다. 「관공사업」이나 「전기공사업」 허가업자는 「단열공사업」허가가 없더라도 이를 시공할 수 있다. 이외에는 지붕과 벽의 개수 공사에 부대되는 도장공사를 들 수 있다. 이 공사의 주목적은 지붕과 벽면의 개수이지만, 도장공사도 지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대공사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지붕공사업」허가가 있으면 「도장공사업」허가 없이도 도장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허가업종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발생하는 공사의 사례로서, 배선상태 개선을 위한 전기공사 시공을 위해 필요한 내장마감공사를 들 수 있다. 공사의 주목적은 전기배선의 개선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배선이 지나가고 있는 벽체나 바닥을 깎아내거나, 고치기 위하여 내장마감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기공사업」허가만으로 시공할 수 있다. 또한

벽체 도장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계설치공사나, 창호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공사나 미장공사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사의 메인 목적물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서 부대공사가 인정되는 경우이며, 별도의 자격 없이 일괄하여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2개의 공사가 주공사와 주공사에 부속하는 일련의 공사로서의 개연성과 타당성이 없고, 독립된 개별 공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대공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에어컨 설치공사와 함께 에어컨뿐만 아니라, 다른 기계류의 단열공사도 합쳐서 수행하는 경우는 전기공사·관공사와 단열공사는 별도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공사로 판단된다. 앞서 사례에 나왔던 배선 개선을 위해 벽체나 바닥을 깎아내는 경우에도 배선이 지나가지 않는 벽체나 바닥을 함께 공사하여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기공사의 부대공사로 인정되지 않는다<sup>8)</sup>. 즉 주공사의 공사현장과 일치하는 것만으로는 부대공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대공사로 인정받더라도 항상 자신이 공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대공사의 금액이 500만 엔 이하라면 경미한 건설공사로 인정되어, 별도의 허가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500만 엔이 넘는 부대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부대공사에 관한 전문기술자(57페이지 참조)를 배치해야 한다. 이 전문기술자는 일반명사로 전문적인 기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건설업 허가의 요건이 되는 전임기술자의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고유명사이다. 예를 들어 부대공사가 도장공사라면 1급 건축시공관리기사나 2급 건축시공관리기사(마감) 등이 있어야 한다. 단 항상 별도의 기술자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면 주공사의 주임기술자나 감리기술자가 겸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③ 직접 시공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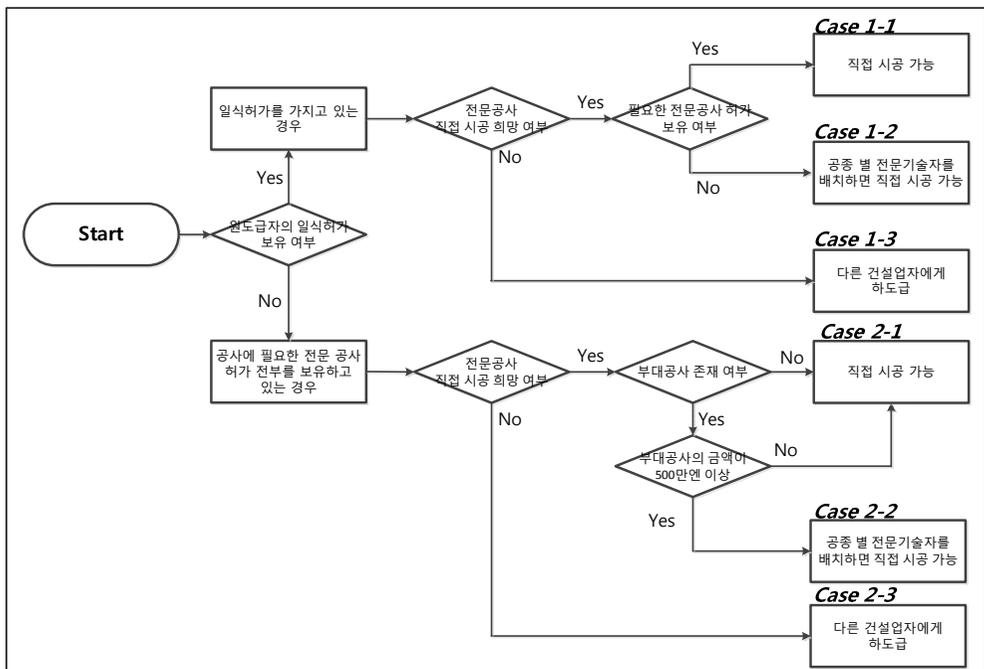
건설업자A가 원도급자로서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경우, 건설업자A가

---

8) 이 경우 배선개선공사가 내장마감공사나 목공사의 부대공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

각각의 세부 전문공사 시공에 대해 크게 일식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일식허가 없이 필요한 전문공사허가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그림 2-7).

먼저 건설업자A가 일식허가를 가지고 있지만, 세부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세부 전문공사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건설업자B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Case 1-3). 그러나 일부 또는 모든 세부 공종을 직접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업자A에게는 각각의 세부 전문공사 허가가 요구된다. 이 때 자신이 전문공사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직접 시공할 수 있으나(Case 1-1),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공종 별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직접 시공을 할 수 있다(Case 1-2).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7] 전문공사 시공을 위한 허가관계

건설업자A가 일식허가 없이 필요한 전문공사 허가를 모두 보유하여 공사

를 수주한 경우,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세부 전문공사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건설업자B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Case 2-3). 건설업자A가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하기를 원하고, 공사와 관련된 부대공사가 없다면 모든 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다(Case 2-1). 그러나 부대공사가 존재한다면 부대공사의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부대공사의 금액이 500만 엔 미만이라면 건설업자A가 직접 시공할 수 있지만, 500만 엔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종의 전문기술자 자격을 가지는 사람을 현장에 배치하여야만 직접 시공할 수 있다(Case 2-3).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일본에서도 건설업 허가 제도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종종 일식공사허가는 모든 전문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 만능허가라는 오해가 발생한다. 그러나 일본에서 일식공사허가는 시공이 아닌 원도급자로서 전체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허가이다.

일식공사허가는 시공관리를 위한 허가이며,  
 토목일식공사허가 ≠ 토목 만능 허가  
 건축일식공사허가 ≠ 건축 만능 허가

자료: 長崎県土木部監理課 「土木一式工事及び建築一式工事の考え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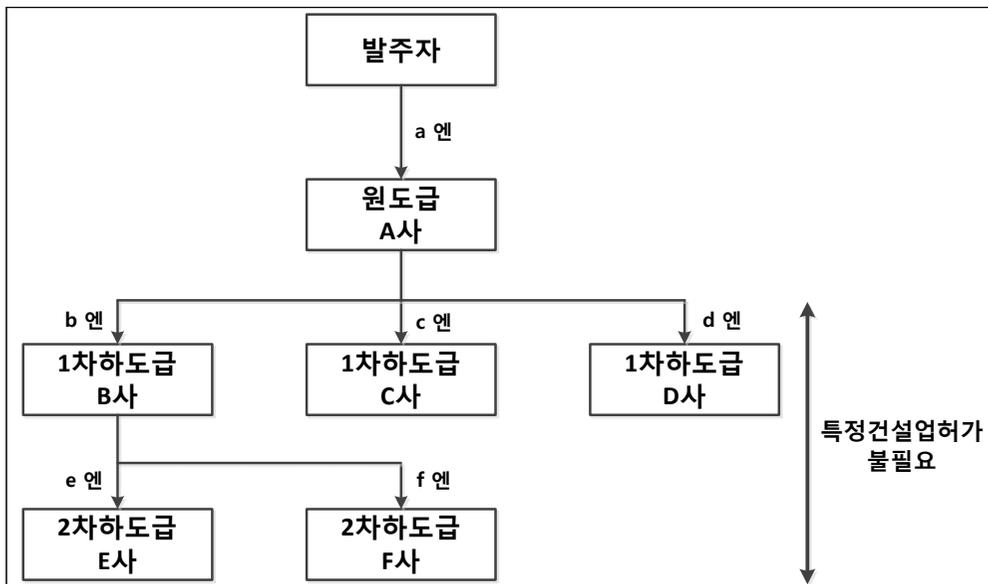
## 2) 일반건설업허가와 특정건설업허가(2종)

일본 건설업 허가의 또 하나의 분류로서 하나의 건설 프로젝트에서 하도급 계약을 맺는 규모에 따라 「일반건설업허가」와 「특정건설업허가」로 나뉜다(건설업법 제5조 및 제15조). 건설 산업은 중층화되어 있고 복잡한 하도급 구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에서 원도급자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다수의 하도급자가 포함되어 있는 공사에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 역할(일식)을 수행해야 하며, 만약 원도급자의 경영에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적 입장이 불리한 하도급자에게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으로부터 「일반건설업허가」와, 「일반건설업허가」에 비해 허

가 기준이 강화된 「특정건설업허가」가 존재한다.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한 1건의 건설공사에서 포함되는 하도급 계약의 합계금액이 4,000만 엔(건축일식공사에 대해서는 6,000만 엔)이상인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특정건설업허가」가 있어야만 한다. 1차 이하의 하도급자는 재하도급 대금이 4,000만 엔을 넘더라도 「특정건설업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특정건설업허가」의 조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일반건설업허가」에 비하여 자기자본금 등의 기준이 높아지고, 하도급대금의 지불과 배치기술자의 기능(자격) 수준도 「일반건설업허가」에 비해 강화된 조건이 요구된다.

「일반건설업허가」 및 「특정건설업허가」는 도급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영업소에서는 해당 업종에 관하여 도급금액의 제약 없이 영업(수주)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건설업허가」를 가지고 있다면 4,000만 엔까지만 다른 건설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으며, 「특정건설업허가」를 가지고 있으면 해당 제한이 없이 다른 건설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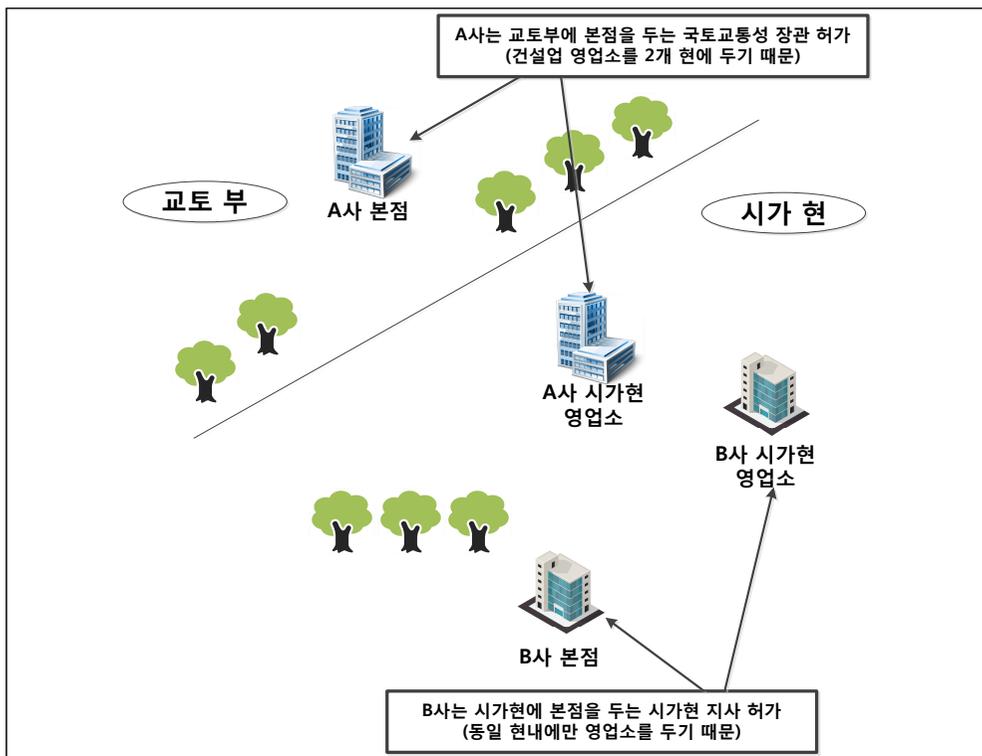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8] 일반건설업허가와 특정건설업허가의 차이

○ 원도급인 A사의 하도급대금 총액(b엔 + c엔 + d엔)이  
 4,000만 엔 이상 → A사는 특정건설업허가가 필요  
 4,000만 엔 미만 → A사는 일반건설업허가로 가능  
 ※ 건축일식공사에 대해서는 6,000만 엔을 기준으로 함

○ A사 이외는 하도급이기 때문에 특정건설업허가는 필요하지 않음  
 예) B사의 하도급대금 합계(e엔 + f엔)가 4,000만 엔을 넘더라도 필요하  
 지 않음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9] 국토교통성 허가 와 도도부현 지사 허가 의 차이

### 3) 국토교통성 장관<sup>9)</sup> 허가 와 도도부현 지사 허가(2종)

일본에서는 수주 가능한 지역에 따라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 와 도도부현 지사 허가 로 구분하고 있다.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 와 도도부현 지사 허가 의 허가 조건은 동일하며, 수주 가능 지역에 대해서만 차이가 존재한다. 건설업법 제3조에서는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략)… 2개 이상의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성 장관, 1개의 도도부현 구역 내에서만 영업소를 설치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소관하는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1개의 도도부현에서만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도부현 지사 허가 로 충분하다. 그림 2-9의 교토부에 본점을 두고 있는 A사가 시가현에도 건설업법 상의 영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 현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토교통성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새로이 영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현은 본점이 위치한 현에 인접할 필요는 없다. B사와 같이 건설업법 상의 영업소를 2개 이상 개설하더라도 동일 현 내에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도부현 지사 허가 만으로 충분하다. 국토교통성 건설업 허가 사무 가이드라인에서의 영업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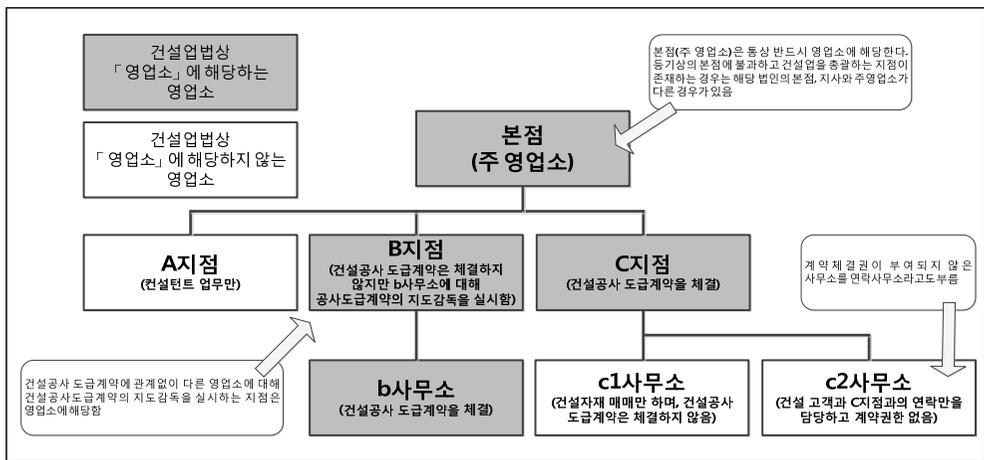
- ① 상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무소
-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영업소에 대해 도급계약에 관한 지도 감독을 하는 등 건설업에 관한 영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무소

여기에서 「상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무소」는 사무실의 규모나 등기상의 명칭과는 관계가 없으며, 도급계약의 견적, 입찰, 계약체결 시 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실질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무소를 말한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에는 실제 본 계약의 체결 외에도 견적과 입찰 등 계약 행위

---

9) 원문에서는 国土交通大臣許可(국토교통대신허가)로 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대신은 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 장관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허가를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 로 칭한다.

와 관련된 행위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말단 사무소가 취급하는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명의자가 사무소장이 아닌 본점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는 해당 말단 사무소도 영업소에 해당한다. 건설업법상의 영업소에 해당하는 사무소는 모두 영업소로서 허가행정청에 신고해야만 한다. 건설업법 상에서 영업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은 업종에 대응하는 자격을 가진 영업소의 전임기술자(57페이지 참조)를 배치해야만 한다.



자료 : 国土交通省 四国地方整備局

[그림 2-10] 건설업법 상 영업소의 범주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는 일반적으로 본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sup>10)</sup>(본청에서는 접수하지 않음)에서 접수하며, 도도부현 지사 허가는 각 도도부현청에서 접수한다.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허가가 내려진 날로부터 5년째 날짜의 하루 전의 일자로 만료된다. 건설업자는 계속해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유

10) 전국을 10개 지역을 분할하여 각 지역에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을 배치하고 있음. 홋카이도개발국(삿포로 시), 토호쿠지방정비국(센다이 시), 칸토지방정비국(사이타마 시), 호쿠리쿠지방정비국(니이가타 시), 추부지방정비국(나고야 시), 킨키지방정비국(오사카 시), 추우고쿠지방정비국(히로시마 시), 시코쿠지방정비국(타카마츠 시), 큐슈지방정비국(후쿠오카 시), 오키나와종합사무국(나하 시)

효기간이 만료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허가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갱신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와 동시에 허가의 효력이 없어지며, 허가가 필요한 건설공사를 도급할 수 없게 된다.

### 3. 건설업 허가 요건

건설업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 모두 신청 시에 건설업법 제7조에 규정하는 「4가지 허가요건」을 만족하고 있어야 하며, 동법 제8조에 규정하는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① 경영업무의 관리책임자 (법 제7조 제1호)

건설업의 경영은 하나의 공사를 수주하고, 그 공사의 내용에 따라 자금 조달, 자재 구입, 기술자 및 기능자의 배치, 하도급업체의 선정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하는 것이다. 또한 공사목적물을 완성할 때까지 그 내용에 따라 적절히 시공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타산업의 경영과는 다른 특징이 존재한다. 이에 국토교통성은 적정한 건설업 경영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경영업무에 대해 일정기간 경험을 가진 자가 적어도 1명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영업무의 관리책임자를 건설업 허가 조건의 한가지로 포함시키고 있다.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근 임원 가운데 1명이,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지배인<sup>11)</sup> 가운데 1인이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종에서 5년 이상의 경영업무의 관리책임자로서 경험을 가질 것

11) 지배인은 일본 회사법 11조에서 정의하는 회사를 대신하여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하는 권한을 가지는 자를 의미한다. 여기서 재판상의 행위는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소송대리인(변호사)의 선임이 가능하다. 또한 재판외의 행위는 사업에 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나 다른 사용인을 선임하고, 해임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종 이외의 건설업에서 6년 이상 경영업무의 관리책임자로서 경험을 가질 것

(다)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종에 대해 6년 이상 경영업무의 관리책임자에 준하는 지위(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을 말한다)에서 경영업무를 보좌한 경험을 가질 것

※ 법인의 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이사(取締役)<sup>12)</sup>
-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의 집행역(執行役)<sup>13)</sup>
- 합명회사<sup>14)</sup>의 사원 또는 합자회사<sup>15)</sup>의 유한책임사원
- 민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재무법인 또는 협동조합, 협업조합 등의 이사

[주의]

집행임원(執行役員), 감사역(監査役), 회계참여(會計参与), 감사(監事), 사무국장(事務局長) 등은 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12) 이사(取締役)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이사에게 업무집행권과 회사대표권이 있다(일본 회사법 348조, 349조). 이사가 복수인 경우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전원에게 대표권이 있다.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등의 방법으로 특정 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에게는 대표권이 없다(일본 회사법 349조 1항).

13) 지명위원회, 감사위원회를 두는 주식회사는 집행역(執行役)을 두어야 한다(일본 회사법 402조1항). 지명위원회 등을 설치하지 않은 주식회사에서 집행역은 업무집행이사(일본 회사법 363조1항2호)에, 대표집행역은 대표이사에, 각각 해당한다. 집행역과 이사는 겸임할 수 있다(일본 회사법 402조6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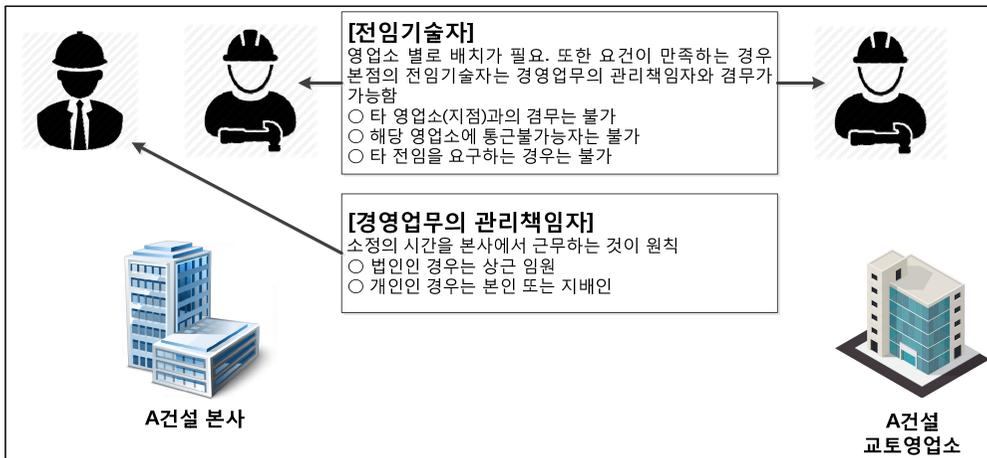
14) 합명회사(合名會社)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일본 상법 제212조)만으로 구성되는 일원적 조직(一元的 組織)의 회사로서 전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연대(連帶)·무한(無限)의 책임을 지고(일본 상법 제212조), 원칙적으로 각 사원이 업무집행권(業務執行權)과 대표권(代表權)을 가지는(일본 상법 제207조) 회사이다. 합명회사(合名會社)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일본 상법 제178조), 설립등기(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일본 상법 제172조, 제178조).

15) 합자회사(合資會社)는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과 유한책임사원(有限責任社員)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조직의 회사이다(일본 상법 제268조). 합명회사(合名會社)가 무한책

이러한 요건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기부, 과거 도급계약서, 결산서 및 확정신고서 등 경력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과거 건설업 경영에 관련된 서류를 보관해두어야 한다.

② 전임기술자 (법 제7조 제2호, 동법 제15조 제2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종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견적, 입찰 또는 도급 계약체결 등의 건설업에 관한 경영은 각 영업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업소 별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종에 대해 일정자격 또는 경험을 가진 자(=전임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11] 경영업무의 관리책임자와 전임기술자

전임기술자는 경영업무의 관리책임자와 동일하게, 기 제출한 건설업법 상의 영업소에 상근이어야 하며, 또한 허가를 획득한 후에 전임기술자가 영업

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일원적 조직체(一元的 組織體)인데 대하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조직체(二元的 組織體)라는데 그 차이가 있다. 경제적으로는 무한책임사원이 경영하는 사업에 유한책임사원이 자본적 참가를 하는 형식이며 이러한 뜻에서 인적 요소(人的 要素)와 물적 요소(物的 要素)의 결합형태(結合形態)라고도 볼 수 있다.

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는 허가 취소의 사유가 된다(경영업무의 관리책임자도 동일). 또한 「일반건설업허가」와 「특정건설업허가」의 구분과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지정건설업 여부)에 따라 전임기술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달라진다.

〈표 2-3〉 건설업 구분과 전임기술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일반건설업	특정건설업	
		지정건설업 이외의 건설업	지정건설업 16)
○ 지정학과 졸업자 지정학과 졸업자로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이상 또는 대학 졸업 후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자(법 제7조 제2호 ㄱ)	가능	불가	불가
○ 실무경험자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자(법 제7조 제2호 ㄴ)	가능	불가	불가
○ 지정학과 합격자 구 실업학교 졸업정도 검정규정에 의해 검정으로 지정학과를 합격하고 5년 이상 또는 구 전문학교 졸업정도 검정 규정에 의한 규정에서 지정학과를 합격하고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자(법 제7조 제2호 ㄷ) ○ 유자격자 : 건설업법에 의한 기능검정 2급 이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에 관한 건설공사(업종) 별로 정해진 기술검정, 기능검정 등에 합격한 자(법 제7조 제2호 ㄷ)	가능	불가	불가
○ 유자격자 : 건설업법에 의한 기능검정 1급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에 관한 건설공사(업종) 별로 정해진 기술검정, 기능검정(기술사) 등에 합격한 자(법 제15조 제2호 ㄱ)	가능	가능	가능
○ 지도감독적 실무경험자 일반건설업의 전임기술자 요건을 만족하는 자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종에 관하여 ①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한 공사에서, ② 도급대금이액이 4,500만 엔 이상인 공사에 한하여, ③ 통산 2년 이상 지	가능	가능	불가

도감독적 실무경험을 가진 자(법 제15조 제2호 ㄱ)			
○ 장관특별인정자 지정건설업에 관하여 과거 특별인정강습을 받고, 해당강습의 효과평가에 합격한 자 또는 국토교통성장관이 정하는 고사에 합격한 자(법 제15조 제2호 ㄴ) ※ 현재는 특별인정강습 및 고사가 실시되지 않음	가능	가능	가능

자료 : 저자 작성

### ③ 성실성 (법 제7조 제3호)

도급계약 체결과 그 이행 시에 부정(예를 들어 사기, 헐박, 횡령 또는 문서위조 등) 또는 불성실(예를 들어 공사 내용, 공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부담 등에 대해 계약위반)한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다. 이는 허가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물론, 건설업의 영업 거래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임원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 ④ 재산적 기초 (법 제7조 제4호, 법 제15조 제3호)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재 구입과 노동자 확보 등에서 활용하기 위한 일정 준비자금이 필요하다. 또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일정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건설업 허가 기준에서 재산적 기초 기준은 건설업자가 적정한 운영과 시공을 위해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최저한도의 재정적인 수준을 규정한 것이다. 특히 앞서 26페이지에서 간략히 설명한 「특정건설업허가」를 보유하는 건설업자는 많은 하도급자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업체가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많은 하도급 업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반건설업허가」보다 조건이 강화되어 있다.

또한 이 재산적 기초 요건은 신규, 추가, 갱신과 관계없이, 「일반건설업허

---

16) 건설업 29종 가운데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관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포장공사업」, 「조경공사업」의 7업종은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종합적인 시공기술을 필요로 하며, 사회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특정건설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 전임기술자는 1급 국가자격자, 기술사의 자격 또는 국토교통성장관인정자로 한정함

가」에서는 요건의 한 가지를 만족하면 되지만, 「특정건설업허가」에서는 결손액, 유동비율, 자본금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표 2-4〉 재산적 기초의 요건

일반건설업허가	특정건설업허가
<p>다음 중 한 가지를 만족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직전 결산기에 자기자본금이 500만 엔 이상일 것</li> <li>○ 500만 엔 이상의 자본조달능력이 있을 것(잔고증명, 투자증명 등)</li> <li>○ 허가신청 직전 과거 5개년 간 허가를 받고, 지속적으로 영업한 실적이 있을 것</li> </ul>	<p>다음 전부를 만족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손액이 자본금의 20%를 넘지 않을 것</li> <li>○ 유동비율이 75% 이상일 것</li> <li>○ 자본금이 2,000만 엔 이상이며, 자기자본금이 4,000만 엔 이상일 것</li> </ul> <p>※ 자본금 이외는 모두 신청직전의 결산기를 기준한다.</p>

자료 : 저자 작성

자기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의 총자산합계의 금액을 말한다. 신규설립법인으로 최초결산기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개시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인인 경우에는 기초자본금, 사업주의 사업용 계좌 및 사업주 이익 합계액으로부터 사업주 대출액을 뺀 금액에 대차대조표의 부채부<sup>17)</sup>에 계상되어 있는 이익보유성 총당금 및 준비금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결손액이란 법인의 경우 대차대조표의 이월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인 경우에 그 금액이 자본잉여금, 이익준비금 및 기타 임의적립금의 합계액보다 큰 금액을 말한다.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주손실이 사업주 사업용 계좌의 금액에서 사업주 대출액을 뺀 금액에 대차대조표의 부채부에 계상되어 있는 이익보유성 총당금 및 준비금을 더한 금액보다 큰 금액을 말한다.

17) 일본 대차대조표는 자산부, 부채부, 총자산부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부채부는 타인 자본으로도 불리며, 주주, 회사 이외의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표시한다. 부채부는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의 2가지로 구분한다. 유동과 고정의 구분은 1년 기준이다. 결산일 이후 1년 이내에 지불, 변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 유동자산으로, 1년을 넘는 것이 고정자산이 된다.

〈법인〉	$\frac{\text{총이익잉여금(마이너스의 경우)} - (\text{자본잉여금} + \text{이익준비금} + \text{임의적립금})}{\text{자본금}} \times 100 \leq 20\%$
〈개인〉	$\frac{\text{사업주순실} - (\text{사업주사업용 계좌금액} - \text{사업주대출액})}{\text{기초자본금}} \times 100 \leq 20\%$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수치의 백분율을 의미한다. 또한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는 주식회사의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는 기초자본금을 말한다.

⑤ 결격 요건 (건설업법 제8조, 제17조(준용))

이 기준은 과거에 일정 법령 규정을 위반한 자가 아닐 것이라는 결격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표 2-5〉 결격요건의 목록

<p>가. 허가제도 자체로부터 요구되는 거부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 가운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허위 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실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li> </ul>
<p>나. 건설업자로서 적정한 시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결격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년피후견인, 피보좌인 또는 파산자로 복권하지 않은 자(임원(법인)등, 지배인, 영업소장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li> <li>· 부정한 수단을 통해 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정지처분 등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임원(법인), 지배인, 영업소장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li> <li>· 허가 취소처분을 면하기 위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로,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한 청문 조사 통지 전 60일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개인의 사용인이었던 자로, 해당 신고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li> <li>· 영업정지를 받고 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li> <li>· 영업금지를 받고 금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임원(법인), 지배인, 영업소장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li> <li>·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형의 집행이 없어진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임원(법인), 지배인, 영업소장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li> <li>· 건설업법 또는 일정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형의 집행이 없어진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임원(법인), 지배인, 영업소장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li> </ul>

-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그 법정대리인이 상기 항목에 해당하는 자
-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 행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원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

자료 : 일본 건설업법 제8조

## 1) 건설업 허가 신청 구분

건설업 허가 신청은 기본적으로 ① 신규, ② 허가 교환 신규, ③ 일반·특정 신규, ④ 업종 추가, ⑤ 갱신의 5가지로 구분된다. 업종 추가의 경우는 신규 신청 시와 마찬가지로 새로이 취득하고자 하는 건설업 허가 업종에 대해 “경영업무 관리책임자”, “전임기술자”, “재산적 기초”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신규

신청일 시점에 어떠한 행정기관으로부터도 건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건설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과거에 허가를 가지고 있었다라도 폐업, 효력이 정지되어 신청 일에 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도 동일)

### ② 허가 교환 신규

신청일 시점에 건설업 허가를 가지고 있고, 다른 행정기관에서 새로이 건설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예 국토교통성 장관허가 보유→교토 부 지사허가 신청, 교토 부 지사허가 보유→오사카 부 지사허가 신청)

### ③ 일반·특정 신규

- 가. 일반건설업허가만을 가진 건설업자가 특정건설업을 신청
- 나. 특정건설업허가만을 가진 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을 신청

“나”의 경우에서 기존에 허가를 받고 있던 특정건설업의 업종 가운데 일부 업종을 일반건설업허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특정건설업 업종에 대해 폐업신고를 제출하고, 「일반·특정 신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허가번호는 유지된다. 또한 “나”의 경우에서 기존에 특정건설업허가를 받고 있는 건설업종 전부를 일반건설업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특정건설업에 대해 폐업신고를 제출하고, 새로이 일반건설업허가를 신청하는 「① 신규」 허가 신청이 된다. 이 경우는 허가번호가 새로이 발급된다.

④ 업종 추가

가. 일반건설업허가를 가진 건설업체가 다른 공종의 일반건설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나. 특정건설업허가를 가진 건설업체가 다른 공종의 특정건설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⑤ 갱신

기존에 발급받은 건설업 허가를 요건을 유지해서 신청하는 경우

건설업 허가의 구분(국토교통성 장관 허가 와 도도부현 지사 허가)에 따른 상기 ①~⑤에 관련한 신청의 수수료는 아래의 표 2-6과 같다. 업종 별로 일반건설업허가와 특정건설업허가를 혼합하여 신청하는 경우, 일반건설업허가와 특정건설업허가를 한쪽만을 신청하는 경우의 2배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또한 1회에 신청하는 업종의 수에 따라 수수료의 차이가 발생한다. 허가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심사자에 의해 허가 발급이 거부된 경우 등록면허세는 반환되나, 신청수수료는 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없는 것을 이유로, 반환대상이 되지 않는다.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증이 발급되기 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도도부현 지사 허가의 경우는 약 45일,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는 약 120일이 소요되어, 도도부현 지사 허가가 빨리 발급된다.

〈표 2-6〉 건설업허가 구분과 신청수수료

	국토교통성 허가 도도부현 허가	일반건설업허가 또는 특정건설업허가의 한쪽만을 신청하는 경우의 비용	일반건설업허가 또는 특정건설업허가 양쪽을 신청하는 경우의 비용
① 신규	국토교통성 허가	15만 엔의 등록면허세	30만 엔의 등록면허세
	도도부현 허가	9만 엔의 신청수수료	18만 엔의 신청수수료
② 허가 교환 신규	국토교통성 허가	15만 엔의 등록면허세	30만 엔의 등록면허세
	도도부현 허가	9만 엔의 신청수수료	18만 엔의 신청수수료

③ 일반· 특정 신규	국도교통성 허가	15만 엔의 등록면허세	15만 엔의 등록면허세
	도도부현 허가	9만 엔의 신청수수료	9만 엔의 신청수수료
④ 업종 추가	국도교통성 허가	5만 엔의 신청수수료	10만 엔의 신청수수료
	도도부현 허가	5만 엔의 신청수수료	10만 엔의 신청수수료
⑤ 갱신	국도교통성 허가	5만 엔의 신청수수료	10만 엔의 신청수수료
	도도부현 허가	5만 엔의 신청수수료	10만 엔의 신청수수료

자료: 国土交通省 「許可申請の手続き」

## 2) 건설업자에 부과되는 허가 관련 의무

건설업자(=건설업허가를 받은 자)는 건설업 도급금액 제한(무허가 500만 엔까지, 건축일식공사는 1,500만 엔까지)이 해제되어 건설업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되는 반면, 다양한 의무도 부과된다. 또한 건설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지시, 영업정지, 허가 취소)의 대상이 되고,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자는 공공공사에서는 지자체로부터 지명 정지가 내려지며, 민간공사에서도 발주자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폐업해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아래에는 이러한 건설업자의 의무 가운데 사무적인 의무(공사 시공에 직접 관계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 ① 허가행정기관에 신고의무

건설업 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신청서에 기재했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건설업자가 제출기한 내에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을 폐업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표 2-7에 신고사항과 제출기한을 정리하였다.

〈표 2-7〉 신고사항과 제출기한

신고사항		제출기한
경영업무의 관 리책임자	경영업무의 관리책임자 요건을 만족하는 자가 부족할 때	2주간 이내
	경영업무의 관리책임자가 변경되었을 때	
	경영업무의 관리책임자가 이름을 변경한 경우	
영업소의 전임 기술자	전임기술자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가 부족할 때(기타 대상 업종의 전임기술자가 재적하는 경우, 일부업종을 폐업하는	2주간 이내

	경우, 일부 영업소를 폐업하는 경우 전임기술자가 변경되었을 때 전임기술자가 이름을 변경한 경우	
대표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주간 이내
본점 이외의 영업소 대표자(영업소장, 지점장)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주간 이내
결격요건	결격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2주간 이내
폐업 등	개인사업주가 사망한 경우(상속인이 신고)	30일 이내
	합병에 의해 법인이 폐업한 경우	
	파산절차개시 결정에 의해 폐업한 경우(파산관재인이 신고)	
	합병, 파산절차개시 결정 이외의 사유에 의해 해산한 경우(청산인이 신고)	
	허가를 받은 건설업을 폐지한 경우	
사업소의 기본 정보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30일 이내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우편번호,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임원이 취임 또는 사임한 경우	
	법령 3조의 사용인이 취임 또는 사임한 경우 영업소를 신설한 경우	
기술자	유자격자를 고용 또는 이직한 경우	회계연도 <sup>18)</sup> 경과 후 4개월 이내
결산보고 <sup>19)</sup>	회계연도를 경과한 경우	회계연도 경과 후 4개월 이내

자료: 佐賀県 建設・技術課

## ② 표식의 게시

건설업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포 및 건설공사 현장 별로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식을 게시해야 한다.

18) 한국의 예산회계법에서는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한다.

19) 명칭은 도도부현별로 다를 수 있으나, 1년간의 공사경력 등 건설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공사경력서와 직전 3년간의 공사시공금액을 연도별로 기입해야 하며, 손익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상과 매상원가, 완성공사수수액 및 공사원가, 건설업 이외 사업의 손익에 대해 기재한다. 일반적으로 세무 신고가 종료된 후 그 납세증명서를 포함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한다. 미제출 시에는 공공공사의 입찰이 제한되며, 추후 허가 갱신이 되지 않을 수 있다.

### ③ 장부의 비치

건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도급 계약의 내용을 정리한 장부를 영업소 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장부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표 2-8〉 장부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장부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

1 영업소 대표자의 성명 및 이 자가 해당 영업소의 대표자가 된 일자

2 발주자와 체결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이하의 사항

- ① 도급한 건설공사의 명칭, 공사현장의 소재지
- ②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일자
- ③ 발주자의 상호, 주소, 허가번호
- ④ 발주자가 실시한 완성검사의 일자
- ⑤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 일자

3 하도급자와 체결한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관한 이하의 사항

- ① 하도급자가 도급한 건설공사의 명칭, 공사현장의 소재지
- ② 하도급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일자
- ③ 하도급자의 상호, 주소, 허가번호
- ④ 하도급공사의 완성을 확인하기 위한 원도급사의 검사 일자
- ⑤ 하도급공사의 목적물에 대해 원도급사에 인도한 일자
- ⑥ 지불한 하도급금액, 지불한 일자 및 지불수단
- ⑦ 어음을 교부한 경우는 그 어음의 금액, 교부일자, 어음의 만기
- ⑧ 대금의 일부를 지불한 경우는 남은 하도급 대금의 남은 금액
- ⑨ 지연이자의 금액과 지불일자(하도급자가 인도 신청을 한 일자로부터 50일이 경과하는 경우 지연이자(연 14.6%))

※ ⑥~⑨는 특정건설업허가를 받은 자가 주문자(원도급공사에 한정하지 않음)가 되어 일반 건설업자(자본금이 4,000만 엔 이상의 법인기업을 제외)에게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 기재해야 한다.

[장부에 첨부해야하는 서류]

1 계약서의 원본 또는 그 복사본

2 특정건설업허가를 받은 자가 주문자(원도급공사에 한정하지 않음)가 되어 일반건설업자(자본금이 4,000만 엔 이상의 법인기업을 제외)에게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지불된 금액, 지불한 일자 및 지불수단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사본

3 특정건설업허가를 받은 자가 주문자(원도급공사에 한정)가 되어 하도급계약의 총액이 4,000만 엔(건축일식공사의 경우는 6,000만 엔) 이상을 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시공체제대장의 이하 부분(공사완료 후에 시공체제대장으로부터 필요한 부분만을 발체)

- ① 해당공사에 관하여 실제 공사현장에 배치한 감리기술자의 이름, 관리기술자의 자격
- ② 감리기술자 이외에 전문기술자를 배치한 경우, 그자의 이름과 담당할 건설공사의 내용, 보유한 주임기술자 자격
- ③ 하도급인(모든 차수의 하도급자를 포함)의 상호 또는 명칭, 허가번호
- ④ 하도급자가 도급한 건설공사의 내용, 공기
- ⑤ 하도급자가 공사현장에 실제로 배치한 주임기술자의 이름, 주임기술자의 자격
- ⑥ 하도급자가 주임기술자 이외에 전문기술자를 배치한 경우, 그 자의 이름과 관리를 담당할 건설공사의 내용, 보유한 주임기술자 자격

자료 : 佐賀県 建設・技術課

#### ④ 계약 체결에 관한 의무

도급계약 체결에 관하여 건설업자는 착공 전 서면을 통해 계약을 맺어야 하며, 계약 서면에는 규정된 필수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공사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나, 계약 후에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해당공사에서 사용하는 자재 등의 구입처를 지정하여 하도급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 ⑤ 특정건설업체에 부과되는 의무

특정건설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한 프로젝트에서 하도급 계약의 총액이 4,000만 엔(건축일식공사는 6,000만 엔)이상인 경우, 해당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하도급자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공체제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원도급자는 모든 하도급자에 대하여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그 지도를 따르지 않는 하도급자는 행정기관에 통보를 할 의무가 부과된다.

⑥ 하도급대금 지불에 관한 의무

하도급 대금 지불에 관해서는 하도급자 보호의 관점에서 다음의 표 2-9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특정건설업체의 의무가 강화되어 있다. 일반건설업허가를 받은 건설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을 지불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불 대상 하도급자에게 기성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건설업허가를 받은 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의 지불기일 또는 하도급자가 인도 신청을 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의 일자 가운데 빠른 기일 이내에 지불해야 한다.

또한 지불 방법에 대해서도 일반건설업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특정건설업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자에게 120일을 넘는 어음으로 지불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표 2-9〉 하도급 대금의 지불

일반건설업허가업자의 의무	특정건설업허가업자의 의무
[하도급자에의 지불기일]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의 기성 지불 또는 준공 지불을 받은 경우는 그 지불대상이 된 공사를 시공한 하도급업체에 대해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 이내에 지불해야 한다.	[하도급자에의 지불기일] 좌측의 일반건설업허가업자의 지불기일 또는 하도급인(특정건설업허가업자 또는 자본금액 4,000만 엔 이상의 법인을 제외)으로부터 인도 신청이 있던 날로부터 50일 이내의 일자 가운데 빠른 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	[할인이 어려운 어음 지불 금지] 특정건설업자가 일반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어음으로 도급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어음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120일을 넘는 어음은 할인이 어려운 어음으로 간주한다.

자료 : 佐賀県 建設・技術課

### 3) 건설업 허가 양도

일본에서 건설업 허가는 개인사업주나 기업에 귀속하는 것으로 양도, 양수의 대상이 아니다. 건설업 허가를 가진 회사가 그대로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수한 업체는 새로이 건설업 허가를 신청해야만 한다. 물론 새로운 건설업 허가가 나올 때까지 공백 기간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신규 허가 신청이기 때문에 허가번호도 기존 업체의 번호가 아닌 새로운 번호가 된다.

흡수합병의 경우 흡수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설업 허가는 삭제되며, 흡수한 측이 건설업 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신규 허가 신청을 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A사가 b공종 허가를 가지고 있는 B사를 합병하더라도 b공종 허가는 얻을 수 없으며, 새로이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개인 사업을 법인화하는 경우에도 허가 번호를 이어가거나, 변경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건설 업무 전체를 양수했다고 하더라도 신속히 신규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설업법 위반이 되는 공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표 2-10〉 건설업 합병 및 사업양도 관련 규정

합병	신청사항	1. 흡수합병 [소멸회사] 합병에 따라 소멸하기 때문에 건설업법 제12조에 따라 폐업신청을 해야 한다. [존속회사] 전임기술자 추가 또는 영업소신설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건설업법 제11조에 따라 변경 신청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건설업 허가	2. 신설합병 [소멸회사] 건설업법 제12조에 따라 폐업신청을 해야 한다. 소멸회사가 합병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건설업 허가에 대해서는 합병 등에 따라 승계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허가를 새로이 신청해야 한다. 또한 사업의 공백 기간(허가획득예정업종의 무허가 상태의 기간)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서 허가행정청과 사전에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사업 양도	신청사항	[양도회사] 사업양도에 따라 건설업 폐지가 되기 때문에 건설업법 제12조에 따라 폐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수회사] 전임기술자 추가 또는 영업소신설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건설업법 제11조에 따라 변경 신청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건설업 허가	양도회사가 양도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건설업 허가에 대해서는 양도 등에 따라 승계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허가를 새로이 신청해야 한다. 또한 합병과 동일하게 허가행정청과의 가능한 한 빨리 허가 행정청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자료 : 北海道庁

합병을 통해 소멸되는 소멸회사 또는 사업을 양도하는 양도회사가 시공하고 있던 건설공사는 합병기일 및 양도기일까지 완성되지 못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는 발주자와 소멸회사 또는 양도회사가 맺고 있던 도급계약에 따라 처리된다. 소멸회사 또는 양도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건설업 허가는 삭제되며, 미완성 공사가 있는 경우 건설업법 제29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승계인으로 해석되는 업체가 시공해야 한다. 합병인 경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일반승계인이 되며, 사업양도인 경우 양수회사가 일반승계인이 된다.

합병 및 사업양도의 경우,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 양수회사는 경영사항 심사도 새로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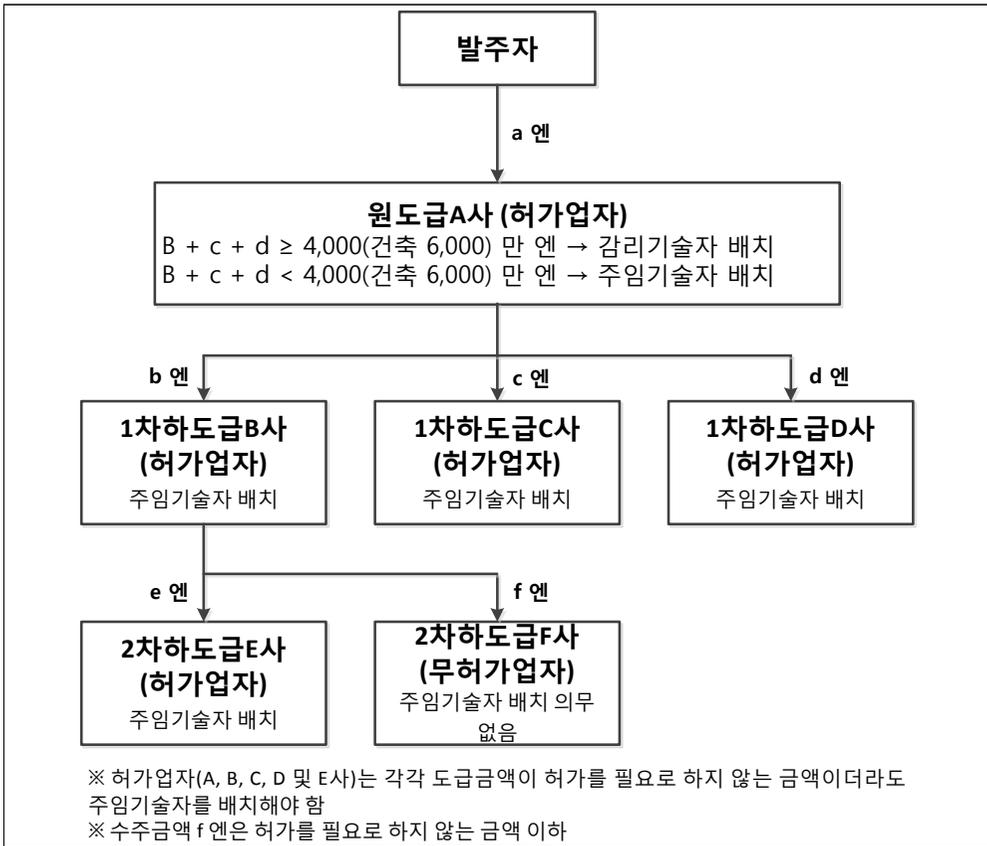
#### 4. 건설업법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건설업 허가를 받은 자)는 건설업법에 따라 자신이 수행하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건설현장에 주임기술자(제26조) 또는 감리기술자(제26조 제2항)를 상주 배치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주임기술자 및 감리기술자의 개념과 요건 등에 관하여 기술한다.

##### 1) 주임기술자, 감리기술자

###### ① 주임기술자, 감리기술자의 배치

건설업자는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도급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공사시공의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현장에 「주임기술자」를 배치해야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12] 주임기술자와 감리기술자의 배치

만 한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직접공사를 도급하고(=원도급), 해당 공사에 포함된 1차 하도급의 총액이 4,000만 엔(건축공사업의 경우는 6,000만 엔) 이상인 경우에는 주임기술자 대신에 자격이 요건이 상향된 「감리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주임기술자는 일반건설업 허가 요건의 한가지인 전임기술자의 자격요건과 동일하며, 또한 감리기술자는 특정건설업 허가 요건의 한가지인 전임기술자의 자격요건과 동일하다.

## ② 주임기술자, 감리기술자의 자격

주임기술자 또는 감리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건설업법에 따른 기사(1급, 2급) 자격,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이

일반적이며, 전기나 수도, 소방 등의 부문에 대해서는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는 자격도 인정된다.

일본의 기사와 기술사는 우리나라와 같이 기술사가 기사의 상위개념이 아니다. 건설부문의 기사 자격은 국토교통성 장관이 인정하는 국가자격이며, 건설업법에 근거하고 있다. 1급과 2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급은 1984년, 2급은 1983년에 제정되었다. 기술사는 기술사법에 기초하여 1958년에 제정되었으며, 문부과학성에서 관할하는 국가자격이다. 기술사는 건설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기계, 항공, 전기전자, 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자격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2급 건축사는 건축일식공사의 주임기술자가 될 수 있지만, 감리 기술자는 될 수 없으며, 1급 건축사는 건축일식공사의 감리기술자가 될 수 있다. 건설·종합기술감리(건설)를 비롯한 일부 기술사 자격은 토목일식공사의 감리기술자가 될 수 있지만, 건축일식공사에서는 기술사 자격증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29개 업종에 대해 주임기술자와 감리기술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세세하게 분리되어 있으며, 모든 부문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자격은 없다.

〈표 2-11〉 영업소의 전임기술자 및 현장기술자(감리기술자·주임기술자)가 될 수 있는 국가자격

자격구분		토목	건축	목공	미장	비계	석	지붕	전기	관	타일	강	철근	포장	준설	판금	유리	도장	방수	내장	기계	단열	통신	조경	착정	창호	수도	소방	청소	해체			
건설업법 「기술검정」	합격증 명서	1급건설기계시공기사	◎				◎							◎																			
		2급건설기계시공기사(제1종-제6종)	○					○							○																		
		1급토목시공관리기사	◎					◎	◎					◎	◎	◎			◎									◎			◎		
		2급토목시공관리기사	토목	○					○	○					○	○	○												○			○	
			강구조물도장 약액주입																		○												
		1급건축시공관리기사	◎	◎	◎	◎	◎	◎	◎			◎	◎	◎			◎	◎	◎	◎	◎	◎	◎				◎				◎		
		2급건축시공관리기사	건축	○																												○	
			구체			○		○					○	○	○																	○	
			마감			○	○		○	○			○					○	○	○	○	○	○	○				○					
		1급전기공사시공관리기사								◎																							
		2급전기공사시공관리기사								○																							
		1급관공사시공관리기사										◎																					
2급관공사시공관리기사										○																							
1급조경시공관리기사																								◎									
2급조경시공관리기사																								○									
건축사법 「건축사시험」	면허증	1급건축사		◎	◎				◎			◎	◎																				
		2급건축사		○	○				○			○																					
		목조건축사			○																												
기술사법 「기술사시험」	등록증	건설·종합기술감리(건설)	◎				◎		◎					◎	◎										◎						◎		
		건설「강구조물 및 콘크리트」·종합기술감리(건설「강구조물 및 콘크리트」)	◎					◎		◎			◎		◎	◎										◎						◎	
		농업「농업토목」·종합기술감리(농업「농업토목」)	◎					◎																									
		전기전자·종합기술감리(전기전자)							◎															◎									
		기계·종합기술감리(기계)																					◎										
		기계「유체공학, 또는「열공학」」·종합기술감리(기계「유체공학, 또는「열공학」)										◎											◎										
		상하수도·종합기술감리(상하수도)									◎																					◎	
		상하수도「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종합기술감리(상하수도「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																◎				◎		
		수업「수산토목」·종합기술감리(수업「수산토목」)	◎					◎									◎																
		임업「임업」·종합기술감리(임업「임업」)																									◎						
임업「임업토목」·종합기술감리(임업「임업토목」)	◎					◎																		◎									





### ③ 주임기술자, 감리기술자의 직무

주임기술자, 감리기술자는 건설업법에서 「건설 현장에서 시공의 기술상 관리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한다. 주임기술자, 감리기술자의 구체적인 직무는 건설 현장에서 건설공사를 적정히 실시하기 위한 시공계획의 작성,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의 기술상의 관리 및 공사의 시공에 종사하는 자의 기술상의 지도감독(=실질적인 관여) 등이 있으며, 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도급한 건설공사에 대해 주임기술자 및 감리기술자를 배치하는 실질적인 관여가 없는 경우, 일괄하도급으로 간주되며 건설업법 제22조의 일괄하도급 금지에 저촉된다. 단 과거에는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건설업법 제22조 제3항)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공공공사에서는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해 실질적 관여가 없는 일괄하도급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또한 민간공사에서도 2008년 11월 28일 건설업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건설 공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 [건설업법]

**제22조** 건설업자는 도급한 건설공사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괄하여 타인에게 도급시킬 수 없다.

2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설업자로부터 해당 건설업자가 도급한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도급할 수 없다.

3 건설공사가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에 관한 중요한 건설공사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원도급자가 미리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얻은 경우, 앞선 두 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 촉진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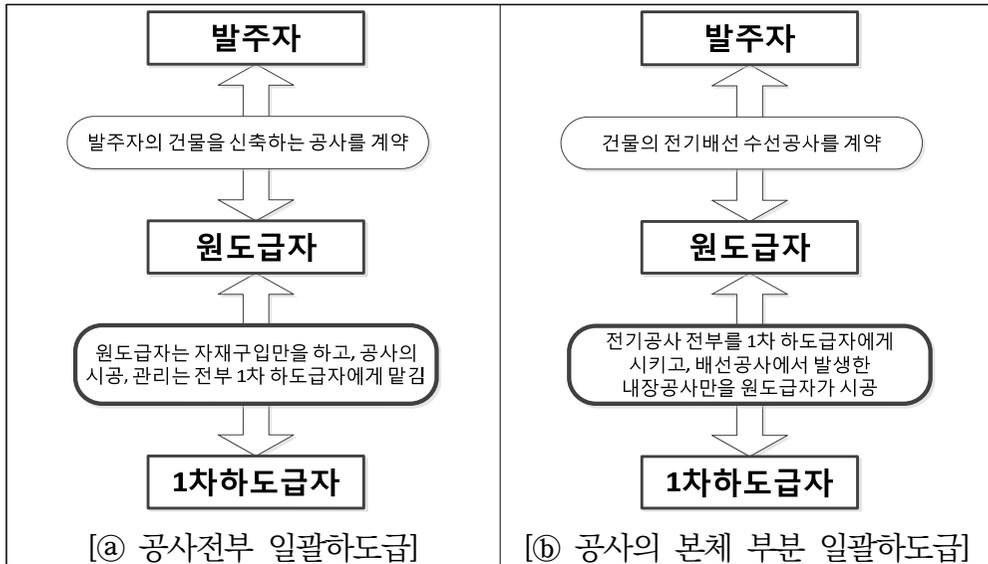
**제14조**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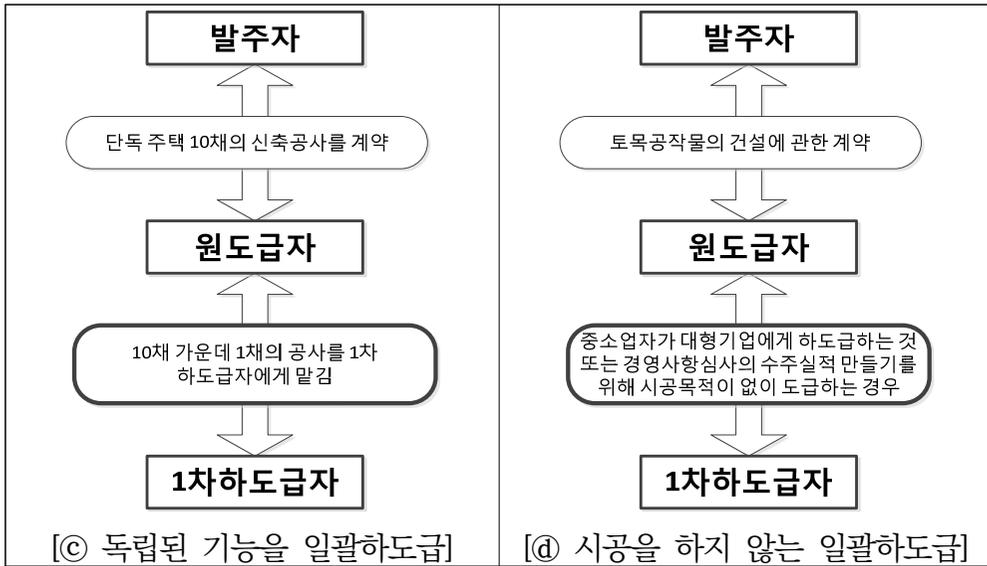
[건설업법 시행령]

**제6조의3** 건설업법 22조 제3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중요한 건설공사는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아래에 일괄하도급이라고 간주되는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크게 원도급자는 자재구입만을 하고 공사의 시공, 관리는 전부 1차 하도급에게 맡기는 ㉠ 공사전부 일괄하도급, 공사의 본체 부분을 1차 하도급자에게 맡기고, 원도급자는 부대공사만을 시공하는 ㉡ 공사의 본체 부분 일괄하도급, 동일한 공사를 여러 프로젝트에서 수주하고, 이 가운데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도급자에게 맡기는 ㉢ 독립된 기능의 일괄하도급, 중소기업체가 실제 시공할 의도 없이 수주 실적만을 확보하기 위해 수주 후에 다른 건설업체에게 하도급 하는 ㉣ 시공을 하지 않는 일괄하도급의 4가지 사례가 존재한다.

이러한 일괄하도급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법 제28조에 따른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13] 일괄하도급으로 간주되는 케이스

④ 전임이 필요한 주임기술자, 감리기술자

도급금액이 3,500만 엔(건축일식공사의 경우는 7,000만 엔)이상인 공공성이 있는 공작물에 관한 중요한 공사는 공사의 안전성과 적절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임기술자 또는 감리기술자를 현장 별로 전임(타 공사와 겸무 불가)으로 배치해야 한다. 따라서 영업소 마다 배치해야 하는 전임기술자는 영업소에 상주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에 배치기술자가 될 수 없다. 또한 이 규정은 수주 형태가 원도급 계약, 하도급 계약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개인 주택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사에 적용된다. 표 2-1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임으로 배치해야 한다.

<표 2-12> 공공성이 있는 공작물에 관한 중요한 공사

(1)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발주자인 공작물에 대한 공사
(2) 철도, 궤도, 석도, 도로, 교량, 제방, 댐, 하천에 관한 공작물, 사방용 공작물, 비행장, 항만시설, 어항시설, 운하, 상수도 또는 하수도 및 전기사업용 시설(발전, 송전, 배전 또는 변전소 및 기타전기시설) 또는 가스사업용 시설(가스의 제조 또는 공급을 위한 시설)에 관한 공사

(3) 석유파이프라인사업법 제5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용시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5호에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동조 제4호에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시설, 방송법 제2조 제23호에 규정하는 기간방송사업자 또는 동조 24호에 규정하는 기간방송국제공사업자가 동조 제1호에 규정하는 방송용으로 제공하는 시설, 학교,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전시장, 사회복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용 시설, 병원 또는 보건소, 화장장, 도축장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열공급사업법 제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열공급시설, 집회장 또는 공회장, 시장 또는 백화점, 사무소, 호텔 또는 여관, 공동주택, 기술사, 공중목욕탕, 무도장, 신사, 사원 또는 교회, 공장, 부두 또는 창고, 전망대

자료 : 일본 건설업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⑤ 전임이 필요하지 않은 기간

주임기술자나 감리기술자의 전임을 요구하는 공사이더라도 수주형태나 공사내용에 따라서는 전임이 아니어도 되는 기간이 있다.

〈표 2-13〉 기술자의 전임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임이 요구되지 않는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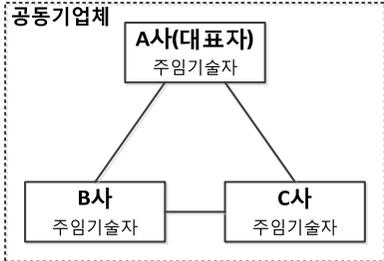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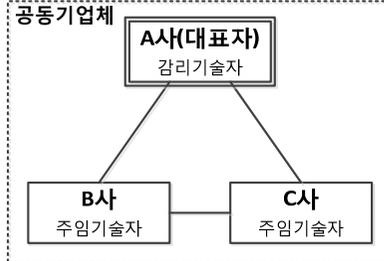
<p>[원도급의 경우]</p> <p>1) 현장시공에 착수하기까지의 기간          도급계약 체결 후, 현장사무소의 설치, 기자재의 반입 또는 가설공사가 개시되기까지의 준비기간</p> <p>2) 공사를 전면적으로 일시중지한 기간          공사용지 등의 확보가 종료되지 않거나, 자연재해 발생 또는 매장문화재조사 등에 의해 공사가 전면적으로 일시 중지되어 있는 기간</p> <p>3) 공사 완료 후의 기간          공사완료 후 검사가 완료되고, 사무절차, 뒷정리만이 남아있는 기간. 또한 발주자의 상황에 의해 검사가 지연된 경우에도 동일</p> <p>4) 공장제작만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          교량, 펌프, 게이트, 엘리베이터 등 공장 제작을 포함하는 공사에서 공장제작만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p>
<p>[하도급의 경우]</p> <p>하도급공사에서는 시공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전담이 필요한 기간은 해당 하도급공사의 시공 기간(수주한 공사부분에 관한 기간)이며, 기타 기간은 전임이 필요하지 않다.</p>

자료 : 佐賀県 建設・技術課

### ⑥ 공동기업체가 배치해야 하는 기술자

공동기업체에는 다음과 같이 도급대금액과 공동기업체의 형태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자가 다르다.

〈표 2-14〉 공동기업체의 기술자

	하도급대금의 총액이 4,000만 엔(건축일 식은 6,000만 엔) 미만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총액이 4,000만 엔(건축일 식은 6,000만 엔) 이상의 경우
기술자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구성원이 주임기술자를 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건설업자인 구성원 1사 이상이 감리기술자를 배치</li> <li>○ 기타 구성원은 국가자격을 가진 자를 배치</li> </ul> 

자료 : 佐賀県 建設・技術課

⑦ 기술자에게 요구되는 고용관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건설업법에서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원도급, 하도급 관계없음)에는 해당 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시공의 기술상 관리를 확보하는 기술자(=주임기술자 또는 감리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주임기술자 또는 감리기술자 배치 의무).

이 규정은 발주자가 건설업자의 시공실적에 기초하여,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 시공을 위탁하며, 건설업자가 자사가 조직으로써 가지고 있는 능력과 현장기술자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합쳐서 발휘해야만 발주자가 위탁한 책임을 다한다는 개념에 기초한다. 따라서 건설업자와 기술자(주임기술자 또는 감리기술자) 사이에는 안정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발주자가 기대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가진 종합적인 기술력 발휘가 어렵다. 또한 수주를 위해서만 단기계약 또는 파견으로 기술자를 확보하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수주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건설업자와 기술자 사이에

는 표 2-15의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고용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고용관계란 해당 건설업자와 기술자 사이에 제3자가 위치해서는 아니 되며, 원도급계약에서의 주임기술자 또는 감리기술자는 입찰 전 3개월 이상의 고용관계가 있었던 기술자만을 인정한다.

〈표 2-15〉 건설업체와 기술자의 고용관계

○ 직접 고용관계
직접적인 고용관계란 감리기술자와 그 소속건설업자 간에 제3자가 개입할 여지없이 고용에 관한 일정 권리의무관계(임금, 노동시간, 권리구성)가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자격증, 건강보험피보험자증 또는 시구정촌이 작성한 주민세특별교부세통지서 등에 의해 건설업자와의 고용 관계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파견사원은 직접 고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지속적인 고용관계
지속적인 고용관계란 일정 기간에 걸쳐 해당 건설업체에서 근무하고, 일정 시간 이상 직무에 종사할 것이 담보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특히 국가, 지방공공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서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한 건설업체의 전임의 주임기술자 또는 감리기술자에 대해서는 소속 건설업체로부터 입찰 신청이 있던 날(지명경쟁이며, 입찰신청이 없는 경우엔 입찰집행일,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견적서가 제출된 날) 이전 3개월 이상의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자료 : 国土交通省「監理技術者制度運用マニュア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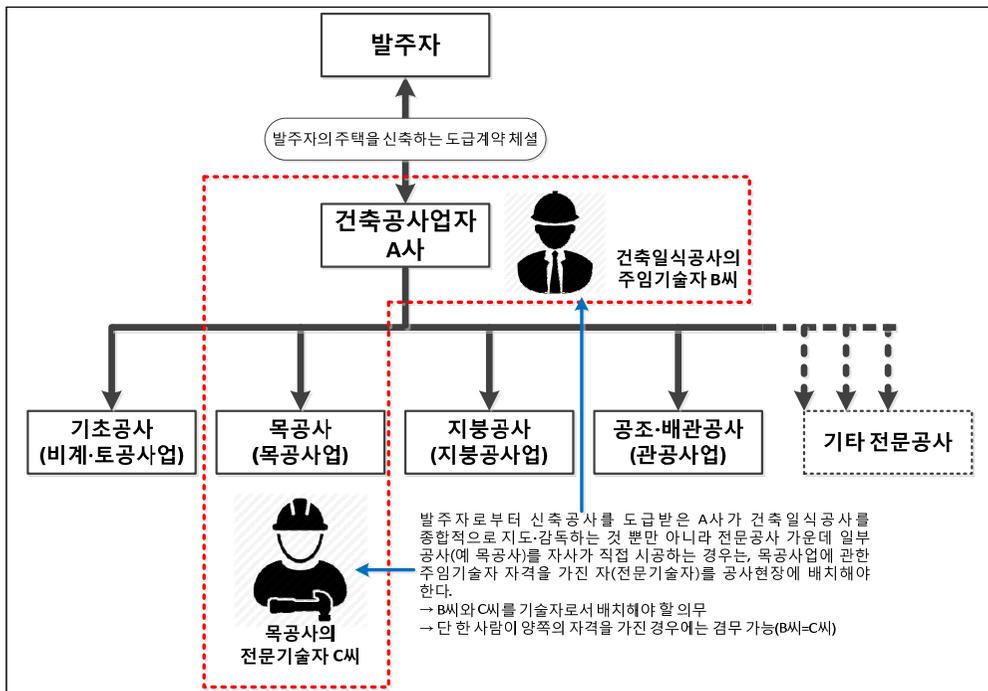
## 2) 전문기술자 및 현장대리인

### ① 전문기술자

토목일식공사, 건축일식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자가 자신이 일식공사 외에 다른 전문공사(예를 들어 비계공사, 거푸집공사, 철근공사, 전기공사, 관공사 등)를 직접 시공하고자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자신이 해당 전문공사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거나, 각각의 전문공사에 대해 주임기술자 또는 감리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전문기술자로서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 때 원도급자가 현장에 배치하고 있는 일식공사의 주임기술자 또는 감리기술자가 시공하고자 하는 전문공사에 대한 주임기술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자가 전문공사의 주임기술자를 겸무할 수 있다. 이 자의 관리 하에 원도급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다.

- ㉑ 일식공사의 주임기술자, 감리기술자가 그 전문공사에 대해 주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자가 전문기술자를 겸무한다.
- ㉒ 일식공사의 주임기술자, 감리기술자와 별도로 같은 회사 안에 다른 전문공사에 대해 주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전문기술자로서 배치한다.

전문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업자는 전문기술자 배치를 통한 시공이 제한된다. 자신이 수주한 전문공사(포장공사, 관공사 등 토목일식공사, 건축일식공사 이외의 공사)와 관련하여 자사의 건설업 허가 업종 이외의 부대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는 그 부대공사에 관한 주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전문기술자를 배치해야만 한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14] 일식공사업자가 그 일부의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

## ② 기타 (현장대리인)에 대해

현장대리인은 현장에서 시공을 수행하고 있는 건설 회사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말하며, 시공에 관한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주임기술자와 감리기술자와는 개념적으로 완전히 구분된다. 특히 공공공사에서는 「도급계약약관」에서 현장대리인의 선임규정이 정해져 있다.

- ㉠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자
- ㉡ 현장대리인과 「해당 공사의 주임기술자 및 전문기술자」는 겸무 가능
- ㉢ 건설업자가 가진 권한 가운데 현장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행사하고자 하는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권한의 내용을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현장대리인은 주임기술자나 감리기술자와 개념적으로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자격자(기술자)일 필요가 없으며, 발주자에게 통지하면 언제라도 변경도 가능하다.

## 5. 히토리 오야카타

### 1) 히토리 오야카타의 개념

히토리 오야카타(一人親方)는 건설업에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가족만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1인 사업주를 의미한다. 오야카타는 원래는 기능자를 모아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십·반장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일반적으로는 건설업에서의 1인 사업주를 지칭하지만, 노동재해보험의 특별가입제도에서는 건설업 외에도, 임업, 직업 운전자, 의약품 배치판매업, 선원도 히토리 오야카타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일본의 건설현장에서 기능자는 미나라이(見習い), 쇼쿠닌(職人), 히토리 오야카타(一人親方), 오야카타(親方)의 4단계로 구성된다. 가장 처음, 건설 현장 기능인의 길에 진입하면 견습에 해당하는 미나라이가 된다. 미나라이는 건설 현장에서 시공 경험을 쌓고, 기능을 연마하여 쇼쿠닌이 된다. 쇼쿠닌이 독립

하여 다른 쇼쿠닌을 고용하여 기업으로서의 체제를 갖춘 단계가 오야카타이며, 오야카타는 단순히 기능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회사를 경영하고, 현장에서는 매니지먼트 업무가 요구된다. 여기서 히토리 오야카타는 오야카타가 되기 한 단계 전의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오야카타로부터 독립은 했지만 자신의 쇼쿠닌을 고용하지 못한 상태를 히토리 오야카타라고 지칭한다. 목공의 경우 미나라이부터 시작하여 히토리 오야카타가 되기까지 10년 정도가 걸린다. 히토리 오야카타는 한 명의 쇼쿠닌으로서 건설 프로젝트에 고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아래에 쇼쿠닌을 고용하여 공사를 담당할 수도 있다.

히토리 오야카타라는 형태는 건설업의 특성 상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목조 주택 건축을 예로 들면, 건설공사 전체에는 목공사 이외에도 토목공사, 미장공사, 외장공사 등 각각의 전문적인 기능이 요구된다. 일본의 메이지시대<sup>20)</sup>까지는 건축주가 각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쇼쿠닌에게 직접 발주하고, 자재는 건축주가 준비하여 지급하는 형태가 많았다. 현대에는 건축주가 종합 건설업자에게 주택건설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결국 종합 건설업자가 다양한 전문건설업자에게 각각 공사를 발주하는 구조에는 차이가 없다. 또한 공사에는 단기적으로 다수의 쇼쿠닌이 필요하게 되는 공정도 있어, 이러한 경우 다른 업체 또는 쇼쿠닌 개인에게 참여(하도급)를 요청한다. 이렇듯 전문기술이 필요한 점, 공기 전체에 공사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서 히토리 오야카타의 수요가 존재한다.

히토리 오야카타의 입장에서 다른 오야카타의 쇼쿠닌으로 고용되는 것보다 히토리 오야카타를 선택하는 전형적인 이유는 독립성과 수입증가를 들 수 있다. 히토리 오야카타는 자신이 사업주이기 때문에 작업 의뢰가 오더라도 수주여부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은 전부 자신의 수입이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쇼쿠닌을 고용할 수 없거나, 오야카타가 자신을 고용해주지 않아서 등의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히토리 오야카타가 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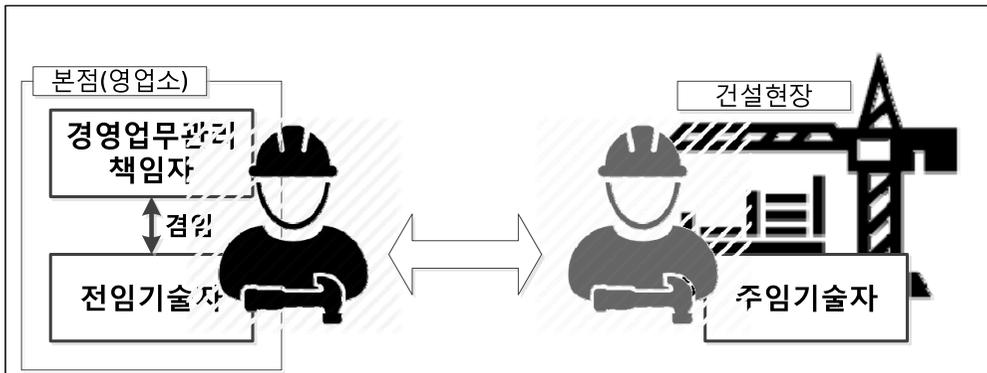
20) 메이지 유신 이후의 메이지 천황의 통치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1868년 1월 3일 왕정복고의 대호령에 의해 메이지 정부가 수립된 후 1912년 7월 30일 메이지 천황이 죽을 때까지 44년간이다.

있다. 후자 형태의 히토리 오야카타는 외주도급이라는 형태는 유지하고 있지만, 보수는 기성제가 아니라 일당 또는 월급제가 많다.

## 2) 히토리 오야카타의 건설업 허가

최근 관리능력이 좋은 건설업자들은 자신들의 하도급업체에게 건설업 허가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히토리 오야카타도 건설업 허가를 획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혼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히토리 오야카타도 본인이 경영업무 관리책임자와 전임기술자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으면 건설업 허가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업법 제26조에 따르면 건설업 허가업자는 공사를 도급하면 공사현장에 주임기술자 또는 감리기술자를 배치해야만 한다. 또한 전임기술자에 대해서는 원칙 영업소에 상근하여, 영업소의 기술자로서 직무에 종사해야 한다(그림 2-15). 여기에서 자기 자신 한 명밖에 없는 히토리 오야카타가 영업소에 상주하여 지시하는 전임기술자와 현장의 주임기술자를 겸무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15] 히토리 오야카타의 겸무 문제

본래에는 히토리 오야카타를 인정하지 않고, 기술자를 늘리게 하는 것이 정론이다. 그러나 이 경우 건설업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최소 2명의 전임기

술자가 필요하게 되어 기능자가 건설업자로 성장하기 위한 루트가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성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업소의 전임성을 완화하여 전임기술자라도 현장의 배치기술자(주임기술자, 감리기술자)를 겸무할 수 있게 하였다(2003년4월21일 국총건 제18호).

- ㉠ 해당 영업소에서 도급계약이 체결될 것
- ㉡ 공사현장과 영업소가 인접하고, 해당 영업소와 현장 사이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체제가 있을 것
- ㉢ 해당공사가 공공성이 없으며, 도급금액이 2,500만 엔 이상(건축일식은 5,000만 엔 이상)의 공사가 아닐 것

이러한 예외 조항에 근거하여 히토리 오야카타도 앞서 2장에서 설명한 ① 경영업무의 관리책임자, ② 전임기술자, ③ 성실성, ④ 재산적 기초의 4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건설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일반적인 건설업체와 동일하게 자격 요건이 만족하면 특정건설업은 물론 복수의 업종에 대한 허가도 취득할 수 있다.

### 3) 히토리 오야카타의 문제점

히토리 오야카타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 건설업에서의 노동보험과 사회보험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묶어 4대 보험으로 표현하지만 일본에서는 각기 연금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노동재해보험으로 표현하며, 이를 묶어서 일괄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표 2-16〉 건설업의 노동보험, 사회보험 가입 의무

사무소의 형태	상시고용 노동자수	노동형태	노동보험		사회보험	
			고용보험	노동재해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법인	1명~	상용직 노동자	고용보험※1 (사업주 부담 0.9%)	원도급자일괄가입 (하도급사업주의 부담없음)	○ 협회건강보험 <sup>21)</sup> (사업주 부담 5.775% <sup>22)</sup> ○ 건강보험조합 <sup>23)</sup> ○ 국민건강보험조합(건설국보 <sup>24)</sup> 등)(적용 예외가 승인된 경우※2)	후생연금 <sup>25)</sup> (사업주 부담 9.291%)
	-	일용직 노동자	일용고용보험 <sup>26)</sup> (사업주 부담0.9%+일 액48~88엔)	원도급자일괄가입 (하도급사업주의 부담없음)	○ 국민건강보험 <sup>27)</sup> (사업주 부담 없음) ○ 협회건강보험(일용특례피보험 자) <sup>28)</sup>	국민연금 <sup>29)</sup> (사업주 부담 없음)
	-	임원 등	-	특별가입 (사업주 부담있음)	○ 협회건강보험 (사업주 부담 5.775%) ○ 건강보험조합 ○ 국민건강보험조합(건설국보 등)(적용예외가 승인된 경우※2)	후생연금 (사업주 부담 9.291%)
개인 사업주	5명~	상용직 노동자	고용보험※1 (사업주 부담 0.9%)	원도급자일괄가입 (하도급사업주의 부담없음)	○ 협회건강보험 (사업주 부담 5.775%) ○ 건강보험조합 ○ 국민건강보험조합(건설국보 등)(적용예외가 승인된 경우※2)	후생연금 (사업주 부담 9.291%)

	1명~4명	상용직 노동자	고용보험※1 (사업주 부담 0.9%)	원도급자일괄가입 (하도급사업주의 부담없음)	○ 국민건강보험 (사업주 부담 없음) ○ 국민건강보험조합(건설국보 등)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 없음)
	-	일용직 노동자	일용고용보험 (사업주 부담0.9%+일 액48~88엔)	원도급자일괄가입 (하도급사업주의 부담없음)	○ 국민건강보험 (사업주 부담 없음) ○ 협회건강보험(일용특례피보험자)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 없음)
	-	사업주, 히토리 오야카타	-	특별가입 (사업주 부담있음)	○ 국민건강보험 (사업주 부담 없음) ○ 국민건강보험조합(건설국보 등)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 없음)
※1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는 상용 여부를 묻지 않음 ※2 건강보험의 적용제외가 승인되면 국민건강보험조합에 가입한다. ※ 회색 음영 처리된 보험은 사업주가 종업원을 가입시켜주어야 하는 보험이며, 그 외의 보험은 종업원이 개인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임						

자료 : 国土交通省

- 21) 협회건강보험은 과거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나 그 가족이 가입되는 건강보험(정부관장 건강보험)은 국가(사회보험청)에서 운영되었으나, 2008년 10월에 설립된 전국건강보험협회로 민영화되었다. 2017년 10월 기준 약 207만 사가 가입하고 있다. 전체 의료보험 적용자의 29%를 차지한다. 보험료는 도도부현별로 다르게 설정된다.
- 22) 협회건강보험 사업주 부담 비율은 2016년도 카나가와현 지부의 보험요율을 참고함.
- 23) 건강보험조합이 실행하는 보험제도는 주로 상시고용 70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대기업이나 그룹기업의 사원이 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2018년 4월 기준 1,389조합이 있고, 약 10만 사가 가입하고 있다. 전체 의료보험 적용자의 23%를 차지한다. 보험료는 조합별로 다르게 설정된다. 일반적으로 협회건강보험보다 7~9% 저렴하게 설정된다.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의 자기부담금액은 협회건강보험의 1/3 수준으로 낮다.
- 24) 건설국보는 전국의 목공, 비계, 토목, 토목, 조경, 미장, 판금 등의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1970년에 설립된 국보조합이다. 2018년 기준 조합원은 49,454명, 가족회원은 57,422명이 등록되어 있다.
- 25) 후생연금보험은 국민연금에 가중되어 급부되는 연금으로 후생연금보험법에 기초하여 일본정부(일본연금기구)가 운영한다. 기초연금인 국민연금 금액에 후생연금보험의 수급액이 가산되어, 합계 금액을 받게 된다. 후생연금보험의 대상자는 주로 일반 회사원이다. 개인사업주도 종업원이 상

- 시 5명 이상인 경우에는 강제 가입된다. 단 음식점 등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에도 종업원의 1/2이상이 가입에 동의하는 경우는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다. 후생연금의 보험료는 매년 4월~6월에 지불되는 급여와 보너스에 대해 공통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26) 일용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구직자 급부의 한 가지. 일용직 노동 피보험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된다(현 급급부). 일용노동자는 일용직 노동피보험자의 요건이 만족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용노동피보험자자격취득 신청서를 관할 공공직업안정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할공공직업안정소장은 요건이 만족하는 경우 일용노동피보험자 수첩(유효기간 1년)을 발행한다.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지불 받을 때 근로1일당 인지를 받아야 한다. 인지는 일당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일당 11,300엔 이상은 176엔, 8,200엔 이상 11,300엔 미만은 146엔, 8,200엔 미만은 96엔이다.
- 27) 국민건강보험은 지자체인 시·구·정·촌에서 운영하며, 가입 및 탈회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청에서 담당한다. 보험료의 계산방법도 시·구·정·촌에 따라 다르다.
- 28) 건강보험의 적용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일반)피보험자가 되지만, 임시로 근무하는 사람은 고용형태가 (일반)피보험자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협회건강보험(일용특례피보험자)로서 적용된다. 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 4개월 이내의 계절 업무에 고용된 사람, 6개월 이내의 임시 사업 사무소에서 고용된 사람, 1개월 이내로 고용되는 일용직 노동자는 일용특례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단 일용직 노동자가 2개월 이상 한 직장에서 근로가 계속되면 (일반)피보험자가 된다.
- 29)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이라고도 불리며, 20살 이상 60살 미만의 국민전원이 반드시 가입하게 되어 있는 연금이다.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정부(일본연금기구)가 운영한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정액으로 2016년도는 월 16,260엔이다. 국민연금의 지급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먼저 노동보험(고용보험)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과 개인사업주에 관계없이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단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 등과 개인사업주에 해당하는 히토리 오야카타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에서의 의료보험은 국민 모두가 가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다면 연령, 국적에 관계없이 반드시 한 가지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료보험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협회건강보험, 건강보험조합, 국민건강보험조합의 형태가 있다. 다음 요건 가운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는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외에도 일을 하고 있지만 단시간노동(1주간의 노동시간이 30시간미만)인 경우와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주(자영업자)이며, 아래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과 그 부양가족</li> <li>㉡ 선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과 그 부양가족</li> <li>㉢ 국민건강보험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과 그 세대가족</li> <li>㉣ 75세 이상의 사람(후기고령자의료제도 대상자)</li> <li>㉤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li> </ul> |
|------------------------------------------------------------------------------------------------------------------------------------------------------------------------------------------------------------------------------|

연금보험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모두가 반드시 가입하는 국민연금이 기초이며, 상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금을 확보할 수 있는 후생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연금보험과 후생연금 모두 일본연금기구(정부)가 운영한다.

건설업 노동재해보험은 일반적인 노동재해보험과 달리 그 건설공사의 원도급자가 가입하는 산재보험에 의해 원도급자의 노동자는 물론, 하도급자의 노동자의 노동재해도 보상된다. 단 건설업 노동재해보험은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도급자를 비롯한 모든 건설업체의 사장과 임원 등은 노동재해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즉 히토리 오야카타나 개인사업주는 고

용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일을 도급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건설업의 노동재해보험료는 원도공사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 ① 노동자성의 애매함

히토리 오야카타는 하나의 독립된 도급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히토리 오야카타는 노무관리의 측면에서 노동기준법 상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 노동기준법 제9조에서 노동자란 사업 또는 사무소에서 사용되는 자로, 임금을 지불받는 자로 정의되어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히토리 오야카타는 명확히 사업 또는 사무소에서 사용되는 것도 아니며, 임금<sup>30)</sup>이 지불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수는 노동의 대상이 아니며, 일의 완성 결과에 대해 받고 있기 때문에 노동기준법에서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히토리 오야카타가 종사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은 노동기준법에서 설명하는 노동자와 전혀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본 노동조합법에서는 히토리 오야카타도 노동자로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히토리 오야카타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원도급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노동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② 재해 보험

히토리 오야카타는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 보상 문제가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노동자를 한 사람이라도 사용하고 있으면, 사업자는 노동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노동자가 시간제나 계약직이더라도 동일하다. 건설업은 원도급 이하 2차, 3차 이상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므로 타산업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재해의 보상에 관해서 하도급 노동자는 원도급자에게 사용되고 있다고 간주되어(노동보험징수법 제8

30) 일본 노동기준법 제11조에서의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조, 노동기준법 제87조), 원도급자는 일괄하여 노동재해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노동자가 작업 중 또는 통근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 노동재해보험에서 보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히토리 오야카타는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고, 노동재해보험의 적용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2000년대 일본의 한 건설현장에서 히토리 오야카타가 작업 중에 사고를 당하고, 원도급자도 해당 히토리 오야카타가 노동자로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여 노동재해를 신청하였으나, 노동기준감독서가 히토리 오야카타는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히토리 오야카타의 노동자성에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되었고, 2007년 일본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문<sup>31)</sup>을 살펴보면 보수의 지불형태, 업무지시형태, 계약하고 있는 회사에의 전속정도, 적용되고 있는 다른 사회보장제도, 작업공구의 소유자 등의 측면에 기초하여, 원도급자는 히토리 오야카타의 노무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노동기준법과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히토리 오야카타가 단체를 만들어 노동재해보험에 특별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라면 후생연금이나 건강보험에 절반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사업자인 히토리 오야카타는 후생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보장이 비교적 적은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에 전액 자기 부담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성은 2012년 11월부터 사회보험 미가입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히토리 오야카타의 증가 억제에 노력하고 있다.

## 6. 시공체제대장과 시공체제도

### 1) 시공체제대장의 개요

#### ① 시공체제대장의 법적 규정

31) 最高裁判所2007年6月28日判決、事件番号:平成17(行ヒ)145。

건설공사는 일반적으로 각종 전문공사를 종합적으로 조합하여 시공하기 때문에 그 시공체제는 중층화된 하도급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업 체제 아래에서 적정하고 효율적인 시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원도급)가 1차 하도급뿐만이 아니라, 해당공사에서 시공에 참가하는 모든 하도급자의 기술자, 안전위생책임자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원도급자가 현장에서의 시공체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으며, 공정, 품질, 안전 등 시공 상의 문제도 발생하기 쉽게 된다. 또한 불량·부적격업체가 참가한다거나, 하도급자로 참가한 건설업자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일괄하도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생산성이 낮아지거나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건설업법 제24조의7 및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주한 공공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하도급금액에 관계없이

- ㉠ 시공체제대장을 작성하여 공사현장에 비치할 것
- ㉡ 시공체제대장의 복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 ㉢ 시공체제도를 공사관계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해둘 것

을 의무화하고 있다.

<p>[건설업법]</p> <p style="text-align: right;">(1949년 법률 제100호) (2015년 6월 2일 개정)</p> <p><b>제24조의7</b> 특정건설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도급금액(해당 하도급계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는 그 도급금액의 총액)이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p>
----------------------------------------------------------------------------------------------------------------------------------------------------------------------------------------------------------------------------------------------------------------

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해 하도급인의 상호 또는 명칭, 해당 하도급이 담당하는 건설공사의 내용 및 공기, 기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시공체제대장을 작성하여, 공사현장 별로 비치해야만 한다.

2 전항의 건설공사 하도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항의 특정건설업자에게 해당 다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의 상호 또는 명칭, 그 자가 도급한 건설공사의 내용 및 공기, 기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해야만 한다.

3 제1항의 특정건설업자는 동항의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동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한 시공체제대장을 발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만 한다.

4 제1항의 특정건설업자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각 하도급인의 시공분담관계를 표시한 시공체제도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공사현장에서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해야만 한다.

####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 촉진에 관한 법률

(2000년 법률 제127호)

(2015년 9월 11일 개정)

**제15조** 공공공사에 있어서 건설업법 제24조의7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의 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규정하는 특정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는 동조 제1항 가운데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도급금액(해당 하도급계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는 그 도급금액의 총액)이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이 상인 경우」의 항목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동조 제4항 가운데 「보기 쉬운 장소」의 항목을 「공사관계자가 보기 쉬운 장소 및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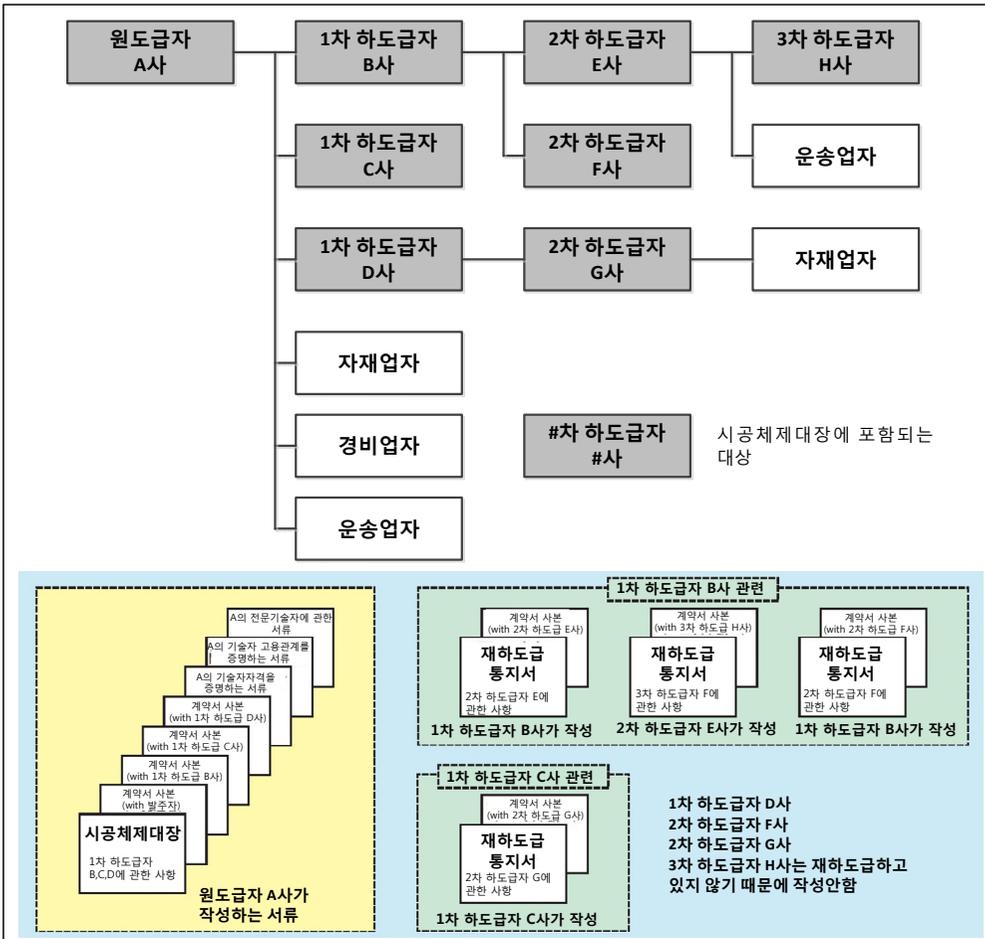
2 공공공사의 수주자는 작성한 시공체제대장의 복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만 한다. 이 경우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전항의 공공공사의 수주자는 발주자로부터 공공공사의 시공 기술 상 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배치상황 및 기타 공사현장의 시공체제가 시공 체제대장의 기재 사실과 일치하는 지에 대한 점검을 요구받았을 때에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건설업법에 따른 시공체제대장에는 배치가 필요한 일정 자격을 가진 기술자(감리기술자 및 주임기술자 등)에 대해 원도급자·하도급자 별로 기재하고, 적절한 기술자가 실제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가를 원도급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시공체제대장을 통해 해당공사의 시공과 관련한 모든 하도급자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책임관계도 명확히 할 수 있어, 각 하도급자가 관계법령(건설업법, 노동안전위생법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도, 관리를 할 수 있다. 원활하게 시공체제대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원도급자는 관계법령을 숙지하고, 하도급자에게 시공체제대장을 작성해야 하는 건설공사임을 통지하고, 재하도급통지서의 작성 방법, 유자격자의 배치, 서면에 의한 계약 체결 등에 대해 지도할 필요가 있다.

## ② 시공체제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하도급자의 범위

시공체제대장에 기재해야만 하는 하도급자의 범위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도급계약을 맺는 모든 하도급자(무허가 업체도 포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차 하도급자뿐만 아니라 2차 하도급자, 3차 하도급자 이하도 기재 대상이 된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자재조달이나 조사업무, 운반업무 등에 관련한 하도급자 등에 대해서는 건설업법 상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발주자가 지방서 등에서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성 발주공사에서는 공통지방서에서 경비회사와의 계약에 대해서도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료 : 岡山県 土木部

[그림 2-16] 시공체제대장 작성 범위

## 2) 시공체제대장 작성의 순서

시공체제대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도급자, 1차 하도급자, 2차 이하 하도급자가 각각 적절하게 서류를 작성해서 취합할 필요가 있다.

### ① 원도급자가 실시하는 업무

원도급자는 1차 하도급자에게 ㉠ 원도급자의 상호 또는 명칭, ㉡ 해당 공사가 시공체제대장을 작성해야 하는 건설공사이며, 해당 1차 하도급자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재하도급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㉔ 재하도급통지서의 제출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㉕ ~ ㉗의 사항을 공사현장에서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또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시공체제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표 2-17〉 시공체제대장 세트 (원도급자 용)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도급자의 건설업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li> <li>(2) 원도급자가 발주기관과 계약한 공사도급계약서의 사본</li> <li>(3) 감리기술자자격증명의 사본</li> <li>(4) 감리기술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세특별징수의무자지정 및 세액통지서·변경통지서의 사본</li> <li>(5) 원도급자가 전문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그 자가 주임기술자자격을 가진 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그 사본</li> <li>(6) 전문기술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세특별징수의무자지정 및 세액통지서·변경통지서의 사본</li> <li>(7) 담당기술자대장</li> <li>(8) 시공체제대장 - 1차 하도급 별로 작성</li> <li>(9) 시공체제대장을 작성해야하는 건설공사임을 알리는 통지서의 사본</li> <li>(10) 1차 하도급자의 건설업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li> <li>(11) 원도급자와 1차 하도급자의 계약서 사본</li> <li>(12) 원도급자와 1차 하도급자의 건설 재활용법 제13조 및 성령 제4조에 따른 서면</li> </ul> |
|------------------------------------------------------------------------------------------------------------------------------------------------------------------------------------------------------------------------------------------------------------------------------------------------------------------------------------------------------------------------------------------------------------------------------------------------------------------------------------------------------------------------------------------------------------------------------------------------------|

자료 : 国土交通省 九州地方整備局

그리고 원도급자는 시공체제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편제표를 1차 하도급 별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각 1차 하도급 별로 관계 서류를 배치한다.

〈표 2-18〉 시공체제대장 세트 (각 1차 하도급자 용)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하도급자 편제도 (1차 하도급 이하의 시공체제도)</li> <li>(2) 재하도급통지서 - 1차 하도급자가 작성한 것</li> <li>(3) 2차 하도급자의 건설업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li> <li>(4) 1차 하도급자와 2차 하도급자와의 계약서 사본 - 재활용법 제13조 및 성령 제4조에 따른 서면</li> <li>(5) 재하도급통지서 - 2차 하도급자가 작성한 것</li> <li>(6) 3차 하도급자의 건설업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li> <li>(7) 2차 하도급자와 3차 하도급자와의 계약서 사본</li> <li>~</li> </ul> |
|------------------------------------------------------------------------------------------------------------------------------------------------------------------------------------------------------------------------------------------------------------------------------------------------------------------------------------------------------------------------|

자료 : 国土交通省 九州地方整備局

이어서 원도급자는 앞선 표 2-17과 표 2-18의 서류에 기초하여 시공체계도를 작성하고, 공사현장에서 보기 쉬운 장소 및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고, 시공체계도의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시공체제대장 및 시공체계도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변경하고, 발주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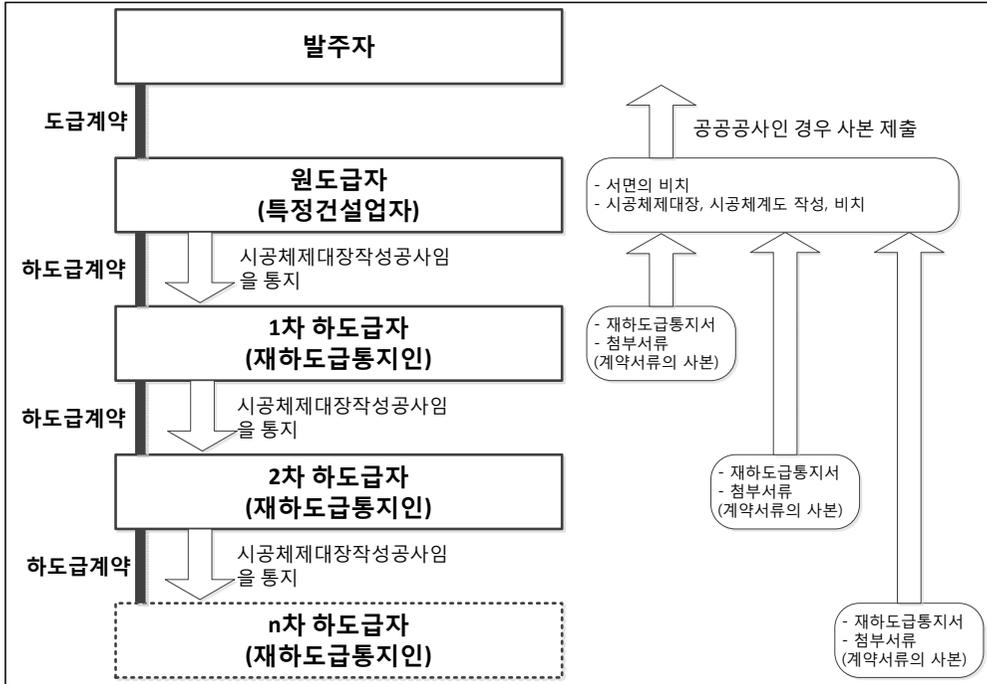
### ② 1차 하도급자가 실시하는 업무

수주한 건설공사를 재하도급하는 경우, 1차 하도급자는 재하도급자(2차 하도급자)에게 원도급자로부터 교부받은 통지문을 교부하여, 시공체제대장을 작성해야 하는 공사임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재하도급자(2차 하도급자)로부터 재하도급통지서를 제출받는다. 1차 하도급자는 시공체계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2차 하도급 이하의 하도급자 편제표를 작성한다. 이후 1차 하도급자는 재하도급자(2차 하도급자) 이하가 작성한 재하도급통지서를 취합하여, 2차 이하 하도급자의 건설업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하도급계약서의 사본 및 필요에 따라 주임기술자, 전문기술자의 자격, 소속 등에 관한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원도급자에게 제출한다. 하도급계약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즉시 변경하고, 원도급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한다.

### ③ 2차 하도급자 이하가 실시하는 업무

수주한 건설공사를 재하도급하는 경우, 2차 이하 하도급자는 재하도급자(3차 이하 하도급자)에 대해, 상위 계약자로부터 교부받은 통지문을 교부하여, 시공체제대장을 작성해야 하는 공사임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재하도급자(3차 이하 하도급자)에게 재하도급통지서를 제출받고, 자사의 재하도급통지서와 함께 재하도급자(3차 이하 하도급자)의 건설업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 재하도급자(3차 이하 하도급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의 사본 및 필요에 따라 주임기술자, 전문기술자의 자격, 소속 등에 관한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상위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하도급계약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즉시

변경하고, 상위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2-17] 시공체제대장 작성 구조

### 3) 시공체제대장과 시공체계도의 내용

#### ① 시공체제대장, 시공체계도

시공체제대장에는 원도급사의 기초정보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허가, 허가의 종류, 기간, 계약을 체결한 영업소, 그리고 원도급자가 필수적으로 배치해야하거나(주임기술자 또는 감리기술자), 선택적으로 배치한(감독원, 현장대리인, 전문기술자) 기술자들의 신상과 자격을 기재해야 한다(그림 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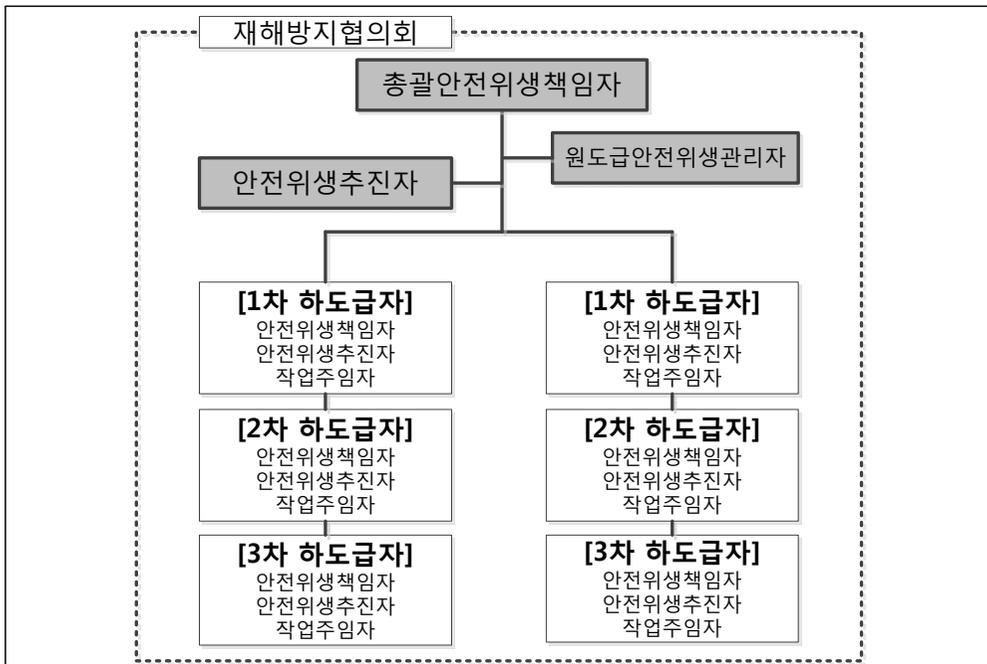
하도급자에 대해서는 하도급자의 기초정보와 보유하고 있는 허가 가운데 수주한 건설공사 시공에 필요한 허가와 유효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각 하도급자가 담당하고 있는 공사 별로 내용과 계약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하도급자도 원도급자와 유사하게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하거나(주임기술자), 선택적으로 배치한(현장대리인, 안전위생책임자, 안전위생추진자, 고용관리책임자)

임자, 전문기술자) 기술자들의 신상과 자격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각 업체에 대해 건강보험과 후생연금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시공체계도에는 원도급사의 감독원, 감리기술자, 전문기술자, 전문기술자가 담당하는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 총괄안전위생책임자, 자사 안전위생관리자가 포함된다(그림 2-20). 각 하도급자들은 안전위생책임자, 주임기술자, 전문기술자, 전문기술자가 담당하는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 공기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 ② 안전관리체계

안전위생관리체계는 노동안전위생법,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안전위생관리조직의 기본적인 체제는 다음의 그림 2-18과 같다.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2-18] 안전·위생 담당자 구성

사업자(공사수주자)는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공사에서 노동자의 작업이 동일 장소에서 이루어짐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총괄안전위생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총괄안전위생 책임자는 원도급안전위생관리자를 지휘하고, 협의조직의 설치 및 운영, 작업 간 연락 및 조정, 작업 장소 순시 등 노동재해를 방지위해 필요한 업무 등의 총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 때 총괄안전위생책임자는 해당 장소에서 사업 실시를 총괄하는 자(현장대리인 등)에 해당해야 한다. 통상 상시 작업자가 50명 이상인 곳에서는 총괄안전위생책임자가 선임되어야 한다.

원도급안전위생관리자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격<sup>32)</sup>을 가진 자 가운데 선임하며, 총괄안전위생책임자 업무의 기술사항을 관리해야만 한다. 원도급안전위생관리자는 전임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총괄안전위생책임자가 선임된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는 총괄안전위생책임자와 연락 등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담당하는 안전위생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안전위생책임자는 총괄안전책임자로부터의 연락 사항 가운데 자신이 소속된 업체와 관련된 내용의 실시 상황을 관리하고, 작업순서계획서 작성과 작업공정 및 기계, 설비배치계획 등의 총괄안전위생책임자와의 조정, 작업에 따라 발생하는 노동 재해에 관한 위험 유무의 확인을 수행한다.

원도급자는 모든 하도급자가 참가하는 안전 관련 협의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안전 사항에 관련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또한 하도급자는 원도급자가 설치한 협의조직에 참가해야 한다.

---

3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이과계통의 정규 과정을 졸업하고, 3년 이상의 건설공사 시공에서 안전위생 실무에 종사한 자, 고등학교에서 이과계통의 정규 과정을 졸업하고, 5년 이상의 건설공사 시공에서 안전위생 실무에 종사한 자

### 施工体制台帳

**작성 건설업체의 상호, 명칭**  
이 공사를 담당하는 영업소명  
작성 건설업체가 가지고 있는 허가를 전부 기입 (일종은 약정으로 기입 가능)

**작성 건설업체가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명칭과 그 공사의 구체적 내용**

**작성 건설업체가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서에 기재된 공기**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작성 건설업체의 영업소**

**1차 하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작성 건설업체의 영업소**

**원도계약에 관한 영업소의 명칭 및 하도급계약에 관한 영업소의 명칭**

**사무소정기기로 및 사업소변의(건강보험조합에서의 조합명)을 기입  
일괄비용 승인을 받은 영업소의 경우에는 보험의 정기기로 및 사업소변호를 기입**

**발주자가 배제한 감독원의 성명**

**작성 건설업체가 1차 하도급을 감독하기 위해 감독원을 배제한 경우 그 성명**

**작성 건설업체가 현장대리인을 배제한 경우 그 성명**

**작성 건설업체가 배제한 「주임기술자」 또는 「관리기술자」에 대해 전임, 비전임 여부해 체크**

**작성 건설업체가 배제한 「전문기술자」가 담당하는 공사의 구체적 내용**

【会社名】	谷小建設株式会社		
【事業所名】	〇〇ビル作業所		

許可業種	許可番号	許可(更新)年月日
建築業の許可 上、建築、電、工業事 注、し、せ	第99999号	平成23年1月10日
電気通信 工業事	第99999号	平成23年1月10日

工事名称及び 工事内容	発注者名及び 住所	工期
〇〇ビル新築工事 / 建築一式(地上6階、地下1階 延床面積 9,600㎡)	△△商事株式会社 〒000-0000 〇〇県〇〇市〇〇町1-1	自 平成24年11月15日 至 平成25年3月31日

区分	名 称	住 所
元請契約	本 社	××県××市××町123-4
下請契約	☆☆支店	〇〇県☆☆市☆☆11

健康保険等の加入状況	健康保険	厚生年金保険	雇員保険
有無	未加入 適用除外	未加入 適用除外	未加入 適用除外
事業所整理 記号等	区分 元請契約 〇〇支店	事業所の名称 本社	健康保険 厚生年金保険 雇員保険

発注者の 監督員名	注文 太郎	権限及び 意見申出方法	契約書記載のとおり
監督員名	谷小 二郎	権限及び 意見申出方法	契約書記載のとおり
現 場 代 理 人 名	谷小 二郎	権限及び 意見申出方法	契約書記載のとおり
監 理 技 術 者 名	非専任 谷小 二郎	資格内容	一級建築施工管理技士
専 門 技 術 者 名	原山 太郎	専 門 技 術 者 名	第二種電気工事士

資格内容	実務経験(10年・管)	資格内容	〇〇ビル新築工事、給排水施設工事
------	-------------	------	------------------

**《下請人員に関する事項》**

会社名	福川工業株式会社	代表者名	福川 吾一
住所	〒000-0000 〇〇県☆☆市△△町12-34		
工事名称及び 工事内容	〇〇ビル新築工事 / 構内電気設備工事、照明設備工事		
工期	自 平成24年11月30日 至 平成25年3月25日	契約日	平成24年11月9日

建設業の許可	施工に必要な許可業種	許可番号	許可(更新)年月日
電気 工業事	大抵 一般	第123456号	平成21年2月28日
工業事	大抵 特定 知事 一般	第 9 号	年 月 日

保険加入の有無	健康保険	厚生年金保険	雇員保険
有無	未加入 適用除外	未加入 適用除外	未加入 適用除外
事業所整理 記号等	〇〇営業所	営業所の名称 〇〇営業所	健康保険 厚生年金保険 雇員保険

権限及び 意見申出方法	契約書記載のとおり	安全衛生責任者名	福川 四郎
主任技術者 資格内容	主任 金山 次郎	安全衛生推進者名	福川 四郎
資格内容	第二種電気工事士	雇用管理責任者名	尾島 五郎
担当工事内容		専門技術者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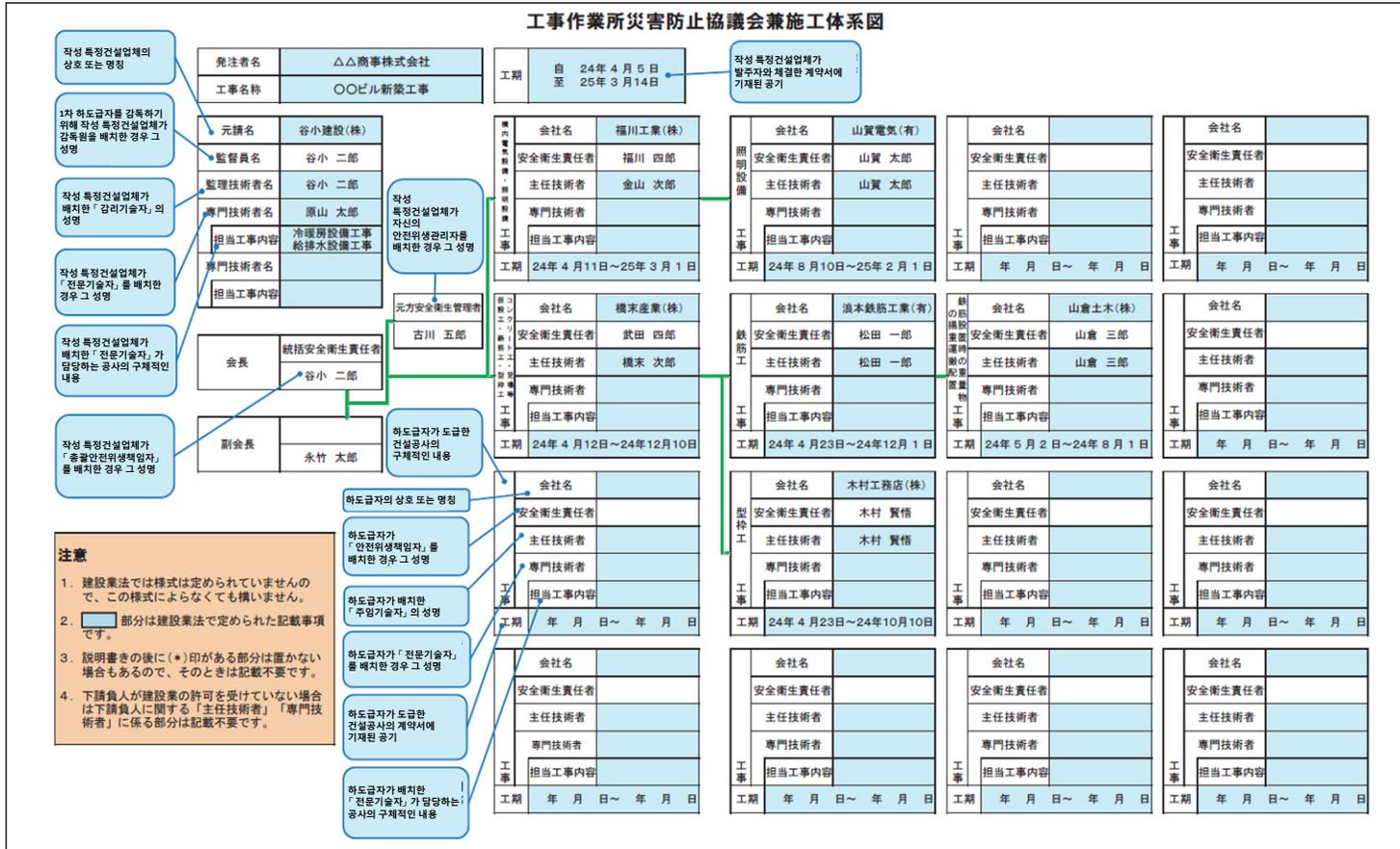
**安全衛生責任者名** 福川 四郎  
**安全衛生推進者名** 福川 四郎  
**雇用管理責任者名** 尾島 五郎  
**専門技術者名** 資格内容 第二種電気工事士  
**担当工事内容**

**《注 意》**

- 建設業法では様式は定められていませんので、この様式によらずとも構いません。
- 部分は建設業法で定められた記載事項です。
- 説明書の後に(\*)印がある部分は置かない場合もあるので、そのときは記載不要です。
- 「権限及び意見の申出方法」欄は、建設業法では相手方に対して通知する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ので、その通知書や契約書に定められている場合は、その旨を記載した上書面を添付してください。これにない場合は具体的に記載してください。

자료 : 国土交通省 九州地方整備局

[그림 2-19] 시공체제대장 예시



자료 : 国土交通省 九州地方整備局

[그림 2-20] 시공체계도 예시

## 6. 소결

일본의 건설업 허가제도는 1949년 건설업법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는 29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종합-전문의 수직구조가 아닌, 일식-전문의 수평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건설업체는 종합 또는 전문허가 가운데 하나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능력, 전략에 따라 다양하게 취득할 수 있다.

일본의 건설업 허가취득 고려 사항은 ① 담당 업무(공사), ② 하도급 규모, ③ 수주 지역의 3가지 항목으로 분류된다. ① 담당 업무(공사)는 사업자가 영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이며, ② 하도급 규모는 해당 사업자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맺는 원도급자가 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프로젝트에서 어느 정도의 하도급계약을 맺는가에 해당한다. ③ 수주 지역은 사업자가 1개 현에서만 사업을 할 것인지 또는 전국 47개 도도부현에서 사업을 할 것인지에 해당한다. 또한 건설업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① 경영업무의 관리책임자, ② 전임기술자, ③ 성실성, ④ 재산적 기초를 만족하고 있어야 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건설업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도급한 공사를 시공 할 때 도급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공사시공의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현장에 주임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또한 특별히 원도급자에 한하여 하도급총액이 4,000만 엔이 넘는 경우에는 주임기술자 대신에 더 높은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감리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전문기술자는 일식공사에서 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공종을 시공하기 위해, 전문공사에서 500만 엔 이상의 부대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자로 주임기술자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다.

기능자 가운데 독립하였으나, 아직 다른 기능인을 고용하지 못한 히토리오야카타도 개인사업자로서 조건을 만족하면 건설업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성에 대해 애매한 면이 있으며, 재해 보험 등에서 불리한 점이 존재한다.

건설업은 다양한 건설업체가 참가하고 다단계 하도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와 책임범위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다. 건설업법에서는 건설현장의 모든 업체의 허가 상태와 보험 상태, 그리고 배치되어야 하는 주임기술자 등의 상태를 명확하게 정리한 시공체제대장과 시공체계도를 작성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일본 건설업 허가 현황 및 통계로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본 건설 산업의 현황을 설명하고, 2018년 5월에 발행된 일본 국토교통성의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건설업 허가업자의 현황을 정리한다. 또한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업 허가 조회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표적인 건설업체가 어떠한 허가를 획득하고 있는지, 영업소를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를 정리한다.

### 1. 일본 건설 산업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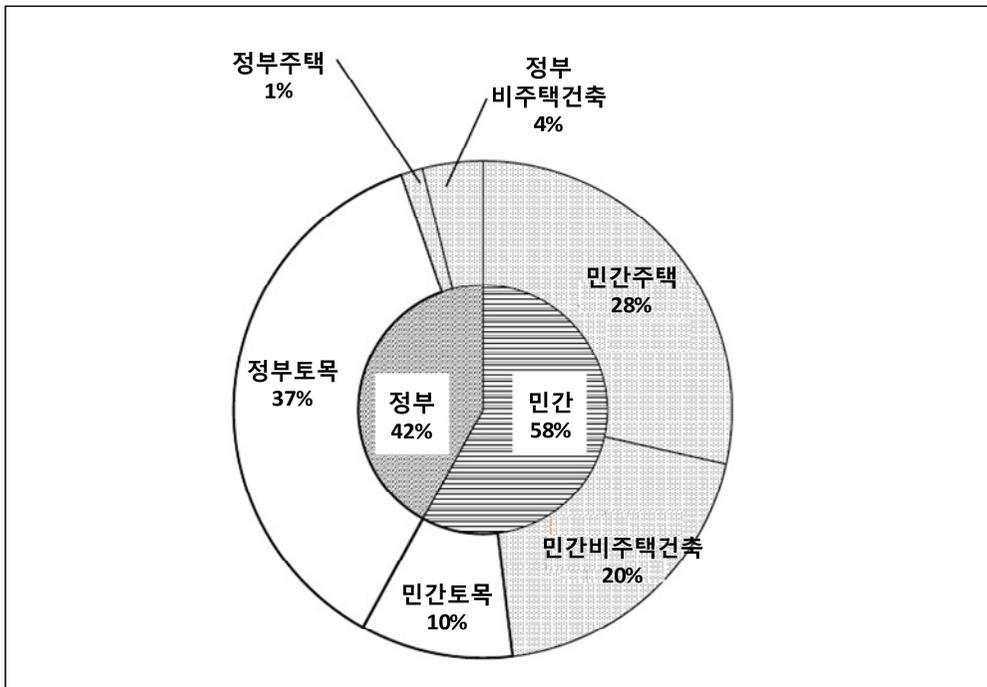
일본의 건설투자액은 1985년부터 1990년도까지 민간 투자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버블 경제 붕괴에 따라 민간 투자가 감소한 이후에도 정부 투자액에 힘입어 1992년 84조 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97년도 이후는 공공공사업의 감소에 따라 건설투자액도 감소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1992년의 절반 수준인 42조 엔까지 감소하였다.

2011년 3월 11일 토호쿠 지역에 진도9.0의 대지진이 발생하여 24,59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2011년도부터 동일본대지진의 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복구비용은 18조 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계기로 2014년도까지 공공부문의 건설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3년 9월 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제125차 총회에서 제32회 2020년 도쿄 올림픽의 개최가 결정되었다. 올림픽 관련 건설투자에는 1,500억 엔에 이르는 올림픽 주경기장 설비 등의 직접적인 수요뿐만 아니라, 민간 호텔의 신축, 리모델링이나 도심의 재개발, 상업시설의 건설이나 교통 인프라의 정비 등의 간접적인 수요도 포함된다. 민간의 미즈비시UFJ 모건스탠리증권은 2020 도쿄 올림픽이 약 10.1조 엔의 건설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올림픽 관련 건설투자는 2018년에 가장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2016년의 건설투자액은 전년도 대비 1.6%가 증가한 51조 7,700억 엔이며, 이 가운데 정부의 공공투자자는 21조 7,300억 엔(전년도 대비 0.8%증가), 민간투자자는 30조 400억 엔(전년도 대비 2.2%증가)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건축, 토목으로 나누면 건축투자액이 27조 6,100억 엔이고, 토목투자액이 24조 1,600억 엔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도의 건설투자 구성을 보면 민간투자가 58%, 정부투자가 42%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투자 가운데 주택과 비주택 부문을 합쳐서 건축투자가 48%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투자는 토목투자가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의 건축 투자와 정부의 토목 투자를 합치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그림 3-1] 2016년도 건설투자액의 구성

## 2. 허가업자 현황

일본 건설업 허가는 공종 별 분류 외에 크게 도도부현 지사 허가,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의 2종류, 그리고 일반건설업, 특정건설업의 2종류를 조합하여 4가지 조합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도도부현 지사+일반건설업 허가는 435,017건으로 전체의 89.2%에 해당하여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도도부현 지사+특정건설업 허가는 39,288건으로 전체의 8.1%, 국토교통성 장관+일반건설업 허가는 전체의 1.5%, 국토교통성 장관+특정건설업 허가는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는 전체의 2.7%, 도도부현 지사 허가는 전체의 97.3%에 해당하며, 일반건설업은 전체의 90.8%, 특정건설업은 9.2%에 해당한다.

모든 공종에 대해 발급된 허가 수는 1,519,653개로, 이를 허가업체 수로 나누어 보면 1업체 당 약 3.3개의 허가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도부현 지사 허가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	합계	
일반건설업	435,017 (89.2%)	7,275 (1.5%)	442,292 (90.8%)	일반건설업과 특정건설업을 혼합해서 가지고 있는 업체 <b>22,419</b>
특정건설업	39,288 (8.1%)	5,728 (1.2%)	45,016 (9.2%)	
합계	474,305 (97.3%)	13,003 (2.7%)	487,308	

총 발급 허가 수	<b>1,519,653</b>
허가업체 수	<b>464,889</b>
업체 당 평균 보유 허가 수	<b>약 3.3개</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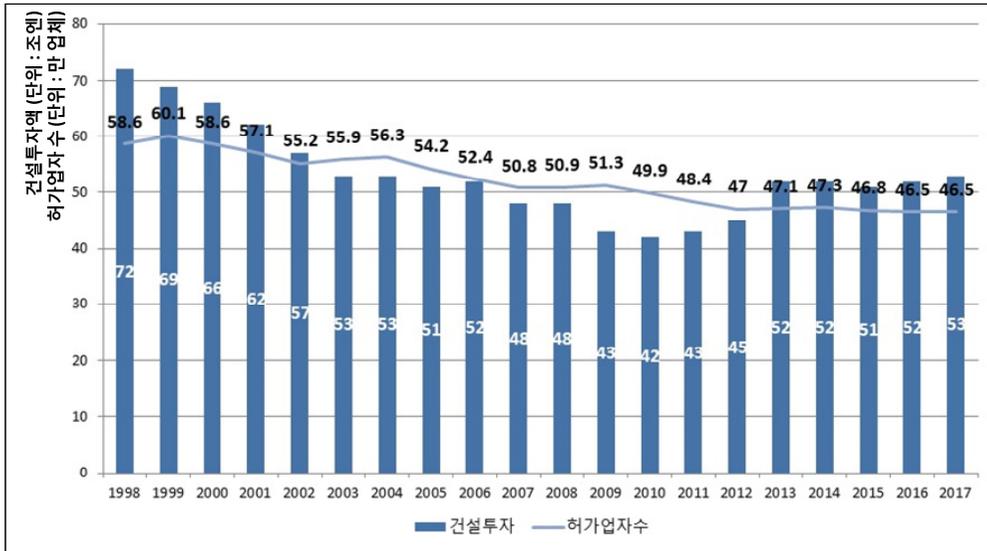
자료 : 저자작성

[그림 3-2] 일본 건설업 허가업자 수 개요

### 1) 전국 허가업자 수

건설 허가업자 수(건설업 허가를 1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업체 수)는 건설 시장의 상황에 크게 좌우된다. 건설 허가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건설투자액과 함께 2010년까지 감소하였으며, 건설투자액이 반등한 2010년부터는 소강상태에 진입하여 46~8만 업체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국

토교통성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의 건설업 허가업자 수는 464,889업체이며, 2016년과 비교하여 565업체(약 0.1%)가 감소하였다. 이는 허가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1999년과 비교하면 약 22.6%가 감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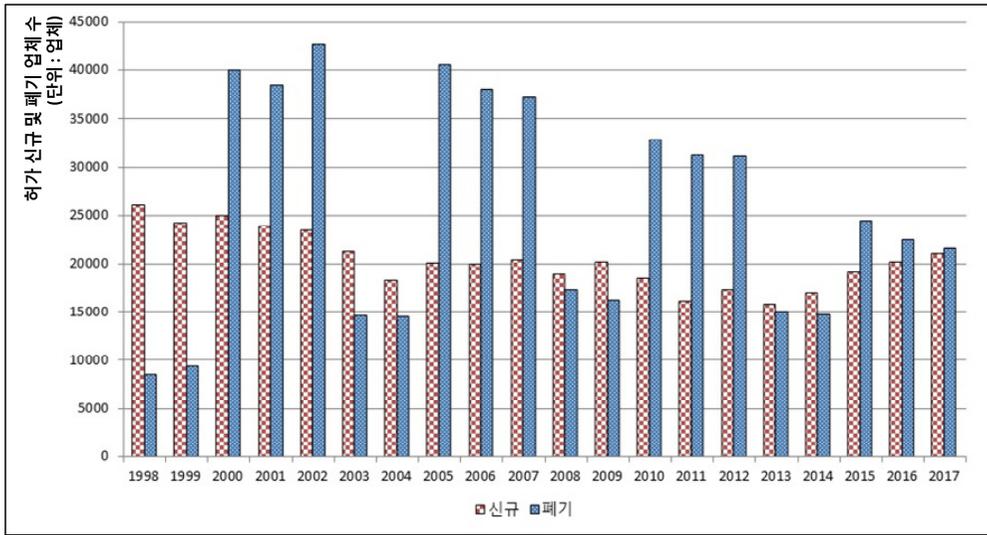


자료 : 国土交通省

[그림 3-3] 일본 건설투자액과 허가업자 수 추이

2017년에 새로이 건설업 허가를 발급받은 업체는 21,035업체로 2016년과 비교하여 813업체(약 4.0%)가 증가하였다. 반면 2017년에 건설업 허가 효력이 상실되어 폐업한 업체는 21,600업체로 2016년과 비교하여 431업체(약 4.3%)가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직접 건설업 폐업을 신청한 업체가 9,601업체이며, 허가 갱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허가 효력이 상실된 업체가 11,999업체이다.

폐기 허가 수는 3년간 집중되고 2년간 줄어들었다가 다시 3년간 집중되는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으며, 그 폭은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고 있다. 신규허가 수는 꾸준하게 15,000에서 20,000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자료 : 国土交通省

[그림 3-4] 일본 건설 허가 신규 및 폐기 업체 수

## 2) 도도부현별 허가업체 수

도도부현별 허가업체 수의 현황을 보면 주요 대도시가 위치한 도쿄도 (42,730업체/전체의 9.2%), 오사카부(37,454업체/전체의 8.1%), 카나가와현 (27,342업체/전체의 5.9%)에 많은 건설업체가 있으며, 인구가 적고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돗토리현(2,064업체/전체의 0.4%), 시마네현(2,796업체/전체의 0.6%), 코치현(2,932업체/전체의 0.6%)에는 건설업체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업 허가업체가 가장 많았던 1999년과 각 도도부현의 허가업체 수를 비교해보면 아키타현(-32.8%), 군마현(-32.8%), 미야자키현(-32.6%)의 감소율이 높으며, 도쿄도 등 대도시 지역의 감소율도 2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표 3-1> 47개 도도부현의 허가업체 수와 1999년 대비 증감율

순위	도도부현	허가업체 수	1999년 대비	순위	도도부현	허가업체 수	1999년 대비
1	도쿄도	42,730	-24.1%	26	애히메현	5,574	-24.7%
2	오사카부	37,454	-27.2%	27	카고시마현	5,527	-16.5%
3	카나가와현	27,342	-16.1%	28	이시카와현	5,401	-25.4%
4	아이치현	25,842	-11.0%	29	시가현	5,356	-18.0%

5	사이타마현	23,137	-19.7%	30	토야마현	5,075	-25.6%
6	후쿠오카현	20,504	-21.8%	31	나가사키현	4,907	-21.8%
7	홋카이도	19,478	-25.3%	32	나라현	4,781	-31.8%
8	효고현	18,868	-26.1%	33	오키나와현	4,754	-15.7%
9	치바현	18,154	-14.7%	34	야마가타현	4,656	-20.2%
10	시즈오카현	13,782	-21.1%	35	와카야마현	4,562	-32.5%
11	이바라키현	11,933	-21.6%	36	오이타현	4,500	-16.4%
12	히로시마현	11,595	-23.4%	37	미야자키현	4,344	-32.6%
13	교토부	11,148	-30.7%	38	이와테현	4,234	-17.2%
14	니이가타현	9,843	-22.0%	39	카가와현	3,951	-20.2%
15	후쿠시마현	8,945	-20.4%	40	후쿠이현	3,921	-22.2%
16	기후현	8,486	-17.1%	41	아키타현	3,867	-32.8%
17	미야기현	8,281	-2.7%	42	야마나시현	3,496	-18.2%
18	나가노현	7,552	-30.9%	43	사가현	3,127	-26.3%
19	군마현	7,386	-32.8%	44	토쿠시마현	3,092	-30.8%
20	미에현	7,276	-20.5%	45	코치현	2,932	-25.9%
21	토치기현	7,262	-27.3%	46	시마네현	2,796	-23.3%
22	오카야마현	7,012	-28.9%	47	돗토리현	2,064	-28.9%
23	쿠마모토현	6,538	-21.5%	-	-	-	-
24	야마구치현	5,839	-31.3%	-	-	-	-
25	아오모리현	5,585	-21.2%	-	-	-	-

자료 : 国土交通省

### 3) 일반·특정 허가업체 수<sup>3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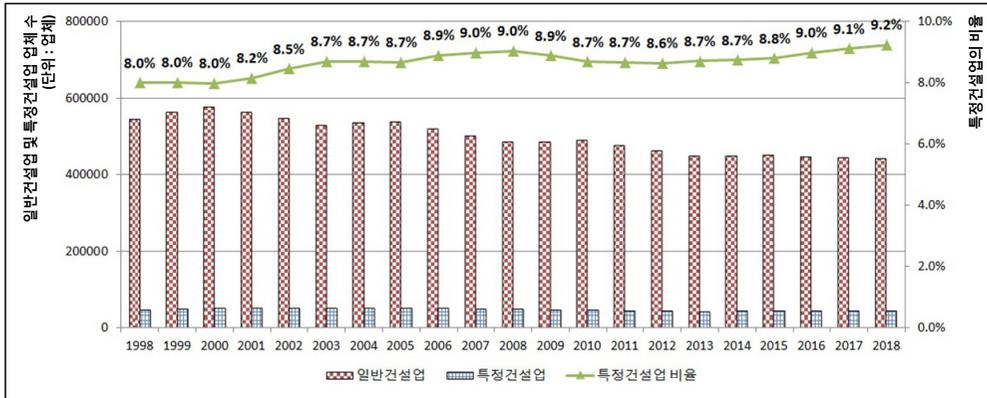
442,292업체가 일반건설업 허가를 획득하고 있으며, 2016년과 비교하여 1,040업체(약 0.2%)가 감소하였다. 일반건설업 허가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1999년과 비교하면 일반건설업 허가를 획득하고 있는 업체 수는 135,417업체(약 23.4%)가 감소한 것이다.

특정건설업 허가를 획득하고 있는 업체는 45,016업체이며 2016년과 비교하여 574업체(약 1.3%)가 감소하였다. 특정건설업 허가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2004년과 비교하면 특정건설업 허가를 획득하고 있는 업체 수는 6,160업체(약 12.0%)가 감소한 것이다.

앞서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정건설업허가」의 허가기준은 하도급

33) 일반건설업 허가업체 수와 특정건설업 허가업체 수의 합치 건설업체 허가업체의 총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예를 들어 전기공사업에 대해 일반건설업, 건축공사업에 대해 특정건설업과 같이 일반과 특정의 양 쪽 허가를 획득하고 있는 업체의 숫자가 중복하여 계산되기 때문이다.

인 보호와 대규모 공사에서 하도급자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허가」의 허가기준 보다 높다. 따라서 「특정건설업허가」는 전체 허가 가운데 약 8~9%에 불과하며, 2018년 3월에는 9.2%이다.



자료 : 国土交通省

[그림 3-5] 일반건설업과 특정건설업의 비율

일반건설업 허가업체의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과 도도부현 지사 허가의 획득 상황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 3-6과 같다. 일반건설업 허가를 도도부현에서 발급받은 업체는 435,017업체가 있으며,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를 받은 업체는 7,275업체가 있다. 일반건설업 허가업체 가운데 도도부현 지사 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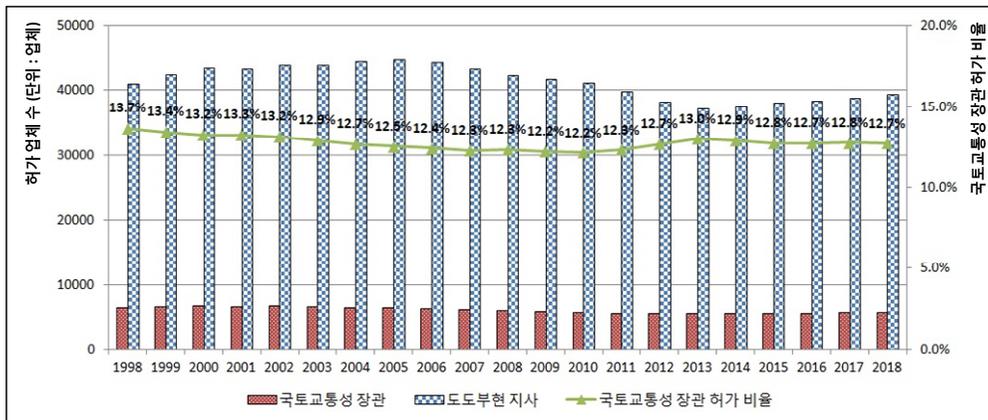


자료 : 国土交通省

[그림 3-6] 일반건설업 허가 획득 현황

와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의 비율을 보면 대부분(98.4%)이 도도부현 지사 허가를 획득하고 있다.

특정건설업 허가업체 가운데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과 도도부현 지사 허가의 획득 상황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 3-7과 같다. 특정건설업 허가를 도도부현에서 발급받은 업체는 39,288업체가 있으며,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를 받은 업체는 5,728업체가 있다. 특정건설업 허가업체 가운데 도도부현 지사 허가과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의 비율을 보면 대부분(87.3%)이 도도부현 지사 허가를 획득하고 있고, 12.7%가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를 획득하고 있다.



자료 : 국토교통부

[그림 3-7] 특정건설업 허가 획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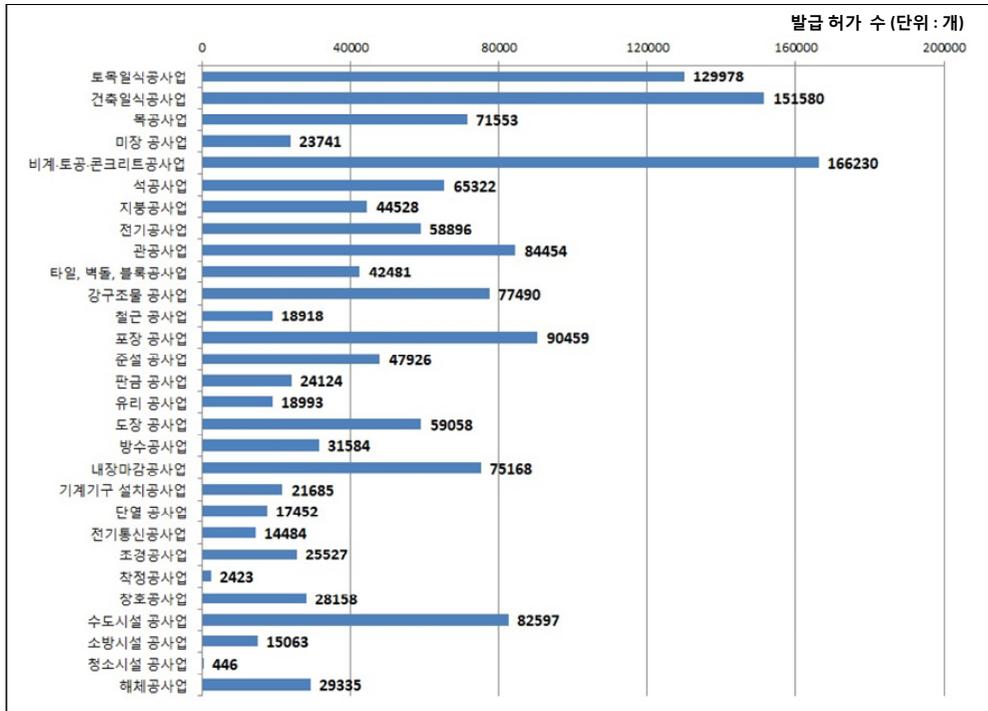
### 3. 허가업자 현황 (업종)

#### 1) 업종 별 허가업체 수

건설업 허가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토목일식공사업」, 「건축일식공사업」 등 29종의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다. 2017년도 기준 업종별 허가 총수는 1,519,653개이며, 2016년도와 비교하여 2.8%증가하였다. 건설업 허가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1999년(1,392,339개)과 비교하면 9.1%가 감소한 수치이다.

29종의 업종 가운데 발급된 허가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비계·토공·콘

크리트공사업」으로 166,230개 허가가 발급되었다. 뒤를 이어 「건축일식공사업」이 151,580개, 「토목일식공사업」이 129,978개가 있다. 허가를 획득한 업체 수가 가장 적은 업종은 「청소시설공사업」으로 446개에 불과하다. 뒤를 이어 「착정공사업」이 2,423개, 2016년 6월에 「비계·토공·콘크리트공사업」에서 분리된 「해체공사업」은 29,335개 허가가 발급되었다.



자료 : 国土交通省

[그림 3-8] 업종 별 발급된 허가 수 현황

2016년과 비교하여 24개의 업종에서 허가 수가 증가하였으며, 증가량이 가장 큰 업종은 해체공사업으로 15,537개가 증가하였다. 이어 도장공사업(2,493개), 비계·토공·콘크리트공사업(2,381개)의 허가 수가 증가하였다. 해체공사업의 증가 원인으로 해체공사업이 2016년 6월에 새로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업체들의 허가 획득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반해 2016년과 비교하여 허가 수가 감소한 업종은 토목일식공사업

(-954개), 건축일식공사업(-3,228개), 조경공사업(-411개), 착정공사업(-53개), 청소시설공사업(-12개)의 5종이며, 이 가운데 건축일식공사업의 감소 수가 가장 크다.

〈표 3-2〉 2017년 대비 건설업종 별 허가 수 증감

허가업종	허가 수 증감	2017년 대비	허가업종	허가 수 증감	2017년 대비
토목일식공사업	-954	-0.7%	유리 공사업	+1,173	6.6%
건축일식공사업	-3,228	-2.1%	도장 공사업	+2,493	4.4%
목공사업	+1,735	+2.5%	방수공사업	+1,643	5.5%
미장 공사업	+1,141	+5.0%	내장마감공사업	+2,096	2.9%
비계·토공·콘크리트 공사업	+2,381	+1.5%	기계기구 설치공사업	+465	2.2%
석공사업	+1,954	+3.1%	단열 공사업	+1,229	7.6%
지붕공사업	+1,703	+4.0%	전기통신공사업	+241	1.7%
전기공사업	+912	+1.6%	조경공사업	-411	-1.6%
관공사업	+486	+0.6%	착정공사업	-53	-2.1%
타일, 벽돌, 블록공사업	+1,691	+4.1%	창호공사업	+1,172	4.3%
강구조물 공사업	+2,130	+2.8%	수도시설 공사업	+449	0.5%
철근 공사업	+1,297	+7.4%	소방시설 공사업	+70	0.5%
포장 공사업	+825	+0.9%	청소시설 공사업	-12	-2.6%
준설 공사업	+1,292	+2.8%	해체공사업	+15,537	+112.6%
판금 공사업	+1,320	+5.8%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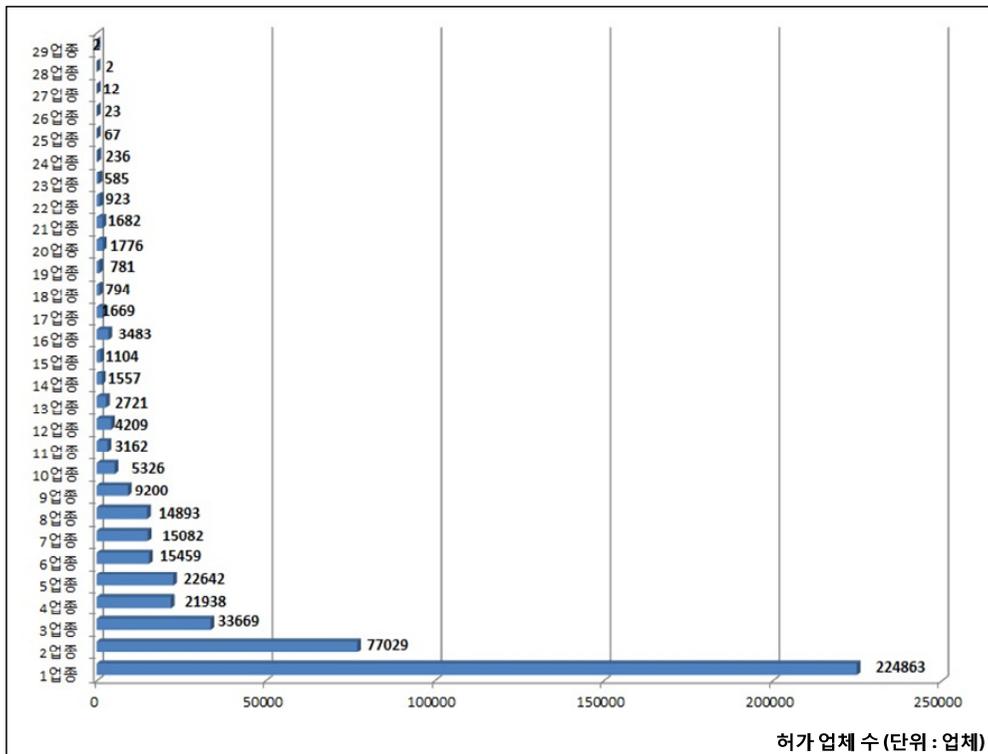
자료 : 国土交通省

## 2) 복수 허가 업체 수

전체 허가 업체(464,889사) 가운데 224,863사(약 48.4%)는 단일 업종 허가만을 가지고 있으며, 240,026사(약 51.6%) 2개 이상의 복수 허가를 가지고 있다. 특히 77,029사(약 16.6%)는 2개 업종에 대해 허가를 가지고 있으며, 3개 업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33,669사(약 7.2%), 4개 업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21,938사(약 4.7%)로, 복수로 획득하고 있는 허가 개수가 증가할수록 해당하는 업체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향과 다르게 특정 허가 개수에 업체수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종합건설업체들의 규모에 따른 허가 숫자를 개략적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16업종을 획득하고 있는 업체 수(3,483개)가 15업종을 획득

하고 있는 업체 수(1,104개)나 17업종을 획득하고 있는 업체 수(1,669개)에 비해 많기 때문에, 중형 종합건설업체는 16업종 정도의 허가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20업종을 획득하고 있는 업체 수(1,776개)와 21업종을 획득하고 있는 업체 수(1,682개)가 19업종을 획득하고 있는 업체 수(781개)나 22업종을 획득하고 있는 업체 수(923개)에 비해 많기 때문에, 대형 종합건설업체는 20~21개 정도의 허가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9업종 허가 전부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2개 업체가 있으며, 28업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도 2개 업체가 존재한다.



자료 : 国土交通省

[그림 3-9] 획득 업종 수 별 허가업체 수 현황

### 3) 자본금 계층 별 업체 수

건설업 허가업체 수를 12개의 자본금 계층으로 나누어 보면 「자본금이

300만 엔 이상 500만 엔 미만의 법인」이 22.7%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자본금이 1,000만 엔 이상 2,000만 엔 미만의 법인」(22.4%), 「개인(히토리오야 포함)」(16.9%)의 순으로 많다. 개인(히토리오야 포함)과 자본금이 3억 엔 미만의 법인<sup>34)</sup> 수는 462,297업체로 건설업 허가업체 수 전체의 99.4%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도와 비교하면 「자본금이 300만 엔 미만의 법인」 및 「자본금이 500만 엔 이상 1,000만 엔 미만의 법인」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개인」, 「자본금이 300만 엔 이상 500만 엔 미만의 법인」 및 「자본금이 1,000만 엔 이상 2,000만 엔 미만의 법인」이 감소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표 3-3〉 자본금 계층 별 허가업체 수

자본금 계층	허가업체 수	비율	2015년 대비 증감
개인(히토리오야 카타를 포함)	78,482	16.9%	-3,416(-4.2%)
자본금이 200만 엔 미만의 법인	16,529	3.6%	+2,386(+16.9%)
자본금이 200만 엔 이상 300만 엔 미만의 법인	3,963	0.9%	+512(+14.8%)
자본금이 300만 엔 이상 500만 엔 미만의 법인	105,552	22.7%	-1,266(-1.2%)
자본금이 500만 엔 이상 1,000만 엔 미만의 법인	78,981	17.0%	+3,119(+4.1%)
자본금이 1,000만 엔 이상 2,000만 엔 미만의 법인	103,926	22.4%	-2,208(-2.1%)
자본금이 2,000만 엔 이상 5,000만 엔 미만	60,281	13.0%	+162(+0.3%)
자본금이 5,000만 엔 이상 1억 엔 미만의 법인	11,749	2.5%	+144(+1.2%)
자본금이 1억 엔 이상 3억 엔 미만의 법인	2,834	0.6%	+21(+0.7%)
자본금이 3억 엔 이상 10억 엔 미만의 법인	1,318	0.3%	-2(-0.2%)
자본금이 10억 엔 이상 100억 엔 미만의 법인	932	0.2%	-12(-1.3%)
자본금이 100억 엔 이상의 법인	342	0.1%	-5(-1.4%)
합계	464,889	100%	-565(-0.1%)

자료 : 国土交通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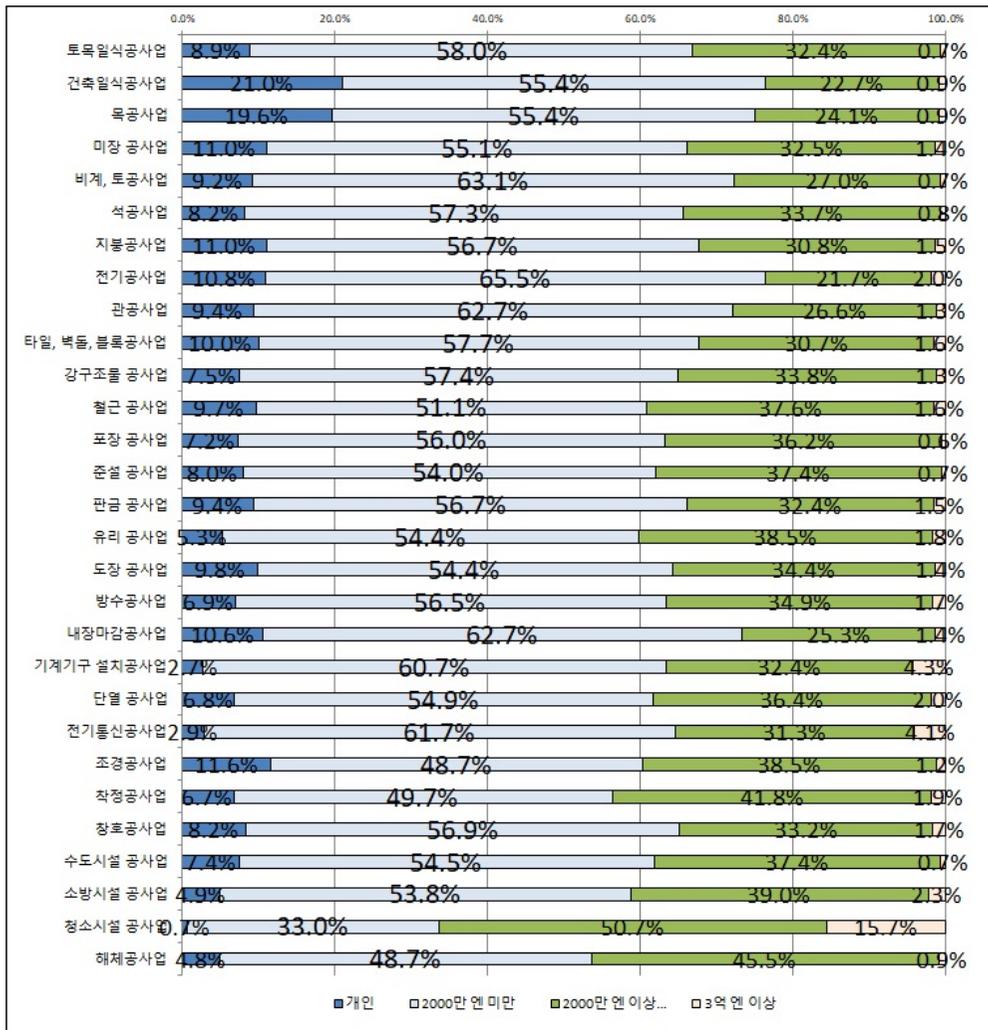
#### 4) 자본금계층 별 허가업체

##### ① 통합(일반, 특정건설업)

34) 일본 중소기업기본법(1963년 제정 법률 제154호)에서는 건설업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해 자본금이 3억 엔 이하의 회사 및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300인 이하의 회사 및 개인을 중소기업자로 정의한다.

업종 별 자본금 계층 비율을 살펴보면 「건축일식공사업」(21.0%)과 「목공사업」(19.6%)에서 개인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에 비해 「청소시설공사업」(0.7%), 「기계기구설치공사업」(2.7%), 「전기통신공사업」(2.9%)은 개인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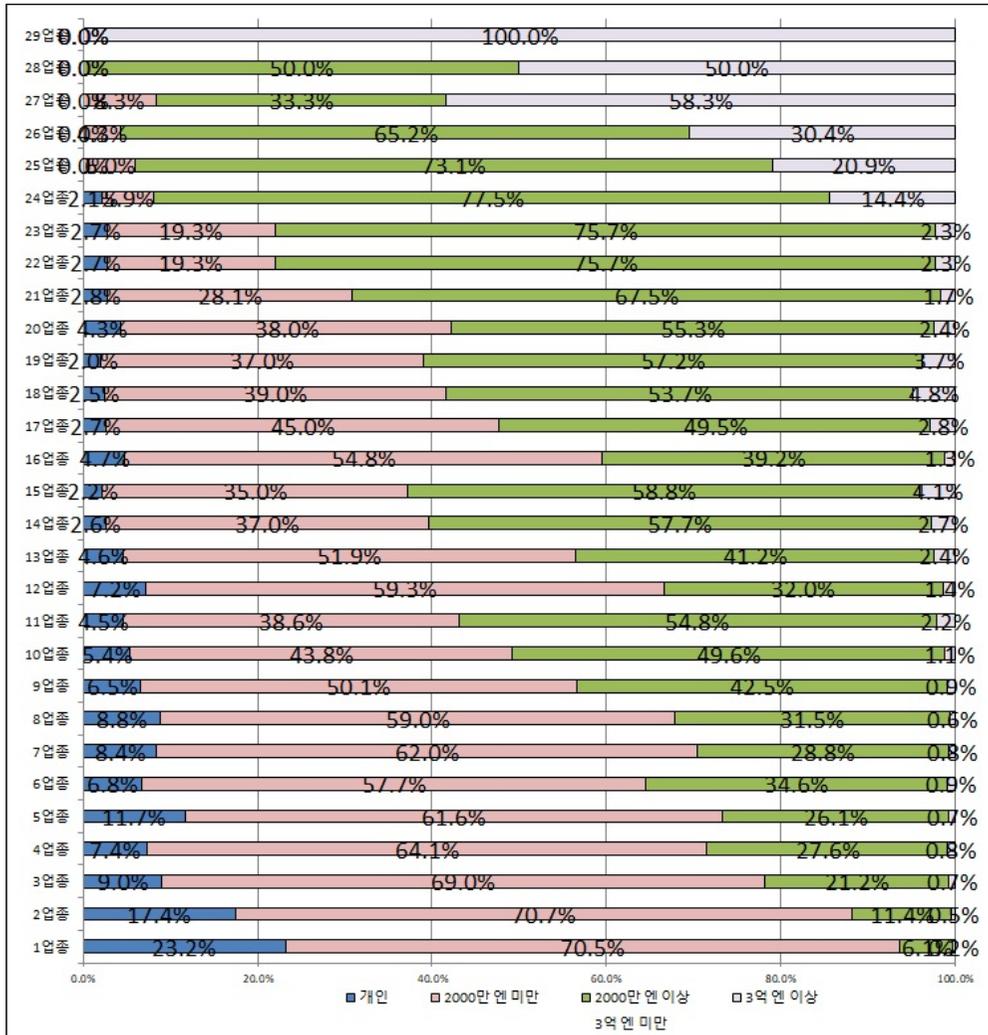
3억 엔 이상의 대형 업체는 「청소시설공사업」(15.7%)과 「기계기구설치공사업」(4.3%), 「전기통신공사업」(4.1%)이 많으며, 이외에는 0.6~2%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 : 国土交通省

[그림 3-10] 업종 별 자본금 계층 비율

획득 업종 수 별 자본금 계층 비율을 살펴보면 1업종만을 획득하고 있는 업체의 23.2%가 개인 업체이고, 자본금 3억 엔 이상의 대규모 업체는 0.2%에 그치는 등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자본금 3억 엔 이상의 대규모 업체는 24업종 허가 이상을 획득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며, 특히 27업종에서는 58.3%, 28업종에서는 50%, 29업종에서는 100%에 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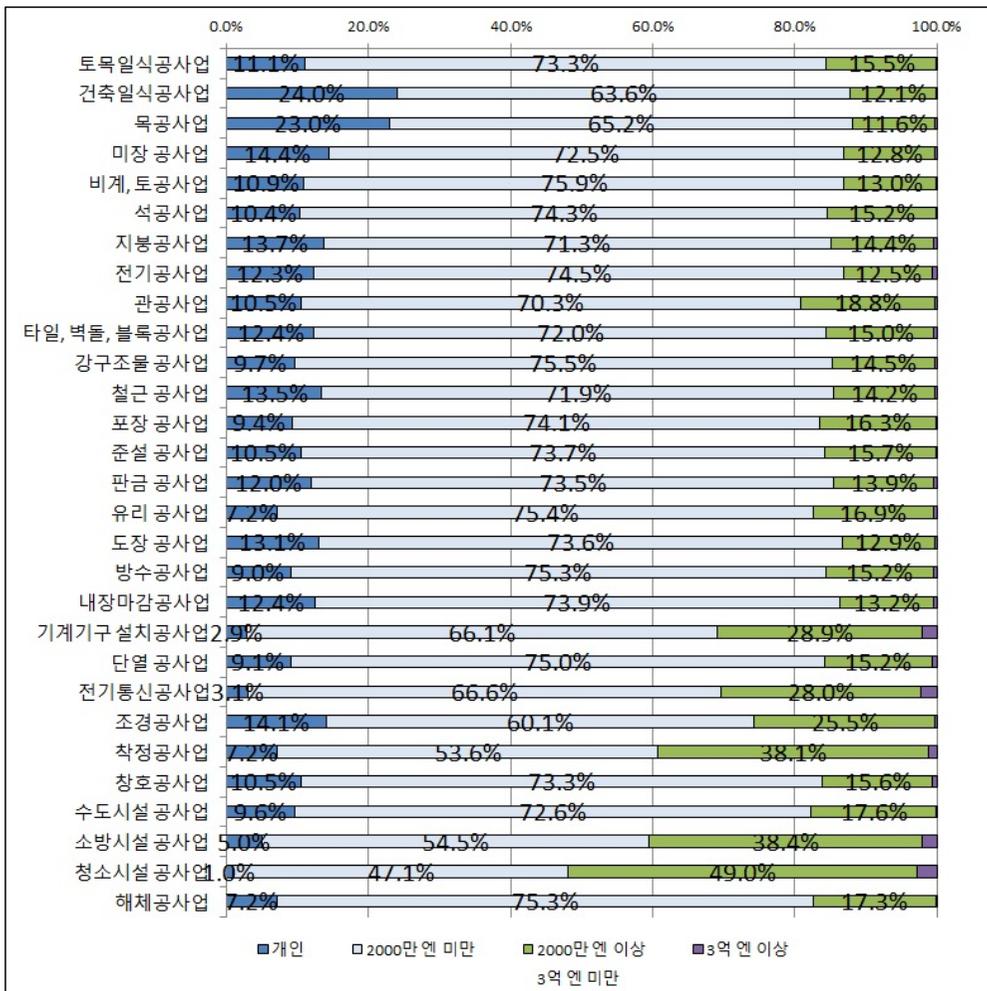


자료 : 国土交通省

[그림 3-11] 획득 업종 수 별 자본금 계층 비율

## ② 일반건설업

일반건설업에서의 업종 별 자본금 계층 비율을 살펴보면 상기 ①의 통합(일반, 특정건설업)의 현황과 유사하지만 자본금 3억 엔 이상의 대형 업체가 줄어드는 차이가 있다. 일반건설업에서의 업종 별 자본금 계층 비율을 살펴보면 「건축일식공사업」(24.0%)과 「목공사업」(23.0%), 그리고 「미장공사업」(14.4%)에서 개인 업체(히토리오야 포함)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에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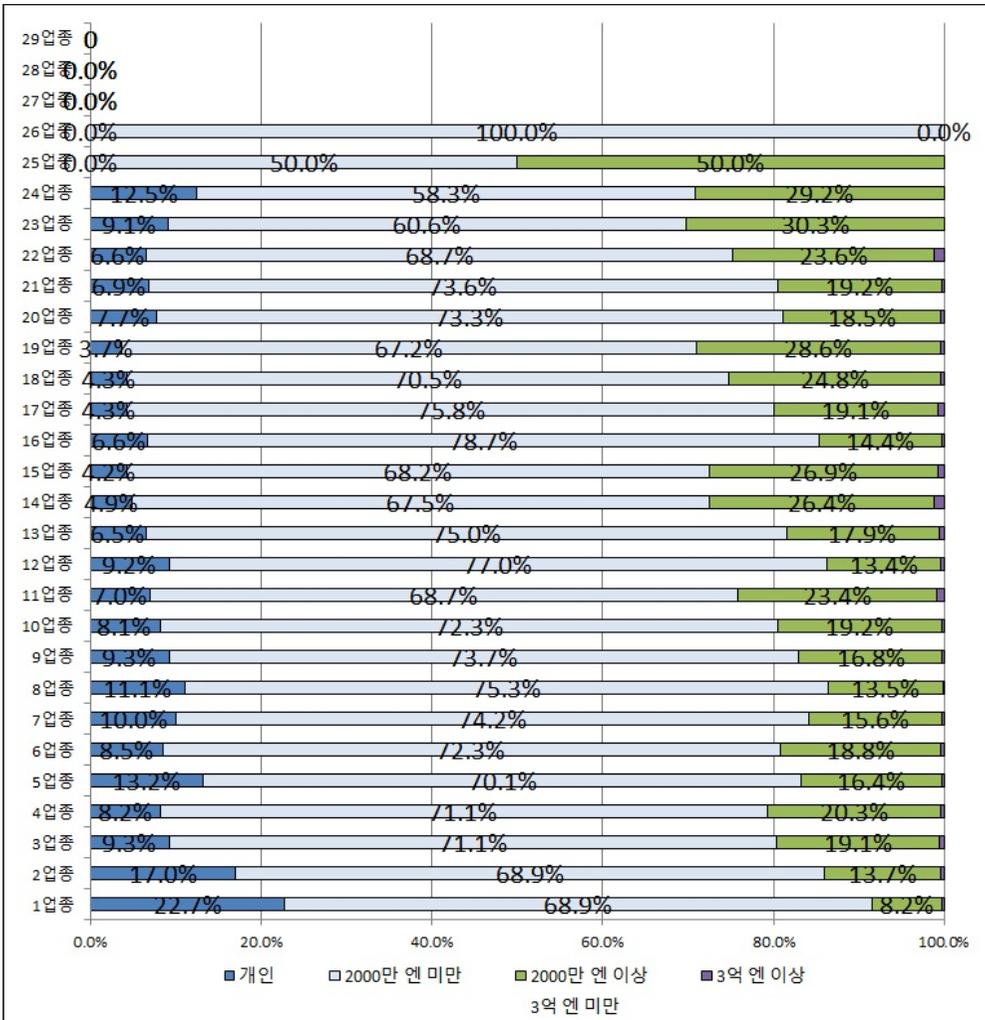


자료 : 国土交通省

[그림 3-12] 업종 별 자본금 계층 비율 (일반건설업)

해 「청소시설공사업」(1.0%), 「기계기구설치공사업」(2.9%), 「전기통신공사업」(3.1%)은 개인 업체(히토리오야 포함)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3억 엔 이상의 대형 업체는 「청소시설공사업」(2.9%)과 「전기통신공사업」(2.3%), 「기계기구설치공사업」(2.1%), 「소방시설공사업」(2.1%)이 많으며, 이외에는 0.1~1.2%의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획득 업종 수 별 자본금 계층 비율을 살펴보면 1업종만을 획득하고 있는 업체의 22.7%가 개인 업체이고, 자본금 3억 엔 이상의 대규모 업체는 0.3%



자료 : 国土交通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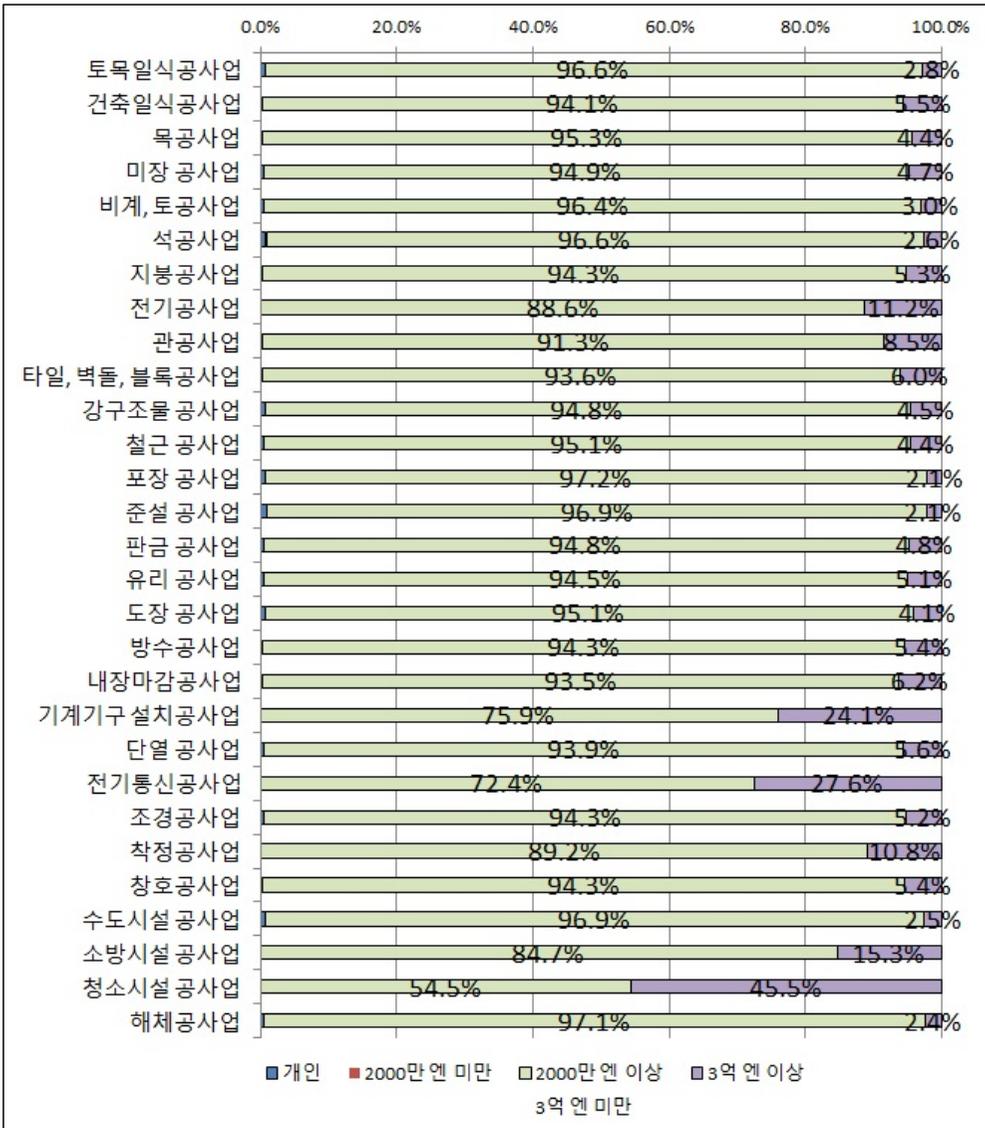
[그림 3-13] 획득 업종 수 별 자본금 계층 비율 (일반건설업)

에 그치는 등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자본금 3억 엔 이상의 대규모 업체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가운데도 자본금 2,000만 엔 미만의 영세기업이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 ③ 특정건설업

특정건설업에서의 업종 별 자본금 계층 비율을 살펴보면 상기 ①의 통합(일반, 특정건설업)의 현황 및 ②의 일반건설업 현황과 매우 다른 구조를 볼 수 있다. 특정건설업에서의 업종 별 자본금 계층 비율을 살펴보면 자본금 2,000만 엔 이상을 요구하는 특정건설업의 허가 조건에 따라 특정건설업에는 개인 및 자본금 2,000만 엔 미만의 업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소수의 2000만 엔 미만의 업체는 허가 시에는 2000만 엔 이상의 자본금이 있었으나, 허가 이후에 자본금이 손실되어 2000만 엔 미만이 된 업체이다. 2,000만 엔 이상의 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3억 엔 이상의 업체도 다수 포함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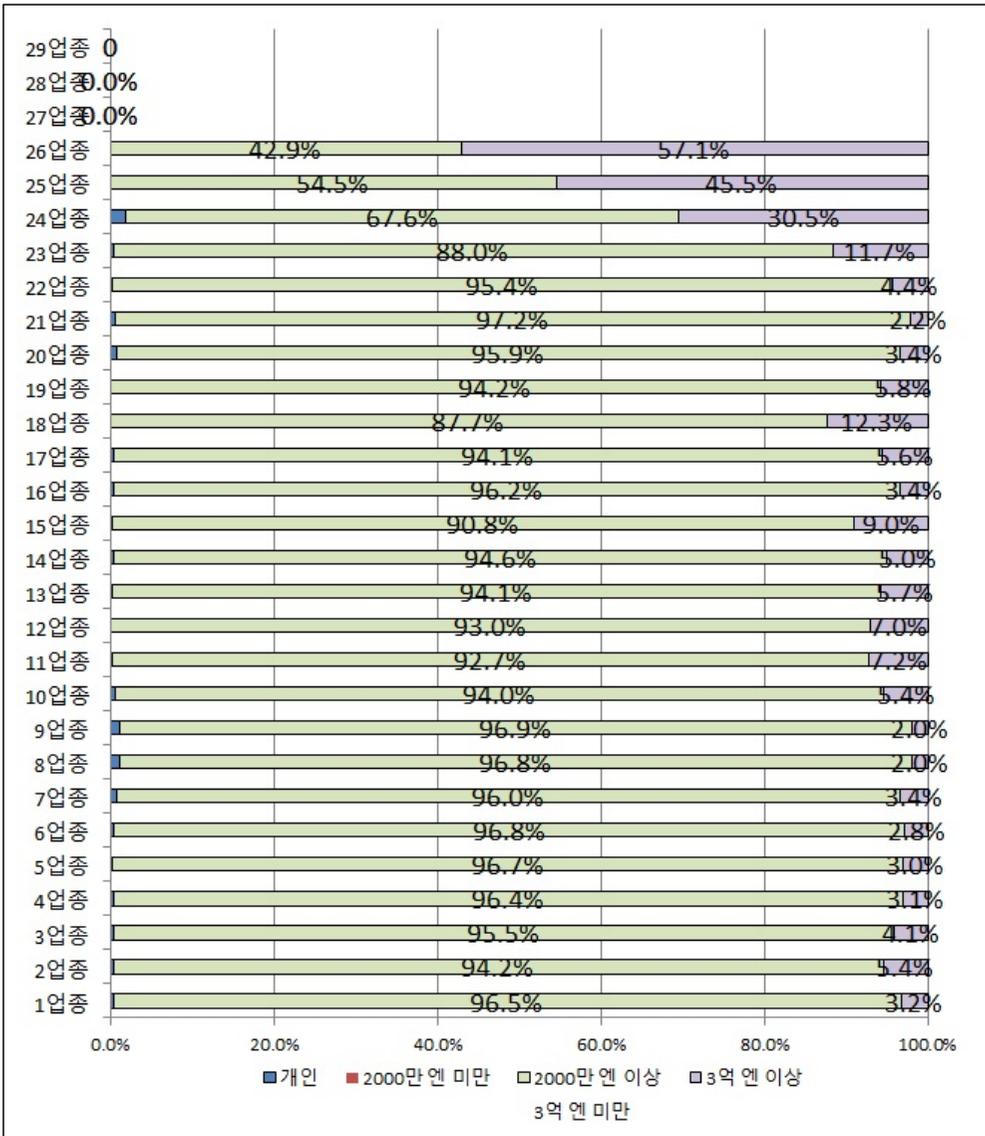
특히 「청소시설공사업」(45.5%)과 「기계기구설치공사업」(24.1%), 그리고 「전기통신공사업」(27.6%)의 업종에서 자본금 3억 엔 이상의 업체의 비율이 높으며, 「포장공사업」(2.1%)과 「준설공사업」(2.2%), 그리고 「해체공사업」(2.4%)의 업종에서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 国土交通省

[그림 3-14] 업종 별 자본금 계층 비율 (특정건설업)

특정건설업은 대부분이 자본금 2,000만 엔 이상 3억 엔 미만의 업체들이며, 26업종을 획득하고 있는 업체의 57.1%가 자본금 3억 엔 이상의 업체이며, 25업종은 45.5%, 24업종은 30.5%, 23업종은 11.7%가 이에 해당한다.



자료 : 国土交通省

[그림 3-15] 획득 업종 수 별 자본금 계층 비율 (특정건설업)

#### 4. 건설업체의 허가 획득 현황

실제 일본 건설업에서의 허가 제도의 운용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건설업 허가의 구조와 통계 데이터와 함께 건설업체들이 어떠한 허가를 획득하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업체 기업정보검색 시스템을 통해 초대형건설사 5사 및 대형건설사<sup>35)</sup>, 중형건설사, 소형건설사의 규모 별 일본의 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허가를 정리하였다.

먼저 슈퍼제네콘<sup>36)</sup>으로 불리는 초대형 건설사 5사의 허가 현황은 다음 표 3-4와 같다. 초대형 건설사는 모두 국토교통성 허가를 발급받고 있으며, 카지마건설과 시미즈건설이 29공종 전부를, 타이세이건설은 28공종, 오바야시건설은 27공종, 타케나카건설은 26공종의 허가를 가지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특정건설업 허가로 획득하였으나, 소방건설업은 일반건설업으로 획득하고 있다.

이어서 대형건설사와 중형건설사의 현황은 다음 표 3-5, 표 3-6과 같다. 대형건설사와 중형건설사는 모두 초대형 건설사와 동일하게 국토교통성 허가를 발급받고 있으나, 획득하고 있는 허가 숫자는 초대형건설사에 비해 적다(14개~24개). 모든 업체가 토목일식공사업과 건축일식공사업 허가를 특정건설업으로 획득하고 있으며, 기계기구설치공사업, 단열공사업, 착정공사업, 창호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청소시설공사업에 대해서는 획득율이 높지 않다. 또한 14개의 허가를 획득하고 있는 하세코건설이나, 17개의 허가를 획득하고 있는 토다건설이 다른 중대형 건설업체에 비해 매출액이 높다. 이를 통해 건설업 허가 숫자가 매출액과 비례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소형건설업체(표 3-7)는 상기의 업체들과 달리 전체 허가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도도부현 지사 허가를 획득하고 있는 업체들이다. 본 조사에서 소형 건설업체는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에서 임의로 도도부현 지사 허가를 가지고 있는 12개 회사를 선출하였다. 소형건설업체는 자신들의 상황과 전략에 따라 다양한 패턴의 건설업 허가를 획득하고 있다.

건설업체에 따라서는 토목일식공사허가와 건축일식공사허가를 전부 특정건

35) 대형건설사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슈퍼제네콘에 준하는 규모의 건설업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매출 3,000억 엔 이상의 건설업체를 칭한다.

36) 슈퍼제네콘은 수많은 건설회사 가운데서도 특히 규모가 큰 회사를 지칭한다. 엄밀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매출액이 1조 엔 이상인 업체를 지칭한다. 현재에는 카지마건설, 시미즈건설, 오바야시건설, 타케나카건설, 타이세이건설의 5사를 지칭한다. 이들 5사는 모두 창업이후 100년 이상의 긴 역사를 자랑한다.

설업으로 획득하는 경우도 있으나(마루비시건설, 타무라건설 등), 토목일식공사허가와 건축일식공사허가를 특정건설업과 일반건설업으로 각기 획득하는 경우도 있다(이시후쿠건설). 물론 토목일식공사허가와 건축일식공사허가 가운데 하나만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다(오오니시건설, 마츠다건설 외).

허가 숫자와 종류는 건설업체의 전략과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다. 타무라건설은 대형건설사 수준인 22개의 허가를 획득하고 있는 반면, 고시로건설은 비계·토공사업 1개만을 획득하고 있다. 또한 타무라건설과 같이 대부분을 특정건설업으로 획득하는 업체도 있으나, 코우슌건설과 같이 대부분을 일반건설업으로 획득하는 경우도 있다. 오오니시건설과 같이 개인 건설업체의 경우에도 조건을 만족한다면 복수의 허가를 획득할 수 있다.

〈표 3-4〉 초대형건설사(슈퍼제네콘) 5사의 허가 현황

업체명 (업체명 일본어) 허가번호	본점소재 자본금 연간매출액	토 목	건 축	목 공	미 장	토 공	석 공	지 붕	전 기	관	타 일	강	철 근	포 장	준 설	판 금	유 리	도 장	방 수	내 장	기 계	단 열	통 신	조 경	착 정	창 호	수 도	소 방	청 소	해 체	
카지마건설 鹿島建設 (국) 제002100호	도쿄 도 814억 엔 1조8218억 엔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1	2	2		
오바야시건설 大林組 (국) 제003000호	도쿄 도 577억 엔 1조7739억 엔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	2	2	1	2	-		
타케나카건설 竹中工務店 (국) 제002744호	오사카부 500억 엔 1조2843억 엔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	2	-	2	2	1	-	2	
시미즈건설 清水建設 (국) 제003200호	도쿄 도 743억 엔 1조5678억 엔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1	2	2	1	2	2	
타이세이건설 大成建設 (국) 제000300호	도쿄 도 1,227억 엔 1조4872억 엔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	2	2	1	2	2	
[범례] (국) :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    토목 : 토목일식공사업    지붕 : 지붕공사업    포장 : 포장공사업    내장 : 내장공사업    수도 : 수도시설공사업 (도) : 도도부현 지사 허가    건축 : 건축일식공사업    전기 : 전기공사업    준설 : 준설공사업    기계 : 기계기구설치공사업    소방 : 소방시설공사업 1 : 일반건설업    목공 : 목공사업    관 : 관공사업    판금 : 판금공사업    단열 : 단열공사업    통신 : 전기통신공사업    청소 : 청소시설공사업 2 : 특정건설업    미장 : 미장공사업    타일 : 타일·벽돌·블록공사업    유리 : 유리공사업    통신 : 전기통신공사업    해체 : 해체공사업 토공 : 비계·토공사업    강 : 강구조물공사업    도장 : 도장공사업    조경 : 조경공사업    착정 : 착정공사업 석공 : 석공사업    철근 : 철근공사업    방수 : 방수공사업																															

자료 : 国土交通省(2018.6.5.)

〈표 3-5〉 대형건설사(제네콘)의 허가 현황

업체명 허가번호	본점소재 자본금 연간매출액	토 목	건 축	목 공	미 장	토 공	석 공	지 붕	전 기	관	타 일	강	철 근	포 장	준 설	판 금	유 리	도 장	방 수	내 장	기 계	단 열	통 신	조 경	착 정	창 호	수 도	소 방	청 소	해 체	
토다건설 戸田建設 (국) 제003800호	도쿄 도 230억 엔 4,203억 엔	2	2	2	-	2	2	2	2	2	2	2	-	2	2	-	-	-	-	2	-	-	2	2	-	-	2	-	2	-	
하세코건설 長谷工コーポ (국) 제003792호	도쿄 도 575억 엔 6,421억 엔	2	2	-	-	2	-	-	2	2	-	2	-	2	2	-	-	2	2	2	-	-	1	2	-	-	2	-	-	-	
고요건설 五洋建設 (국) 제001150호	도쿄 도 304억 엔 4,262억 엔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	-	2	-	2	2	-	-	2	
마에다건설 前田建設工業 (국) 제002655호	도쿄 도 284억 엔 4,225억 엔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	2	-	2	-	2	2	-	2	-	
니시마츠건설 西松建設 (국) 제001100호	도쿄 도 235억 엔 3,152억 엔	2	2	2	2	2	2	2	2	2	2	2	-	2	2	-	-	2	2	2	2	-	-	2	-	-	2	-	-	2	
미츠이스미토모건설 三井住友建設 (국) 제000200호	도쿄 도 120억 엔 4,149억 엔	2	2	2	2	2	2	2	2	2	2	2	-	2	2	2	2	2	2	2	-	2	-	2	-	2	2	1	-	2	
<p>[범례]</p> <p>(국) :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    토목 : 토목일식공사업    지붕 : 지붕공사업    포장 : 포장공사업    내장 : 내장공사업    수도 : 수도시설공사업  (도) : 도도부현 지사 허가    건축 : 건축일식공사업    전기 : 전기공사업    준설 : 준설공사업    기계 : 기계기구설치공사업    소방 : 소방시설공사업  1 : 일반건설업    목공 : 목공사업    관 : 관공사업    판금 : 판금공사업    단열 : 단열공사업    청소 : 청소시설공사업  2 : 특정건설업    미장 : 미장공사업    타일 : 타일·벽돌·블록공사업    유리 : 유리공사업    통신 : 전기통신공사업    해체 : 해체공사업  토공 : 비계·토공사업    강 : 강구조물공사업    도장 : 도장공사업    조경 : 조경공사업  석공 : 석공사업    철근 : 철근공사업    방수 : 방수공사업    착정 : 착정공사업</p>																															

자료 : 国土交通省(2018.6.5.)

〈표 3-6〉 중형건설사(제네콘)의 허가 현황

업체명 허가번호	본점소재 자본금 연간매출액	토 목	건 축	목 공	미 장	토 공	석 공	지 붕	전 기	관	타 일	강	철 근	포 장	준 설	판 금	유 리	도 장	방 수	내 장	기 계	단 열	통 신	조 경	착 정	창 호	수 도	소 방	청 소	해 체	
후지타건설 フジタ (국) 제019796호	도쿄 도 140억 엔 3,109억 엔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	2	-	2	2	-	-	-	
토큐건설 東急建設 (국) 제020220호	도쿄 도 163억 엔 2,278억 엔	2	2	2	-	2	2	2	2	2	2	2	-	2	2	-	-	2	2	2	2	2	-	2	2	-	-	2	-	-	2
쿠마가이건설 熊谷組 (국) 제001200호	도쿄 도 301억 엔 2,575억 엔	2	2	-	-	2	-	2	2	2	-	2	-	2	2	-	-	2	2	2	-	-	-	2	-	-	2	1	-	-	
오쿠무라건설 奥村組 (국) 제002200호	오사카부 198억 엔 1,926억 엔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	2	-	2	-	2	2	-	-	2	
코노이케건설 鴻池組 (국) 제002399호	오사카부 53억 엔 1,960억 엔	2	2	2	-	2	2	2	2	2	2	2	-	2	2	-	-	2	2	2	2	-	-	2	-	-	2	-	2	2	
아사누마건설 浅沼組 (국) 제002438호	오사카부 96억 엔 1,211억 엔	2	2	-	-	2	-	-	2	2	-	2	-	2	2	-	-	2	2	2	-	-	-	2	-	-	2	-	-	2	
코난건설 コーナン建設 (국) 제001480호	오사카부 48억 엔 220억 엔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	2	-	2	-	2	2	1	-	-	

[범례]  
 (국) :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    토목 : 토목일식공사업    지붕 : 지붕공사업    포장 : 포장공사업    내장 : 내장공사업    수도 : 수도시설공사업  
 (도) : 도도부현 지사 허가    건축 : 건축일식공사업    전기 : 전기공사업    준설 : 준설공사업    기계 : 기계기구설치공사업    소방 : 소방시설공사업  
 1 : 일반건설업    목공 : 목공사업    관 : 관공사업    판금 : 판금공사업    단열 : 단열공사업    청소 : 청소시설공사업

2 : 특정건설업	미장 : 미장공사업 토공 : 비계·토공사업 석공 : 석공사업	타일 : 타일·벽돌·블록공사업 강 : 강구조물공사업 철근 : 철근공사업	유리 : 유리공사업 도장 : 도장공사업 방수 : 방수공사업	통신 : 전기통신공사업 조경 : 조경공사업 착정 : 착정공사업	해체 : 해체공사업
-----------	-----------------------------------------	-----------------------------------------------	----------------------------------------	------------------------------------------	------------

자료 : 국토교통부(2018.6.5.)

〈표 3-7〉 소형건설사의 허가 현황

업체명 허가번호	본점소재 자본금 연간매출액	토 목	건 축	목 공	미 장	토 공	석 공	지 붕	전 기	관	타 일	강	철 근	포 장	준 설	판 금	유 리	도 장	방 수	내 장	기 계	단 열	통 신	조 경	착 정	창 호	수 도	소 방	청 소	해 체
마루비시건설 丸菱建設 (도) 제700813호	홋카이도 5000만 엔 27.2억 엔	4	4	4	-	4	-	-	-	-	-	-	-	4	-	-	-	-	-	-	-	-	-	-	-	-	4	-	-	-
타무라건설 田村建設 (도) 제013585호	미에현 3000만 엔 7.8억 엔	4	4	3	4	4	4	4	-	3	4	4	4	4	4	4	4	4	4	4	-	4	-	-	-	4	4	-	-	4
오오니시건설※ 大西建設 (도) 제143342호	오사카부 0 엔 -	3	-	-	-	3	-	-	-	-	-	-	-	3	3	-	-	-	-	-	-	-	-	-	-	-	3	-	-	-
마츠다건설※ 松田建設 (도) 제020314호	군마현 0 엔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오야마토목 大山土木 (도) 제002044호	기후현 3000만 엔 18.0억 엔	4	4	-	-	4	4	-	-	3	-	4	-	4	4	-	-	4	-	-	-	-	-	4	-	-	4	-	-	4
이시후쿠건설 石福建設 (도) 제002501호	시즈오카현 3000만 엔 16.4억 엔	4	3	-	-	4	4	-	-	-	-	-	4	4	-	-	-	-	-	-	-	-	-	-	-	-	4	-	-	4

호시야마건설 星山建設 (도) 제008573호	교토부 2000만 엔 2.8억 엔	4	-	-	-	4	4	-	-	-	-	4	-	4	4	-	-	4	-	-	-	-	-	-	4	-	-	-																																			
유신건설 友信建設 (도) 제059689호	후쿠오카현 2000만 엔 5.2억 엔	4	4	-	-	4	4	-	-	-	-	-	-	4	4	-	-	-	-	-	-	-	-	-	-	-	-	-	4																																		
코우슌건설 晷春建設 (도) 제140893호	도쿄 도 1000만 엔 -	-	3	3	3	3	3	3	-	-	3	3	3	-	-	3	3	3	3	3	3	-	3	-	-	-	3	-	-	-																																	
고시로건설 悟城組 (도) 제142640호	오사카부 500만 엔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타니아스건설 谷安組 (도) 제143216호	오사카부 5000만 엔 8.8억 엔	-	4	-	-	4	-	-	-	-	-	-	-	-	-	-	-	-	-	4	-	-	-	-	-	-	-	-	-																																		
마루니건설 丸二 (도) 제140880호	도쿄 도 5000만 엔 25억 엔	-	4	4	-	4	-	-	-	-	-	-	-	-	-	-	-	4	4	4	-	-	-	-	-	4	-	-	-																																		
<p>[범례]</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15%;">(국) :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td> <td style="width: 15%;">토목 : 토목일식공사업</td> <td style="width: 15%;">지붕 : 지붕공사업</td> <td style="width: 15%;">포장 : 포장공사업</td> <td style="width: 15%;">내장 : 내장공사업</td> <td style="width: 15%;">수도 : 수도시설공사업</td> </tr> <tr> <td>(도) : 도도부현 지사 허가</td> <td>건축 : 건축일식공사업</td> <td>전기 : 전기공사업</td> <td>준설 : 준설공사업</td> <td>기계 : 기계기구설치공사업</td> <td>소방 : 소방시설공사업</td> </tr> <tr> <td>3 : 일반건설업</td> <td>목공 : 목공사업</td> <td>관 : 관공사업</td> <td>판금 : 판금공사업</td> <td>단열 : 단열공사업</td> <td>청소 : 청소시설공사업</td> </tr> <tr> <td>4 : 특정건설업</td> <td>미장 : 미장공사업</td> <td>타일 : 타일·벽돌·블록공사업</td> <td>유리 : 유리공사업</td> <td>통신 : 전기통신공사업</td> <td>해체 : 해체공사업</td> </tr> <tr> <td>※ : 개인사업주</td> <td>도공 : 비계·토공사업</td> <td>강 : 강구조물공사업</td> <td>도장 : 도장공사업</td> <td>조경 : 조경공사업</td> <td></td> </tr> <tr> <td></td> <td>석공 : 석공사업</td> <td>철근 : 철근공사업</td> <td>방수 : 방수공사업</td> <td>착정 : 착정공사업</td> <td></td> </tr> </table>																												(국) :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	토목 : 토목일식공사업	지붕 : 지붕공사업	포장 : 포장공사업	내장 : 내장공사업	수도 : 수도시설공사업	(도) : 도도부현 지사 허가	건축 : 건축일식공사업	전기 : 전기공사업	준설 : 준설공사업	기계 : 기계기구설치공사업	소방 : 소방시설공사업	3 : 일반건설업	목공 : 목공사업	관 : 관공사업	판금 : 판금공사업	단열 : 단열공사업	청소 : 청소시설공사업	4 : 특정건설업	미장 : 미장공사업	타일 : 타일·벽돌·블록공사업	유리 : 유리공사업	통신 : 전기통신공사업	해체 : 해체공사업	※ : 개인사업주	도공 : 비계·토공사업	강 : 강구조물공사업	도장 : 도장공사업	조경 : 조경공사업			석공 : 석공사업	철근 : 철근공사업	방수 : 방수공사업	착정 : 착정공사업	
(국) :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	토목 : 토목일식공사업	지붕 : 지붕공사업	포장 : 포장공사업	내장 : 내장공사업	수도 : 수도시설공사업																																																										
(도) : 도도부현 지사 허가	건축 : 건축일식공사업	전기 : 전기공사업	준설 : 준설공사업	기계 : 기계기구설치공사업	소방 : 소방시설공사업																																																										
3 : 일반건설업	목공 : 목공사업	관 : 관공사업	판금 : 판금공사업	단열 : 단열공사업	청소 : 청소시설공사업																																																										
4 : 특정건설업	미장 : 미장공사업	타일 : 타일·벽돌·블록공사업	유리 : 유리공사업	통신 : 전기통신공사업	해체 : 해체공사업																																																										
※ : 개인사업주	도공 : 비계·토공사업	강 : 강구조물공사업	도장 : 도장공사업	조경 : 조경공사업																																																											
	석공 : 석공사업	철근 : 철근공사업	방수 : 방수공사업	착정 : 착정공사업																																																											

자료 : 国土交通省(2018.6.5.)

## 5. 건설업체의 영업소 설치 현황

일본의 공공 발주자들은 자신들의 공공공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건설업체들은 자신들의 수주전략과 경영 상태에 맞추어 각 도도부현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있다.

초대형 건설사에 포함되는 카지마건설은 전국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38개소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같은 초대형 건설사인 오바야시건설은 43개소, 타케나카건설은 40개소에 설치하고 있다. 즉 초대형 건설사라고 해도 전국 47개 도도부현을 전부 커버할 수는 없으며, 공사 물량이 적거나,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는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대형 건설사인 오쿠무라건설은 36개소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니시마츠건설은 31개소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초대형 건설사들 보다는 적은 영업소를 설치하고 있으나, 자신들의 전략에 따라서는 초대형 건설사들이 영업소를 설치하고 있지 않은 도도부현에서도 영업소를 배치하는 경우도 있다(돗토리 현).

중형 건설사는 더욱 숫자가 줄어든다. 토큐건설은 21개소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코난 건설은 4개소에 불과하다.

소형 건설사는 기본적으로 도도부현 지사 허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본점이 위치한 도도부현에서만 영업소의 설치가 가능하다.

〈표 3-8〉 건설업체의 도도부현 영업소 설치 상황

지역	도도부현	초대형 카지마 건설	초대형 오바야시 건설	초대형 타케나카 건설	대형 오쿠무라 건설	대형 니시마츠 건설	중형 토큐 건설	중형 코난 건설
홋카이도 지방	홋카이도	지점	지점	지점	지점	지점	지점	-
토호쿠 지방	아오모리현	영업소	영업소	-	영업소	-	-	-
	이와테현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
	아키타현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	-	-	-
	미야기현	지점	지점	지점	지점	지점	지점	-
	야마가타현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	-	-
	후쿠시마현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	영업소	-
칸토	이바라키현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	-

지방	토치기현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	영업소	-	-
	군마현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	-	-	-
	사이타마현	지점	영업소	지점	-	영업소	-	-
	치바현	영업소	영업소	-	지점	영업소	지점	-
	도쿄 도	본점	본점	본점	지점	본점	본점	지점
	카나가와현	지점	지점	지점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지점
츄부 지방	아마나시현	-	-	영업소	-	-	-	-
	나가노현	영업소	영업소	-	-	영업소	-	-
	니이가타현	지점	지점	영업소	지점	지점	지점	-
	토야마현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	-	-	-
	이시카와현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
	후쿠이현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	영업소	-	-
	시즈오카현	영업소	영업소	-	-	영업소	영업소	-
	아이치현	지점	지점	지점	지점	지점	지점	-
	기후현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	-	-	-
미에현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	-	-	
킨키 지방	시가현	-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	-
	교토부	영업소	지점	지점	지점	영업소	영업소	-
	오사카부	지점	본점	본점	본점	지점	지점	본점
	효고현	영업소	지점	지점	지점	영업소	영업소	지점
	나라현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	-	-
	와카야마현	-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	-
츄우고쿠 지방	돗토리현	-	-	-	영업소	영업소	-	-
	시마네현	영업소	-	영업소	영업소	-	-	-
	오카야마현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	-
	히로시마현	지점	지점	지점	지점	지점	지점	-
	아마구치현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	-
시코쿠 지방	카가와현	지점	지점	지점	지점	지점	지점	-
	애히메현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	-
	토쿠시마현	-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	-
	코치현	-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	-
큐슈 지방	후쿠오카현	지점	지점	지점	지점	지점	지점	-
	사가현	-	-	영업소	영업소	-	-	-
	나가사키현	영업소	영업소	-	영업소	-	-	-
	쿠마모토현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
	오이타현	영업소	영업소	-	영업소	-	-	-
	미야자키현	-	영업소	영업소	-	-	영업소	-
	카고시마현	-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	영업소	-
	오키나와현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	-

자료 : 国土交通省(2018.4.5.)

## 6. 소결

일본의 건설투자액은 1992년 최고액인 84조 엔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0년도에는 42조 엔까지 감소하였다. 현재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및 2013년 도쿄올림픽 개최결정으로 인해 건설 투자가 소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의 건설 허가업자 수는 약 46.5만 업체가 있으며, 이는 허가업자 수가 가장 많았던 1999년과 비교하면 약 22%가 감소한 것이고, 현재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일반건설업 허가를 획득한 업체는 44.3만 업체가 있으며, 특정건설업 허가를 획득한 업체는 4.4만 업체로, 일반건설업 허가를 획득한 업체가 특정건설업 허가를 획득한 업체의 약 10배에 달하고 있다. 일반건설업 허가를 획득한 업체의 98.4%가 도도부현 지사 허가를 획득하고 있으며, 특정건설업 허가를 획득한 업체의 87.3%가 도도부현 지사 허가를, 12.7%가 국토교통성 장관허가를 획득하고 있다.

업종 별로 보면 「비계·토공·콘크리트공사업」, 「건축일식공사업」, 「토목일식공사업」을 획득하고 있는 업체 수가 가장 많고, 「청소시설공사업」, 「착정공사업」, 「해체공사업」을 획득한 업체 수가 가장 적다. 전체 허가 업체 수 가운데 약 48.9%는 단일 업종만을 가지고 있으며, 획득 개수가 늘어날수록 업체 수의 비율이 줄어든다. 일반건설업은 개인(히토리오야)과 자본금 2,000만 엔 미만의 업체가 다수 등록되어 있는 반면, 특정건설업의 등록조건에 자본금 2,000만 엔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건설업에는 대부분이 자본금 2,000만 엔 이상인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건설업체들의 허가 획득 현황을 살펴보면 초대형 건설업체들은 26~29개 공종을 국토교통성-특정건설업으로 취득하고 있으며, 대형 및 중형 건설사들은 14개~24개의 허가를 국토교통성-특정건설업으로 취득하고 있다. 소형건설업체들은 대부분 도도부현 지사 허가를 취득하고 있는 특징이 있으며, 자신들의 상황과 전략에 따라 일반건설업을 취득하는 경우도 특정건설업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사업자(히토리오야)의 경우에도 조건을 만족한다면 복수의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공공 발주자들은 자신들의 공공공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조건으로 자신들의 지역에 영업소를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건설업체들은 자신들의 수주전략과 경영 상태에 맞추어 각 도도부현에 영업소를 배치하고 있다. 초대형 건설사라고 하더라도 전국 47 도도부현 가운데 40개 정도에만 영업소를 배치하고 있으며, 대형, 중형건설사들은 영업소의 숫자가 더욱 감소한다. 소형 건설사는 기본적으로 도도부현 지사허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본점이 위치한 도도부현에서만 영업소의 설치가 가능하다.

제4장에서는 앞의 제2장과 제3장에서 설명한 건설업 허가가 실제 공공 건설 시장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본의 공공공사 시스템을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전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일본 공공공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조건과 경쟁참가자 자격 심사의 구조를 설명한다. 이어서 대표적인 대규모 지자체(도쿄도)와 소규모 지자체(후쿠치야마시)의 사례 분석을 통해 건설업자가 공공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등록하는 명부의 실제 운용 사례를 분석하고, 지자체 발주자가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건설업 허가 조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리한다.

## 1. 일본 공공공사 입찰 개요

### 1) 공공공사 입찰 참가 요건

일본에서 공공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설업자가 ① 건설업 허가를 가지고 있을 것, ② 경영사항심사를 받았을 것, ③ 세금 체납이 없을 것, ④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의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먼저 건설업 허가에 관련해서는 앞선 제2장에 설명한 바와 같이 건설업법에서는 1건 500만 엔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내규에 따라 공공공사에서는 경미한 건설공사만을 독립적으로 발주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요건으로서 발주하는 공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설업 허가를 받았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 경영사항심사에 관해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해 경영사항심사를 신청하고, 현재 유효한 경영사항심사결과통지서(경영규모평가결과통지서·종합평점치통지서)가 발급되어 있어야 한다.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건설업 허가를 받은 후 등록경영상황분석기관에서 경영사항심사를

1. 건설업 허가를 가지고 있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업법에서는 1건 500만 엔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li> <li>○ 그러나 공공공사에서는 자격요건으로서 발주하는 공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설업 허가를 요구하고 있음.</li> </ul>
2. 경영사항심사를 받았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해 경영사항심사를 신청하고, 현재 유효한 경영사항심사결과통지서(경영규모평가결과통지서·종합평점치통지서)가 발급되어 있어야 함.</li> </ul>
3. 세금의 체납이 없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참가자격의 신청 시에 소비세, 현세, 시정촌세 등의 완납증명서가 필요함</li> </ul>
4.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li> <li>○ 미성년자</li> <li>○ 계약 이행에 있어서 고의로 공사 또는 제조를 소홀히 함, 물건의 품질이나 수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li> <li>○ 공정한 가격경쟁을 방해한 자 또는 부정이익을 얻기 위해 연합한 자</li> <li>○ 공정낙찰자의 계약 체결 또는 이행을 방해한 자</li> <li>○ 감독 또는 검사 집행을 방해한 자</li> <li>○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li> <li>○ 경영사항이 현저하게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li> <li>○ 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에 허위로 기재한 자</li> </ul>

자료 : 国土交通省

[그림 4-1] 일본 공공공사 입찰 참가 요건

받아야 한다.

세 번째, 공공공사 입찰에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세금을 완납하는 것이 요건이다. 입찰참가자격의 신청 시에는 소비세, 도도부현세, 시정촌세 등의 완납증명서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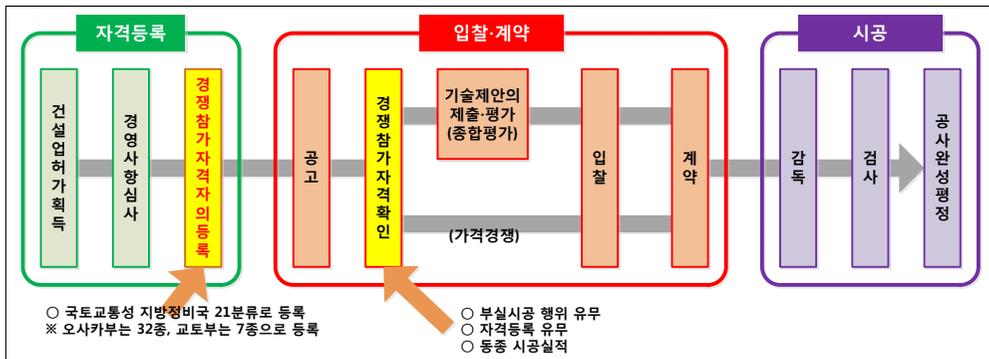
네 번째로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결격요건에는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또는 미성년자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특히 과거 공사에서 고의로 소홀히하거나, 품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업체끼리 담합한 경우, 감독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는 물론 관련자를 고용한 업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2) 공공공사 입찰 프로세스

공공공사의 입찰계약 절차는 가치가 가장 높은 조달을 실현하기 위하여, 비용 절약, 품질 확보, 부정행위 방지를 도모하며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이 발주하는 공사에서는 경쟁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경쟁입찰방식을 기본으

로 진행하며, 공사 품질을 확보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불량부적격자를 배제하기 위한 경쟁참가자격을 설정하고, 해당 자격을 가진 자만을 경쟁입찰에 참가시키고 있다.

공공공사 입찰 프로세스에는 크게 자격 등록 단계와 개별공사의 입찰·계약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자격등록 단계는 건설업 허가를 획득하여 건설업에 진입하고, 각 건설업체가 공공공사를 수주하고자 하는 발주기관에 등록(명부 등록)하고, 등급을 받는 단계에 해당한다. 명부 등록은 일반적으로 2년 1회 실시하며, 발주기관은 명부 등록을 신청한 건설업체의 공사이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각 발주기관 별로 정해진 등급을 부여하여 명부를 작성한다. 개별공사의 입찰·계약 단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별공사 별로 조건을 설정하여 공고하고, 응찰한 건설업체가 경쟁하여 낙찰되고 계약하는 단계이다.



자료 : 国土交通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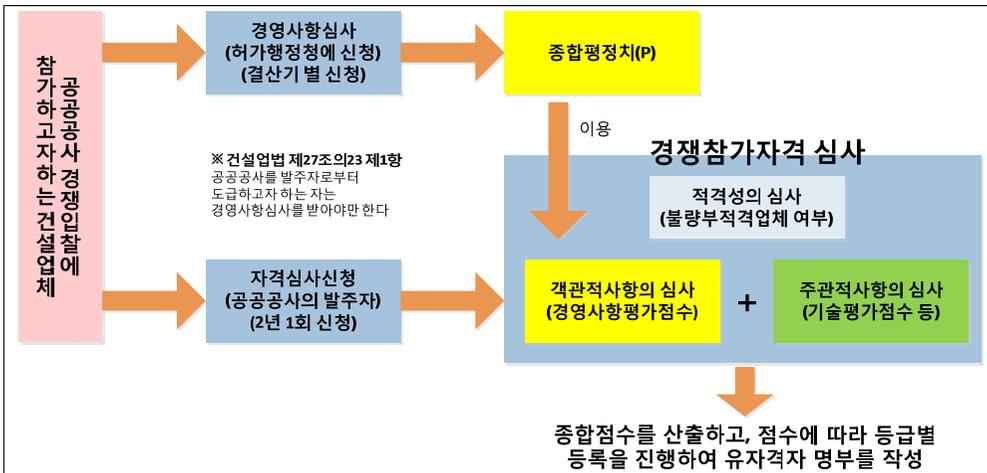
[그림 4-2] 일본 공공공사 프로세스

일본 공공공사에서는 개별공사의 특성 및 목적에 치우치지 않고, 항시 요구되는 심사항목에 기초하여 개별 업체를 사전에 심사해 둬으로써, 매 개별 공사를 발주할 때마다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체를 평가하는데 발생하는 수고를 줄이고, 발주의 합리화, 효율화를 꾀하기 위하여 「경쟁참가자격심사」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조달청과 같이 공공조달을 일원화하는 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각 공공기관에서 독립적으로 발주를 진행하고 있다. 각 공공 발주기

관에서는 미리 공공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건설업자의 「경쟁참가자자격심사」를 실시하며, 그 심사결과를 점수화하여 A~C등의 랭크를 부여한다(등급부여). 「경쟁참가자자격심사」는 보통 전국 동일기준을 가지고 누가 심사를 하더라도 동일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객관적 사항의 심사라고도 불리는 「경영사항평가점수(=종합평정치(P))」와 발주기관 별로 달라지며 주관적 사항의 심사라고도 불리는 과거 해당 업체가 수행했던 공사 성적 등에 의한 기술평가점수의 2가지 점수로 산출된다.

「경쟁참가자자격심사」에 있어서는 적격성에 관한 심사와 함께, 해당 건설업체의 경영과 기술력에 관한 객관적 사항 결과 및 발주자 독자의 기준에 기초한 주관적 사항 결과에 기초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정점(객관점+주관점)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랭크(등급)를 부여한다(공중에 따라서는 랭크가 없는 경우도 있음). 이 때 경영사항평점점수와 기술평가점수의 반영비율은 5대5가 일반적이거나, 발주기관의 상황에 따라 조정되기도 한다.



자료 : 国土交通省

[그림 4-3] 경쟁참가자격 심사의 2가지 흐름

## 2. 경쟁참가자 자격심사

경쟁참가자격 심사의 기준은 국토교통성, 도도부현, 시정촌, 독립행정법인

등 발주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경쟁참가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 구분에 따라 신청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주하고자 하는 부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현재 공식적으로 등록된 공공공사 발주기관 코드는 국가기관, 국가기관(독립행정법인), 도도부현, 정령지정도시, 시구정촌, 공익민간기업, 공익법인을 포함하여 8,216개가 존재한다. 국토교통성에서는 공공발주의 가장 기준이 되는 틀을 만들고, 각 발주기관에서는 국토교통성의 기준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상황에 맞추어 수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국가기관	총무성, 농림수산업성, 국세청, 재무성, 국토교통성 등	27종
국가기관(독립행정법인)	수자원기구, 철도시설운송시설정비지원기구, 도시재생기구 등	18종
지방공공단체(도도부현)	도쿄도, 오사카부, 교토부, 아이치현 등	47종
지방공공단체(정령지정도시)	요코하마시, 오사카시, 코베시, 히로시마시 등	19종
지방공공단체(시구정촌)		
공익민간기업	전력회사, 가스회사, 전신전화회사, JR, 동일본고속도로 등	16종
공익법인	내각부인정, 도도부현 인정	2종

자료 : 国土交通省

[그림 4-4] 공공공사 발주기관 범위

## 1) 객관적사항의 심사(경영사항심사제도)

### ① 경영사항심사제도의 역사

경영사항심사제도는 공공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시공능력과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서, 1950년에 중앙건설업심의회회의 건의에 의하여 공공공사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에 공사시공

능력심사의 수법으로서 제도화되었다. 이후 1961년에 건설업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되었고, 심사내용의 충실을 피하기 위하여 수차례 개정되었다.

최근에는 「공익법인에 관련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성 관계법령 정비에 관한 법률」(2003년 6월 16일 공포)의 시행되어, 2004년 3월 1일부터 경영상황분석(Y)을 시행하는 기관이 지정기관에서 국가에 등록된 기관(이하 등록경영상황분석기관이라고 함)으로 변경되었다. 이어 2011년 4월 1일부터 규모평가 등의 각 평점과 심사항목 등이 대폭 개정되었다.

건설업법 제27조의23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건설공사에서 발주자로부터 공공성이 있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직접 도급하는 건설업자는 경영사항심사를 받아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공사에서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은 경영사항심사를 받은 후 그 경영사항심사신청의 직전 경영연도가 완료된 날(=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7개월간으로 한정된다(일본 건설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따라서 공공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7개월간의 공공공사를 도급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사항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경영상황의 평가는 국토교통성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등록경영상황분석기관<sup>37)</sup>에서 실시하며, 부채저항력, 수익성·효율, 재무건전성, 절대역량으로 평가한다. 신청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허가업종 수 또는 일반건설업, 특정건설업의 유무와 관계없이, 심사를 신청하는 업종 수에 따라 기본수수료 8,500엔과 업종 당 2,500엔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1업종을 신청하는 경우 11,000엔, 29업종 전부를 신청하는 경우는 81,000엔이 소요된다.

---

37) 2018년 3월 현재 일본 전국에 11개 등록경영상황분석기관이 있다. (재단)건설업정보관리센터(도쿄), (주)매니지먼트 데이터 리서치(쿠마모토 현), (주)와이즈 공공 데이터 시스템(나가노 현), (주)큐슈경영정보분석센터(나가사키 현), (주)홋카이도경영정보센터(홋카이도), (주)넷코어(토치기 현), (주)경영상황분석센터(도쿄 도), (주)경영상황분석센터서일본(아마구치 현), (주)일본건설업경영분석센터(후쿠오카 현), (주)건설시스템(시즈오카 현), (주)건설업경영정보분석센터(도쿄 도). 등록경영상황분석기관은 국토교통성의 인가를 받은 민간 기업으로 지역과 관계없이 가까운 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건설업법 제27조의23 (경영사항심사)

공공성이 있는 시설 또는 공작물에 관한 건설공사에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하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그 경영에 관한 객관적 사항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건설업법시행령 제27조의13 (공공성이 있는 시설 또는 공작물에 관한 건설공사)

법 제27조의23 제1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건설공사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법인세법(1965년 법률 제34호) 별표 제1에 열거된 공공법인(지방공공단체를 제외) 또는 이에 준하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법인이 발주자이며, 공사 1건의 도급대금이 500만 엔(해당 건설공사가 건축일식공사인 경우에는 1,500만 엔)이상인 것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건설공사 이외의 것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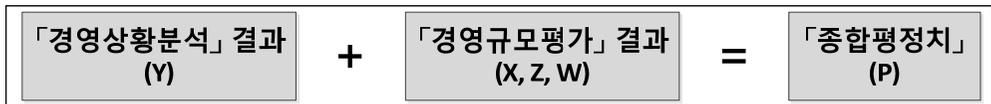
- 1 제방 붕괴, 도로 매몰, 전기설비의 고장 기타 시설 또는 공작물의 파괴, 매몰 등으로 이를 방지할 경우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 건설공사
- 2 1호에 열거되어 있는 것 이외에, 국토교통성 장관이 경영사항심사를 받지 않은 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받도록 긴급하거나, 부득이하다고 지정한 건설공사

건설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경영사항심사)

법 제27조의23 제1항의 건설업자는 같은 항의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7개월 전의 날 직후의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경영사항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② 경영사항심사제도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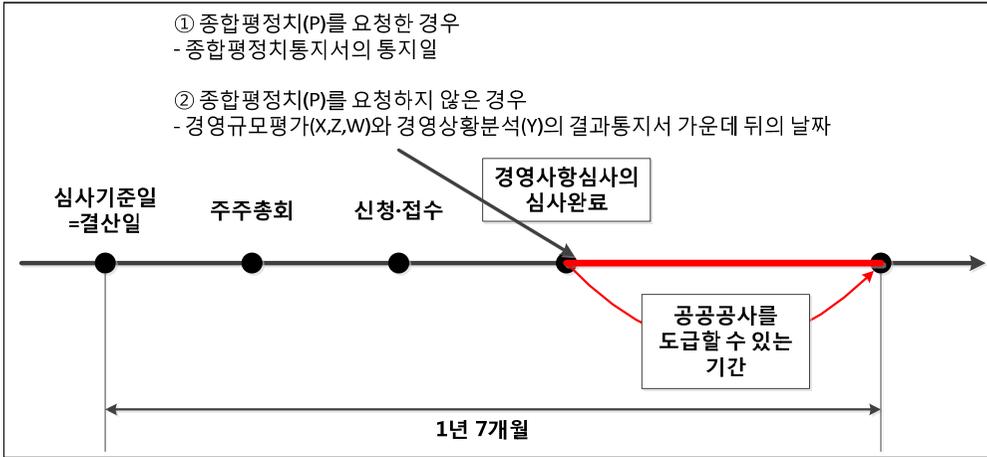
「경영사항평가점수(=종합평정치(P))」는 경영의 규모(X,Z,W) 및 경영상황(Y)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경영사항심사라고 불린다.



자료 : 国土交通省

[그림 4-5] 종합평정치(P)의 구성

건설업법 제27조의23의 규정에 따라 각 공공발주기관으로부터 공공성이 있는 시설 또는 공작물에 관한 건설공사(이하 공공공사라고 함)를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하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경영사항심사를 받는 것이 의무화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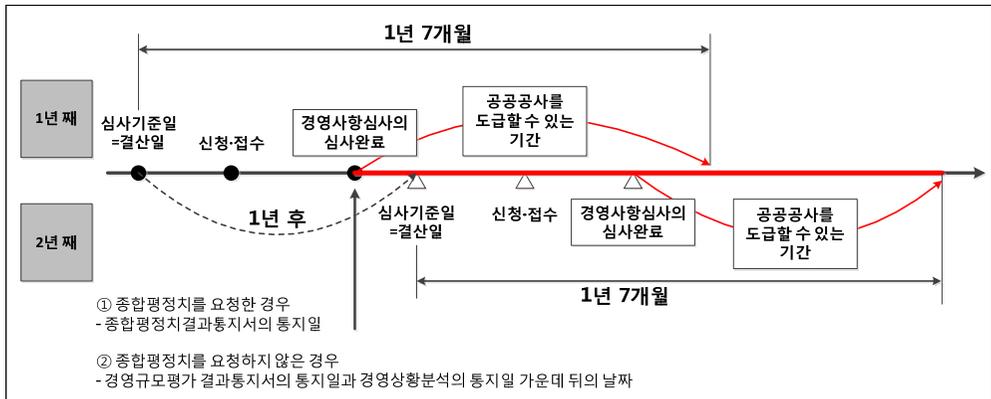


자료 : 国土交通省

[그림 4-6] 경영사항심사의 유효기간

어 있으며, 공공공사에 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경영사항심사의 심사완료 후 경영사항심사를 신청하는 직전의 결산일(=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7개월간에 한정된다(그림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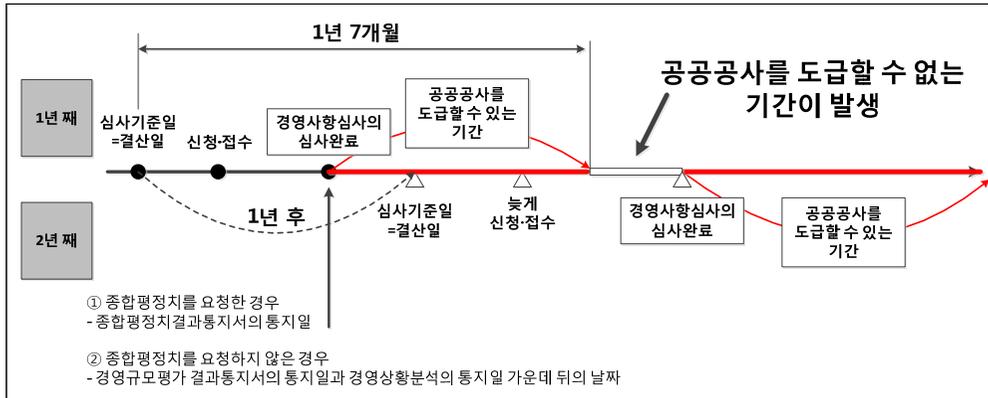
따라서 아래 그림 4-7과 같이 1년째의 경영사항심사가 유효한 상태에 2년째의 경영사항심사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공공공사를 도급할 수 있는 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



자료 : 国土交通省

[그림 4-7] 매년 결산일부터 신속하게 신청한 경우

반면, 1년째의 공공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기간의 종료 직전 또는 종료 후에 2년째의 경영사항심사를 신청하면 공공공사를 도급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한다.



자료 : 国土交通省

[그림 4-8] 신청이 늦은 경우

이상과 같이 경영사항심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까지 새로운 결산일에 경영사항심사의 결과통지서 통지를 받지 않으면 공공공사를 도급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공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하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경영사항심사의 유효기간, 즉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7개월간의 공공공사를 도급할 수 있는 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매년 결산 종료 후, 즉시 경영사항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경영규모평가(X,Z,W) 및 종합평정치(P)의 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심사 서류제출로부터 본 심사를 거쳐 결과통지서의 통지까지 약 2개월 반의 처리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③ 종합평정치(P)의 산출방법

객관적 사항 전체에 관한 수치인 종합평정치(P)의 산식, 및 각 심사항목별 가중치는 아래의 표 4-1과 같다. 종합평정치(P)는 경영규모 평가(Y)와 경영상황 평가(X,Z,W)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합산하여 산출한다. 종합평정치(P)의 최고점은 2,136점이며, 최저점은 281점이다.

경영규모의 평가는 허가행정청이 실시하며, 경영규모( $X_1$ ,  $X_2$ ), 기술력( $Z$ ), 기타 심사항목( $W$ )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규모는 다시 업종별 완성공사액( $X_1$ )과 자기자본액( $X_2$ )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력( $Z$ )은 업종별 기술직원 수와 업종별 원도급완성공사수주액으로 평가한다. 기타 심사항목으로는 ① 노동복지상황, ② 건설업 영업지속 상황, ③ 재해활동 공헌 상황, ④ 법령준수 상황, ⑤ 건설업 경리상황, ⑥ 연구개발 상황, ⑦ 건설기기 보유상황, ⑧

〈표 4-1〉 종합평정치(P)의 산출방법

항목구분		심사항목		최고점 최저점	가중치	
경영 규모 등	경영규모	$X_1$	완성공사액 (업종별)	2,309 397	0.25	
		$X_2$	자기자본액 이자 지불 전 세전 상각전 이익금액	2,280 454		
	기술력	$Z$	기술직원 수 (업종별) 원도급완성공사수주액 (업종별)	2,441 456	0.25	
	기타 심사항목 (사회성 등)	$W$	① 노동복지상황 ② 건설업 영업지속 상황 ③ 재해활동 공헌 상황 ④ 법령준수 상황 ⑤ 건설업 경리상황 ⑥ 연구개발 상황 ⑦ 건설기기 보유상황 ⑧ ISO규격 등록 상황 ⑨ 청년기술자 및 기능노동자 육성 및 확보 상황	1,919 0	0.15	
경영 상황	경영상황	$Y$	① 부채저항력 ② 수익성·효율 ③ 재무건전성 ④ 절대역량	순지불이자비율 부채회전기간 총자본매상총이익율 매상경상이익율 자기자본대비 고정자산비율 자기자본비율 영업현금흐름 여과잉여금	1,595 0	0.20
종합평정치		$P$	$0.25X_1 + 0.15X_2 + 0.25Z + 0.15W + 0.2Y$	2,136 281		

자료 : 国土交通省

ISO규격 등록 상황, ⑨ 청년기술자 및 기능노동자 육성 및 확보 상황의 9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경영상황(Y)의 산출에는 부채저항력에 포함되는 순지불이자비율(K1)과 부채회전기간(K2)은 작을수록 좋은 평가에 해당하며, 클수록 낮은 평가가 된다. 이외의 항목(K3, K4, K5, K6, K7, K8)은 클수록 좋은 평가이다.

〈표 4-2〉 경영상황(Y)의 산출방법

비율항목		계산식	상한액 하한액
부채저항력	K1	순지불이자비율 $\frac{\text{지불이자} - \text{획득이자배당금}}{\text{매상}} \times 100$	-0.3% 5.1%
	K2	부채회전기간 $\frac{\text{유동부채} + \text{고정부채}}{\text{매상}} \div 12$	0.9개월 18.0개월
수익성·효율	K3	총자본매상총이익율 <sup>38)</sup> $\frac{\text{매상총이익}}{\text{총자본(2년평균)}} \times 100$	63.6% 6.5%
	K4	매상경상이익율 $\frac{\text{경영이익}}{\text{매상}} \times 100$	5.1% -8.5%
재무건전성	K5	자기자본대비 고정자산비율 $\frac{\text{자기자본}}{\text{고정자산}} \times 100$	350.0% -76.5%
	K6	자기자본비율 $\frac{\text{자기자본}}{\text{총자본}} \times 100$	68.5% -68.6%
절대역량	K7	영업현금흐름 <sup>39)</sup> $\frac{\text{영업현금흐름}}{100,000}$ (2년 평균)	15억 엔 -10억 엔
	K8	여과잉여금 $\frac{\text{이익잉여금}}{100,000}$	100억 엔 -3억 엔

자료 : 国土交通省

K1부터 K8까지의 각 항목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합산해서 경영상황점수(A)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경영상황평점(Y)을 산출한다. 경영상황평점(Y)은 최고점이 1,593점, 최저점이 0점이다.

38) 계산식에서 2년 평균의 총자본이 3,000만 엔 미만의 경우에는 3,000만 엔으로 계산한다.  
39) 영업현금흐름은 경상이익 + 감가상각실시액 - 법인세주민세 및 사업세 ± 대손충당금증감 ± 매출채권증감액 ± 매입채무증감액 ± 재고자산증감액 ± 미성공사수입금증감액으로 계산한다.

〈표 4-3〉 경영상황점수(A) 및 경영상황평점(Y)산출식

경영상황점수(A) = (소수점 3째 자리 반올림)	$- 0.4650 \times (K1) - 0.0508 \times (K2) + 0.0264 \times (K3) + 0.0277 \times (K4) + 0.0011 \times (K5) + 0.0089 \times (K6) + 0.0818 \times (K7) + 0.0172 \times (K8) + 0.1906$
경영상황평점(Y) = (소수점 1째 자리 반올림)	$167.3 \times A + 583$ 최고점 : 1,595점 최저점 : 0점

자료 : 国土交通省

## 2) 주관적 사항의 점수(기술평가점수)

### ① 기술평가점수

경쟁참가자 자격심사의 다른 한 축이 기술평가점수이다. 이 점수는 각 발주기관이 과거에 발주하고 해당 업체가 수주하여 진행한 프로젝트의 평가에 기초한다. 기술평가점수는 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및 종료된 후에 담당평정관이 채점한 공사 평정점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사항심사에 맞추어 주관적 사항의 점수라고도 불린다.

각 발주기관의 기술평가점수의 산출식은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의 기술평가점수는 해당업체의 국토교통성 직영공사 및 지방공공단체의 수주실적 및 각 현장 별 공사 평정 점수를 합산한 수치로 계산된다고 공개하고 있다.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의 기술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각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에서 지정하는 기간에 희망하는 공사의 공종별 공사성적을 평가한다. 여기에는 해당 업체가 낙찰하여 공사를 진행한 프로젝트의 공사평정점수 뿐만 아니라 기술제안 등에 참가하였으나 낙찰하지 못했던 프로젝트의 점수까지도 포함된다.

〈표 4-4〉 기술평가점수 산출식

항목	산출식
기술평가점수	$\sum(A+B+C+D)$
① 해당 업체가 종합평가방식을 통해 낙찰한 공사	$([공사평정점수^{40}] - 65) \times [기술적난이도^{41}] \times [공사규모^{42}] \times [부국계수^{43}] \times (1 + [득점율^{44}]) \times [조정계수^{45}] \times [최근계수]$

㉞ 기술제안 등에 참가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낙찰하지 못한 공사	[기술적난이도] X [공사규모] X [부국계수] X (1+[특점율]) X [최근계수] X 0.5
㉟ 해당 업체가 가격경쟁을 통해 낙찰한 공사	([공사평정점수]-65) X [기술적난이도] X [공사규모] X [부국계수] X [조정계수] X [최근계수]
㊱ 해당업체가 도도부현에서 낙찰한 공사	([공사평정점수]-평정점수평균점) X [공사규모] X [조정계수] X [최근계수] X 0.5

자료: 国土交通省

## ② 공사 평정 점수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의 기술평가점수는 공사평정 점수의 비중이 매우 높다. 공사평정 점수는 해당 건설업체가 수행한 건설 프로젝트에서 ① 시공체제, ② 시공상황, ③ 시공결과물, ④ 공사특성, ⑤ 창의적 아이디어, ⑥ 사회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도급공사성적평정요령」에 기초한다.

공사 평정은 1건의 도급금액이 500만 엔을 넘는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발주기관에 소속된 전문 기술검사관 및 기술평가관이 공사 진행 중 및 완성 시에 현장을 방문하며 평가를 실시한다.

〈표 4-5〉 공사 평정 점수 구성

	항목	세부항목	만점
항목별 평정점	시공체제	시공체제일반	3.3점
		배치기술자	4.1점
	시공상황	시공관리	13.0점
		공정관리	8.1점
		안전대책	8.8점
		대외관리	3.7점

40) 국토교통성 직할공사는 65점을 공제함. 도도부현 공사는 각 단체의 평균점을 공제함(도도부현의 성적평정평균점 이하의 공사는 0으로 입력)

41) 공사난이도평가( [공사평정점수] - 65 )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역수

42) 최종도급금액(세금포함)을 100만으로 나눈 액 (JV공사의 경우 출자비율(분담공사액 비율)을 반영한 금액)

43) 지방정비국 별 보정계수

44) 가산점 / 가산점 만점 (소수 4자리에서 반올림)

45) 당초계약금액이 조정기준금액보다 낮게 수주하고, 성적평정이 65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 2를 입력. 그 외에는 1을 입력

	시공결과물	시공량	14.9점
		품질	17.4점
		만들새	8.5점
	공사특성	시공조건 대응	7.3점
	창의적 아이디어	창의적 아이디어	5.7점
	사회성 등	지역 공헌도	5.2점
	평정점 합계		100점
법령준수		감점	
최종 평정점		100점	

자료: 国土交通省

### 3) 경쟁참가자격의 등록(명부등록 및 등급부여)

각 발주기관은 개별 건설업자의 객관적사항의 심사(경영사항심사제도)점수와 주관적 사항의 점수(기술평가점수)에 기초하여, 건설업자의 등급을 부과하고, 경쟁참가자격등록 신청을 받아 공사분류별 명부에 등록한다. 여기서 공사 분류와 공사 분류 별 등급 부과 방식 및 등급에 따른 공사 수주 가능 범위는 각 발주기관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 ① 공사 등록 분류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은 24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오사카부에서는 건설업 허가의 29종에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구조물공사, 법면처리공사, 강교상부공사의 3종을 추가하여 32종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도쿄 도는 공사 등록 분류를 102종으로 구성하고 있다. 즉 제1장에서 살펴본 건설업 허가는 29종으로 분류하여 획득하지만, 실제 공공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각 발주기관의 명부등록은 건설업 허가과 별도의 분류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다.

〈표 4-6〉 발주기관 별 공사 등록 분류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 24종	오사카 부 32종	도쿄 도 102종
분류	- 일반토목공사 - 아스팔트포장공사 - 강교량상부공사 - 조경공사	- 토목일식공사 -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구조물공사 - 건축일식공사 - 목공사	표4-7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공사</li> <li>- 목조건축공사</li> <li>- 전기설비공사</li> <li>- 온냉방위생설비공사</li> <li>- 시멘트콘크리트공사</li> <li>- PC공사</li> <li>- 법면처리공사</li> <li>- 도장공사</li> <li>- 유지보수공사</li> <li>- 준설공사</li> <li>- 그라우트공사</li> <li>- 말뚝박기공사</li> <li>- 착정공사</li> <li>- 공장제작공사</li> <li>- 기계설비공사</li> <li>- 통신설비공사</li> <li>- 수변전설비공사</li> <li>- 항만토목공사</li> <li>- 농림토목공사</li> <li>- 농림건축공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장공사</li> <li>- 비계·토공·콘크리트공사</li> <li>- 법면처리공사</li> <li>- 석공사</li> <li>- 지붕공사</li> <li>- 전기공사</li> <li>- 관공사</li> <li>- 타일·조적·블록공사</li> <li>- 강구조물공사</li> <li>- 강교상부공사</li> <li>- 철근공사</li> <li>- 포장공사</li> <li>- 준설공사</li> <li>- 판금공사</li> <li>- 유리공사</li> <li>- 도장공사</li> <li>- 방수공사</li> <li>- 내장마감공사</li> <li>- 기계기구설치공사</li> <li>- 단열공사</li> <li>- 전기통신공사</li> <li>- 조경공사</li> <li>- 착정공사</li> <li>- 창호공사</li> <li>- 수도시설공사</li> <li>- 소방시설공사</li> <li>- 청소시설공사</li> <li>- 해체공사</li> </ul>	
---------------------------------------------------------------------------------------------------------------------------------------------------------------------------------------------------------------------------------------------------------------------------------------------------------------------------------------------------------------------------------------------------------------	------------------------------------------------------------------------------------------------------------------------------------------------------------------------------------------------------------------------------------------------------------------------------------------------------------------------------------------------------------------------------------------------------------------------------------------------------------------------------------------------------------------------------------------	--

자료 : 国土交通省

## ② 공사 업종 별 요구 허가

도쿄도의 경우 공공공사를 아래의 표 4-7과 같은 102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7종의 토목건축공사, 3종의 설비공사, 73종의 기타공사, 19종의 특수공사로 구성된다.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도쿄도와 계약하는 영업소가 공사 별 필요로 하는 건설업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필요

로 하는 업종에서 경영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예를 들어 교량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영업소가 「토목일식공사」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유효한 기간 내에 토목 업종에 대한 경영사항심사를 받았어야 한다. 일반토목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영업소가 「토목일식공사」허가 또는 「비계·토공사·콘크리트공사」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유효한 기간 내에 토목, 비계, 포장, 수도 업종에서 한가지의 경영사항심사를 받았어야 한다.

유일하게 수도관갱신공사(61-00)의 경우는 계약당사자 영업소가 「관공사」허가와 「수도시설공사」허가를 전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경영사항심사는 관공사, 수도 업종 가운데 한 가지만 받으면 된다.

〈표 4-7〉 도쿄 도 공사 업종 별 요구 허가

업태구분	코드	업종명	도쿄 도와 계약하는 영업소가 필요로 하는 건설업허가 업종	필요로 하는 경영심사 업종
토목· 건축공사	01-00	도로포장공사	포장	토목·포장
	02-00	교량공사	토목	토목
	03-00	하천공사	토목	토목
	04-00	수도시설공사	수도	토목·수도
	05-00	하수도시설공사	토목·수도	토목·포장·수도
	06-00	일반토목공사	토목·비계	토목·비계·포장·수 도
	07-00	건축공사	건축	건축
설비공사	08-00	전기공사	전기	전기
	09-00	급배수위생공사	관	관
	10-00	공조공사	관	관·기계
기타공사	16-00	착정	착정	착정
	19-00	준설매립	준설	토목·준설
			※ 펌프선을 보유하고 있을 것	
	20-00	준설	준설	토목·준설
			※ 준설선을 보유하고 있을 것	
	21-00	잠함	토목	토목
	22-00	궤도	토목·전기·강	토목·전기·강
	23-00	철도공사	토목·수도	토목·수도
	24-00	추진공사	토목·수도	토목·수도
25-00	지하철공사	토목	토목	
27-00	조경	조경	조경	

28-00	운동장시설	토목·비계	토목·비계
29-00	프리패브	건축	건축
30-00	철골 프리패브	건축	건축
		※ 공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1-01	해체공사	건축·토목·해체	건축·토목·해체
31-02	수평이동	건축·비계	건축·비계
32-00	소방설비	소방	관·기계·통신·소방
33-00	전화·통신	통신	통신
34-00	방송장치	통신	통신
35-00	다다미	내장	내장
36-00	내장마감	내장·창호	내장·창호
37-00	일반도장	도장	도장
38-00	교량도장	도장	도장
39-00	방수	미장·방수	미장·방수
40-00	철골가공	강	강
		※ 공장을 보유하고 있을 것	
41-00	강거더	강	강
		※ 공장을 보유하고 있을 것	
42-00	PC거더	토목·비계	토목·비계
		※ 공장을 보유하고 있을 것	
43-00	수문문비	강	강
		※ 공장을 보유하고 있을 것	
44-00	펌프설치	기계·착정	기계·착정
45-00	수처리장치	기계·수도·청소	기계·수도·청소
46-00	소각시설	타일·기계·청소	타일·기계·청소
47-00	보일러	기계	기계
48-00	엘리베이터	기계	기계
49-00	전차선 가선	전기	전기
50-00	지중선	전기·통신	전기·통신
51-00	철도신호장치	전기·기계·통신	전기·기계·통신
52-00	계측장비	기계·통신	기계·통신
53-00	침사지 기계설비공사	기계·수도	기계·수도
55-00	송풍기 설치공사	기계	기계
56-00	폭기조 산기설비공사	기계·수도	기계·수도
57-00	오니탈수설비공사	기계·수도	기계·수도
58-00	소화조 기계설비공사	기계	기계
59-00	가스저장설비공사	기계	기계
60-00	공설마스	토목·비계	토목·비계
61-00	수도관갱신공사	관 + 수도	관·수도

	62-00	석면처리	건축 · 비계 · 도장 · 내 장	건축 · 비계 · 도장 · 내 장
	63-00	기계기구설치	기계	기계
	64-00	지붕	지붕	지붕 · 방수 · 건축
	66-00	철조망	비계 · 강	비계 · 강 · 건축
	67-00	판금	판금	판금 · 강
	68-00	샷시	창호	창호 · 건축
	69-00	샷다	창호	창호 · 기계 · 건축
	70-00	기중기	기계	기계
	72-00	냉동 · 냉장고 공사	관 · 기계	관 · 기계 · 단열
	73-00	그라우팅	토목 · 비계 · 방수	토목 · 비계 · 방수
	74-00	도로표식설치	토목 · 비계 · 전자 · 통 신	토목 · 비계 · 전기 · 도 장 · 기계 · 통신
	75-00	도로표시도장	도장	토목 · 비계 · 도장 · 기 계
	76-00	가드레일	토목 · 비계	토목 · 비계
	77-00	몰탈 주입	토목 · 미장 · 비계 · 방 수	토목 · 미장 · 비계 · 방 수
	78-00	식생	토목 · 비계 · 조경	토목 · 비계 · 조경
	79-00	운동기구설치	비계 · 기계 · 조경	비계 · 기계 · 조경
	80-00	TV공청공사	통신	통신 · 전자
	81-00	방음벽, 차음벽	토목 · 건축 · 비계	토목 · 건축 · 비계
	82-00	무대장치	전기 · 기계	전기 · 기계 · 건축
	84-00	도축시설	강 · 기계	강 · 기계 · 토목
	86-00	주유소	건축 · 강 · 기계	건축 · 강 · 기계 · 토목
	87-00	PC탱크	토목 · 비계	토목 · 비계
	91-00	미끄럼방지	토목 · 포장	토목 · 포장 · 도장
	92-00	수지도장	도장 · 방수	도장 · 방수
	93-00	육상신호기	전기 · 기계 · 통신	전기 · 기계 · 통신
	94-00	익스펜션조인트	토목 · 비계 · 강	토목 · 비계 · 강 · 미 장 · 도장 · 기계
	95-00	철강가공	강	강 · 기계 · 건축
	96-00	웰 포인트	토목 · 비계	토목 · 비계
	97-00	파이프 라이닝	관	관
	98-00	탈황, 탈취	기계, 수도	기계, 수도
특수공사	99-01	기준탱크	강 · 기계	강 · 기계
	99-02	도로안전흙	비계	비계
	99-04	공기반송	기계	기계
	99-06	바닥보강	토목 · 비계 · 강	토목 · 비계 · 강
	99-07	전원설비	전기 · 통신	전기 · 통신
	99-08	발전설비	전기 · 기계	전기 · 기계
	99-09	전기방식	전기 · 도장	전기 · 도장

99-10	육조설치공사	관	관
99-11	바닥마감	내장	내장
99-12	방사선방어	내장	내장
99-14	비산방지공사	유리 · 내장	유리 · 내장
99-16	주방	관	관
99-20	석공사	석	석
99-23	자동문장치	창호	창호
99-24	강화수지판	건축 · 비계 · 지붕	건축 · 비계 · 지붕
99-25	의료가스배관	관	관
99-26	고압가스배관	관	관
99-30	집진장치	기계 · 청소	기계 · 청소
99-33	타일공사	타일	타일

자료 : 東京都「東京都公報」

### ③ 공사 등록 구분 별 계약 가능 범위

각 등록 구분 별 등급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에서는 일반토목공사를 표 4-8과 같이 A부터 D까지의 4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등급에 따라 계약 가능 금액을 분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A등급의 업체는 7억 2천만 엔 이상의 대규모 공사를 수주할 기회가 있지만 그 이하의 작은 규모 공사에는 참가할 수 없다. 즉 높은 등급을 받으면 하위 등급의 시장에는 진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표 4-8〉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 일반토목공사 등급

일반토목공사	계약 가능 금액
A등급	7억 2천만 엔 이상
B등급	3억 엔 이상 7억 2천만 엔 미만
C등급	6천만 엔 이상 3억 엔 미만
D등급	6천만 엔 미만

자료 : 国土交通省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4-9, 표4-10, 표4-11, 표 4-12, 표4-13과 같다.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종별 등급 분류를 적게는 3단계부터 많게는 7단계까지 설정하고 있으며, 그 등급에 따른 계약 가능 금액도 각기 다르다.

건축일식공사라고 하더라도 도쿄도<sup>46)</sup>는 A, B, C, D, E의 5단계, 오사카

부<sup>47)</sup>는 AA, A, B, C, D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나, 교토부<sup>48)</sup>(건축공사)는 A, B, C, D, E, F, G의 7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사이타마시는 S, A, B, C의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토목일식공사 A등급이라도 도쿄도에서는 3억 5천만 엔 이상 무제한인 반면, 오사카부에서는 3억 5천만 엔 이상 13억 5천만 엔 미만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고, 사이타마시<sup>49)</sup>에서 토목일식공사 A등급을 받은 경우는 3천만 엔 이상 8천만 엔 미만의 토목일식공사만 수주할 수 있다.

같은 지자체에서도 공종에 따른 등급 분류의 단계가 다를 수 있다. 오사카부에서 토목일식공사는 AA, A, B, C, D의 5단계로 분류되어 있으나, 전기공사 및 관공사는 A, B, C, D의 4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등급에 따른 최소 수주 가능금액과 최대 수주 가능 금액을 설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는 최소 수주 가능금액을 설정하지 않고, 최대 수주 가능 금액만을 설정하기도 한다(후쿠치야마시<sup>50)</sup> 사례). 이 경우 상위 등급으로 등록된 업체는 제한 없이 하위 등급의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동일한 도도부현이더라도 세부 지자체별로도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동일한 교토부 소속인 교토시와 후쿠치야마시는 등급의 분류 방법과 수주 범위 금액이 다르다.

등급이 부여되지 않는 공종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평가를 진행한 후에 등급 대신 등수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서 발주담당자가 판단하여 수주범위를 넘어서는 등급의 입찰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3억 엔의 토목일식공사에 B등급뿐만이 아닌 A등급의 입찰을 인정할 수도 있다.

---

46) 일본의 수도이며, 칸토 지방에 위치하여 도쿄23구와 타마지역의 시정촌을 관할한다. 면적은 2,193km<sup>2</sup>이며, 인구는 약1,374만 명이다. 도쿄 도청은 신주쿠 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이타마현, 치바현, 카나가와현, 야마나시현과 인접하고 있다.

47) 킨키지방에 위치한 부로서 면적은 1,905km<sup>2</sup>이며, 인구는 약 883만 명 정도이다. 부청은 오사카시 추오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토부, 효고현, 나라현, 와카야마현과 인접하고 있다.

48) 킨키지방 교토부에 위치한 현청소재지인 대도시. 면적은 827km<sup>2</sup>이며, 인구는 147만 명이다.

49) 칸토지방 사이타마 현에 위치한 현청소재지인 대도시. 면적은 217km<sup>2</sup>이며, 인구는 128만 명이다.

50) 킨키지방 교토 부에 소속된 지방 중소도시. 면적은 552km<sup>2</sup>이며, 인구는 8만 명이다.

〈표 4-9〉 도쿄도(2018) 공사 등급 별 수주범위

등급	토목일식공사	건축일식공사	전기공사, 급배수공사, 공조공사	포장공사
A	3억 5천만 엔 이상	4억 4천만 엔 이상	5,500만 엔 이상	2억 엔 이상
B	3억 5천만 엔 미만 1억 6천만 엔 이상	4억 4천만 엔 미만 2억 2천만 엔 이상	5,500만 엔 미만 1,800만 엔 이상	2억 엔 미만 8천만 엔 이상
C	1억 6천만 엔 미만 4천만 엔 이상	2억 2천만 엔 미만 6천만 엔 이상	1,800만 엔 미만 600만 엔 이상	8천만 엔 미만 3천만 엔 이상
D	4천만 엔 미만 1천만 엔 이상	6천만 엔 미만 1,600만 엔 이상	600만 엔 미만	3천만 엔 미만 700만 엔 이상
E	1천만 엔 미만	1,600만 엔 미만	-	700만 엔 미만

자료 : 東京都「東京都公報」

〈표 4-10〉 오사카부(2018) 공사 등급 별 수주범위

등급	토목일식공사	건축일식공사	전기공사 및 관공사	포장공사
AA	13억 5천만 엔 이상	8억 엔 이상	-	-
A	13억 5천만 엔 미만 3억 5천만 엔 이상	15억 엔 미만 6억 엔 이상	2억 엔 이상	2500만 엔 이상
B	3억 5천만 엔 미만 9천만 엔 이상	6억 엔 미만 1억 8천만 엔 이상	2억 엔 미만 5천만 엔 이상	2500만 엔 미만 1천만 엔 이상
C	9천만 엔 미만 2천만 엔 이상	1억 8천만 엔 미만 5천만 엔 이상	5천만 엔 미만 2천만 엔 이상	1천만 엔 미만
D	2천만 엔 미만	5천만 엔 미만	2천만 엔 미만	-

자료 : 大阪府

〈표 4-11〉 사이타마시(2017) 공사 등급 별 수주범위

등급	토목일식공사	건축일식공사	비계·토공, 전기, 조경공사	포장공사
S	8천만 엔 이상	7천만 엔 이상	-	-
A	8천만 엔 미만 3천만 엔 이상	7천만 엔 미만 4천만 엔 이상	2천만 엔 이상	3천만 엔 이상
B	3천만 엔 미만 1500만 엔 이상	4천만 엔 미만 1500만 엔 이상	2천만 엔 미만 1천만 엔 이상	3천만 엔 미만 1500만 엔 이상
C	1500만 엔 미만	1500만 엔 미만	1천만 엔 미만	1500만 엔 미만

자료 : さいたま市財政局契約管理部契約課

〈표 4-12〉 교토시(2017) 공사 등급 별 수주범위

등급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포장공사
A	1억 8천만 엔 이상	3억 5천만 엔 이상	1억 엔 이상	6천만 엔 이상
B	1억 8천만 엔 미만	3억 5천만 엔 미만	1억 엔 미만	6천만 엔 미만
	9천만 엔 이상	1억 엔 이상	3천만 엔 이상	3천만 엔 이상
C	9천만 엔 미만	1억 엔 미만	3천만 엔 미만	3천만 엔 미만
	6천만 엔 이상	5천만 엔 이상	1천만 엔 이상	
D	6천만 엔 미만	5천만 엔 미만	1천만 엔 미만	-
	4천만 엔 이상	2천만 엔 이상	500만 엔 이상	
E	4천만 엔 미만	2천만 엔 미만	500만 엔 미만	-
	2천만 엔 이상	1천만 엔 이상		
F	2천만 엔 미만	1천만 엔 미만	-	-
	1천만 엔 이상	500만 엔 이상		
G	1천만 엔 미만	500만 엔 미만	-	-

자료 : 京都市行財政局財政部契約課

〈표 4-13〉 후쿠치야마시(2018) 공사 등급 별 수주범위

등급	토목일식공사	건축일식공사	비계·토공, 전기, 조경공사	포장공사
A1	무제한	무제한	-	-
A	6천만 엔 미만	9천만 엔 미만	무제한	무제한
B	2천만 엔 미만	2500만 엔 미만	2500만 엔 미만	3천만 엔 미만
C	800만 엔 미만	1500만 엔 미만	600만 엔 미만	600만 엔 미만

자료 : 福知山市

#### ④ 공사 등록 기간 및 요건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신청(명부등록)의 접수기간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정기접수, 추가접수의 2종류의 접수기간이 있다. 정기접수는 기본적으로 모든 지방자치체에서 2년에 1회, 정기 접수기간을 정하여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입찰참가자격의 유효기간은 보통 2년이므로, 입찰참가자격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 재신청이 필요하다. 추가접수는 상기의 정기접수에 등록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통상 1년에 1회의 정해진 기간에 진행한다. 전국에서 약 4할의 지방자치체는 추가접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위한 요건은 건설업법의 건설업 허가요건과 유사한 부분이 많으나, 일반적으로 해당 도도부현 내에 건설업법에 따른 영업소 설치를 조건으로 추가하고 있다.

### 3. 명부 운용 사례 분석

본 절에서는 실제 지자체 사례 분석을 통해 앞서 설명한 공공공사 입찰 시스템의 운용 실태를 정리한다. 일본의 수도이며 초대형 지자체인 도쿄도와 인구 8만 명의 지방 소도시인 후쿠치야마시의 건설공사 명부 운용 사례를 정리하였다.

#### 1) 도쿄도 사례

##### ① 업종 및 등급 별 분포

인구 1,374만 명의 도쿄도는 많은 건설업체가 위치하고 있다. 2018년 4월 기준, 12,270업체(중복 등록 포함)가 도쿄도의 토목·건축공사와 설비공사의 명부에 등록되어 도쿄도의 공공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업종별 등록업체 수를 비교하면 일반토목공사에 2,345업체가 등록되어 가

〈표 4-14〉 도쿄 도 공사 업종 및 등급 별 업체 수

업태구분	코드	업종명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토목·건축 공사	01-00	도로포장공사 1,514사	146사 9.6%	367사 24.2%	412사 27.2%	331사 21.9%	258사 17.0%
	02-00	교량공사 459사	131사 28.5%	111사 24.2%	92사 20.0%	90사 19.6%	35사 7.6%
	03-00	하천공사 728사	193사 26.5%	199사 27.3%	164사 22.5%	113사 15.5%	59사 8.1%
	04-00	수도시설공사 1,085사	156사 14.4%	275사 25.3%	274사 25.3%	228사 21.0%	152사 14.0%
	05-00	하수도시설공사 1,147사	145사 12.6%	170사 14.8%	340사 29.6%	291사 25.4%	201사 17.5%
	06-00	일반토목공사 2,345사	371사 15.8%	553사 23.6%	617사 26.3%	468사 20.0%	336사 14.3%

	07-00	건축공사 1,391사	383사 27.5%	261사 18.8%	301사 21.6%	261사 18.8%	185사 13.3%
설비공사	08-00	전기공사 1,376사	581사 42.2%	393사 28.6%	242사 17.6%	160사 11.6%	-
	09-00	급배수위생공사 1,206사	375사 31.1%	327사 27.1%	276사 22.9%	228사 18.9%	-
	10-00	공조공사 1,016사	407사 40.1%	284사 28.0%	173사 17.0%	152사 14.9%	-

자료 : 東京都

장 많으며, 교량공사와 하천공사가 각각 459업체와 728업체로 등록업체 수가 적다. 이외에는 하나의 업종 당 1,000~1,500사 정도가 등록되어있다. 이는 도쿄도가 교량공사를 진행할 때에 입찰에 참가하여 수주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업 허가와 상관없이 459업체로 제한된다는 것이며 하천공사는 728업체로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등급 별 분포도는 전기공사(42.2%), 급배수위생공사(31.1%), 공조공사(40.1%)의 설비공사에서 A등급을 받은 업체의 비율이 높다. 토목·건축공사에서는 교량공사(28.5%), 건축공사(27.5%), 하천공사(26.5%)가 높은 반면 도로포장공사에서는 9.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② 건설업체 별 등급 현황

초대형 건설업체에 해당하는 카지마건설과 오바야시건설의 도쿄도 공사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4-15와 같다. 카지마건설과 오바야시건설 모두 토목·건축 공사의 7가지 분류에 전부 등록하고 있으며 A랭크를 받았다. 카지마건설은 토목·건축 공사 분류에서 2~3등의 랭크를 받았으며, 오바야시건설은 토목·건축 공사 분류에서 3등의 랭크를 받고, 건축공사에 대해서만 5등을 받았다.

이외에 카지마건설은 준설공사, 잠함, 궤도, 설드공사, 추진공사, 지하철공사, 조경, 프리패브, 강거더, PC거더, 그라우팅, 바닥보강의 12개 분류에 대해 등록하였다. 오바야시건설은 잠함, 궤도, 설드공사, 추진공사, 지하철공사, 조경, 운동장시설, 프리패브, 강거더, PC거더, 석면처리, 그라우팅, 식생, 방

음벽 부분의 14분류에 등록하고 있다. 오바야시건설은 초대형 건설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조경 부문에서 213등의 높지 않은 랭크를 받고 있다.

〈표 4-15〉 초대형 업체의 도쿄 도 공사 등록 업종 및 랭크

	카지마건설		오바야시건설	
	공종	등급 랭크	공종	등급 랭크
명부등록 공종 및 랭크	01-00 도로포장공사	A등급-2등	01-00 도로포장공사	A등급-3등
	02-00 교량공사	A등급-2등	02-00 교량공사	A등급-3등
	03-00 하천공사	A등급-2등	03-00 하천공사	A등급-3등
	04-00 수도시설공사	A등급-2등	04-00 수도시설공사	A등급-3등
	05-00 하수도시설공사	A등급-2등	05-00 하수도시설공사	A등급-3등
	06-00 일반토목공사	A등급-3등	06-00 일반토목공사	A등급-3등
	07-00 건축공사	A등급-3등	07-00 건축공사	A등급-5등
	20-00 준설공사	68등	21-00 짐함	3등
	21-00 짐함	2등	22-00 궤도	10등
	22-00 궤도	28등	23-00 실드공사	3등
	23-00 실드공사	2등	24-00 추진공사	3등
	24-00 추진공사	2등	25-00 지하철공사	3등
	25-00 지하철공사	2등	27-00 조경	213등
	27-00 조경	17등	28-00 운동장시설	15등
	29-00 프리패브	1등	29-00 프리패브	4등
	41-00 강거더	11등	41-00 강거더	2등
	42-00 PC거더	2등	42-00 PC거더	3등
	73-00 그라우팅	2등	62-00 석면처리	3등
	99-06 바닥 보강	1등	73-00 그라우팅	3등
	-	-	78-00 식생	1등
-	-	81-00 방음벽, 차음벽	1등	

자료 : 東京都

대형 건설업체에 해당하는 오쿠무라건설과 니시마츠건설의 도쿄도 공사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4-16과 같다. 오쿠무라건설과 니시마츠건설 모두 초대형 업체와 동일하게 토목·건축 공사의 7가지 분류에 전부 등록하고 있으며 A랭크를 받았다. 오쿠무라건설은 토목·건축 공사 분류에서 15~22등의 랭크를 받았으며, 오바야시건설은 토목·건축 공사 분류에서 10~16등의 랭크를 받았다.

이외에 오쿠무라건설은 짐함, 실드공사, 추진공사, 지하철공사, 조경, 운동

장시설, 그라우팅의 7개 분류에 대해 등록하였다. 이에 반해 니시마츠건설은 준설, 잠함, 쉴드공사, 추진공사, 지하철공사, 운동장시설, 프리패브, 철골가공, 강거더, PC거더, 그라우팅, PC탱크, 웰 포인트의 13개 분류에 대해 등록하였다. 철골 제작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니시마츠건설의 사례를 보면 대형 건설업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초대형 건설업체보다 등록수자가 적은 것은 아니며, 자신들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등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6〉 대형 업체의 도쿄 도 공사 등록 업종 및 랭크

	오쿠무라 건설		니시마츠 건설	
	공종	등급 랭크	공종	등급 랭크
명부등록 공종 및 랭크	01-00 도로포장공사	A등급-17등	01-00 도로포장공사	A등급-10등
	02-00 교량공사	A등급-16등	02-00 교량공사	A등급-11등
	03-00 하천공사	A등급-16등	03-00 하천공사	A등급-11등
	04-00 수도시설공사	A등급-15등	04-00 수도시설공사	A등급-10등
	05-00 하수도시설공사	A등급-16등	05-00 하수도시설공사	A등급-11등
	06-00 일반토목공사	A등급-22등	06-00 일반토목공사	A등급-14등
	07-00 건축공사	A등급-17등	07-00 건축공사	A등급-16등
	21-00 잠함	15등	20-00 준설	4등
	23-00 쉴드공사	16등	21-00 잠함	10등
	24-00 추진공사	15등	23-00 쉴드공사	11등
	25-00 지하철공사	15등	24-00 추진공사	10등
	27-00 조경	17등	25-00 지하철공사	10등
	28-00 운동장시설	36등	28-00 운동장시설	2등
	73-00 그라우팅	13등	29-00 프리패브	9등
	-	-	40-00 철골가공	11등
	-	-	41-00 강거더	37등
	-	-	42-00 PC거더	6등
	-	-	73-00 그라우팅	9등
	-	-	87-00 PC탱크	2등
-	-	96-00 웰 포인트	1등	

자료 : 東京都

중형 건설업체에 해당하는 토큐건설과 코난건설의 도쿄도 공사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4-17과 같다. 토큐건설은 토목·건축 공사의 7가지 분류에 전부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교량공사, 하천공사, 수도시설공사, 하수도시설공사, 일반토목공사, 건축공사에서는 A등급을 받고 랭크도 13~20등으

로 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나, 도로포장공사에서는 C등급을 받고 있다. 이에 비해 오사카에서 창업한 코난건설은 중형 건설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도쿄도에서는 일반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의 2가지에만 등록하고 있다. 건축공사를 특기로 하는 코난건설은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A등급을 받았으나, 일반토목공사에 대해서는 E등급을 받고 있다.

토쿄 건설은 이외에도 준설, 잠함, 설드공사, 추진공사, 지하철공사, 운동장시설, 석면처리, 그라우팅의 8개 분류에 등록하고 있으나, 코난건설은 기타공사에 대해 전혀 등록하고 있지 않다.

〈표 4-17〉 중형 업체의 도쿄도 공사 등록 업종 및 랭크

	토쿄 건설		코난 건설	
	공종	등급 랭크	공종	등급 랭크
명부등록 공종 및 랭크	01-00 도로포장공사	C등급-1등	06-00 일반토목공사	E등급-14등
	02-00 교량공사	A등급-15등	07-00 건축공사	A등급-107등
	03-00 하천공사	A등급-15등	-	-
	04-00 수도시설공사	A등급-14등	-	-
	05-00 하수도시설공사	A등급-15등	-	-
	06-00 일반토목공사	A등급-20등	-	-
	07-00 건축공사	A등급-13등	-	-
	20-00 준설공사	40등	-	-
	21-00 잠함	14등	-	-
	23-00 설드공사	15등	-	-
	24-00 추진공사	14등	-	-
	25-00 지하철공사	14등	-	-
	28-00 운동장시설	4등	-	-
	62-00 석면처리	22등	-	-
73-00 그라우팅	12등	-	-	

자료 : 東京都

## 2) 후쿠치야마시 사례

킨키지방 교토부에 위치한 인구 8만 명의 지방 소도시 후쿠치야마시는 연간 공공공사 예산(2017년 기준)이 27억 엔 규모이다.

2017년 기준, 31개 분류에서 66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분류 당 평균 2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중복 등록 가능). 그 내용을 살펴보면 토목일식공사(134사), 건축일식공사(92사), 비계·토공사·콘크리트 공사(85사), 포

장공사(79사)등은 평균보다 많은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나, 미장공사, 타일·조적공사, 판금공사 등은 1개 업체밖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철근공사, 유리공사, 해체공사는 등록된 업체가 없다.

〈표 4-18〉 후쿠치야마 시 공사 업종 및 등급 별 업체 수

	A1	A	B	C	합계
토목일식공사	29사	29사	54사	22사	134사
건축일식공사	21사	9사	44사	18사	92사
목공사	-	1사	1사	3사	5사
미장공사	-	0	0	1사	1사
비계·토공사·콘크리트공사	-	27사	38사	19사	85사
석공사	-	1사	2사	0	3사
지붕공사	-	3사	2사	1사	6사
전기공사	-	19사	13사	7사	39사
관공사	-	27사	21사	10사	58사
타일·조적공사	-	0	0	1사	1사
강구조물공사	-	5사	1사	1사	7사
철근공사	-	0	0	0	0
포장공사	-	39사	31사	9사	79사
준설공사	-	2사	2사	0	4사
판금공사	-	0	1사	0	1사
유리공사	-	0	0	0	0
도장공사	-	4사	6사	3사	13사
방수공사	-	4사	1사	0	5사
내장공사	-	5사	2사	1사	8사
기계기구공사	-	6사	2사	3사	11사
단열공사	-	1사	0	0	1사
전기통신공사	-	7사	0	0	7사
조경공사	-	7사	7사	3사	17사
착정공사	-	0	1사	0	1사
창호공사	-	1사	0	0	1사
수도시설공사	-	31사	21사	8사	60사
소방시설공사	-	4사	4사	1사	9사
청소시설공사	-	1사	0	0	1사
해체공사	-	0	0	0	0
법면공사	-	6사	6사	5사	17사
프리스트레스	-	1사	0	0	1사

자료 : 福知山市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 업체들의 면면도 전국적으로 지명도를 가진 업체는 없으며, 대부분이 후쿠치야마시에서 창업하거나 인근 교토부나 오사카

부의 업체이다. 초대형 건설업체라고 하더라도 수주를 위해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영업소를 설치할 수는 없으므로, 후쿠치야마시와 같은 소도시에는 자연스럽게 진입하지 못하는 것이다.

#### 4. 공공공사 발주 사례 분석

본 절에서는 실제 지자체 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공사 발주 시스템의 실태를 정리한다. 본 절에서는 일본의 수도이며 초대형 지자체인 도쿄도와 인구 8만 명의 지방 소도시인 후쿠치야마시의 공공공사 발주 사례,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를 정리하였다.

##### 1) 도쿄도 사례

###### ① 건축·토목 공사

도쿄 도에서는 2018년 3월부터 4월까지 63건의 공공 토목·건축공사가 공표되었다. 여기에는 도로포장공사(01-00), 교량공사(02-00), 하천공사(03-00), 수도시설공사(04-00), 하수도시설공사(05-00), 일반토목공사(06-00), 건축공사(07-00)가 포함된다(표 4-7 참조).

수도국, 하수도국, 항만국, 경시청 등의 도쿄도내 다양한 부서에서 토목·건축공사를 발주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도쿄도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규정 및 등급은 각기 설정하고 있으며, 입찰 서류의 제출 장소도 도쿄도에서 일괄하여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접수하고 있다.

각각의 프로젝트는 각 발주처에서 표 4-7을 참고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등록업종을 결정하고,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발주등급을 결정한다. 이후 공사난이도와 등록 업체 수 등의 상황에 기초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건설업체의 수주등급을 결정한다. 건설업체는 자신이 등록한 업종과 부여받은 등급과 맞추어 자격이 되는 프로젝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계약방법으로는 3건의 일반경쟁입찰을 제외한 60건에서 희망지명경쟁입찰을 활용하고 있다. 희망지명경쟁입찰은 수주를 희망하는 기업 가운데 입찰참가자를 선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수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도쿄도의 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업종 등록과 수주등급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도 도쿄도의 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업종 등록과 수주등급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자동적으로 입찰참가자가 될 수 있다.

발주등급과 수주등급의 관계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수도국의 수도시설공사 프로젝트(계약번호 30-00001)는 발주등급이 D로 판정되었으나, D뿐만이 아닌 더 낮은 E 등급의 건설업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설정하고 있다. 또한 치수사무소의 하천공사 프로젝트(계약번호 30-00006)는 발주등급이 C에 해당하지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건설업체는 A, B, C로 설정하여, 발주등급과 동일하거나, 보다 높은 건설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게 하였다. 하수도국의 하수도시설공사 프로젝트(계약번호 29-土早-029)는 발주등급이 B이지만, B등급의 건설업체는 물론, 이보다 높은 A등급도, 낮은 C등급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하였다.

기본적으로 발주등급을 수주등급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항만국의 하천공사(계약번호 29-00568)는 발주등급 C에 해당하지만, 수주등급에는 A등급의 건설업체 및 JV<sup>51)</sup>만이 입찰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표 4-19〉 도쿄도 토목·건축 공사 발주 내역(2018년 3월, 4월분)

공표일	계약번호	업종	계약방법	발주 등급	수주 등급	입찰서류 제출처
2018.4.9	30-00001	수도시설공사	희망지명경쟁	D	D,E	수도국
2018.4.9	30-00002	수도시설공사	희망지명경쟁	D	D,E	수도국
2018.4.9	30-00006	하천공사	희망지명경쟁	C	A,B,C	치수사무소
2018.4.9	29-00569	하천공사	희망지명경쟁	C	A,B,C,D,E	항만국
2018.4.9	29-18049	건축공사	희망지명경쟁	C	C,D	교통국
2018.4.9	29-00250	일반토목공사	희망지명경쟁	D	A,B,C,D	수도국
2018.4.9	29-土早-021	하수도시설공사	희망지명경쟁	B	A,B,C	하수도국
2018.4.9	29-土早-022	하수도시설공사	희망지명경쟁	A	A,B, JV	하수도국
2018.4.9	29-土早-024	하수도시설공사	희망지명경쟁	B	A,B,C	하수도국

51) 도쿄도 재무국이 발주하는 건설공동기업체(JV)발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동기업체를 결성하게 하여 공사를 수주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 확보를 꾀한 이른바 공사 분배형 공동기업체를 원칙으로 한다.

2018.4.9	29-土早-025	하수도시설공사	희망지명경쟁	A,B	A,B,C	하수도국
2018.4.9	29-土早-026	하수도시설공사	희망지명경쟁	B,C	A,B,C,D	하수도국
2018.4.9	29-土早-027	하수도시설공사	희망지명경쟁	B,C	A,B,C,D	하수도국
2018.4.9	29-土早-028	하수도시설공사	희망지명경쟁	A	A,B, JV	하수도국
2018.4.9	29-土早-029	하수도시설공사	희망지명경쟁	B	A,B,C	하수도국
2018.4.9	29-土早-030	하수도시설공사	희망지명경쟁	A,B	A,B,C	하수도국
2018.4.9	29-土早-031	하수도시설공사	희망지명경쟁	A	A,B, JV	하수도국
2018.4.9	29-土早-032	하수도시설공사	희망지명경쟁	A	A,B, JV	하수도국
2018.4.9	29-土早-033	하수도시설공사	희망지명경쟁	A	A,B, JV	하수도국
2018.4.9	29-土早-035	하수도시설공사	희망지명경쟁	B,C	A,B,C,D	하수도국
2018.4.9	29-土早-003	하수도시설공사	희망지명경쟁	C	B,C,D	하수도국
2018.4.9	29-土早-004	일반토목공사	희망지명경쟁	C,D	B,C,D,E	하수도국
2018.4.9	29-土早-005	하수도시설공사	희망지명경쟁	C	B,C,D	하수도국
2018.4.9	29-土早-007	일반토목공사	희망지명경쟁	D	C,D,E	하수도국
2018.4.9	29-土早-008	하수도시설공사	희망지명경쟁	C,D	B,C,D,E	하수도국
2018.4.9	29-建早-001	건축공사	희망지명경쟁	D	C,D,E	하수도국
2018.4.9	30-01016	일반토목공사	희망지명경쟁	D	A,B,C,D,E	오가사외라 지청
2018.4.9	30-01017	건축공사	희망지명경쟁	E	A,B,C,D,E	오가사외라 지청
2018.4.9	30-00003	일반토목공사	희망지명경쟁	C	B,C,D	키타타마 남부군
2018.4.9	30-00005	도로포장공사	희망지명경쟁	B	A,B,C	제6건설사무소
2018.4.9	30-00004	일반토목공사	희망지명경쟁	D	A,B,C,D	제6건설사무소
2018.4.9	30-00002	일반토목공사	희망지명경쟁	C	B,C,D	키타타마 남부군
2018.4.9	30-00004	일반토목공사	희망지명경쟁	E	D,E	도쿄공원녹지사무소
2018.4.9	30-00004	하천공사	희망지명경쟁	D	A,B,C,D,E	항만국
2018.4.9	30-00105	하천공사	희망지명경쟁	C	B,C	도쿄항 건설사무소
2018.4.9	30-00001	수도시설공사	희망지명경쟁	D	D,E	수도국
2018.4.9	30-00002	수도시설공사	희망지명경쟁	D	D,E	수도국
2018.4.9	30-70168	건축공사	희망지명경쟁	C	B,C,D	경시청
2018.4.9	30-70183	건축공사	희망지명경쟁	C	B,C,D	경시청
2018.4.9	30-70184	건축공사	희망지명경쟁	C	B,C,D	경시청
2018.4.9	30-70186	건축공사	희망지명경쟁	C	B,C,D	경시청
2018.4.9	30-00001	건축공사	희망지명경쟁	C	B,C,D	도쿄항 관리사무소
2018.4.6	30-00001	일반토목공사	희망지명경쟁	C	B,C,D	도쿄주택건설사무소
2018.4.6	30-00008	일반토목공사	희망지명경쟁	D	C,D,E	도쿄주택건설사무소
2018.4.2	29-00568	하천공사	희망지명경쟁	C	A,JV	항만국
2018.4.2	29-土早-014	하수도시설공사	희망지명경쟁	A,B	A,B,C	하수도국
2018.4.2	29-土早-017	하수도시설공사	희망지명경쟁	A	A,B,JV	하수도국
2018.3.26	29-00567	하천공사	희망지명경쟁	C	A,JV	항만국
2018.3.26	29-00439	하천공사	희망지명경쟁	C	A,B,C	도쿄항 건설사무소
2018.3.12	29-00884	하천공사	일반경쟁입찰	A	A,JV	재무국
2018.3.12	29-00439	하천공사	희망지명경쟁	C	A,B,C	도쿄항 건설사무소
2018.3.5	29-00875	건축공사	일반경쟁입찰	A	A,B,C,D,E, JV	재무국
2018.3.5	29-00880	하천공사	일반경쟁입찰	A	A,JV	재무국
2018.3.5	29-00438	도로포장공사	희망지명경쟁	B	A,B	도쿄항 건설사무소
2018.3.5	29-01558	도로시설공사	희망지명경쟁	A	A,B	수도국

2018.3.5	29-01560	수도시설공사	희망지명경쟁	A	A,B	수도국
2018.3.5	29-01571	수도시설공사	희망지명경쟁	B	A,B,C	수도국
2018.3.5	29-01574	수도시설공사	희망지명경쟁	A	A,B	수도국
2018.3.5	29-01585	수도시설공사	희망지명경쟁	A	A,B	수도국
2018.3.5	29-土早-007	하수도시설공사	희망지명경쟁	A	A,B,JV	하수도국
2018.3.5	29-土早-009	하수도시설공사	희망지명경쟁	A	A,B,JV	하수도국
2018.3.5	29-土早-010	하수도시설공사	희망지명경쟁	A	A,B,JV	하수도국
2018.3.5	29-土早-011	하수도시설공사	희망지명경쟁	A	A,B,JV	하수도국
2018.3.5	29-土早-012	하수도시설공사	희망지명경쟁	A	A,B,JV	하수도국

자료 : 東京都

## ② 설비 공사

도쿄도에서는 2018년 3월부터 4월까지 17건의 공공 설비공사가 공표되었다(표 4-20). 여기에는 전기공사(08-00), 급배수위생공사(09-00), 공조공사(10-00)가 포함된다(표 4-7 참조). 설비 공사에서도 토목·건축공사와 동일하게 다양한 부서에서 발주하고 있으며, 1건을 제외한 16건의 프로젝트에서 희망지명경쟁입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설비공사의 발주등급과 수주등급에서도 토목·건축공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주등급이 설정되어 있다.

〈표 4-20〉 도쿄도 설비 공사 발주 내역(2018년 3월, 4월분)

공표일	계약번호	업종	계약방법	발주 등급	수주 등급	입찰서류 제출처
2018.4.9	30-00001	전기공사	희망지명경쟁	B	A,B,C	제5건설사무소
2018.4.9	29-18051	전기공사	희망지명경쟁	A	A,B,C	교통국
2018.4.9	29-18052	전기공사	희망지명경쟁	A	A,B,C	교통국
2018.4.9	29-設早-006	공조공사	희망지명경쟁	B	A,B,C	하수도국
2018.4.9	30-70120	급배수위생공사	희망지명경쟁	B	A,B,C	경시청
2018.4.9	30-70169	전기공사	희망지명경쟁	A	A,B	경시청
2018.4.9	30-70170	전기공사	희망지명경쟁	B	A,B,C	경시청
2018.4.9	30-70179	공조공사	희망지명경쟁	C	B,C,D	경시청
2018.4.9	30-70180	전기공사	희망지명경쟁	C	B,C,D	경시청
2018.4.9	30-70181	전기공사	희망지명경쟁	C	B,C,D	경시청
2018.4.9	30-70182	전기공사	희망지명경쟁	D	C,D	경시청
2018.4.9	30-70185	전기공사	희망지명경쟁	D	A,B,C,D	경시청
2018.4.2	29-設早-018	전기공사	희망지명경쟁	A	A	하수도국
2018.4.2	29-設早-023	전기공사	희망지명경쟁	A	A,B	하수도국
2018.3.19	29-00885	전기공사	일반경쟁입찰	A	A,JV	재무국
2018.3.12	29-72064	전기공사	희망지명경쟁	C	B,C,D	경시청

2018.3.5	29-01580	전기공사	희망지명경쟁	A	A,B	수도국
----------	----------	------	--------	---	-----	-----

자료 : 東京都

### ③ 기타 공사

도쿄도에서는 2018년 3월에는 기타공사가 발주되지 않았으며, 2018년 4월에는 30건의 기타 공사가 공표되었다(표 4-21). 기타 공사에는 착정(16-00)부터 타일공사(99-33)까지 92개 업종(표 4-7 참조)이 포함된다. 4월에 발주된 30건의 기타 공사에는 표 4-22와 같이 조경(27-00), 해체공사(31-01), 다다미(35-00) 등 12종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다.

기타 공사는 토목·건축 공사 및 설비 공사와 달리 명부에 등록된 업체에 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순위만을 부여한다. 따라서 발주 시에 발주등급을 평가하지도 않고, 해당 업종에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의 수주등급을 제한하지 않는다.

〈표 4-21〉 도쿄도 기타 공사 발주 내역(2018년 3월, 4월분)

공표일	계약번호	업종	계약방법	발주 등급	수주 등급	입찰서류 제출처
2018.4.9	29-土早-023	50-00 지중선	희망지명경쟁	순위	순위	하수도국
2018.4.9	29-設早-024	56-00 폭기조 산기설 비공사	희망지명경쟁	순위	순위	하수도국
2018.4.9	29-設早-025	53-00 침사지 기계설 비공사	희망지명경쟁	순위	순위	하수도국
2018.4.9	29-設早-027	53-00 침사지 기계설 비공사	희망지명경쟁	순위	순위	하수도국
2018.4.9	29-設早-029	56-00 폭기조 산기설 비공사	희망지명경쟁	순위	순위	하수도국
2018.4.9	29-設早-003	45-00 수처리장치	희망지명경쟁	순위	순위	하수도국
2018.4.9	29-設早-004	53-00 침사지 기계설 비공사	희망지명경쟁	순위	순위	하수도국
2018.4.9	29-設早-002	44-00 펌프설치	희망지명경쟁	순위	순위	하수도국
2018.4.9	29-設早-003	52-00 계측장비	희망지명경쟁	순위	순위	하수도국
2018.4.9	29-設早-004	58-00 소화조 기계설 비공사	희망지명경쟁	순위	순위	하수도국
2018.4.9	30-00006	75-00 도로표시도장	희망지명경쟁	순위	순위	미나미타마동부건 설사무소
2018.4.9	30-00001	27-00 조경	희망지명경쟁	순위	순위	수도국
2018.4.9	30-00002	27-00 조경	희망지명경쟁	순위	순위	수도국

2018.4.9	30-00039	74-00 도로표식설치	희망지명경쟁	순위	순위	경시청
2018.4.9	30-00040	74-00 도로표식설치	희망지명경쟁	순위	순위	경시청
2018.4.9	30-00041	74-00 도로표식설치	희망지명경쟁	순위	순위	경시청
2018.4.9	30-00042	74-00 도로표식설치	희망지명경쟁	순위	순위	경시청
2018.4.9	30-70171	63-00 기계기구설치	희망지명경쟁	순위	순위	경시청
2018.4.6	30-00001	31-01 해체공사	일반경쟁입찰	순위	순위	재무국
2018.4.6	30-00002	31-01 해체공사	일반경쟁입찰	순위	순위	재무국
2018.4.6	30-00003	31-01 해체공사	희망지명경쟁	순위	순위	재무국
2018.4.6	30-00005	35-00 다다미	희망지명경쟁	순위	순위	동부주택건설사무소
2018.4.5	30-設-001	44-00 펌프설치	희망지명경쟁	순위	순위	하수도국
2018.4.5	30-設-003	52-00 계측장비	희망지명경쟁	순위	순위	하수도국
2018.4.2	29-設早-017	56-00 폭기조 산기설비공사	희망지명경쟁	순위	순위	하수도국
2018.4.2	29-設早-020	53-00 침사지 기계설비공사	희망지명경쟁	순위	순위	하수도국
2018.4.2	29-設早-002	53-00 침사지 기계설비공사	희망지명경쟁	순위	순위	하수도국
2018.4.2	29-設早-003	52-00 계측장비	희망지명경쟁	순위	순위	하수도국
2018.4.2	29-設早-001	53-00 침사지 기계설비공사	희망지명경쟁	순위	순위	하수도국
2018.4.2	29-設早-004	44-00 펌프설치	희망지명경쟁	순위	순위	하수도국

자료 : 東京都

이러한 기타 공사에서 별도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표 4-22에서 볼 수 있듯이 기타 공사는 토목·건축 공사 및 설비 공사에 비해 한 업종 당 등록되어 있는 업체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 업체 수를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등급을 선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4-22〉 도쿄도 기타 공사 업종 별 등록 업체 수

기타 공사 공종	등록 업체 수	기타 공사 공종	등록 업체 수
27-00 조경	618	52-00 계측장비	154
31-01 해체공사	235	53-00 침사지 기계설비공사	109
35-00 다다미	54	56-00 폭기조 산기설비공사	60
44-00 펌프설치	122	58-00 소화조 기계설비공사	19
45-00 수처리장치	166	63-00 기계기구설치	92
50-00 지중선	49	74-00 도로표식설치	170

자료 : 東京都

## 2) 후쿠치야마시 사례

후쿠치야마시에서는 2018년 3월 한 달 간 41건의 건설 공사가 발주되었다. 대부분은 시청내부 부서에서 일괄하여 발주되었으나, 일부는 상하수도부에서 발주되어 있다. 후쿠치야마시에서도 도쿄도와 동일하게 각각의 발주부서에서 독립적으로 발주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41건의 건설 공사 가운데는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는 2건의 수의계약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6건의 일반경쟁방식과 33건의 지명경쟁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지명경쟁방식을 살펴보면 도쿄도의 방식과 유사하게 후쿠치야마시의 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업종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등급이 부여되어 있다. 단 도쿄도와 같이 발주등급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 해당 등급에서 발주담당 공무원이 적절한 후보업체를 선정하고 대략 약 10여개의 업체가 지명되어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 단 2018년 3월 23일에 개찰된 조경공사의 케이스와 같이 별도의 수주 등급을 설정하지 않고, 업체의 과거 실적만으로 지명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경쟁입찰은 도쿄도와 다소 차이가 있다. 도쿄도에서는 등록 업종 및 수주 등급이 만족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으나, 후쿠치야마시에서는 일반경쟁입찰인 경우 후쿠치야마시에 본점을 두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후쿠치야마시에서는 필요 업종에 적절한 지역 업체가 존재하지 않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후쿠치야마시에 위치하고, 기여하는 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입찰에 참가시키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의 특성 상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2018년 3월 20일에 개찰이 시작된 토목일식+수도시설의 경우에는 토목일식 부분에 등록하고, A1, A등급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수도시설부분에 등록하고 A, B등급을 받고 있는 업체로 입찰을 제한하고 있다.

〈표 4-23〉 후쿠치야마시 공사 발주 내역(2018년 3월분)

개찰일	업종	계약 방법	등록요구 업종	수주 등급	입찰참가 업체수	입찰서류 제출처	기타
2018.3.29	토목일식	수의계약	토목일식	-	1업체	시청부국	긴급복구
2018.3.27	토목일식	지명경쟁	토목일식	A1, A, B, C	7업체	시청부국	-

2018.3.27	토목일식	지명경쟁	토목일식	A1,A,B	14업체	시청부국	-
2018.3.27	토목일식	지명경쟁	토목일식	A1,A,B	11업체	시청부국	-
2018.3.27	토목일식	지명경쟁	토목일식	A,B,C	10업체	시청부국	-
2018.3.27	토목일식	일반경쟁	토목일식	A1,A	-	시청부국	본점
2018.3.26	토목일식	지명경쟁	토목일식	A1,A,B	7업체	시청부국	-
2018.3.26	토목일식	수의계약	토목일식	-	1업체	시청부국	간급복구
2018.3.26	토목일식	지명경쟁	토목일식	A,B,C	11업체	시청부국	-
2018.3.26	토목일식	지명경쟁	토목일식	A1,A,B	13업체	시청부국	-
2018.3.26	토목일식	지명경쟁	토목일식	A,B,C	10업체	시청부국	-
2018.3.26	토목일식	지명경쟁	토목일식	A1,A,B	15업체	시청부국	-
2018.3.26	토목일식	지명경쟁	토목일식	A1,A,B	13업체	시청부국	-
2018.3.23	토목일식	지명경쟁	토목일식	A,B,C	10업체	시청부국	-
2018.3.23	토목일식	지명경쟁	토목일식	A1,A,B	10업체	시청부국	-
2018.3.23	토목일식	지명경쟁	토목일식	A,B,C	10업체	시청부국	-
2018.3.23	토목일식	지명경쟁	토목일식	A1,A,B	13업체	시청부국	-
2018.3.23	토목일식	지명경쟁	토목일식	A1,A,B	11업체	시청부국	-
2018.3.23	전기	지명경쟁	전기	A,B	10업체	시청부국	-
2018.3.23	조경	지명경쟁	조경	-	6업체	상하수도부	실적
2018.3.22	토목일식	지명경쟁	토목일식	A1,A,B	12업체	시청부국	-
2018.3.22	토목일식	지명경쟁	토목일식	A1,A,B	13업체	시청부국	-
2018.3.22	토목일식	일반경쟁	토목일식	A1	-	시청부국	본점
2018.3.22	토목일식	일반경쟁	토목일식	A1	-	시청부국	본점
2018.3.20	토목일식	지명경쟁	토목일식	A1,A	7업체	시청부국	-
2018.3.20	토목일식	지명경쟁	토목일식	A,B,C	7업체	시청부국	-
2018.3.20	토목일식	지명경쟁	토목일식	A1,A,B	11업체	시청부국	-
2018.3.20	토목일식	지명경쟁	토목일식	A1,A,B	12업체	시청부국	-
2018.3.20	토목일식 + 수도시설	일반경쟁	토목일식 수도시설	A1,A A,B	-	상하수도부	본점
2018.3.19	토목일식	지명경쟁	토목일식	A,B,C	8업체	시청부국	-
2018.3.19	토목일식	지명경쟁	토목일식	A1,A,B,C	7업체	시청부국	-
2018.3.19	토목일식	지명경쟁	토목일식	A,B,C	10업체	시청부국	-
2018.3.19	토목일식	지명경쟁	토목일식	A,B,C	7업체	시청부국	-
2018.3.19	토목일식	지명경쟁	토목일식	A,B,C	11업체	시청부국	-
2018.3.16	토목일식	지명경쟁	비계, 토 공, 콘크 리트	B,C	7업체	시청부국	-
2018.3.15	토목일식	지명경쟁	토목일식	A,B,C	8업체	시청부국	-
2018.3.9	토목일식	지명경쟁	토목일식	A,B,C	7업체	시청부국	-
2018.3.9	토목일식	일반경쟁	토목일식	A1,A	-	상하수도부	본점
2018.3.6	토목일식	지명경쟁	토목일식	A1,A,B	12업체	시청부국	-
2018.3.2	토목일식	일반경쟁	토목일식	A1,A	-	상하수도부	본점

자료 : 福知山市

### 3) 국토교통성 사례

국토교통성에서는 국토교통성의 각 지방정비국과 내각부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방위성, 농림수산성의 공공공사를 발주한다. 중앙정부의 공사는 아래와 같이 24가지로 분류되어 발주된다(표 4-6 참조).

- 일반토목공사	- 전기설비공사	- 유지보수공사	- 기계설비공사
- 아스팔트포장공사	- 온냉방위생설비공사	- 준설공사	- 통신설비공사
- 강교량상부공사	- 시멘트콘크리트공사	- 그라우트공사	- 수변전설비공사
- 조경공사	- PC공사	- 말뚝박기공사	- 항만토목공사
- 건축공사	- 법면처리공사	- 착정공사	- 농림토목공사
- 목조건축공사	- 도장공사	- 공장제작공사	- 농림건축공사

1994년 발표된 공공공사 입찰·계약 절차 개선에 관한 행동계획에 따라 중앙정부가 발주하는 약 7억 3,000만 엔 이상의 공공공사는 일반경쟁입찰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중앙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는 대부분 지명경쟁입찰이 아닌 일반경쟁입찰로 발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단 지방정부의 일반경쟁입찰 기준을 약 24억 3,000만 엔으로 하고 있어, 앞선 도쿄도와 후쿠치야마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정부의 발주공사는 여전히 지명경쟁입찰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국토교통성에서는 2018년 6월 1일부터 18일까지 전체 813건의 공공공사를 발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21건의 건축공사와 311건의 일반토목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4-24는 해당 기간에 국토교통성이 발주한 건축공사, 표 4-25는 일반토목공사 가운데 추출한 10건, 표 4-26은 도장공사이다. 이를 살펴보면 국토교통성의 공공공사도 앞선 도쿄도와 후쿠치야마시의 사례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각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등록기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각 발주기관에 해당 공사 공종에 대한 경쟁참가자격 등록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성 키키지방정비국에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토교통성 칸토지방정비국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국토교통성 산하의 지방정비국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공사 등급 외에 객관적사항평가 점수를 기준으

로 활용하거나(건축-8, 일반토목-10), 주관적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활용하거나(건축-19), 관할지역에 본점 또는 지점을 요구하는 경우(건축-1, 건축-6, 건축-17, 건축-20, 일반토목-1, 일반토목-5, 도장-4, 도장-5)도 있다.

또한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공사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B, C, D등급의 업체들을 위한 시장을 조성하고 있다.

〈표 4-24〉 국토교통성 건축공사 발주 내역(2018년 6월분)

No.	공표일	발주기관	공사명	경쟁참가지격
1	2018.6.19	국토교통성 칸토지방 정비국	사이타마 지방법무국 출장소 건축개수공사	칸토지방정비국에서 건축공사 B, C등급 칸토지방정비국 관할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둘 것
2	2018.6.19	국토교통성 킨키지방 정비국	동물검역소 코베출장소 검양장검사동 건축공사	킨키지방정비국에서 건축공사 B, C등급
3	2018.6.19	국토교통성 홋카이도 개발국	도로사무소 방수개수 외 공사	홋카이도개발국에서 건축공사 B, C, D등급
4	2018.6.15	국토교통성 토호쿠지방 정비국	오오테마치 지하도 아케이드천정공사	토호쿠지방정비국에서 건축공사 C등급
5	2018.6.14	국토교통성 홋카이도 개발국	키타미시 직원숙소 개수공사	홋카이도개발국에서 건축공사 A, B, C, D등급
6	2018.6.14	국토교통성 칸토지방 정비국	오오타와라 노동기준 감독서 건축개수공사	칸토지방정비국에서 건축공사 C, D등급 칸토지방정비국 관할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둘 것
7	2018.6.14	국토교통성 홋카이도 개발국	유후츠 지구 농업시설 신축공사	홋카이도개발국에서 건축공사 A, B, C등급
8	2018.6.12	국토교통성 토호쿠지방 정비국	이시노마키 국영추모 시설 관리동 건축공사	토호쿠지방정비국에서 건축공사 모든 등급 객관적사항평가 1,200점 이상
9	2018.6.12	국토교통성 큐슈지방 정비국	미나마타병 연구센터 건축개수공사	큐슈지방정비국에서 건축공사 C, D등급
10	2018.6.12	국토교통성 큐슈지방 정비국	쿠마모토연구소 내 정비공사	큐슈지방정비국에서 건축공사 C, D등급
11	2018.6.12	국토교통성 홋카이도 개발국	오비히로 개발건설부 3청사 개수공사	홋카이도개발국에서 건축공사 B, C, D등급
12	2018.6.11	내각부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개발건설부	슈리성 2층저택 개수공사	오키나와종합사무국에서 건축공사 C, D등급
13	2018.6.8	국토교통성 홋카이도	3번지 직원숙소 B동	홋카이도개발국에서 건축공사 B, C, D

		개발국	개수공사	등급
14	2018.6.7	국토교통성 시코쿠지방정비국	타카마츠 제2국세 종합증축 공사	시코쿠지방정비국에서 건축공사 B, C등급
15	2018.6.7	국토교통성 홋카이도 개발국	쿠시로 지방법무국 키타지부 개수건축공사	홋카이도개발국에서 건축공사 B, C등급
16	2018.6.5	국토교통성 토호쿠지방정비국	하시모토 속사동 내 정비공사	토호쿠지방정비국에서 건축공사 C등급
17	2018.6.5	국토교통성 칸토지방정비국	기숙사동 내 정비공사	칸토지방정비국에서 건축공사 C, D등급 칸토지방정비국 관할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둘 것
18	2018.6.5	국토교통성 큐슈지방정비국	하마우라지구 간이주차장 정보실 신축공사	큐슈지방정비국에서 건축공사 B, C등급
19	2018.6.4	국토교통성 홋카이도 개발국	쿠시로 지방합동청사(법무국) 개수건축공사	홋카이도개발국에서 건축공사 B, C, D등급 주관적평가점수 65점 이하의 제외
20	2018.6.1	국토교통성 호쿠리쿠지방정비국	켄메이 기숙사 내진 개수공사	호쿠리쿠지방정비국에서 건축공사 C등급 니이가타 현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둘 것
21	2018.6.1	국토교통성 킨키지방정비국	직원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	킨키지방정비국에서 건축공사 B, C등급

자료 : 国土交通省

〈표 4-25〉 국토교통성 일반토목공사 발주 내역(2018년 6월분)

No.	공표일	발주기관	공사명	경쟁참가지격
1	2018.6.18	내각부 오키나와종합사무국 농림수산부	미야코이라부 농업수리사업 저수지3호 집수로 공사	오키나와종합사무국에서 농림토목공사 B등급 오키나와종합사무국 관할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둘 것
2	2018.6.18	내각부 오키나와종합사무국 농림수산부	이시가키 농업수리사업 간선수로연결공사	오키나와종합사무국에서 농림토목공사 C, D등급
3	2018.6.18	내각부 오키나와종합사무국 개발건설부	오로쿠도로 흙막이 설치공사	오키나와종합사무국에서 일반토목공사 C등급
4	2018.6.18	국토교통성 토호쿠지방정비국	오다테지구 전선공동구공사	토호쿠지방정비국에서 일반토목공사 C등급
5	2018.6.18	국토교통성 칸토지방정비국	하가사사이타마 암지구개량공사	칸토지방정비국에서 일반토목공사 C등급 사이타마 현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둘 것
6	2018.6.18	국토교통성 추오고쿠	오오타케지구 하천	추오고쿠지방정비국에서 일반토목공사 C

		지방정비국	관리용 통로 설치공사	등급
7	2018.6.18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	츠크우고쿠 카비라지구 지반개량공사	츠크우고쿠지방정비국에서 일반토목공사 C 등급
8	2018.6.18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	시코쿠지 신 히로시마교량 내진보강공사	시코쿠지방정비국에서 일반토목공사 C 등급
9	2018.6.18	국토교통성 정비국	큐슈지방 우에키 지구 중류굴 착공사	큐슈지방정비국에서 일반토목공사 C등급
10	2018.6.18	국토교통성 개발국	일반국도275호 에 베츠시 대교 교각공사	홋카이도개발국에서 일반토목공사 모든 등급 객관적사항평가 1,150점 이상
		이하생략		

자료 : 国土交通省

〈표 4-26〉 국토교통성 도장공사 발주 내역(2018년 6월분)

No.	공표일	발주기관	공사명	경쟁참가지격
1	2018.6.18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	국도9호쿠라야요시 관내 구획선공사	츠크우고쿠지방정비국에서 도장공사 모든 등급
2	2018.6.12	국토교통성 정비국	츠크부지방 기후국도 관내 구획 선공사	츠크부지방정비국에서 도장공사 모든 등급
3	2018.6.12	국토교통성 정비국	츠크부지방 42호 관내교통안전 공사	츠크부지방정비국에서 도장공사 모든 등급
4	2018.6.8	국토교통성 정비국	칸토지방 오미네사와교량 재 도장공사	칸토지방정비국에서 도장공사 모든 등급 칸토지방정비국 관할에 본점 또는 지점 을 둘 것
5	2018.6.8	국토교통성 정비국	킨키지방 후쿠이관내 구획선 설치공사	킨키지방정비국에서 도장공사 모든 등급 후쿠이 현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둘 것
6	2018.6.7	국토교통성 개발국	오사와교량 재도장 공사	홋카이도개발국에서 도장공사 모든 등급

자료 : 国土交通省

## 5. 소결

일본에서 공공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건설업자는 ① 건설업 허가를 가지고 있을 것, ② 경영사항심사를 받았을 것, ③ 세금 체납이 없을 것, ④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의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일본의 공공공사 입찰 프로세스에는 크게 자격 등록 단계와 개별공사의 입찰·계약 단계로 나뉠 수 있다. 자격등록 단계는 건설업 허가를 획득하여 건설업에 진입하고, 각 건설업체가 공공공사를 수주하고자 하는 발주기관에 등록(명부등록)을 하고 등급을 받는 단계에 해당한다. 발주기관 명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경쟁참가자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쟁참가자 자격 심사는 크게 객관적사항 심사인 경영사항심사제도와 주관적사항의 점수인 기술평가점수로 구성된다. 경영사항심사제도는 국토교통성에서 인정한 등록경영상황분석기관에서 경영규모와 경영상황에 기초하여 종합평정치를 산출한다. 종합평정치는 동일한 업체라면 누가 계산하더라도 동일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객관적사항 심사라고도 불린다. 경영사항심사 점수의 유효기간은 1년 7개월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매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술평가점수는 각 발주기관이 과거에 발주하고 해당 업체가 수주하여 진행한 프로젝트의 평가에 기초한다. 기술평가점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및 종료 후에 담당평정관이 채점한 공사 평정점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사항의 점수라고도 불린다.

각 발주기관은 고유의 공사 분류와 등급 부과 방식 및 등급에 따른 공사 수주 가능 범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은 21종으로 등록을 받으나, 오사카 부는 32종, 도쿄 도는 102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등록명부는 기본적으로 유효기간이 2년이므로, 2년에 1회 재신청이 필요하다.

초대형 건설업체의 도쿄 도 명부 등록 상황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건설업 허가를 획득하고 있는 건설업체도 12~14개의 업종에만 등록하고 있다. 중·대형 건설업체는 초대형 건설업체보다도 적은 수의 업종을 등록하고 있다. 지방소도시인 후쿠치야마시의 등록 명부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인 지명도

가 있는 업체는 없으며, 모두 후쿠치야마시에서 창업하거나 인근 지역의 업체이다. 초대형 건설업체라고 하더라도 수주를 위해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영업소를 설치할 수는 없으므로, 후쿠치야마시와 같은 소도시에는 자연스럽게 진입하지 못하는 것이다.

도쿄도의 2018년 3월, 4월 공공공사 발주 내역을 살펴보면 각 프로젝트 별로 발주등급이 평가되어 있지만, 수주할 수 있는 등급을 표기하고 있다. 수주 등급은 발주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발주 등급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 중소도시인 후쿠치야마시에서는 발주등급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주 등급을 공개하고 있다. 해당 수주 등급 가운데 발주담당자가 지명한 업체만이 경쟁하는 지명경쟁입찰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경쟁입찰방식같은 경우 본사를 후쿠치야마시에 위치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여 지역 업체들을 우선하고 있다.

## 1. 요약 및 결론

### 1) 일본 건설업 허가제도의 구성

일본의 건설업 허가제도는 1949년 건설업법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는 29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종합-전문의 수직구조가 아닌, 일식-전문의 수평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건설업체는 종합 또는 전문허가 가운데 하나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능력, 전략에 따라 다양하게 취득할 수 있다.

일본의 건설업 허가취득 고려 사항은 ① 담당 업무(공사), ② 하도급 규모, ③ 수주 지역의 3가지 항목으로 분류된다. ① 담당 업무(공사)는 사업자가 영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이며, ② 하도급 규모는 해당 사업자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맺는 원도급자가 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프로젝트에서 어느 정도의 하도급계약을 맺는가에 해당한다. ③ 수주 지역은 사업자가 1개 현에서만 사업을 할 것인지, 또는 전국 47개 도도부현에서 사업을 할 것인지에 해당한다. 또한 건설업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① 경영업무의 관리 책임자, ② 전임기술자, ③ 성실성, ④ 재산적 기초를 만족하고 있어야 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건설업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도급한 공사를 시공할 때 도급한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도급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공사시공의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현장에 주임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또한 특별히 원도급자에 한하여 하도급총액이 4,000만 엔이 넘는 경우에는 주임기술자 대신에 더 높은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감리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전문기술자는 일식공사에서 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공종을 시공하기 위해, 전문공사에서 500만 엔 이상의 부대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자로 주

임기술자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다.

기능자 가운데 독립하였으나, 아직 다른 기능인을 고용하지 못한 히토리오야도 개인사업자로서 조건을 만족하면 건설업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성에 대해 애매한 면이 있으며, 재해 보험 등에서 불리한 점이 존재한다.

건설업은 다양한 건설업체가 참가하고 다단계 하도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와 책임범위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다. 건설업법에서는 건설현장의 모든 업체의 허가 상태와 보험 상태, 그리고 배치되어야 하는 주임기술자 등의 상태를 명확하게 정리한 시공체제대장과 시공체제도를 작성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 2) 일본 건설업 허가 현황 및 통계

일본의 건설투자액은 1992년 최고액인 84조 엔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0년도에는 42조 엔까지 감소하였다. 현재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및 2013년 도쿄올림픽 개최결정으로 인해 건설 투자가 소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의 건설 허가업자 수는 약 46.5만 업체가 있으며, 이는 허가업자 수가 가장 많았던 1999년과 비교하면 약 22%가 감소한 것이고, 현재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일반건설업 허가를 획득한 업체는 44.2만 업체가 있으며, 특정건설업 허가를 획득한 업체는 4.5만 업체로, 일반건설업 허가를 획득한 업체가 특정건설업 허가를 획득한 업체의 약 10배에 달하고 있다.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는 전체의 2.7%, 도도부현 지사 허가는 전체의 97.3%에 해당하며, 일반건설업은 전체의 90.8%, 특정건설업은 9.2%에 해당한다. 모든 공종에 대해 발급된 허가 수는 1,519,653개로 허가업체 수로 나누어 보면 1업체 당 약 3.3개의 허가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업종 별로 보면 「비계·토공·콘크리트공사업」, 「건축일식공사업」, 「토목일식공사업」을 획득하고 있는 업체 수가 가장 많고, 「청소시설공사업」, 「착정공사업」, 을 획득한 업체 수가 가장 적다. 전체 허가 업체 수 가운데 약

48.4%는 단일 업종만을 가지고 있으며, 획득 개수가 늘어날수록 업체 수의 비율이 줄어든다. 일반건설업은 개인(히토리오야)과 자본금 2,000만 엔 미만의 업체가 다수 등록되어 있는 반면, 특정건설업의 등록조건에 자본금 2,000만 엔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건설업에는 대부분이 자본금 2,000만 엔 이상인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건설업체들의 허가 획득 현황을 살펴보면 초대형 건설업체들은 26~29개 공종을 국토교통성-특정건설업으로 취득하고 있으며, 대형 및 중형 건설사들은 14개~24개의 허가를 국토교통성-특정건설업으로 취득하고 있다. 소형건설업체들은 대부분 도도부현 지사 허가를 취득하고 있는 특징이 있으며, 자신들의 상황과 전략에 따라 일반건설업을 취득하는 경우도 특정건설업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사업자(히토리오야)의 경우에도 조건을 만족한다면 복수의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공공 발주자들은 자신들의 공공공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조건으로 자신들의 지역에 영업소를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건설업체들은 자신들의 수주전략과 경영 상태에 맞추어 각 도도부현에 영업소를 배치하고 있다. 초대형 건설사라고 하더라도 전국 47 도도부현 가운데 40개 정도에만 영업소를 배치하고 있으며, 대형, 중형건설사들은 영업소의 숫자가 더욱 감소한다. 소형 건설사는 기본적으로 도도부현 지사허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본점이 위치한 도도부현에서만 영업소의 설치가 가능하다.

### 3) 일본의 공공공사 시스템

일본에서 공공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① 건설업 허가를 가지고 있을 것, ② 경영사항심사를 받았을 것, ③ 세금 체납이 없을 것, ④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의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일본의 공공공사 입찰 프로세스에는 크게 자격 등록 단계와 개별공사의 입찰·계약 단계로 나뉠 수 있다. 자격등록 단계는 건설업 허가를 획득하여 건설업에 진입하고, 각 건설업체가 공공공사를 수주하고자 하는 발주기관에 등록(명부등록)을 하고 등급을 받는 단계에 해당한다. 발주기관 명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경쟁

참가자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쟁참가자 자격 심사는 크게 객관적사항 심사인 경영사항심사제도와 주관적사항의 점수인 기술평가점수로 구성된다. 경영사항심사제도는 국토교통성에서 인정한 등록경영상황분석기관에서 경영규모와 경영상황에 기초하여 종합평정치를 산출한다. 종합평정치는 동일한 업체라면 누가 계산하더라도 동일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객관적사항 심사라고도 불린다. 경영사항심사 점수의 유효기간은 1년 7개월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매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술평가점수는 각 발주기관이 과거에 발주하고 해당 업체가 수주하여 진행한 프로젝트의 평가에 기초한다. 기술평가점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및 종료 후에 담당평정관이 채점한 공사 평정점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사항의 점수라고도 불린다.

각 발주기관은 고유의 공사 분류와 등급 부과 방식 및 등급에 따른 공사 수주 가능 범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은 21종으로 등록을 받으나, 오사가 부는 32종, 도쿄도는 102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등록명부는 기본적으로 유효기간이 2년이므로, 2년에 1회 재신청이 필요하다.

초대형 건설업체의 도쿄도 명부 등록 상황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건설업 허가를 획득하고 있는 건설업체도 12~14개의 업종에만 등록하고 있다. 중·대형 건설업체는 초대형 건설업체보다도 적은 수의 업종을 등록하고 있다. 지방소도시인 후쿠치야마시의 등록 명부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업체는 없으며, 모두 후쿠치야마시에서 창업하거나 인근 지역의 업체이다. 초대형 건설업체라고 하더라도 수주를 위해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영업소를 설치할 수는 없으므로, 후쿠치야마시와 같은 소도시에는 자연스럽게 진입하지 못하는 것이다.

도쿄 도의 2018년 3월, 4월 공공공사 발주 내역을 살펴보면 각 프로젝트 별로 발주등급이 평가되어 있지만, 수주할 수 있는 등급을 표기하고 있다. 수주 등급은 발주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발주 등급보다 높을수도 낮을수도 있다. 중소도시인 후쿠치야마시에서는 발주등급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

주 등급을 공개하고 있다. 해당 수주 등급 가운데 발주담당자가 지명한 업체만이 경쟁하는 지명경쟁입찰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경쟁입찰방식의 경우 본사를 후쿠치야마시에 위치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여 지역 업체들을 우선하고 있다.

## 2. 정책적 시사점

### 1) 수평적인 건설업 구조 및 허가제도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의 건설업 허가는 2개의 일식허가와 27개의 전문허가가 병렬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허가체계는 아래의 표 5-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1〉 일본 건설업 허가과 업역

	단종공사	복합공사
원도급	전문허가	일식허가 또는 요구되는 전문 허가 전부
하도급	전문허가	전문허가

자료 : 저자작성

단종공사와 복합공사에서 원도급과 하도급의 어떠한 형태의 공사에서도 전문허가를 가진 업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허가 공종에 대해서 수주할 수 있다. 단종공사는 자신이 해당 전문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원·하도급 수주가 가능하고, 복합공사의 하도급 수주도 이와 동일하다. 복합공사의 원도급 계약은 일반적으로 일식허가를 요구한다. 그러나 2개 이상의 공종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공사라고 하더라도, 그 공사에서 필요한 모든 허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원도급으로 수주가 가능하다.

일식허가는 건설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하는 하나의 공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복합공사의 원도급계약을 맺을 수 있는 도급권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이해해야 할 점은 일식허가가 복합공사의 도급권

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시공권을 의미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비록 일식허가에 의해 원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전문허가 없이는 시공이 불가하다. 물론 일식허가만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가 전문허가의 기술자 조건에 해당하는 전문기술자를 고용하여 직접 시공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설업체는 일식허가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전문허가도 동시에 획득하고 있다.

일식허가를 포함한 모든 건설업종에 대한 허가는 조건만 만족한다면 상시 획득이 가능하다. 또한 건설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건설업체가 어떠한 허가를 취득했다라도 5년 후에는 자신의 허가 보유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즉 일본에서는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허가가 고착화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획득하고 취소하기 때문에 업역을 둘러싼 허가 관련 분쟁은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2007년 건설업자의 겸업을 제한하던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가 삭제되어 겸업제한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겸업업체가 1,400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 이유로서는 새로운 면허를 취득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며, 실적 인정의 불리함 등을 들 수 있다. 비용이나 실적 인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롭게 종합과 전문 허가를 수평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다면 건설업 허가과 업역을 둘러싼 분쟁은 제도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판단과 전략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결이 용이할 것이다.

## 2) 단순하고 낮은 건설업 허가 기준

우리나라에서 건설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먼저 종합건설업종을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업종별로 자본금(건축공사업:5억 원, 토목공사업/조경공사업:7억원,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12억 원), 건설기술자(건축공사업:5명, 토목공사업/조경공사업:6명, 토목건축공사업:11명, 산업·환경설비공사업:12명) 등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문건설업종은 업종

마다 다르며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준설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을 제외한 일반적으로는 2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기술자 2명을 요구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건설업종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허가 조건이 한 가지 기준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경영업무 관리책임자는 6년 이상의 건설업 경영업무 경험자인 경우 모든 건설업 허가 조건을 만족하며, 복수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중복으로 인정된다. 또한 전임기술자는 각 업종별 자격증이 구분되어 있으나, 한사람이 복수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각각의 기술자로서 인정된다. 자본금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500만 엔의 자본금이 있으면 복수의 일반건설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중복으로 인정된다. 특정건설업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000만 엔의 자본금이 있어야하며, 이 경우에도 복수의 특정건설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중복으로 인정된다. 일식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미장공사, 창호공사를 신청하는 경우도 그 허가 기준은 동일하며, 단지 기술자의 요구 자격증이 달라질 뿐이다. 오히려 일정 규모 이상의 하도급을 활용하는 특정건설업 허가에 대해서만 500만 엔보다 상향된 2,000만 엔으로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 건설업 등록 기준				일본의 건설업 허가 기준			
	자본금	기술자	시설 및 장비		경영업무 관리책임자	전임기술자	자본금
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법인 12억 원 이상 개인 24억 원 이상	11명	사무실	6년 이상의 건설업 경영업무 유경험자 1명	1명	일반건설업 : 500만 엔 이상  특정건설업 : 2,000만엔 이상
	토목공사업	법인 7억 원 이상 개인 14억 원 이상	6명	사무실			
	건축공사업	법인 5억 원 이상 개인 10억 원 이상	5명	사무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법인 12억 원 이상 개인 24억 원 이상	12명	사무실			
	조경공사업	법인 7억 원 이상 개인 14억 원 이상	6명	사무실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법인 2억 원 이상 개인 2억 원 이상	2명	사무실			
	토공사업	법인 2억 원 이상 개인 2억 원 이상	2명	사무실			
	⋮	⋮	⋮	⋮			
	철도궤도공사업	법인 3억 원 이상 개인 6억 원 이상	5명	시설 및 장비			
	포장공사업	법인 3억 원 이상 개인 6억 원 이상	3명	사무실			
⋮	⋮	⋮	⋮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1] 한국과 일본의 건설업 허가

일본의 건설업 허가제도에서는 복잡하고 세밀하게 칸막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준을 구성하고 이 기준은 모든 건설업체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단순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일식공사 허가 와 전문공사 허가의 조건 사이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술 자격만 확보 한다면 언제든지 수평적으로 확대, 축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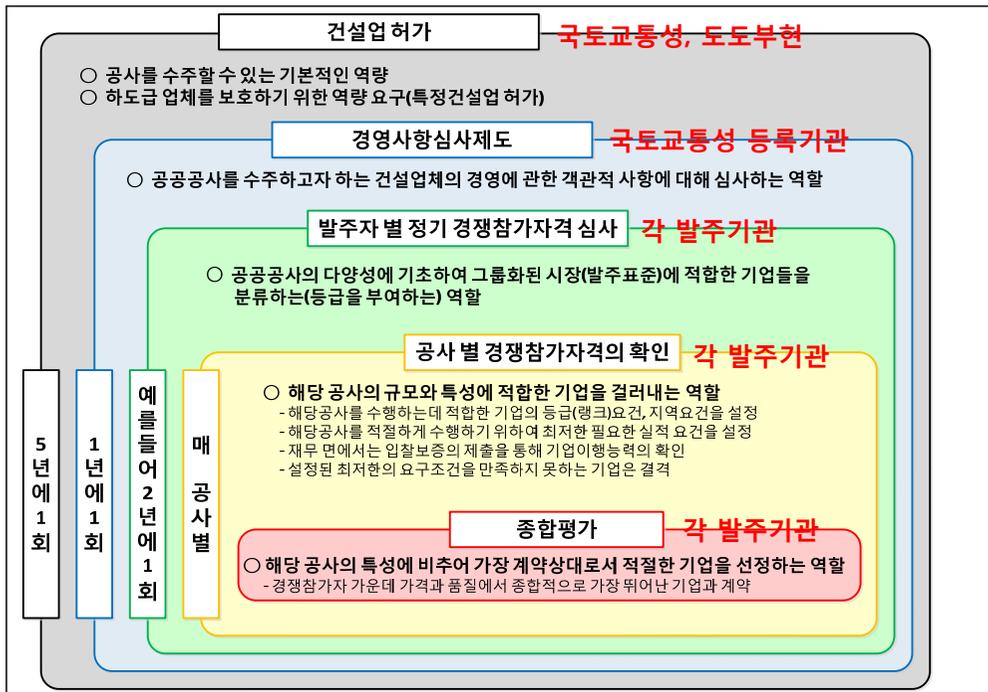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 건설업 허가의 기준은 우리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건설업에 기능자로 진입한 사람도 언제이후 경험이 쌓여감에 따라 언젠가 건설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즉 시장 진입을 위한 건설업 허가 조건은 느슨 하게 하여 진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 내 기업들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산업에 진입하는 기업들이 꾸준히 등장하여야 한다.

물론 낮은 건설업 허가 기준은 페이퍼 컴퍼니 또는 불량, 부적격 업체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건설업 허가가 시장(건설업 수주)과 직결되지 않고, 다음에서 설명하는 수많은 검증 단계를 통해 우수하고 적절한 기술력을 가진 건설업체가 선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 3) 건전한 건설시장 확보를 위한 검증단계 확보

제4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공공공사를 수주하기까지 많은 관문을 넘어야 한다. 첫 번째로는 국토교통성과 도도부현에서 건설업 허가 취득을 통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이는 5 년에 한 번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 국토교통성 등록기관을 통해 공공공사를 수주하고자 하는 건설업체의 경영에 관한 객관적 사항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객관적 사항의 유효기간은 1년 7개월로 되어 있으나, 지속적으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매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세 번째로는 건설업 허가 와 경영사항심사제도의 결과를 가지고 각 발주기관 별로 과거 공사 결과 점수(주관적 사항에 대한 심사)에 기초한 경쟁참가자격 심사를 받고, 발주기관의 명부에 업종별로 등록하고 등급을 부여받는다. 이 과정에서 실제

수주할 수 있는 시장의 영역은 건설업 허가 상황과 다소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건설업체의 전략에 따라 명부 등록 업종은 달라진다. 명부 등록 주기도 발주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2년에 1회 새로이 등록해야 한다. 네 번째로 각 발주기관에서 프로젝트 별로 지명경쟁입찰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발주기관의 발주담당자가 해당 건설업체의 상황을 확인하고 후보로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지명된 건설업체 후보들끼리 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선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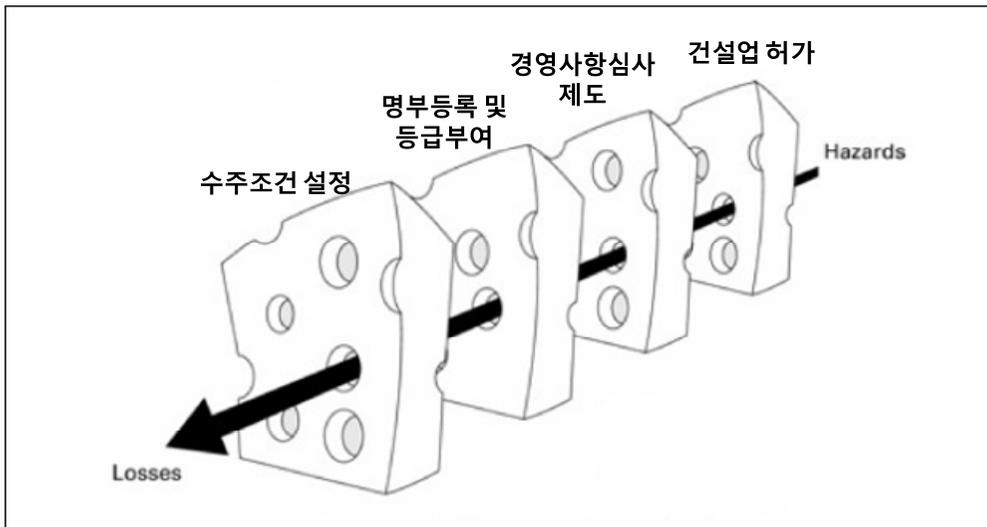
자료 : 저자작성

[그림 5-2] 건설업체 평가의 중첩 레이어

이러한 구조는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조달 시스템과 다소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통합성, 효율성, 편의성을 추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일본은 매우 다양한 주체가 관여하는 중첩 레이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효율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일본의 구조를 일종의 맨체스터 대학의 J.Reason 교수가 제안한 스위스

치즈 모델로 생각해볼 수 있다. 스위스 치즈 모델은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결함이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에 착안한 모델로서 여러 방호벽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한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여기서 부적합한 건설업체가 공공공사를 수주하는 것을 사고라고 한다면, 공공공사를 수주하기에 부적합한 건설업체는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이 체크하는 방호벽에서 걸러지게 되고, 수주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자료 : James Reason 그림을 저자 수정

[그림 5-3] 스위스 치즈 모델

예를 들면 수많은 건설업체가 존재하는 도쿄 도라고 하더라도 업종에 등급 제한까지 적용되면 실제로는 500개 이내의 업체만 수주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일본 건설업 허가의 획득은 우리나라보다 쉽더라도, 실제 공공공사의 수주로 이어지기는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에도 신뢰할 수 있는 검증단계를 확보함으로써 페이퍼컴퍼니를 배제하고, 경쟁력 있는 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조달 시스템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4) 건설업 성장 루트와 성장가능한 생태계 확보

일본의 건설업에서는 성장 루트가 연결되어 있다. 한사람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한 후 건설현장에 기능자로 취업을 하면 가장 처음에는 견습에 해당하는 미나라이로서 건설현장의 기능인의 길에 진입하게 되며, 기능을 연마하여 쇼쿠닌이 된다. 쇼쿠닌이 독립하여 히토리 오야카타가 되고, 추후 다른 쇼쿠닌을 고용하여 기업으로서의 체제를 갖춘 단계가 오야카타가 된다. 여기서 히토리 오야카타는 개인사업자로서 건설업 허가를 획득할 수 있고 하나의 독립된 건설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오야카타는 법인사업자).

히토리 오야카타 또는 오야카타는 A라고 하는 하나의 공종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로 시작하여 다른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A공종뿐만이 아니라 B공종, C공종까지 확장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건설 프로젝트의 전반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일식허가를 획득하게 된다. 일식허가를 획득함으로써 자신이 위치한 도도부현에서는 복합공종의 원도급을 경험하게 된다.

자신의 도도부현 안에서 일식공사와 전문공사의 경험을 축적하고 경쟁력을 키우다보면 인근 도도부현 또는 도쿄와 오사가 같은 대형 시장에 진출하고 싶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도도부현 지사 허가가 아닌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를 취득한다.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를 취득하면 전국구 건설업체로서 자신의 수주 전략에 따라 전국 건설 시장의 경쟁에 참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5-4] 일본 건설업의 성장 루트

형건설업체로 시작하여 대형, 초대형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토교통성 장관허가를 가지고 있는 중·대형, 초대형 건설업체가 각 도도부현의 시장에 참가하면 도도부현 지사 허가를 가지고 있는 소형 건설업체들은 낮은 경쟁력과 지명도로 인해 수주경쟁에서 밀리고 시장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도쿄 도 등 초대형 건설시장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를 제외한 도도부현에서는 제4장에서 다룬 후쿠치야마 시의 사례와 같이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자신들의 도도부현에 등록된 지역업체만을 입찰에 참가시키거나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본사가 해당 지자체에 위치하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두어 전국건설업체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한 사람의 기능자가 건설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루트가 단절되어 있으며, 또한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루트도 단절되어 있다. 우리나라 건설업에서도 개인으로 시작하여 경험을 축적하여 대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건설 산업의 성장루트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이종한 외, 「건설업체의 건축설계 겸업 금지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 2007.12. pp.71-81
- 신동우 외, 「건설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한 건설업종·업역 체계 개편 방안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보고서, 2009.1. pp.45
- 윤영선, 「한국 건설산업의 업역주의에 관한 문화적 고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 2012.1. pp.8-9
- 윤석진,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보고서, 2012.10, pp.199-208
- 최민수 외, 「일본 건설업 허가 및 시공 체제 제도 현황과 시사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 2015.11. pp.1-2
- 이승복 외, 「건설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보고서, 2016.10. pp.133-134
- 나경연, 「주요국의 건설업 영업범위 제한 규정과 정책적 제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 2016.8, pp.14-18
- 문혁 외, 「건설생산체계 효율화를 위한 상생협력형 발주제도 개선방안」, 건설산업정보센터 보고서, 2016.12 pp.43-44
- 이철행,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진입규제 개선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 2010.11. p.19
- 조재용,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본 건설산업의 대응 전략 및 시사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보고서, 2017.7. p.3-5
- 국토교통부,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대통령령 제27440호, 2016.8.

国土交通省, 「営業所における専任の技術者の取扱いについて」, 国総建第18号,  
2003.4

佐賀県建設・技術課, 「経営事項審査の手引き」, 2016.6.

国土交通省 土地・建設産業局 建設業課, 「建設業許可業者数調査の結果について  
- 建設業許可業者の現況 (平成29年3月末現在) -」, 2017.5

国土交通省 土地・建設産業局 建設業課, 「建設業許可業者数調査の結果について  
- 建設業許可業者の現況 (平成30年3月末現在) -」, 2018.5

京都市行財政局財政部契約課, 「平成29年度京都市競争入札参加有資格者名簿」,  
2017.6

京都府, 「建設業許可申請の手引き」, 2017.7

全国建設関係行政書士協議会, 「建設業許可制度の見直しについて」, 1999.4

国土交通省 総合政策局建設業課長, 「建設業許可事務ガイドライン」, 土建第276  
号, 2017.11

国土交通省近畿地方整備局 建政部建設産業第一課, 「建設業法に基づく適正施工体  
制と配置技術者」, 2016.6

佐賀県 建設・技術課, 「今日から学ぶ建設業法」, p.1

東京都, 「東京都公報」, 特定調達第2602号, 2018.3. pp.10-16

国土交通省 九州地方整備局 建政部 計画・建設産業課, 「施工体制台帳の作成ポ  
イント」, 2015.4, pp.4-10

岡山県 土木部, 「施工体制台帳の作成及び提出について」, 2015.3, p.6, 9-12

全国建設労働組合総連合, 「建設産業における今日的「一人親方」労働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2010.2, pp.16-21

長崎県土木部監理課, 「土木一式工事及び建築一式工事の考え方」, 2018.6.7.,  
[https://www.doboku.pref.nagasaki.jp/~kensetugyo/kyoka/issikiko  
uji.pdf](https://www.doboku.pref.nagasaki.jp/~kensetugyo/kyoka/issikiko uji.pdf)

国土交通省, 「建設業の許可とは」, 国土交通省, 2018.4.13.,  
[http://www.mlit.go.jp/totikensangyo/const/1\\_6\\_bt\\_000080.html](http://www.mlit.go.jp/totikensangyo/const/1_6_bt_000080.html)

国土交通省 四国地方整備局, 「建設業法上の「営業所」に該当する事務所とは」,  
[https://www.skr.mlit.go.jp/kensei/sangyou/01\\_kensetu/01-gaiyo/index.html](https://www.skr.mlit.go.jp/kensei/sangyou/01_kensetu/01-gaiyo/index.html)

国土交通省, 「許可申請の手続き」, 国土交通省, 2018.4.13.,  
[http://www.mlit.go.jp/totikensangyo/const/1\\_6\\_bt\\_000086.html](http://www.mlit.go.jp/totikensangyo/const/1_6_bt_000086.html)

国土交通省, 「監理技術者制度運用マニュアル」, 2016.12., p.7

国土交通省, 「建設業における社会保険加入対策について」, 国土交通省,  
2 0 1 8 . 4 . 1 3 . ,  
[http://www.mlit.go.jp/totikensangyo/const/totikensangyo\\_const\\_tk2\\_000080.html](http://www.mlit.go.jp/totikensangyo/const/totikensangyo_const_tk2_000080.html)

京都市行財政局財政部契約課, 「平成29年度京都市競争入札参加有資格者名簿」,  
2017.6. pp.2-53

大阪府, 「大阪府建設工事競争入札参加資格審査における等級区分及び工事金額」,  
2018. p.1

さいたま市財政局契約管理部契約課, 「建設工事の発注標準について」, 2017.3,  
p.2

福知山市, 「建設工事発注標準」, 2018.4. p.1

北海道庁, 「建設業許可の手続きについて」, 2008.6, pp.18-19

James Reason, 「Achieving a safe culture : theory and practice」,  
work&stress, 1998, Vol.12 No.3 pp.293-306



## [부록1]

# 일본 건설업법

[1949년 법률 제100호]

[2017년 6월 2일 개정]

번역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조재용

### [주 의]

- ※ 본 저작물은 참고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오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 본 저작물을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 본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금지합니다.

# 목 차

제1장 총칙 .....	173
제2장 건설업의 허가 .....	175
1절 통칙 .....	175
2절 일반건설업의 허가 .....	181
3절 특정건설업의 허가 .....	204
제3장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	208
1절 통칙 .....	208
2절 원도급인의 의무 .....	213
제3장의2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분쟁 처리 .....	216
제4장 시공기술의 확보 .....	224
제4장의2 건설업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사 등 .....	240
제4장의3 건설업자단체 .....	246
제5장 감독 .....	246
제6장 중앙건설업심의회 등 .....	254
제7장 잡칙 .....	256
제8장 벌칙 .....	260

#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적정화 등을 꾀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고, 발주자를 보호하며, 건설업의 건전한 발달을 촉진하고,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건설공사」는 토목과 건축에 관한 공사로 별표 제1의 상란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이 법률에서 「건설업」은 원도급 하도급 기타 어떠한 명칭을 불문하고 건설공사의 완성을 도급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3 이 법률에서 「건설업자」는 제3조 제1항의 허가를 받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이 법률에서 「하도급계약」은 다른 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와 또 다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 사이에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체결되는 도급계약을 말한다.

5 이 법률에서 「발주자」는 건설공사(다른 자로부터 도급받은 것을 제외)의 주문자를 말하며, 「원도급인」은 하도급계약에서 주문자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인」은 하도급계약에서의 도급인을 말한다.

## [제2조 관련]<sup>52)</sup>

1. 제2조제1항의 별표 제1의 위란에 기재된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업법(1949년 법률 제100호. 이하 법이라고 함) 제2조제1항의 별표 제1의 상란에 기재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1972년3월8일 건설성 고시 제350호에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예는 별표1에 따른다.

이 건설공사의 내용 및 예시는 현실의 건설업에서의 시공 실태를 전제로 하며, 시공기술의 상이, 거래 관행 등에 의하여 분류한 것이나, 각 공사의 내용은 각기 다른 공사의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토목일식공사 및 건축일식공사에는 반드시 2개 이상의 전문공사의 결합이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공사의 규모, 복잡성 등에 비추어 개별의 전문공사로서 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도 포함된다.

## 2. 허가업종 구분의 개념

각 업종에서 유사한 건설공사의 구분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 (1) 토목일식공사

- ①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공사」 가운데 교량 등의 토목공작물을 종합적으로 건설하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공사는 『토목일식공사』에 해당한다.
- ② 상하수도에 관한 시설의 건설공사에서 『토목일식공사』, 『관공사』 및 『하수도시설공사』 간의 구분 개념은 하수도의 배관공사 및 하수처리장 자체의 부지조성공사가 『토목일식공사』이며, 가옥 기타 시설의 부지 내 배관공사 및 상수도 등의 배수관을 설치하는 공사가 『관공사』이며, 상수도 등의 취수, 정수, 배수 등의 시설 및 하수처리장 내의 처리설비의 축조, 설치하는 공사가 『수도시설공사』이다. 또한 농업용수도, 관개용 급수시설 등의 건설공사는 『수도시설공사』가 아니라 『토목일식공사』에 해당한다.

### (2) 건축일식공사

빌딩의 외벽에 고정된 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공사는 『소방시설공사』가 아니라 건축물 구체의 일부공사로서 『건축일식공사』 또는 『강구조물공사』에 해당한다.

52) 사각 표 안은 2017년 11월에 개정된 건설업 허가 사무 가이드라인(2001년4월3일

## 제2장 건설업의 허가

### 제1절 총칙

(건설업의 허가)

**제3조**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구분에 따라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도도부현 구역 내에 영업소(본점 또는 지점 또는 정령에서 정하는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함. 이하 동일)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장관, 한 개의 도도부현 구역 내에서만 영업소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지사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단 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만을 도급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다음 호에서 열거하는 자 이외의 것
- 二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한 1 건의 건설공사에서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대금의 금액(그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도급대금의 총액)이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 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고자 하는 것

2 전 항의 허가는 별표 제1의 상란에 열거된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각각 같은 표의 하란에 열거된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3 제1항의 허가는 5년 마다 갱신을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을 경과하고 효력을 잃는다.

4 전 항에 따라 갱신 신청을 하였으나, 동항의 기간(이하 허가의 유효기간이라고 함) 만료일까지 그 신청에 대해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기존 허가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후도 그 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유효한 것

---

국총건 제97호)의 내용에서 건설업법 각 조문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임

으로 인정한다.

5 전 항의 경우에서 허가 갱신이 내려진 경우는 그 허가 유효기간은 종전의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6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자에 관한 동항의 허가(제3항의 허가 갱신을 포함. 이하 「일반건설업」의 허가라고 함)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에 관한 건설업에 대해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자에 관한 동항의 허가(제3항의 허가의 갱신을 포함. 이하 「특정건설업」의 허가라고 함)를 취득한 경우, 그 자가 보유하고 있던 해당 건설업에 대한 일반건설업의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제3조 관련]

#### 1. 허가 구분에 대해

##### (1) 장관 허가과 지사 허가

국토교통성 장관의 허가과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 구분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성 장관의 허가, 한 가지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서만 영업소를 설치하고,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과 되어 있으나, 이 경우 영업소는 해당허가에 관한 영업소만 아니라, 해당 건설업체가 가진 허가에 관한 건설업에 관한 모든 영업소로 해석한다. 즉 허가를 받은 업종에 대해서 경미한 건설공사만을 수행하는 영업소이라고 할지라도 법에 규정하는 영업소에 해당하고, 해당 영업소가 본부 영업소가 위치한 도도부현 이외의 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성 장관의 허가과 필요함.

##### (2) 일반건설업의 허가과 특정건설업의 허가

허가는 일반건설업과 특정건설업으로 구분하며, 동시에 하나의 건설업에 대해 일반건설업과 특정건설업 허가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단 하나의 건설업체가 2개 이상의 업종에 대해 각각 일반건설업 허가 및 특정건설업을 받을 수는 있다.

## 2. 영업소의 범위에 대해

「영업소」는 본점 또는 지점 또는 상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따라서 본점 또는 지점은 상시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무소가 아닌 경우이더라도, 다른 영업소에 대해 도급계약에 관한 지도감독을 행하는 등 건설업에 관한 영업에 실질적인 관여를 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영업소에 해당한다.

또한 「상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무소」는 도급계약의 견적, 입찰, 협의의 계약체결 등의 도급계약의 체결에 관한 실제적인 행위를 하는 사무소를 말하며, 계약서의 명의인이 해당사무소를 대표자인지의 여부는 관계없다.

또한 1.(1)과 같이 허가를 받은 업종에 대해서는 경미한 건설공사라고 하더라도, 제출한 영업소 이외에서는 해당업종에 대해 영업할 수 없다.

## 3. 건설업법 시행령(1956년 정령 제273호. 이하 정령이라고 함) 제1조의 2 제1항의 「목조주택」에 대해

- (1) 「목조」는 건축기준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을 말한다.
- (2) 「주택」은 주택, 공동주택 및 점포 등의 병용주택으로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주민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4. 정령2조의 「하도급대금의 금액」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공사 한건에 대해 원도급인이 4,000만 엔(건축일식공사에서는 6,000만 엔)이상의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이 4,000만 엔에는 원도급자가 제공하는 재료 등의 가격은 포함되지 않는다.

## 5. 동일업자의 2개 이상의 허가 유효기간의 정비(일원화)에 대해

하나의 업자가 이미 허가를 받은 후 또 다른 건설업에 대해 추가하여 허

가를 신청한 경우, 각각을 별개의 허가로서 각각 허가 년월일 및 허가의 유효기간을 다르게 취급하면 건설업의 허가를 취급하는 국토교통성 장관의 허가업무가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우며, 건설업체도 허가의 갱신 시기를 놓치는 원인이 되어 법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동일 업체가 별개의 2개 이상 허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 (1) 동일 업체가 개별로 2개 이상의 허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허가 갱신을 신청할 때에 가능한 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다른 건설업 허가에 대해서도 동시에 허가갱신으로서 신청시키고, 모든 허가를 맞추어 하나의 허가 갱신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 (2) 하나의 업체가 이미 허가를 받은 후 단순히 다른 건설업에 대해 추가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종래의 건설업 허가에 대해서도 동시에 허가를 갱신할 수 있게 하여 추가 허가로서 허가의 갱신(개별로 2개 이상을 받은 경우 그 모두)을 합쳐 한건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이 경우 추가하는 허가의 신청에 대해 어느 정도 심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시에 갱신 신청할 수 있는 종래의 건설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6. 허가의 유효기간 취급에 대해

- (1)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된 일자로부터 5년째의 허가된 일자의 전일로 만료된다. 또한 해당기간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 등의 휴일이더라도 해당 일자에 만료한다.
- (2) 건설업자가 복수의 건설업 허가의 유효기간 정비(일원화)를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건설업 허가에 대해서도 새로이 신청을 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7. 일반건설업 허가 및 특정건설업 허가 사이에 전환 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 허가의 효력에 대해서

(1) 건설업체가

- ① 일반건설업의 허가 유효기간 만료 일 이전에 해당허가를 특정건설업 허가로 전환 신청을 한 경우
- ② 특정건설업 허가 유효기간 만료 일 이전에 해당허가를 일반건설업 허가로 전환 신청을 한 경우

에 있어서 해당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해당 신청에 대해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때에는 해당 신청은 법 제3조제4항에 규정하는 「갱신 신청」으로 간주하여 취급한다.

- (2) (1)에 해당하는 신청을 한 경우 종전의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신청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는 (1)①의 경우는 일반건설업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후 특정건설업 허가에 관한 처분이 내려지기 까지 일반건설업 허가, (1)②의 경우는 특정건설업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후 일반건설업의 허가에 관한 처분이 내려지기 까지 특정건설업 허가가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취급한다.

8.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 한 후의 허가 효력에 대해

허가 갱신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의 만료 후에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불허가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허가는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이 경우 종전의 허가 유효기간 만료 후 해당 불허가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기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이 맺어진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불허가처분이 내려져 종전 허가의 효력이 없어진 후에도 법 제29조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속하여 시공이 가능하다.

9. 허가의 통지에 대해

- (1) 건설업 허가가 승인된 경우에는 신청자에 대해 당연히 통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별지1에 따라 통지한다. 또한 해당 통지는 직접 신청자에게 송부 또는 교부하며, 신청자가 해당통지를 확실하게 받았다는 취지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
- (2) 지사허가를 장관허가로 허가교체를 한 경우의 허가 통지는 별지2에 따라 통지한다.
- (3) 일반건설업의 허가에서 특정건설업 허가로 전환한 경우의 허가통지는 별지3에 따른다.

(허가의 조건)

**제3조의2**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제3조 제1항의 허가에 조건을 부여하고, 또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전항의 조건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 확보 및 발주자 보호를 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으로 하며, 해당 허가를 받는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면 안 된다.

**[제3조의2 관련]**

1. 허가에 대한 조건에 대해

허가 조건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 확보 및 발주자 보호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허가 효과에 제한을 더하는 것이다. 따라서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일정 제약이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조건을 요구할 것인가는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 비추어 판단한다.

또한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허가 조건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해당조건위반이 있더라도 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해당업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지시를 하고, 또는 영업정지를 명한다.

또한 일반건설업자에 관한 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드는 기준 및 특정 건설업자에 관한 법제7조제1호 및 법제15조제2호에서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를 만족하지 못하면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가를 취소해야 하므로, 해당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조건을 요구할 여지는 없다.

(부대공사)

**제4조** 건설업자가 허가를 받은 건설업에 관한 건설공사를 도급할 때에 해당 건설공사에 부대하는 다른 건설업의 건설공사를 도급할 수 있다.

**[제4조 관련]**

1. 부대공사에 대해

건설업자는 허가를 받은 건설업에 관한 건설공사 외에 해당건설공사에 부대하는 다른 건설업에 관련한 건설공사(이하 「부대공사」라고 함)를 도급할 수 있으나, 그 부대공사는 메인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종속적인 건설공사 또는 메인 건설공사 시공에 의해 필요하게 된 종속적인 건설공사이며, 그 자체가 독립적인 사용목적으로 제공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부대공사의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편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관행 등에 기준하여, 해당건설공사의 준비, 실행, 마감 등에 있어 일련 또는 일체공사로서 시공할 필요가 있거나 그에 준하다고 인정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제2절 일반건설업의 허가

(허가의 신청)

**제5조** 일반건설업 허가(제8조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하고, 이하의 절에서 「허가」라고 함)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성 장관에, 하나의 도도부현 구역 내에서만 영업소를 설치하고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一 상호 또는 명칭
- 二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三 법인인 경우 그 자본금액(출자총액을 포함. 이하 동일) 및 임원 등(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상담역, 고문, 기타 어떠한 명칭을 가진 자, 법인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 이사, 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배력을 가진다고 인정되는 자. 이하 동일)의 성명
- 四 개인인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 五 제7조제1호 ㄱ 또는 ㄴ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하는 임원 가운데 상근인 사람, 개인인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영업소별로 배치되는 동조 제2호 ㄱ 또는 ㄴ 또는 ㄷ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
- 六 허가를 받고자하는 건설업
- 七 이미 다른 건설업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종류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제6조** 제5조의 허가신청서는 국토교통성에서 정하는 대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一 공사경력서
- 二 직전 3년간의 각 사업연도 별 공사시공금액을 기재한 서류
- 三 사용인수를 기재한 서류
- 四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해당법인, 그 임원 등 및 정령에서 정하는 사용인, 개인인 경우에는 그 자 및 정령에서 정하는 사용인) 및 법정대리인(법인인 경우에는 해당법인 및 그 임원 등)이 제8조 각호에서 열거된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약하는 서면

五 다음 조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六 전 각호에서 열거된 서면 이외의 서류로 국토교통성에서 정한 것

2 허가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열거된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제5조 및 제6조 관련]**

1. 법 및 건설업법 시행규칙(1949년 건설성령 제14호. 이하 「규칙」이라고 함)에 규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이하 「허가신청서류」라고 함)의 취급에 대해

- (1) 허가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의 취소원서(별지4)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후에 허가신청서류를 직접 신청자에게 반납한다.
- (2) 허가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허가 거부통지서(별지5)를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또한 해당 통지서는 직접 신청자에게 송부 또는 교부하며, 신청자가 해당 통지서를 확실히 받았다는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 (3) 허가신청서류 이외의 서류에 대해서는 허가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대해 특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제시 또는 제출시키며, 획일적으로 제시 또는 제출시키지는 않는다.

(허가의 기준)

**제7조**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 허가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전무에 준하는 자를 말함. 이하 동일) 가운데 상근인 사람, 개인인 경우에는 그 자가 다음의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일 것

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에서 5년 이상 경영업무의 관리자로서

경험을 가진 자

- ㉑ 국토교통성 장관이 ㉑에 제시한 자와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인정하는 자

二 영업소 별로 다음의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를 전임으로 배치할 것

- ㉑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에 관한 건설공사에 관한 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26호)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중등교육학교를 졸업하고 5년 이상 또는 동법에 의한 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자로 재학 중에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학과를 이수한 자

- ㉒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에 관한 건설공사에 대해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자

- ㉓ 국토교통성 장관이 ㉑ 또는 ㉒에 제시한 자와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인정하는 자

三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법인 또는 그 임원 또는 정령에서 정한 사용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자 또는 정령에서 정한 사용인이, 도급계약에 관한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지 않은 자

四 도급계약을 이행하는데 재산적 기초 또는 금전적 신용이 부족하지 않은 자일 것

### [제7조 관련]

1. 경영업무의 관리책임자에 대해 (제1호)

- (1)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란 특분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 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을 말하며, 이사(取締役)는 주식회사의 이사(取締役)를 말하며, 집행역(執行役)은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의 집행역(執行役)을 말한다. 또한 「이에 준하는 자」는 법인격인 각종 조합의 이사 등을 말하며, 집행역(執行役), 감사역(監査役), 회계참여(會計參與), 감사(監事) 및 사무국장(事務局長)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집행역(執行役)에 준하는 위치이며, 허

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의 경영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집행역(執行役) 회의의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이사(取締役) 회의 또는 대표 이사(取締役)로부터 구체적인 권한위임을 받은 집행역(執行役)은 포함된다.

해당 집행역(執行役) 등이 「이에 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의 판단에 대해서는 규칙별도 양식 제7호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집행역(執行役)의 위치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取締役) 또는 집행역(執行役) 다음의 직제 상의 위치인 것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조직도 등 이에 준하는 서류
- 업무집행을 하는 특정 사업부문이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에 관한 사업부문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업무분장도에 준하는 서류
- 이사(取締役) 회의의 결의를 통한 특정 사업부문에 관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위탁을 받은 자로 선임되고, 이사(取締役)의 결의를 통해 정해진 업무 집행의 방침에 따라 특정 사업부문에 관하여 대표 이사(取締役)의 지휘 및 임명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집행에 전념하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정관, 집행역(執行役) 규정, 집행역(執行役) 직무분장규정, 이사(取締役) 회의 규칙, 이사(取締役) 업무규정, 이사(取締役) 회의의 언사록에 준하는 서류

(2) 「임원 가운데 상근인 자」는 원칙으로서 본사, 본점 등에서 휴일 및 기타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일정 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시간 중, 해당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해당된다. 또한 건축사사무소를 관리하는 건축사, 부동산업체의 전임 부동산중개사 등 법령에서 전임을 요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는 전임을 요하는 영업체 및 장소가 동일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근인 자」에 해

당하지 않는다 또한 「임원」은 「이에 준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역(執行役), 감사역(監査役), 회계참여(會計参与), 감사(監事), 사무국장(事務局長)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지배인」은 영업을 대신하여 그 영업에 관한 일체의 판단하는 행위를 대행할 권한을 가진 사용인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상업등기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영업업무의 관리책임자로서 경험을 가진 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取締役), 집행역(執行役) 또는 법인적인 각종 조합의 이사 등, 개인의 사업주 또는 지배인 기타 지점장, 영업소장 등 영업거래 상 대외적인 책임을 가지는 지위를 가지고 영업업무의 집행 등 건설업의 경영업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한 경험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본 호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에 대해 본 호의 ㄱ 또는 ㄴ에 해당하는 자를 하나의 건설업 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건설업에 대해 허가를 하는 경우, 하나의 건설업에 대해 본 호의 ㄱ 또는 ㄴ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가 다른 건설업에 대해서도 본 호의 ㄱ 또는 ㄴ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해당 다른 건설업에 대해서도 해당 자에 기초하여 본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또한 본 호의 ㄱ 또는 ㄴ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규정하는 전임 기술자로서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동일영업소(원칙 본사 또는 본점) 내에 한정하여 해당기술자를 전임기술자로도 인정한다.

(6) 건설업법 제7조제1호ㄱ에 든 자와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정하는 조건(1972년 건설성 고시 제351호. (6)에서는 「고시」라고 함)에 대해

①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에 관하여 경영업무의 관리책임자에 준하는 위치에 대해

(a) 집행역(執行役) 등으로 경영관리경험에 대해 (고시 제1호ㄱ)

- ㄱ 「경영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이사(取締役)회의의 결의를 통해 이사(取締役)회의 또는 대표 이사(取締役)로부터 구체적인 권한위임을 받고, 그 권한에 따라 집행역(執行役)으로서 건설업 경영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한 경험」(이하 「집행역(執行役)으로서의 경영관리경험」이라고 함)이란 이사(取締役)회의가 설치된 회사에서 이사(取締役)회의의 결의를 통해 특정 사업부문에 관한 업무집행권한의 위임을 받는 자로 위임되고, 이사(取締役) 회의를 통해 정해진 업무집행방침에 따라 대표 이사(取締役)의 지휘 및 명령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업무집행에 전념한 경험을 말한다.
- ㄴ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에 관한 6년 이상의 보좌경험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에 관한 보좌경험의 기간과,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 및 이외의 건설업에 관한 집행역(執行役)으로서의 경영관리경험 및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 및 이외의 건설업에서의 경영업무의 관리책임자로서의 경험의 기간이 합산 6년 이상인 경우에도 본 ㄴ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ㄷ 법인, 개인 또는 양방에 대해 6년 이상의 보좌경험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인, 개인 여부에 관계없이 본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ㄹ 본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규칙별기양식 제7호 및 별지6에 의한 인정조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피인정자가 본 호에서의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 피인정자의 경험이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取締役), 집행역(執行役) 또는 법인적인 각종조합 등의 이사 등, 개인의 사업주 또는 지배인 기타 지점장, 영업소장 등 영업 거래 상대방적인 책임을 가지는 지위의 경험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조직도,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 피인정자의 경험이 보좌경험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업무분장규정, 과거 품의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 보좌경험의 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인사발령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②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 이외의 건설업에 관한 경험에 대해

(a) 경영업무의 관리책임자로서의 경험에 대해 (고시 제2호ㄱ)

ㄱ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 이외의 건설업에 대해 6년 이상 경영업무의 관리책임자로서의 경험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 이외의 건설업에 대한 경영업무의 관리책임자로서의 경험 및 집행역(執行役)으로서의 경영관리경험의 기간이 합산 6년 이상인 경우에도 본 호 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ㄴ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 이외의 건설업에 관한 6년 이상의 경영업무 관리책임자로서의 경험에 대해서는 단일 업종 구분에서 6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업종구분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

(b) 집행역(執行役)으로서의 경영관리경험에 대해 (고시 제2호ㄴ)

ㄱ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 이외의 건설업에 대해 집행역(執行役)으로서 6년 이상의 경영관리경험에 대해,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 이외의 건설업에 대해 집행역(執行役)으로서 경영관리경험의 기간과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에 관한 경영업무의 관리책임자로서의 경험 및 집행역(執行役)으로서의 경영관리 경험 및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 이외의 건설업에 대해 경영업무의 관리책임자로서의 경험기간이 합산 6년 이상인 경우도 본 호 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ㄴ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 이외의 건설업에서 6년 이상 집행역(執行役)으로서의 경험에 대해서는 단일 업종 구분에서 6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업종구분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

ㄷ 본고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 대해서는 규칙별기양식 제7호 및

별지6에 의한 인정조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피인정자가 본 호口에서의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 집행역(執行役)의 입지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取締役) 또는 집행역(執行役), 직제상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조직도,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 업무집행을 하는 특정 사업부문이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 이외의 건설업에 관한 사업부문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업무분장규정,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 이사(取締役)회의의 결의를 통해 특정 사업부문에 관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선임되고, 이사(取締役)회의의 결의를 통해 결정된 업무집행의 방침에 따라 특정 사업부문에 관하여 대표이사(取締役)의 지휘 및 명령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집행에 전담하는 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정관, 집행역(執行役)규정, 집행역(執行役)업무분장규정, 이사(取締役)회의 규칙, 이사(取締役)규정, 이사(取締役)회의의 의사록,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 집행역(執行役)으로서 경영관리경험의 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이사(取締役) 회의의 의사록, 인사발령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 2. 전임기술자에 대해 (제2호)

- (1) 「전임」인 자는 그 영업소에 상근하여 오직 해당 직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회사의 사원인 경우에는 그 자의 근무상황, 급여지불 상황, 그 자에 대한 인사권의 상황 등을 통해 「전임」 여부를 판단하며, 판단 기준을 만족하여 전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견사원인 경우에도 전임기술자로 취급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전임」인 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

한다.

- ① 주소가 근무에 필요한 영업소의 소재지로부터 확연히 원거리이며, 상식적인 통근 불가능한 자
  - ② 타 영업소(다른 건설업체의 영업소를 포함)에 전임인 자
  - ③ 건축사사무소를 소관하는 건축사, 전임 부동산 중개사 등 타 법령에 의해 특정 사무소에서 전임으로 있을 것을 요구받는 자(건설업에서 전임을 요구하는 영업소가 타 법령에 의해 전임을 요구하는 사무소 등과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 사무소 등에서 전임을 요구하는 자를 제외)
  - ④ 그 외 개인영업을 하고 있는 자, 타 법인의 상근임원인 자 등 기타 영업에 전임에 가까운 상태라고 인정되는 자
- (2) 「실무 경험」이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기술상의 모든 직무경험을 말하며, 단순한 건설공사의 잡무만의 경험년수는 포함되지 않으나, 건설공사의 발주에 필요한 설계기술자로서의 설계에 종사하거나, 현장감독기술자로서 감독에 종사한 경험, 토공 또는 그 견습으로 종사한 경험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실무 경험 기간은 구체적으로 건설공사에 관련한 경험으로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경험기간을 합친 기간으로 한다. 또한 경험기간이 중복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으나, 2016년 5월 31일까지 비계·토공사업 허가로 도급한 해체공사에 관한 실무 경험 기간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1일 이후 비계·토공사업 및 해체공사업 양 쪽의 실무 경험 기간으로서 이중으로 계산할 수 있고, 전기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가운데 전기공사사 면허장, 소방시설사 면허장의 교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공사에 직접 종사한 경험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사 면허장, 소방시설사 면허장의 교부를 받은 자로서 종사한 실무의 경험만을 경험기간으로 인정하고, 건설리사이클법 시행 후의 해체공사에 관한 경험은 비계·토공공사업 허가 또는 건설 리사이클 법에 기초한 해

제공사업을 등록하고 수주한 것에 한정하여 경험기간으로 인정한다.

- (3) 본 호의 취급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건설업에 대해 허가를 하는 경우에 하나의 건설업에 대해 본 호의 ㄱ, ㄴ 또는 ㄷ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가 다른 건설업에 대해서도 본 호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다른 건설업에 대해서도 그 자를 본 호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또한 경영업무의 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자와 전임기술자를 중복하여 인정하는 것은, 근무장소가 동일영업소인 경우만 가능하다.

### 3. 성실성에 대해 (제3호)

- (1) 「부정행위」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에 있어서 사기, 협박, 횡령 등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불성실 행위」는 공사내용, 공기,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의 부담 등에 대해 도급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그 비상근임원을 포함한 임원 및 사용인(지배인 및 지점 및 상시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영업소의 대표자(지배인인 경우를 제외) 이하 동일)이,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자 및 사용인이, 건축사법(1950년 법률 제202호), 택지건물거래업법(1952년 법률 제176호) 등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를 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그 최종 처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원칙으로 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 (3) 허가를 받고 지속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정된 경우 또는 (2)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 4. 재산적 기초 및 금전적신용에 대해(제4호)

- (1) 「도급계약」에는 공사 1건의 도급 대금 기준으로 1,500만 엔 미만의

건축일식공사 또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의 목조주택공사, 500만 엔 미만의 건축일식공사 이외의 공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이 금액에 동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사 완성을 2개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에 기초하여 계약을 분할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계약의 도급대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또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 또는 시장가격과 운송비의 합에 해당하는 도급계약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다음의 ①, ② 또는 ③에 해당하는 자는 도산 상태가 아닌 한 본 호의 기준에 적용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① 자기자본액이 500만 엔 이상인 자

② 500만 엔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주) 담보로 할 수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500만 엔 이상의 자금을 대해 용자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는 거래금융기관의 용자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를 인정한다.

③ 허가신청 직전 과거 5년간 허가를 받고 지속하여 영업실적이 있는 자

(3) 「자기자본」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에서의 총자산 합계액을, 개인인 경우에는 기초자본금, 사업주의 사업용 계좌 및 사업주 이익의 합계액에서 사업주 대출액을 제외한 금액에 부채에 계상되어 있는 이익보유성의 충당금 및 준비금 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4) 이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원칙으로서 기존 기업은 신청 시의 직전 결산기의 재무제표를 통해, 신규설립기업은 창업 시의 재무제표를 통해 실시한다.

(5) 본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해당 허가를 내릴 때 판단하는 것으로 하며, 허가 후에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즉시 해당 허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법 제15조제3호의 기준에 대해서도 동일)

**제8조**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지사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 가운데 중요한 사항에 허위가 있거나,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는 허가를 할 수 없다.

- 一 성년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하지 않은 자
- 二 제29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일반건설업의 허가 또는 특정건설업의 허가가 취소되어, 그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三 제29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일반건설업의 허가 또는 특정건설업의 허가의 취소 처분에 관한 행정절차법(1993년 법률 88호),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내려진 날 또는 처분하지 않는 것이 결정된 날까지의 사이에 제1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취지의 동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자로 해당 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四 전 호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제1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취지의 동조 규정에 의해 신고가 있던 경우, 전 호의 통지 일 전 60일 이내에 해당 신고에 관한 법인의 임원 또는 정령에서 정하는 사용인이었던 자 또는 해당신고에 관한 개인의 정령에서 정하는 사용인이었던 자로, 해당 신고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五 제28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령받고, 이 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六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에 대해 제29조의4의 규정에 따라 영업금지를 명령받고, 그 금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七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 집행이 종료되고, 또는 그 형 집행을 받는 것이 없어진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八 이 법률, 건설공사의 시공 또는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사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정령에서 정하는 것 또는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의 규정(동법

제32조의3 제7항 및 제32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제외)을 위반하거나 또는 형법(1907년 법률 제45호) 제204조, 제206조, 제208조, 제208조의2, 제222조 또는 제245조의 죄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26년 법률60호)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는 것이 없어진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九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 행위 방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원 및 동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제13호에서 「폭력단원」이라고 함)

十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 행위능력을 가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그 법정대리인이 전 각 호 또는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

十一 법인으로 그 임원 또는 정령에서 정하는 사용인 가운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자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당하기 이전부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가 제12조제5호에 해당하는 취지의 동조 규정에 따라 신고되기 이전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가 제29조의4 규정에 의해 영업금지되기 이전부터, 건설업자인 해당법인의 임원 또는 정령에서 정하는 사용인이었던 자를 제외)

十二 개인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사용인 가운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가 제29조 규정에 의해 허가를 취소당하기 이전부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가 제12조제5호에 해당하는 취지의 동조규정에 따라 신고되기 이전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가 제29조4의 규정에 의해 영업금지되기 이전부터, 건설업자인 해당개인의 정령에서 정하는 사용인이었던 자를 제외)

十三 폭력단원 등이 그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

### [제8조 관련]

#### 1. 법 제8조 본문 괄호 취지

허가 신청이 갱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허가 거부사유가 되지 않는 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법 제3조의 허가가 업종별로 나뉘어 있으며,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취소를 받지 않은 다른 건설업 허가는 갱신이 필요하다는 것, 영업정지 또는 금지하는 허가의 갱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2. 법 제8조 제11호 및 제12호의 괄호 취지

법 제8조 제11호 및 제12호 괄호는 허가신청자인 임원 또는 일정 사용인 가운데 법 제8조 제2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더라도, 그 자가 해당 사유에 해당하기 전부터 해당 허가신청자의 임원 또는 일정 사용인이었던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즉시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이다.

#### 3. 임원의 결격요건의 판단에 대해

임원의 일람표(양식 제1호 별지1)에 기재된 자 가운데 「고문」, 「상담역」, 주주 등 및 「기타 명칭 관계없이 법인에 대해 업무를 집행(운영)하는 사원, 이사(取締役), 집행역(執行役) 또는 이에 준하는 동등 이상의 지배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가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명칭 관계없이 법인에 대해 업무를 집행(운영)하는 사원, 이사(取締役), 집행역(執行役) 또는 이에 준하는 동등 이상의 지배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래의 「임원」과 같다고 취급하지만, 「고문」, 「상담역」 및 주주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해 업무를 집행(운영)하는 사원, 이사(取締役), 집행역(執行役)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지배력을 가지는 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허가 교체의 경우 이전 허가의 효력)

**제9조** 건설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여 계속하여 허가를 받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 一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를 받은 자가 한 개의 도도부현 구역 내에서만 영업소를 가지게 된 경우
- 二 도도부현 지사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의 영업소를 폐지하여 다른 하나의 도도부현 구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게 된 경우
- 三 도도부현 지사 허가를 받은 자가 2개 이상의 도도부현 구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2 제3조 제4항의 규정은 건설업자가 전항 각 호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허가를 받은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 규정에 따라 신청하면, 제6조제2항의 규정은 그 신청하는 자에 준용한다.

**[제9조 관련]**

1. 허가 신규교체에 대해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가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가행정청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허가행정청에 대해 신규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2. 허가 신규교체의 취급에 대해

- (1) 허가 신규교체의 신청 취급은 신규 허가 신청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 (2) 허가 신규교체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신청서의 원본에 신청 당시 이미 받고 있는 건설업 허가의 통지서 복사를 첨부해야 한다.

### 3. 허가 신규교체의 첨부서류 이관에 대해

- (1) 제9조 제2항에 따라 허가 신규교체를 신청하는 건설업자는 법 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이하 「공사경력서」 등 이하 함)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공사경력서 등의 첨부를 생략하여 허가 신규교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받은 지방정비국장, 홋카이도개발국장 및 오키나와 종합사무국장(이하 「지방정비국장 등」)은 종전의 허가행정청과 연계하여, 이전 허가 행정청에 제출된 공사경력서 등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이해하고 해당신청을 심사해야 한다.
- (2) (1)의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허가 신규교체를 승인한 지방정비국장 등은 이전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에 관한 공사경력서를 송부해줄 것을 의뢰한다.
- (3) (2)에 의해 공사경력서 등의 송부를 받은 지방정비국장 등은 송부받은 공사경력서 등을 허가 신규교체 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와 함께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제공한다.

### 4.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의 허가 효력에 대해

허가 신규교체 신청에 따른 심사 결과, 이전 허가의 유효기간의 만료 후에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해당 불허가 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허가가 효력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이 경우 이전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후 해당 불허가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기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의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불허가 처분이 내려져서 이전 허가가 그 효력을 잃은 후에도 법 제29조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해서 시공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 및 허가수수료)

**제10조**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등록면허세법(1967년 법률 제35호)에서 정하는 등록면허세 및 정령에서 정하는 허

가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등록면허세
- 二 제3조 제3항의 허가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 및 이미 다른 건설업에 대해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를 받고 있는 자는 허가수수료

**[제10조 관련]**

1. 등록면허세 취급에 대해

일반건설업 허가 또는 특정건설업 허가 가운데 하나를 국토교통성 장관으로부터 받은 자가 새롭게 다른 공종에 대해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2호의 「이미 다른 건설업에 대해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한다.

2. 등록면허세의 납부 및 환급에 대해

(1) 등록면허세의 납부에 대해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정비국, 홋카이도개발국 및 오키나와 종합사무국(이하 「지방정비국 등」이라고 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거나, 또는 일본은행, 국세 납부를 수행하는 일본은행세입대리점 또는 우편국을 통해 지방정비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납부해야 한다.

(2) 등록면허세의 환급에 대해

허가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거절된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따라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다는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 ① 허가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을 취소하는 서류(별지 4)에 등록면허세의 환급액서(별지 7)를 붙여 직접 지방정비국 건정부

건설산업과장에게 제출한다.

- ② 허가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환급원서에 해당신청에 따라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영수증서를 붙여 직접 건설산업과장에게 제출한다.

### 3. 비과세의 경우에 대해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를 받는 자이더라도 개인으로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를 받은 자의 상속인이 계속해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 및 법인으로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기 위하여 해산하고 새롭게 설립 또는 인수·합병한 법인이 계속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4. 허가수수료에 대해

허가 갱신의 신청 및 업종추가 신청을 한 자가 납부한 허가수수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 (변경 등의 신청)

**제11조**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는 제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열거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취지의 변경신청서를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시에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열거된 서류 및 기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매년 사업연도가 경과하는 4월까지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3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는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열거된 서류 및 기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서류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년

사업연도가 경과하는 4월까지 그 취지를 서면으로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4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는 제7조제1호 ㄱ 또는 ㄴ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명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그 지배인이 아니게 된 경우 또는 동호 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영업소에 배치하는 동조 제2호 ㄱ 또는 ㄴ 또는 ㄷ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명된 자가 해당영업소에 배치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동호 ㄷ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이를 대신할 사람이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에 그 자에 대해 제6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서면을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 5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는 제7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만족하지 않게 되었을 때 또는 제8조제1호 및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를 만족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 관련]

##### 1. 변경신청서의 효력에 대해

변경신청서(양식 제22호의2), 국가자격자 등·감리기술자일람표(신규·변경·추가·삭제)(양식 제12호의2), 신청서(양식 제22호의3) 등의 신청서는 해당 신청에 관한 사항이 허가요건에 관한 것이며,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은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경유청이 접수한 때에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 2. 변경신청서의 취급에 대해

###### (1) 변경신청서(양식 제22호의2)에 대해

- ① 본 신청서는 신청사항에 대해 변경에 관한 부분만을 기재하면 된다. 또한 변경 내용이 ◎「입력사항」의 각 란에 든 사항에 관련된 경우는 해당하는 란에도 변경 후의 내용을 기재한다.
- ② 「우편번호」, 「전화번호」의 란은 한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양쪽 다

기재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③ 법 제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된 사항에 대해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본 신청서에 기재한다.

(2) 사업보고서에 대해

회사법(2005년 법률 제86호) 제438조 규정에 따라 이사(取締役)가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한 사업보고서와 동일한 것을 매년 사업연도 경과 후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양식은 따로 정하지 않는다. 사업보고서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를 소집하기 위한 통지서 등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결산서 등과 함께 한권으로 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책자를 제출하면 된다.

- (3) 법 제11조 제1항 규정 가운데 임원 등의 일람표(양식 제1호별지1)에 기재해야 하는 총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5이상을 가지는 주주의 변경이 있던 경우는, 변경을 인지하고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이미 기재되어 있는 주주의 소지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는 제출할 필요 없다.

- (4) 법 제1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 건강보험 등의 가입상황(양식 제20호의3)은 제출시점의 상황을 기재한다.

- (5) 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해 제출 또는 신청해야 하는 서면은 별지8에 따라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법인번호의 란은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번호(행정절차에서 특정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27호) 제2조 제15항에 규정하는 법인번호를 말한다)의 지정을 지시받은 경우에 해당 법인번호를 기입한다.

(6) 신청서(양식 제22호의3)에 대해

본 신청서는 이미 증명된 경영업무의 관리책임자 또는 전임기술자를 삭제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경영업무의 관리책임자 또는 전임기술자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건설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 경우는

폐업신청서(양식 제22호의4)와 본 신청서가 동시에 제출될 필요가 있으나, 이외에도 경영업무의 관리책임자로서 경험년수가 7년 이상이 된 자가 있기 때문에 복수의 경영업무 관리책임자를 한 명으로 줄이는 경우, 일부 영업소를 폐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배치되었던 전임기술자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전임기술자에 대해서는 상기의 경우에 폐업하지 않는 건설업에 대해 계속해서 전임기술자가 되는 자 또는 영업소의 폐지에 수반되어 소속하는 영업소를 변경하여 계속하여 전임기술자가 되는 자에 대해서는 본 신청서가 아니라, 전임기술자증명서(신규·변경)(양식 제8호)를 이용하여 신청한다.

**제12조**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각호에서 열거하는 자는 30일 이내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그 취지를 제출해야 한다.

- 一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二 법인이 합병을 통해 해산한 경우는 그 임원이었던 자
- 三 법인이 파산절차개시 결정을 통해 해산한 경우는 그 파산관재인
- 四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절차개시 결정이외의 사유에 의해 해산한 경우는 그 청산인
- 五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를 폐지한 경우는 해당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였던 개인 또는 해당허가를 받은 건설업자였던 법인의 임원

**[제12조 관련]**

1. 폐업신청서(양식 제22호의4)의 취급에 대해

- (1) 법 제12조 규정에 따른 신청은 본 양식에 따라 진행한다. 또한 일부 업종만을 폐업하는 경우는 전임기술자 증명서(신규·변경)(양식 제8호(1))에 의한 전임기술자의 변경 또는 신청서(양식 제22호의3)

에 의한 전임기술자의 삭제가 필요하므로 본 신청과 동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행정청 측 기입란」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기입한다.

「정리구분」란은 폐업 사유에 대해 다음의 분류에 따라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할 것

「1 폐업」 - 법 제12조 각호에 해당하여 건설업자 스스로가 건설업을 폐업하는 경우

「2 취소」 - 허가행정청이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3 효력정지」 - 허가 유효기간이 경과해도 갱신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결재년월일」란은 폐업에 대하여 결재한 년월일을 기재한다.

## 2. 허가의 취소 통지에 대해

폐업신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자에게 별지 9를 통해 통지한다. 또한 해당 통지는 직접신청자 주소로 송부 또는 교부하며, 신청자가 해당통지를 확실히 수령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13조**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서류의 원본 또는 복사본을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소를 설치해야 한다.

- 一 제5조의 허가신청서
- 二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서류(동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에 한정)
- 三 제11조 제1항의 변경신청서
- 四 제1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 五 제1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제6조 제1항 제3호 서면의 기재사항 변경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서면

## 六 전 각호의 서류 이외에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 것

(국토교통성령에의 위임)

**제14조**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허가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다.

### 제3절 특정건설업의 허가

(허가의 기준)

**제15조**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특정건설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허가를 발행할 수 있다.

- 一 제7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일 것
- 二 그 영업소 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전임으로 배치할 것. 단 시공 기술(설계도서)에 따라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말함. 이하 동일)의 종합성, 시공기술의 보급상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령에서 정하는 건설업(이하 「특정 건설업」을 말함)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그 영업소 별로 배치하는 전임인 자는 ㄱ에 해당하는 자 또는 ㄴ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성 장관이 ㄱ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인정한 자여야만 한다.
  - ㄱ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술검정 기타 법령 규정에 의한 시험에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 업종에 대해 국토교통성 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합격한 자 또는 기타 법령 규정에 의해 면허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 종류에 대해 국토교통성 장관이 인정한 자
  - ㄴ 제7조 제2호 ㄱ, ㄴ 또는 ㄴ에 해당하는 자 가운데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의 건설공사에서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주 받고, 그

- 도급대금액이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공사에서 2년 이상  
지도감독적 실무 경험을 가진 자
- ハ 국토교통성 장관이 ㄱ 또는 ㄴ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능  
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자
- 三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에서 그 도급대금액이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  
상인 것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재산적 기초를 가질 것

**[제15조 관련]**

1. 전임기술자에 대해 (법 제15조제2호)

- (1) 영업소에 배치하는 기술자에게 요구하는 실무 경험은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한 건설공사로 제한하며, 발주자 측으로의 경험, 원도급자  
로부터 도급한 건설공사의 실무경험은 포함되지 않는다.
- (2) 지도감독적 실무경험에 대해
  - ① 「지도감독적인 실무 경험」이란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 전반에  
대해 공사현장주임자 또는 공사현장감독자와 같은 입장에서 공사  
의 기술면을 종합적으로 지도감독한 경험을 말한다.
  - ② 지도감독적인 실무 경험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의  
건설공사로,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받고, 그 도급대금이 4,500만  
엔 이상인 프로젝트에 2년 이상 지도감독적인 실무 경험이 필요하  
나, 1984년 10월 1일 전에 도급대금액이 1,500만 엔 이상 4,500  
만 엔 미만의 건설공사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 및 1984년 10월 1  
일 이후 1994년 12월 28일 이전에 도급대금액이 3,000만 엔 이  
상 4,500만 엔 미만의 건설공사에서 축적한 실무경험은 4,500만  
엔 이상의 건설공사의 경험으로 간주하고, 이를 2년 이상의 기간  
에 반영한다.
- (3) 법 제7조 제2호 ㄱ부터 ㄴ까지에 해당하기 위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 제15조 제2호 ㄴ에 해당하기 위한 기간 전부 또는 일부  
와 중복하는 경우는 해당 중복되는 기간을 법 제7조 제2호 ㄱ부터

ハ까지에 해당하기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며, 법 제15조 제2호 ㄱ에 해당하기 위한 기간으로 산정해도 된다.

또한 실무 경험의 기간은 구체적으로 건설공사에 관련한 실무 경험으로 해당 건설공사에서 관련한 경험기간을 축적한 합계 기간으로 한다. 또한 경험기간이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2중 계산하지 않으나, 2016년 5월 31일까지 비계·토공사업 허가를 가지고 도급한 해체공사에 관련한 실무경험 기간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1일 이후 비계·토공사업 및 해체공사업 양쪽의 실무경험기간으로서 2중으로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전기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가운데 전기공사사 면허, 소방설비사 면허 등을 교부받은 자 등이 아니라면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공사에 직접 종사한 경험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사면허, 소방설비사 면허 등을 교부받은 자로서 종사한 실무 경험에 한정하여 경험기간으로 인정하고, 건설 리사이클 법 시행 후에 해체공사에 관련한 경험은 비계·토공사업허가 또는 건설 리사이클법에 따른 해체공사업으로 등록하여 도급한 것에 한정하여 경험기간으로 인정한다.

## 2. 재산적 기초에 대해 (법 제15조 제3호)

(1) 아래의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자는 도산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 ① 결손금액이 자본금의 20%를 넘지 않음
- ② 유동비율이 75%이상일 것
- ③ 자본금액이 2,000만 엔 이상이며, 자기자본액은 4,000만 엔 이상일 것

(2) 「결손금액」이란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의 이월이익잉여금이 적자인 경우에 그 액이 자본잉여금, 이익준비금 및 임의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개인인 경우 사업주손실이 사업주상용계정에서 사업주 용자계정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채로 계상된 이익보유성

의 총당금 및 준비금을 더한 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 (3) 「유동비율」이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어 얻은 백분율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
- (4)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의 납입자본금, 지분회사 등의 출자금액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기초자본금을 말한다.
- (5) 「자기자본」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합계 금액을, 개인인 경우에는 기초자본금, 사업주상용계정 및 사업주이익의 합계액에서 사업주 용자계정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채로 계상된 이익유보성 총당금 및 준비금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 (6) 이 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신청 시의 직전 결산기 재무제표를 통해서, 신규 설립 기업인 경우에는 창업 시의 재무제표를 통해 실시한다. 단, 해당 재무제표에서 자본 금액에 관한 기준은 만족하지 않지만, 신청 일까지 증자를 실시하여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하도급계약 체결 제한)

**제16조** 특정건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그 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一 하도급 계약의 하도급대금액이 1건 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하도급계약
- 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계약 및 체결된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다른 모든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대금 총액이 제3조 제1항 제2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하도급계약

(준용규정)

**제17조** 제5조,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은 특정건설업의 허가 및 특정건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특정건설업자」라고 함)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제5호 가운데 「동조 제2호 ㄱ, ㄴ 또는 ㄷ」로 되어 있는 것은 「제15조 제2호 ㄱ, ㄴ 또는 ㄷ」로, 제6조 제1항 제5호 가운데 「다음 조 제1호 및 제2호」로 되어 있는 것은 「제7조 제1호 및 제15조 제2호」로, 제11조 제4항 가운데 「동조 제2호 ㄱ, ㄴ 또는 ㄷ」로 되어 있는 것은 「제15조 제2호 ㄱ, ㄴ 또는 ㄷ」로, 「동호 ㄷ」로 되어 있는 것은 「동호 ㄱ, ㄴ 또는 ㄷ」로, 동조 제5항 가운데 「제7조 제1호 또는 제2호」로 되어 있는 것은 「제7조 제1호 또는 제15조 제2호」로 대체한다.

## 제3장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 제1절 총칙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원칙)

**제18조**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각각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를 통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를 이행해야만 한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내용)

**제19조**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제18조의 취지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다음의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상호 교부해야만 한다.

- 一 공사내용
- 二 도급금액
- 三 공사착수 시기 및 공사완성 시기
- 四 도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선급금 또는 완성부분에 대한 지불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불 시기와 방법
- 五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공사착수의 지연 또는 공사 전

- 부 또는 일부의 중지 신청이 있던 경우에 공기의 변경, 도급금액의 변경 및 손해 부담 및 그 금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결정
  - 六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공기 변경 또는 손해의 부담 및 그 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결정
  - 七 가격 등(물가통제령(1946년 령 제118호) 제2조에 규정하는 가격을 말함)의 변동 또는 변경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
  - 八 공사 시공에 의해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의 보상금의 부담에 관한 결정
  - 九 주문자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를 제공하거나, 또는 건설기계 및 기타 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결정
  - 十 주문자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의 시기 및 방법 및 인도 시기
  - 十一 공사완성 후에 도급대금의 지불 시기 및 방법
  - 十二 공사 목적물의 하자를 담보해야 하는 책임 또는 해당 책임의 이행에 관한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기타 조치에 관하여 정해둘 경우 그 내용
  - 十三 각 당사자의 이행 지체, 기타 채무의 불이행의 경우에 지연이자, 위약금, 기타 배상금
  - 十四 계약에 관한 분쟁 해결방법
- 2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도급계약에서 전 항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그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상호 교부해야 한다.
  - 3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전 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 대신에,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계약의 상대방의 승인을 얻어,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으로 해당 각 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에 준한다고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조치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자는 해당 각 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장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통지)

**제19조의2** 도급인이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을 배치하는 경우, 주문자가 도급인에게 해당 현장대리인의 권한 및 해당 현장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주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한다.

2 주문자는 공사현장에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감독원을 배치하는 경우, 도급인이 주문자에게 해당 감독원의 권한에 관한 사항 및 해당 감독원의 행위에 대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한다.

3 도급인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서면 통지 대신,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 항의 주문자 승낙을 얻고, 현장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으로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급인은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주문자는 제2항 규정에 따른 서면 통지 대신,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 항의 도급인의 승낙을 받고, 감독원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으로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문자는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당하게 낮은 도급대금의 금지)

**제19조의3** 주문자는 자신의 거래 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주문한 건설공사 시공을 위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원가에 미치지 않는 금액을 도급대금액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부당한 사용자재 등의 구입 강제의 금지)

**제19조의4** 주문자는 도급 계약 체결 후, 자신의 거래 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주문한 건설공사에서 사용할 자재 또는 기계기구 또는 이들의 구입처를 지정하여, 도급인에게 구입하게 함으로써 그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발주자에 대한 권고)

**제19조의5**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가 앞의 2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해당 건설업자를 허가한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해당 발주자에 대해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건설공사의 적산 등)

**제20조**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업자는 공사내용에 따라 공사업종 별 재료비, 노무비, 기타 경비의 내역을 명확히 하여, 건설공사 견적을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주문자가 요구한 경우, 도급계약이 성립할 때까지 건설공사의 견적서를 교부해야 한다.

3 건설공사의 주문자는 도급계약 방법이 수의계약인 경우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입찰 방법에 의한 경쟁인 경우에는 입찰하기 전에,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시하고, 해당 제시로부터 해당 계약의 체결 또는 입찰까지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견적을 내기 위해 필요한 정령에서 정하는 일정 기간을 주어야 한다.

(계약의 보증)

**제21조**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도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선급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문자는 선급금을 지불하기 전에 건설업자에게 보증인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공공공사 선급금보증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보증사업회사의 보증에 관련한 공사 또는 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전 항의 요구를 받은 건설업자는 각호의 一에 규정하는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一 건설업자가 채무불이행하는 경우 지연이자, 위약금 등 손해배상금의 지불 보증인

二 건설업자를 대신하여 스스로 공사를 완성할 것을 보증하는 다른 건설업자

3 건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인을 요구받았으나, 보증인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주문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관계없이 선급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일괄하도급의 금지)

**제22조** 건설업자는 도급한 건설공사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괄하여 타인에게 도급시킬 수 없다.

2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설업자로부터 해당 건설업자가 도급한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도급할 수 없다.

3 건설공사가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에 관한 중요한 건설공사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원도급자가 사전에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얻은 경우, 앞선 두 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4 발주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 승낙을 대신하여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 항의 원도급자의 승낙을 받고,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항의 승낙하는 취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발주자는 서면을 통해 승낙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도급자의 변경청구)

**제23조** 주문자는 도급인에게 건설공사 시공에서 확연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도급인이 있는 경우는 그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미리 주문자의 서면 승인을 받고 선정된 하도급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2 주문자는 전 항에서 「단 이하」의 규정에 의한 서면 승낙 대신,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 항 「단 이하」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자를 선정하는 자의 승낙을 얻고,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한 방법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국토교통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항의 「단 이하」 규정을 승낙하는 취지를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문자는 서면에 의해 승낙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공사감리에 관한 보고)

**제23조의2** 도급인은 그 도급한 건설공사 시공에서 건축사법(1950년 법률 제202호)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가 공사를 설계도서 대로 실시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이를 따르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즉시 제1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된 방법에 따라 주문자에게 그 이유를 보고해야만 한다.

(도급 계약으로 간주되는 경우)

**제24조** 위탁 등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보수를 받고 건설공사 완성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으로 간주하여, 이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

## 제2절 원도급자의 의무

(하도급자의 의견 청취)

**제24조의2** 원도급자는 기타 도급한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의 세목, 작업방법, 기타 원도급자가 정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하도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불)

**제24조의3** 원도급자는 도급대금 기성부분에 대한 지불 및 공사완성 후에 지불받은 경우, 해당 지불대상이 된 건설공사를 시공한 하도급자에 대해서도 해당 원도급자가 지불을 받은 금액의 기성에 대한 비율 및 해당 하도급자가 시공한 기성 부분에 상응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지불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가능한 한 빨리 지불해야 한다.

2 원도급자는 선급금을 지불 받은 경우, 선급금에서 하도급자 자재 구입, 노동자 모집 등 건설공사 착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려해야 한다.

(검사 및 인수)

**제24조의4** 원도급자는 하도급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그 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2 원도급자는 앞의 항의 검사를 통해 건설공사 완성을 확인한 후 하도급자가 신청한 경우, 즉시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단 하도급계약에서 정해진 공사완성의 시기부터 20일이 경과한 날 이전에, 일정 일자에 인수를 하겠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특정건설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지불기일 등)

**제24조의5** 특정건설업자가 주문자가 된 하도급계약(하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특정건설업자 또는 자본금액이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법인인 경우를 제외. 이하 이 조건은 동일)에서 하도급대금 지불 기일은 제24조의4 제2항의 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50일을 경과하는 일 이전 또는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정해야 한다.

2 특정건설업자가 주문자가 된 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의 지불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제24조의4 제2항의 신청일,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대금의 지불기일이 정해진 경우는 동 조 제2항의 신청일로부터 계

산하여 50일을 경과하지 않은 날짜를 하도급대금 지불기일로 간주한다.

- 3 특정건설업자가 주문자인 하도급계약에서, 특정건설업자는 하도급 대금 지불로써 해당 하도급대금 지불 기일까지 일반 금융기간에서 할인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어음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 4 특정건설업자가 주문자인 하도급계약에서, 특정건설업자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정해진 하도급 대금의 지불기일 또는 제2항의 지불 기일까지 지불해야 한다. 해당 특정건설업자가 기일까지 지불하지 못한 경우, 해당 특정건설업자는 하도급자에게 제24조의4 제2항의 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50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그 일수에 따라 해당 미지불금액에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연이자로서 지불해야 한다.

(하도급자에 대한 특정건설업자의 지도 등)

**제24조의6** 발주자로부터 직접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특정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하도급자가 하도급 건설공사 시공함에 있어서 이 법률에서 규정 또는 건설공사 시공 또는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노동자 사용에 관한 법령에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당 하도급자를 지도해야 한다.

- 2 제1항의 특정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자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 항에 규정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해당 위반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3 제1항의 특정건설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위반하고 있는 사실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동 항의 특정건설업자는 해당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발행한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 및 건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역을 관할하고 있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기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보해야 한다.

(시공체제대장 및 시공체계도의 작성 등)

**제24조의7** 발주자로부터 직접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특정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도급금액(해당 하도급계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는 그 도급금액의 총액)이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해 하도급인의 상호 또는 명칭, 해당 하도급이 담당하는 건설공사의 내용 및 공기, 기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시공체제대장을 작성하여, 공사현장 별로 비치해야 한다.

2 제1항의 건설공사 하도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항의 특정건설업자에게 해당 다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의 상호 또는 명칭, 그 자가 도급한 건설공사의 내용 및 공기, 기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해야만 한다.

3 제1항의 특정건설업자는 동항의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동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한 시공체제대장을 발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4 제1항의 특정건설업자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각 하도급인의 시공분담관계를 표시한 시공체계도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공사현장에서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해야만 한다.

## 제3장의2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분쟁의 처리

(건설공사 분쟁심사회의 설치)

**제25조**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분쟁심사회를 설치한다.

2 건설공사분쟁심사회(이하 「심사회」라고 함)는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고 함)에 대해 알선, 조정 및 중재(이하 「분쟁처리」라고 함)를 행할 권한을 가진다.

- 3 심사회는 중앙건설공사분쟁심사회(이하 「중앙심사회」라고 함) 및 도도부현 건설공사분쟁심사회(이하 「도도부현 심사회」라고 함)으로 하며, 중앙심사회는 국토교통성에, 도도부현 심사회는 도도부현에 둔다.

(심사회의 조직)

**제25조의2** 심사회는 위원으로 조직되고, 중앙심사회 위원의 숫자는 15인 이내로 한다.

- 2 위원은 인격이 훌륭하고, 식견이 높은 사람 가운데 중앙심사회는 국토교통성 장관이, 도도부현 심사회는 도도부현 지사가 임명한다.
- 3 중앙심사회 및 도도부현 심사회에 각각 위원 가운데 선출된 회장을 둔다.
- 4 회장은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5 회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는 위원 가운데 다시 선출된 자가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의 임기 등)

**제25조의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2 위원은 재임될 수 있다.
- 3 위원은 후임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4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위원의 결격조항)

**제25조의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一 파산자이며, 복권을 얻지 않은 자
- 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는 것이 없어진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위원의 해임)

**제25조의5**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각각 임명되어 있는 위원이 제25조의4 각 호에 해당하게 되면 해당 위원을 해임해야 한다.

2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각각 임명되어 있는 위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一 심신의 고장 때문에 직무 집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 二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위원에 적합하지 않은 비행이 있다고 인정될 때

(회의 및 의결)

**제25조의6** 심사회의 심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심사회는 회장 또는 제25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회장을 대리하는 자 외에,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열고, 의결할 수 없다.

3 심사회의 의사는 출석자의 과반으로 의결한다. 의견이 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특별위원)

**제25조의7** 분쟁처리에 참여시키기 위해 심사회에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제25조의2 제2항, 제25조의3 제2항 및 제4항, 제25조의4, 제25조의5의 규정은 특별위원에 대해서도 준용된다.

4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 특별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에서 정한다.

(도도부현 심사회의 위원 등의 일반직에 속하는 지방공무원의 성질)

**제25조의8** 도도부현 심사회의 위원 및 특별위원은 지방공무원법(1950년 법률 제261호) 제34조, 제60조 제2호 및 제62조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 동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직에 속하는 지방공무원으로 간주한다.

(관할)

**제25조의9** 중앙심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분쟁처리를 관할한다.

- 一 당사자의 쌍방이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인 경우
- 二 당사자의 쌍방이 건설업자이며, 허가를 한 행정청이 다른 경우
- 三 당사자의 일방만이 건설업자이며,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를 받은 자인 경우

2 도도부현 심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분쟁처리를 관할한다.

- 一 당사자의 쌍방이 해당 도도부현 지사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인 경우
- 二 당사자의 일방만이 건설업자이며, 해당 도도부현 지사 허가를 받은 경우
- 三 당사자의 쌍방이 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그 분쟁 대상인 건설공사 현장이 해당 도도부현 구역 내에 있을 경우
- 四 전 항 제삼호에서 열거하는 경우 및 제二호에서 열거하는 경우 외에, 당사자 일방만이 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그 분쟁 대상인 건설공사 현장이 해당 도도부현 구역 내에 있을 경우

3 전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관할심사회를 정할 수 있다.

(분쟁처리의 신청)

**제25조의10** 심사회에 대한 분쟁처리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되며, 중앙심사회에 대한 것은 국토교통성 장관에게, 도도부현 심사회에 대한 것은 해당 도도부현 지사를 경유하여 신청해야 한다.

(알선 또는 조정의 개시)

**제25조의11** 심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알선 또는 조정을 실시한다.

- 一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심사회에 알선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 二 공공성이 있는 시설 및 공작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에 관한 분쟁에 대해, 심사회가 직권에 바탕하여 알선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의한 경우

(알선)

**제25조의12** 심사회에 의한 알선은 알선위원이 행한다.

- 2 알선위원은 심사회의 회장이 사건 별로 위원 또는 특별위원 가운데 지명한다.
- 3 알선위원은 당사자 간을 알선하고, 쌍방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고,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정)

**제25조의13** 심사회에 의한 조정은 3명의 조정위원이 실시한다.

- 2 조정위원은 심사회의 회장이 사건 별로 위원 또는 특별위원 가운데 지명한다.
- 3 심사회는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출두를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4 심사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 5 전 항의 조정안은 조정위원 과반수의 의견으로 작성해야 한다.

(알선 또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제25조의14** 심사회는 분쟁이 그 성질 상 알선 또는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멋대로 알선 또는 조정을 신청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알선 또는 조정을 하지 않는다.

(알선 또는 조정의 중단)

**제25조의15** 심사회는 알선 또는 조정에 관한 분쟁에서 알선 또는 조정에 따른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알선 또는 조정을 중단할 수 있다.

2 심사회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알선 또는 조정을 중단하는 경우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효의 중단)

**제25조의16** 제25조의1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알선 또는 조정이 중단된 경우, 해당 알선 또는 조정의 신청자가 동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알선 또는 조정의 목적이 되는 청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시효 중단에 관해서는 알선 또는 조정 신청 시에 소송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소송절차의 중지)

**제25조의17** 분쟁에서 당사자 간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당사자의 공동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소는 4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소송 절차를 중지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一 해당 분쟁에서 당사자 간에 심사회에 의한 알선 또는 중지가 실시되고 있음
- 二 전 호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 당사자 간에 심사회를 통한 알선 또는 조정에 따라 해당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을 것

- 2 재판소는 언제라도 전 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3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및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중재의 개시)

**제25조의18** 심사회는 분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를 실시한다.

- 一 당사자의 쌍방으로부터 심사회에 중재 신청이 있는 경우
- 二 이 법률에 따른 중재를 하겠다는 합의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이 심사회에 중재를 신청한 경우

(중재)

**제25조의19** 심사회에 의한 중재는 3명의 중재위원이 실시한다.

- 2 중재위원은 위원 또는 특별위원 가운데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선정한 자에 대해 심사회의 회장이 지명한다. 단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위원 또는 특별위원회 가운데 심사회의 회장이 지명한다.
- 3 중재위원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은 변호사법(1949년 법률 제205호) 제2장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가 될 자격을 가지는 자여야만 한다.
- 4 심사회가 실시하는 중재에 관해서는 이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위원을 중재인으로 간주하여 중재법(2003년 법률 제138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문서 및 물건의 제출)

**제25조의20** 심사회는 중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이 소지하는 해당 도급계약에 관한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시킬 수 있다.

- 2 심사회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에서 규정하는 문서 또는 물건

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문서 또는 물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현장 검사)

**제25조의21** 심사회는 중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이 점유하는 공사현장 등 사건에 관계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 검사할 수 있다.

2 심사회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재위원의 한 사람에게 해당 검사를 시킬 수 있다.

3 심사회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검사를 거부할 때에는 해당 사실관계에 관하여 신청인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비공개)

**제25조의22** 심사회가 실시하는 조정 또는 중재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심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방청을 허용할 수 있다.

(분쟁 처리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제25조의23** 분쟁처리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해당 비용의 부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각자 부담한다.

2 심사회는 당사자의 신청과 관련하여 비용이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해당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3 심사회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예납시키는 경우, 당사자가 해당 비용을 예납하지 않는다면, 심사회는 동항의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청수수료)

**제25조의24** 중앙심사회에 대해 분쟁처리 신청을 한 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분쟁처리상황의 보고)

**제25조의25** 중앙심사회는 국토교통성 장관에 대해, 도도부현 심사회는 해당 도도부현 지사에 대해,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처리 상황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정령에의 위임)

**제25조의26** 이 장에서 규정하는 것 외 분쟁처리 절차 및 이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에서 정한다.

## 제4장 시공기술의 확보

(건설공사의 젊은 층 육성 및 확보 등 시공기술의 확보)

**제25조의27**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젊은 층 육성 및 확보 등 시공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국토교통성 장관은 전항의 건설공사의 젊은 층 육성 및 확보 등 시공기술 확보를 위해, 필요에 따라 강습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자료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주임기술자 및 감리기술자의 배치 등)

**제26조** 건설업자는 그 도급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에 관하여 제7조 제2호 ㄱ, ㄷ 또는 ㄹ에 해당하는 자로 해당 공사현장에서 건설공사시공의 기술상 관리를 담당하는 자(이하 「주임기술자」라고 함)를 배치해야 한다.

2 발주자로부터 직접 건설공사를 도급한 특정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도급대금액(해당 하도급계약이 2개 이상인 경우는 계약대금의 총액)이 제3조 제1항 제2호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관하여

제15조제2호 ㄱ, ㄴ 또는 ㄷ에 해당하는 자(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이 지정건설업인 경우는 동호 ㄱ에 해당하는 자 또는 동호 ㄷ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성 장관이 동호 ㄱ에 열거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한 자)로 해당 공사현장에서 건설공사의 시공기술 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이하 「감리기술자」라고 함)을 배치해야 한다.

- 3 공공성이 있는 시설 또는 공작물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에 관한 중요 건설 공사에서 정령에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주임기술자 또는 감리기술자는 공사현장 별로 전임이어야만 한다.
- 4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전임이어야 하는 감리기술자는 제27조의18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기술자 자격자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성 장관 등록을 한 강습을 수강한 사람 가운데 선임해야 한다.
- 5 전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리기술자는 발주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감리기술자 자격자증을 제시해야만 한다.

**제26조의2**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토목일식공사 또는 건축일식공사를 시공할 때에 토목일식공사 또는 건축일식공사 이외의 건설공사(제3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제7조 제2호 ㄱ, ㄴ 또는 ㄷ에 해당하는 자로 그 공사현장에서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배치하여 스스로 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련한 건설업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해야 한다.

- 2 건설업자는 허가를 받은 건설업에 관한 건설공사에 부대하는 다른 건설공사(제3조제1항 단서조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를 시공하는 경우에, 해당 건설공사에 관하여 제7조 제2호 ㄱ, ㄴ 또는 ㄷ에 해당하는 자로 그 공사현장에서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배치하여 스스로 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련

한 건설업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해야 한다.  
(주임기술자 및 감리기술자의 직무 등)

**제26조의3** 주임기술자 및 감리기술자는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계획 작성,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의 기술상의 관리 및 해당건설공사의 시공에 종사하는 자의 기술사의 지도감독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의 시공에 종사하는 자는 주임기술자 또는 감리기술자가 직무로서 실시하는 지도에 따라야 한다.

(등록)

**제26조의4** 등록은 동 항의 강습을 실시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된다.

(결격요건)

**제26조의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강습은 제26조 제4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一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기초한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二 제26조의15 규정에 따라 제26조 제4항의 강습 등록이 취소되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三 법인으로 제26조 제4항의 강습을 실시하는 임원 가운데 앞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등록 요건 등)

**제26조의6** 국토교통성장관은 제26조의4 규정에 따라 신청 한 강습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그 등록을 인정해야 한다. 이 경우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다.

- 一 다음에 열거하는 과목에 대해 실시할 것
  - ㄱ 건설공사에 관한 법률제도
  - ㄴ 건설공사의 시공계획의 작성,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 기술상의 관리
  - ㄷ 건설공사에 관한 최신 재료, 기자재 및 시공방법
- 二 전 호 ㄴ 또는 ㄷ의 과목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강사로서 강습업무에 종사할 것
  - ㄱ 감리기술자 경험이 있는 자
  - ㄴ 학교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대학, 고등전문학교 및 전수학교에서 별 표 제二에 열거하는 학과의 교원 경험이 있는 자
  - ㄷ ㄱ 또는 ㄴ에 열거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
- 三 건설업자에게 지배되는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ㄱ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이하 이 호에서 등록신청자라고 함)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그 부모 법인(회사법(2005년 제86호) 제87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모 법인을 말함. 제27조의31 제2항 제一호에서 동일)인 것
  - ㄴ 등록신청자의 임원(지분회사(회사법 제57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분회사를 말함. 제27조의31 제2항 제二호에서 동일)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차지하는 건설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과거 2년 간 해당 건설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의 비율이 1/2를 초과하는 것
  - ㄷ 등록신청자(법인인 경우는 그 대표권을 가지는 임원)가 건설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과거 2년간에 해당 건설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인 것

2 등록은 강습등록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一 등록년월일 및 등록번호

二 제26조 제4항의 등록을 받은 강습(이하 「강습」이라고 함)을 하는 자  
(이하 「등록강습실시기관」이라고 함)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등록의 갱신)

**제26조의7** 제26조 제4항의 등록은 3년 이상의 정령에서 정하는 기간마다  
갱신을 받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하고 효력을 잃는다.

2 전 3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록 갱신에서 준용된다.

(강습 실시에 관한 업무)

**제26조의8** 등록강습실시기관은 공정하고 제26조의6 제1항 제一호 및 제二  
호에서 열거하는 요건 및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법으로  
강습을 실시해야 한다.

(등록사항의 갱신 제출)

**제26조의9** 등록강습실시기관은 제26조의6 제2항 제二호 및 제三호의 사항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날짜의 2주 전까지 그 취지를 국  
토교통성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강습규정)

**제26조의10** 등록강습실시기관은 강습에 관한 규정(이하 강습규정이라고 함)  
을 정하고, 강습 개시 전에 국토교통성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2 강습규정에는 강습의 실시방법, 강습에 관한 요금 등 국토교통성령에서 정  
하는 사항을 정해야 한다.

(업무의 휴, 폐지)

**제26조의11** 등록강습실시기관은 강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국토교통성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재무제표 등의 첨부 및 열람)

**제26조의12** 등록강습실시기관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또는 소지계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5년간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2 건설업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등록강습실시기관의 업무시간 내에 언제든지 다음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제2호 및 제4호의 청구를 위해서는 등록강습실시기관이 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一 재무제표 등이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서면의 열람 또는 사본의 청구
- 二 전 一호의 서면 등본 및 초본의 청구
- 三 재무제표 등이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된 경우는 해당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한 열람 또는 사본의 청구
- 四 전 三호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제공할 것을 청구 또는 해당 사항을 기재한 서면 교부의 청구

(준수 명령)

**제26조의13** 국토교통성장관은 강습이 제2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등록강습실시기관에 대해 동 항의 규정에 적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선 명령)

**제26조의14** 국토교통성장관은 등록강습실시기관이 제26조의8 규정에 위반하고 있는 것이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강습실시기관에 대해 동 조의 규정에

다른 강습을 해야만 할 것 및 강습 방법 등의 업무 방법 개선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등록 취소 등)

**제26조의15** 국토교통성장관은 등록강습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등록강습실시기관이 실시하는 강습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강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一 제26조의5 제一호 및 제三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二 제26조의9부터 제26조의11까지, 제26조의12 제1항 및 다음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三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의12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거절한 경우
- 四 전 二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五 부정한 수단을 통해 제26조 제4항의 등록을 받은 경우

(장부의 기재)

**제26조의16** 등록강습실시기관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만들어, 강습에 관한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국토교통성장관에 의한 강습 실시)

**제26조의17** 국토교통성장관은 강습을 할 자가 없는 경우, 제26조의11 규정에 따른 강습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가 있던 경우, 제26조의15 규정에 따른 제26조 제4항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또는 등록강습실시기관에 대해 강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 등록강습실시기관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의해 강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강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

2 국토교통성장관이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강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수행할 경우, 강습의 인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다.

(수수료)

**제26조의18**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성장관이 행하는 강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실비를 감안하여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보고의 징수)

**제26조의19** 국토교통성장관은 이 법률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등록강습실 시기관에 대해 그 업무 또는 회계 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시킬 수 있다.

(현장 검사)

**제26조의20** 국토교통성장관은 이 법률 시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직원에게 등록강습실 시기관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또는 장부 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이 현장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검사의 권한은 범죄 수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공시)

**제26조의21** 국토교통성 장관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 그 취지를 관보에 공시해야 한다.

- 一 제26조 제4항의 등록을 한 경우
- 二 제26조의9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던 경우
- 三 제26조의11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던 경우

四 제26조의15 규정에 따라 제26조 제4항의 등록이 취소되고, 강습 정지를 명했을 경우

五 제26조의17 규정에 따라 강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행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행하고 있던 강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기술검증)

**제27조** 국토교통성장관은 시공 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종사 또는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검정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검정은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

3 국토교통성장관은 제1항의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해 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

4 합격증명서를 교부받은 자는 합격증명서를 멸실 또는 손상했을 때에, 합격증명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5 제1항의 검정에 합격한 자는 정령에서 정하는 칭호를 지칭할 수 있다.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제27조의2** 국토교통성장관은 그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고 함)에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무(이하 「시험사무」라고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게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시험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실시한다.

3 국토교통성 장관은 지정시험기관에 시험사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시험사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지정 기준)

**제27조의3** 국토교통성장관은 앞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

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 조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

- 一 직원, 장비, 시험사무의 실시 방법 등 사항에 대한 시험사무의 실시 계획이 시험사무의 적정하고 확실한 실시를 위해 적절한 것일 것
- 二 전 호의 시험사무의 실시에 관한 계획이 적정하고 확실한 실시에 필요한 경리적 및 기술적인 기초를 가진 것일 것
- 三 시험사무 이외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의해 시험사무가 불공정하게 될 우려가 없을 것

2 국토교통성장관은 전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지정을 해야 한다.

- 一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 이외의 자 일 것
- 二 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에 처해지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일 것
- 三 제27조의1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四 임원 가운데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것
  - ㄱ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ㄴ 제27조의5 제2항 규정에 따른 명령에 의해 해임되고,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지정의 공시 등)

**제27조의4** 국토교통성장관은 제2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을 받은 자의 명칭 및 주요 사무소 및 해당지정을 한 날짜를 공표해야 한다.

2 지정시험기관은 그 명칭 또는 주요 사무소의 주소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짜의 2주전까지 그 취지를 국토교통성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3 국토교통성장관은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제27조의5** 지정시험기관의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국토교통성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국토교통성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의 임원이 이 법률(이 법률에 기초한 명령 및 처분을 포함) 또는 제27조의8 제1항의 시험사무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시험사무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는 지정시험기관에 대해 그 임원을 해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시험위원)

**제27조의6** 지정시험기관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한 자 가운데 시험위원을 선임하여, 시험 문제의 작성 및 평가를 하게해야 한다.

2 지정시험기관은 전 항의 시험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국토교통성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3 전 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시험위원의 해임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비밀유지의무 등)

**제27조의7** 지정시험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전 조 제1항의 시험위원을 포함, 차 항에서도 동일) 또는 이 직위에 있던 자는 시험사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시험 사무에 종사하는 지정시험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등 벌칙 적용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간주한다.

(시험사무규정)

**제27조의8** 지정시험기관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시험사무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험사무규정을 정하고, 국토교통성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2 국토교통성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한 시험사무규정이 시험사무의 적정하고 확실한 실시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시험기관에게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사업계획 등)

**제27조의9** 지정시험기관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에(제27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국토교통성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2 지정시험기관은 매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성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부의 비치 등)

**제27조의10** 지정시험기관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보존해야 한다.

(감독 명령)

**제27조의11** 국토교통성장관은 시험사무의 적정한 실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보고 및 검사)

**제27조의12** 국토교통성장관은 시험사무의 적정한 실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사무 현황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원에게 지정시험기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시험사무의 상황 또는 설비, 장부, 서류 등 물건을 검사시킬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이 현장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검사의 권한은 범죄 수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시험사무의 휴, 폐지)

**제27조의13** 지정시험기관은 국토교통성장관의 허가 없이 시험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

- 2 국토교통성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 또는 폐지에 따라 시험사무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실시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
- 3 국토교통성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취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지정 취소 등)

**제27조의14** 국토교통성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제27조의3 제2항 각 호(제3호를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2 국토교통성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지정시험기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一 제27조의3 제1항 각 호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
  - 二 제27조의4 제2항, 제27조의6 제1항 또는 제2항, 제27조의9, 제27조의10 또는 전 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 三 제27조의5 제2항(제27조의6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27조의8 제2항 또는 제27조의11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
  - 四 제27조의8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험사무규정에 따르지 않고, 시험사무를 수행한 경우

五 부정한 수단에 의해 제2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 3 국토교통성장관은 전 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령한 경우,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국토교통성장관에 의한 시험사무의 실시)

**제27조의15** 국토교통성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제27조의1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험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한 경우, 전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한 경우, 또는 지정시험기관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의해 시험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기 어렵게 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시험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 2 국토교통성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사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동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사무를 수행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그 취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 3 국토교통성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사무를 수행하고, 제27조의1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사무의 폐지를 허가하거나, 또는 전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의 시험사무 승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다.

(수수료)

**제27조의16** 학과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합격증명서 교부 또는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실비를 감안하여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국가(지정시험기관이 실시하는 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시험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납부된 수수료는 지정시험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지정시험기관이 내린 처분 등에 관한 심사 청구)

**제27조의17** 지정시험기관이 실시하는 시험사무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 국토교통성장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성장관은 행정불복심사법(2014년 법률 제68호) 제25조 제2항 및 제3항,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제47조 및 제49조 제3항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지정시험기관의 상급 행정청으로 간주한다.

(감리기술자 자격증의 교부)

**제27조의18** 국토교통성장관은 감리기술자 자격(건설업의 종류에 따라 제15조 제2호 ㄱ규정에 따라 국토교통성장관이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동 호 ㄱ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성장관이 정하는 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제7조 제2호 ㄱ 또는 ㄴ에 규정하는 실무경험 또는 학과의 이수 또는 동 호 ㄴ규정에 따른 국토교통성장관의 인정이 있어 제15조 제2호 ㄴ에 규정하는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 또는 동 호 ㄴ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동 호 ㄱ 또는 ㄴ에서 열거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성장관이 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말함. 이하 동일)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해, 그 신청자에 대해, 감리기술자 자격증(이하 「자격자증」이라고 함)을 교부한다.

2 자격자증에는 교부받는 자의 성명, 교부년월일, 교부받은 자가 가지는 감리기술자자격, 건설업 종류 등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3 제1항의 경우, 신청자가 2개 이상의 감리기술자자격을 가진 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감리기술자자격을 합쳐서 기재한 자격자증을 교부한다.

4 자격자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5 자격자증의 유효기간은 신청에 의해 갱신된다.

6 제4항의 규정은 갱신 후의 자격자증의 유효기간을 준용한다.

(지정자격자증 교부기관)

**제27조의19** 국토교통성장관은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자격자증교부기관」이라고 함)에 자격자증 교부 및 유효기간 갱신 실시에 관한 사무(이하 「교부사무」라고 함)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교부 사무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수행된다.

3 국토교통성장관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한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

一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 이외의 자일 것

二 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27조의14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 취소되고, 그 취소일로부터 계산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국토교통성장관은 지정자격자증교부기관에 교부 사무를 하게 할 경우, 해당 교부사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5 제27조의4, 제27조의8, 제27조의12, 제27조의13, 제27조의14(동 조 제2항 제1호를 제외), 제27조의15 및 제27조의17 규정은 지정자격자증교부기관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7조의14 제2항 제5호 가운데 「제27조의2 제1항」은 「제27조의19 제1항」으로, 제27조의8 및 제27조의14 제2항 제4호 가운데 「시험사무규정」은 「교부사무규정」으로, 제27조의12 제1항, 제27조의13 제1항 및 제2항, 제27조의14 제2항 및 제3항, 제27조의15 및 제27조의17 가운데 「시험사무」는 「교부사무」로, 제27조의14 제1항 가운데 「제27조의3 제2항 각 호(제3호를 제외)의 한 가지로」는 「제27조의19 제3항 제1호」로, 동 조 제2항 제2호 가운데 「제27조의6 제1항 또는 제2항, 제27조의9, 제27조의10 또는 전 조 제1항」은 「전 조 제1항 또는 제27조의20」으로, 동 항 제3호 가운데 「제27조의5 제2항(제27조의6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27조의8 제2항 또는 제27조의11」은 「제27조의8 제2항」으로, 제27조의15 제1항 가운데 「제27조의2 제3항」은 「제27조의19 제4항」으로 대체한다.

(사업 계획 등)

**제27조의20** 지정자격자증교부기관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성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2 지정자격자증교부기관은 매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성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수료)

**제27조의21** 자격자증교부 또는 자격자증의 유효기간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실비를 감안하여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국가(지정자격자증교부기관이 실시하는 자격자증 교부 또는 자격자증 유효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자격자증교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자격자증교부기관에 납부된 수수료는 지정자격자증교부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국토교통성령에의 위임)

**제27조의22** 이 장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제26조 제4항의 등록 및 강습의 수강 및 제27조의18 제1항의 자격자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다.

## 제4장의2 건설업자의 경영에 관한 사항의 심사 등

(경영사항심사)

**제27조의23** 공공성이 있는 시설 또는 공작물에 관한 건설공사에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하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영에 관한 객관적 사항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한

다.

2 전항의 심사(이하 「경영사항심사」라고 함)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 숫자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一 경영상황

二 경영규모, 기술적 능력 등 전 호에서 열거한 사항 이외의 객관적 사항

3 전 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경영사항심사의 항목 및 기준은 중앙건설업 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성 장관이 정한다.

(경영상황분석)

**제27조의24** 제27조의23 제2항 제一호에 열거된 사항의 분석(이하 「경영상황분석」이라고 함)에 대해서는 제27조의31 및 제27조의32에 준용하는 제26조의5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성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등록경영상황분석기관」이라고 함)가 실시한다.

2 경영상황분석의 신청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등록경영상황분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3 전항의 신청서에는 경영상황분석에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등록경영상황분석기관은 경영상황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영상황분석을 신청한 건설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경영상황분석 결과의 통지)

**제27조의25** 등록경영상황분석기관은 경영상황분석을 수행한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영상황분석을 신청한 건설업자에게 해당 경영상황분석 결과에 따른 수치를 통지해야 한다.

(경영규모 등 평가)

**제27조의26** 제27조23 제2호에 열거된 사항의 평가(이하 「경영규모 등 평가」라고 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실시한다.

2 경영규모 등 평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건설업 허가를 받은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한다.

3 전항의 신청서에는 경영규모 등 평가에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4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경영규모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영규모 등 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경영규모 등 평가의 결과 통지)

**제27조의27**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경영규모 등 평가를 수행한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영규모 등 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자에게 해당 경영규모 등 평가의 결과에 따른 수치를 통지해야 한다.

(재심사의 신청)

**제27조의28** 경영규모 등 평가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건설업자는 해당 경영규모 등 평가를 실시한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종합평정치의 통지)

**제27조의29**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경영규모 등 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업자에 대해 종합평정치(경영상황분석의 결과에 따른 수치 및

경영규모 등 평가의 결과에 관한 수치를 사용한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객관적사항의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에 관한 수치, 이하 동일)를 통지해야 한다.

2 전항의 요청을 위해서는 제27조의25의 규정에 따라 등록경영상황분석기관에서 통지받은 경영상황분석의 결과에 따른 수치를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 허가를 국토교통성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제27조의23 제1항의 건설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주자에게 동항 건설업자의 종합평정치(해당 발주자로부터 동항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상황분석 결과에 관한 수치 및 경영규모 등 평가 결과에 관한 수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이 수치들을 포함)를 통지해야 한다. 단 해당 발주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하지 않은 건설업자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는 해당 건설업자에 관한 경영규모 등 평가의 결과에 관한 수치만을 통지한다.

(수수료)

**제27조의30** 국토교통성 장관에 대해 제27조의26 제2항의 신청 또는 전항 제1항의 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감안하여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등록)

**제27조의31** 제27조의24 제1항의 인가는 경영상황분석을 하고자 하는 신청에 의해 실시한다.

2 국토교통성 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신청한 자(이하 본 항에서 「인가신청자」라고 함)가 전자계산기(입출력장치를 포함) 및 경영상황분석에 필요한 프로그램(전자계산기에 대한 명령으로 하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정된 것을 말함)을 가지고 있으며, 제27조의2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사항심사를 받아야만 하는 건설업자(이하의 본 항에서는 단순히

「건설업자」라고 함)에 지배되고,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경우 인가해야 한다.

- 一 등록신청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건설업자가 그 부모 법인인 것
- 二 등록신청자의 임원(지분회사인 경우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차지하는 건설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과거 2년 내에 해당 건설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의 비율이 1/2를 넘고 있을 것
- 三 등록신청자(법인인 경우는 그 대표권을 가지는 임원)가 건설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과거 2년 내에 해당 건설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인 것

3 인가는 등록경영상황분석기관등록부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 一 인가 년월일 및 인가번호
- 二 등록경영상황분석기관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이름
- 三 등록경영상황분석기관이 경영상황분석을 수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경영상황분석의 의무)

**제27조의33** 등록경영상황분석기관은 경영상황분석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영상황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비밀유지의무)

**제27조의34** 등록경영상황분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또는 근무하는 자는 경영상황분석 업무에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경영상황분석 실시)

**제27조의35**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제27조의24 제1항의 인가를 받은 자가 없는 경우, 제27조의32에서 준용하는 제26조의12의 규정에 따라 경영상황분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또는 폐업의 신고가 있는 경우, 제27조의32에서 준용하는 제26조의15의 규정에 따라 제27조의24 제1항의 인가 취소 또는 등록경영상황분석기관에 대해 경영상황분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령한 경우, 등록경영상황분석기관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의해 경영상황분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기타 국토교통성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경영상황분석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실시할 수 있다.

2 국토교통성 장관은 도도부현 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상황분석을 하게 된 경우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동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상황분석을 하는 이유가 없어진 경우는 신속하게 그 취지를 도도부현 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3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상황분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 경영상황분석 업무의 인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다.

4 제27조의30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성 장관이 실시하는 경영상황분석을 받고자 하는 자에 준용한다.

5 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상황분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실시하고 있던 경영상황분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는 그 취지를 해당 도도부현의 공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성령에의 위임)

**제27조의36** 이 장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경영상황심사 및 제27조의28의 재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다.

## 제4장의3 건설업자 단체

(신고)

**제27조의37** 건설업에 관한 조사, 연구, 강습, 지도, 홍보, 기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며,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하 「건설업단체」라고 함)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 대해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보고 등)

**제27조의38**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제27조의37의 신고한 건설업자단체에 대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고, 또는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건설업자 단체 등의 책무)

**제27조의39** 건설업자단체는 그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건설공사의 짧은 층 육성 및 확보, 기타 시공기술의 확보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국토교통성 장관은 건설업자단체가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짧은 층 육성 및 확보, 기타 시공기술의 확보에 관한 대처 상황에 대해 파악하여야 하고, 해당 대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제5장 감독

(지시 및 영업 정지)

**제28조**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이 법률의 규정(제19조의3, 제19조의4 및 제24조의3부터 제24조의5까지를 제외, 공공공사 입찰 및 계약적정화 촉진에

관한 법률(2000년 법률 제127호, 이하 「입찰계약적정화법」이라고 함)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제24조의7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포함. 제4항에서 동일), 입찰계약적정화법 제15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 또는 특정주택하자담보책임 이행확보 등에 관한 법률(2007년 법률 제66호, 이하 이 조에서 「이행확보법」이라고 함) 제3조 제6항, 제4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 또는 제10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해당 건설업자에게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특정건설업자가 제41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않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 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적절하게 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에 위해를 끼친 경우 또는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경우
- 二 건설업자가 도급계약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경우
- 三 건설업자(건설업자가 법인인 경우는 해당 법인 또는 그 임원 등) 또는 정령에서 정하는 사용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입찰계약적정화법과 이행확보법 및 이에 따른 명령을 제외)을 위반하고, 건설업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四 건설업자가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五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주임기술자 또는 감리기술자가 공사의 시공 관리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적절하고, 변경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六 건설업자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항의 허가가 없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七 건설업자가 특정건설업자 이외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와 하도급대금액이 제3조 제1항 제2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 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八 건설업자가 사정을 알고서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령받은 자 또는 제2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 금지된 자와 해당

정지 또는 금지된 영업범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九 이행확보법 제3조 제1항, 제5조 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도도부현 지사는 자신이 관할하는 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제  
3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 해당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적절하게 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에 위  
해를 끼친 경우 또는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경우
- 二 도급계약에 관하여 현저하게 불성실한 행위를 한 경우

3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동 항 또는 차 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따르  
지 아니할 때 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전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동 항의 규정에 따른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건설업자에 대  
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  
할 수 있다.

4 도도부현 지사는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다른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  
은 건설업자로 해당 도도부현 구역 내에서 영업하는 것이 해당 도도부현  
내의 구역 내 영업에 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이 법률  
에 규정, 입찰계약적정화법 제15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 또는 이행  
확보법 제3조 제6항, 제4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1항 또는 제2  
항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해당 건설업자에 대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5 도도부현 지사는 국토교통성 장거나 또는 다른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가 해당 도도부현 구역 내에서 영업하는 것이 해당 도도부  
현 내의 구역 내 영업에 관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동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는 해당 건설업자에 대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 6 도도부현 지사는 전 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내린 경우,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해당 건설업자가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를 받은 경우는 국토교통성 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건설업자가 다른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해당 다른 도도부현 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 7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 제一호 또는 제三호에 해당하는 건설업자 또는 제2항 제一호에 해당하는 제3조 제1항의 허가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 지시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허가 취소)

**제29조**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설업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一 일반건설업 허가를 가진 건설업자가 제7조 제一호 또는 제二호, 특정 건설업자는 동 조 제一호 또는 제15조 제二호의 기준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 二 제8조 제一호 또는 제七호부터 제十三호까지(제17조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해당하게 된 경우
- 二의二 제9조 제1항 각호(제17조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건설업 허가 또는 특정건설업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
- 三 허가를 받고서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또는 연속해서 1년 이상 영업을 휴업한 경우
- 四 제12조 각호(제17조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해당하게 된 경우
- 五 부정한 수단에 의해 제3조 제1항의 허가(동조 제3항의 허가 갱신을 포함)를 받은 경우

六 제2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고, 사안이 특별히 중한 경우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가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건설업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의2**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건설업자의 영업소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또는 건설업자의 소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의 소재를 말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그 지배인의 소재를 포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관보 또는 해당 도도부현의 공보에서 그 사실을 공표하고, 그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해도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 건설업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3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29조의2 관련]**

1. 허가 취소 처분의 공고에 대해

법 제2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규칙 제23조의 2 각호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더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도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교시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던 것을 알게 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여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성 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이 처분이 있던 것을 알게 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더라도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던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또한 행정사건소송법(1962년 법률 제13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처분이 있던 날을 알게 된 날(당해 처분에 대해 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이 있던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를 피고로서(소송에서 국가의 대표자는 법무장관이 된다),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이 처분 또는 재결이 있던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도 취소소송은 처분 또는 재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기할 수 없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허가 취소의 경우 건설공사의 조치)

**제29조의3**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허가에 관한 건설업자였던 자 또는 그 일반승계인은 제28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령받은 경우 또는 전 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받은 자 또는 그 일반승계인은 허가가 효력을 잃기 전 또는 해당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관한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자는 허가가 효력을 잃은 후 또는 해당 처분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그 취지를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특정건설업자였던 자 또는 그 일반승계인 또는 특정건설업자의 일반승계인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제16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로 건설업자였던 자 또는 그 일반승계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완성하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건설업자로 간주한다.

5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동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그 효력을 잃은 것 또는 처분이 있던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정하여,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영업 금지)

**제29조의4**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건설업자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 제28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경우, 그 자가 법인인 경우는 그 임원 및 해당 처분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 상당 책임을 가지는 정령에서 정하는 사용자(해당 처분일 전 60일 이내에 임원 또는 정령에서 정하는 사용인이었던 자를 포함)에 대해, 개인인 경우는 그 자 및 해당 처분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 상당 책임을 가지는 정령에서 정하는 사용자(해당 처분일 전 60일 이내에 임원 또는 정령에서 정하는 사용인이었던 자를 포함. 차 항에서도 동일)에 대해 해당정지를 명령한 범위의 영업에 대해 해당정지를 명령한 기관과 동일한 기간을 설정하여 새로이 영업을 개시하는 것(해당 정지를 명령받은 범위의 영업을 그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것을 포함)을 금지해야 한다.

2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제29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것에 의해 건설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해당 건설업자가 법인인 경우는 그 임원 및 해당 처분의 해당 처분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 상당 책임을 가지는 정령에서 정하는 사용인에 대해, 개인인 경우는 해당 처분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 상당 책임을 가지는 정령에서 정하는 사용인에 대해, 해당 취소에 따른 건설업에 대해 5년간, 새로이 영업(제3조 제1항 단서조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만을 도급하는 것은 제외)을 개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부정사실의 신고)

**제30조** 건설업자에 제2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이해관계자는 해당 건설업자가 허가를 받은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 또는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역을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에 대해

그 사실을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3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28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이해관계자는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역을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에 대해 그 사실을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보고 및 검사)

**제31조** 국토교통성 장관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모든 자에 대해, 도도부현 지사는 해당 도도부현 구역 내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업무, 재산 또는 공사시공 상황에 대해 필요한 보고를 지시하고, 해당 직원을 영업소, 기타 영업에 관계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해당 직원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이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해야 한다.

3 해당 직원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에서 정한다.

(참고인의 의견 청취)

**제32조** 제29조 규정에 따라 허가 취소에 관한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은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제2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29조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준용한다.

## 제6장 중앙건설업심의회 등

### 제33조 삭제

(중앙건설업심의회 설치 등)

**제34조** 이 법률, 공공공사의 선급금 보증 사업에 관한 법률 및 입찰계약적정화법에 따라 권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국토교통성에 중앙건설업심의회를 설치한다.

2 중앙건설업심의회는 건설공사의 표준도급계약약관,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기준 및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재료비 및 용역비 이외의 경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중앙건설업심의회의 조직)

**제35조** 중앙건설업심의회는 위원 20명 이내로 조직한다.

2 중앙건설업심의회 위원은 학계 전문가,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건설업자 가운데 국토교통성 장관이 임명한다.

3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건설업자 가운데 임명하는 위원의 수는 동수이며, 이들 위원의 수는 위원 전체 숫자의 2/3를 넘을 수 없다.

(준용규정)

**제36조** 제25조의3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및 제25조의4의 규정은 중앙건설업심의회의 위원에 준용한다.

(전문위원)

**제37조** 건설업에 관한 전문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건설업심의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은 해당 전문 사항에 관한 조사심의회가 종료되었을 때 해임되는 것으로 한다.

3 제25조의3 제4항, 제25조의4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은 전문위원에 준용한다.

(중앙건설업심의회 회장)

**제38조** 중앙건설업심의회 회장을 둔다. 회장은 학계 경험이 있는 자 가운데 위원이 선출한다.

2 회장은 회계업무를 총괄한다.

3 회장이 사고를 당한 경우, 학계 경험자 위원 가운데 미리 선출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정령에의 위임)

**제39조** 이 장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중앙건설업심의회의 소관사무 등 중앙건설업심의회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도도부현 건설업심의회)

**제39조의2** 도도부현 지사의 자문에 따라 건설업 개선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도도부현은 조례에서 도도부현 건설업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도도부현 건설업심의회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사회자본정비심의회의 조사심의 등)

**제39조3** 사회자본정비심의회는 국토교통성 장관의 자문을 통해 건설업 개선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2 사회자본정비심의회는 건설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제7장 잡칙

(전자계산기를 통한 처리에 관한 절차 특례 등)

**제39조의4** 허가신청서의 제출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지정경영상황분석기관을 포함)에 대한 절차로서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것(이하 「특정 절차」라고 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디스크(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일정 사항을 확실하게 기록할 수 있는 물건을 포함. 이하 동일)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다.

2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 특정 절차에서는 해당 특정절차를 서면 제출을 통해 진행한 것으로 규정한 법률 규정에서 규정하는 서면 제출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법률의 규정(이에 따른 벌칙을 포함)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는 자기디스크에 기록한 것을 서면에 기재한 것으로 간주한다.

(표식의 게시)

**제40조** 건설업자는 점포 및 건설공사 현장 별로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별 표 제1의 아래 란의 구분에 따른 건설업 명칭, 일반건설업 또는 특정건설업 등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식을 게시해야 한다.

(표시의 제한)

**제40조의2**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는 해당 건설업에 대해 제3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서, 그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인 것처럼 명백히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장부의 배치 등)

**제40조의3** 건설업자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별로 국

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영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또한 해당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장부 및 영업에 관한 도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 및 건설업자단체에 대한 지도, 조언 및 권고)

**제41조** 국토교통성 장관 및 도도부현 지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제 27조의38의 신고를 한 건설업자단체에 대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 확보 및 건설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지도, 조언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2 특정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한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고 있는 다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 임금 지불을 지체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특정건설업허가를 내린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해당 특정건설업자에 대해 지체된 임금 가운데 해당 건설공사에서 노동 대가로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임금상당액을 대신 지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 특정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한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고 있는 다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특정건설업허가를 내린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해당 특정건설업자에 대해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대신 지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 청구 등)

**제42조**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가 제 19조의3, 제19조의4, 제24조의3 제1항, 제24조의4, 제24조의5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그 사실이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 1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

정거래위원회에 대해 동법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1963년 법률 제154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자를 말함. 다음 조에서 동일)인 하도급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자에 대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중소기업청 장관에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제42조의2** 중소기업청 장관은 중소기업자인 하도급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에게 거래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직원을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영업소 등 영업에 관한 장소에 입장시켜 장부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이 입장하는 경우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청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중소기업자인 하도급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자가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24조의3 제1항, 제24조의4, 제24조의5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이 사실이 사적독점금지 및 공정거래확보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동법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중소기업청 장관이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원도급자에 대해 제3조 제1항의 허가를 내린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도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도도부현의 비용 부담)

**제43조** 도도부현 지사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해당 도도부현의 부담으로 한다.

(참고인의 비용청구권)

**제44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요구받고 출두한 참고인은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경과조치)

**제44조의2**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경우에, 그 명령에서 그 제정 또는 개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소요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를 정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제44조의3**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토교통성 장관의 권한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정비국장 또는 홋카이도개발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도도부현 지사의 경유)

**제44조의4** 제3조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건설업자 및 제21조 각 호에서 열거된 자가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기초한 명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성 장관에 제출하는 허가신청서 등의 서류 가운데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서류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도도부현 지사를 경유해야 한다.

(사무의 구분)

**제44조의5** 제4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 제2조 제9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1호 법정수탁사무로 한다.

## 제8장 벌칙

**제45조** 등록경영상황분석기관(그 자가 법인인 경우는 그 임원) 또는 그 직원으로 경영상황분석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거나,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전 항에서 규정하는 자였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 상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해당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거나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항에 규정하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그 공여를 약속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수수한 뇌물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격을 추징한다.

**제46조** 제4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하는 뇌물을 공여하거나, 또는 그 신청 또는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 전항의 죄를 지은 자가 자수한 경우는 그 형을 경감하거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47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

—의2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 二 제28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
- 二의二 제2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금지 처분을 위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
- 三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에 따라 제3조 제1항의 허가(동 조 제3항의 허가 갱신을 포함)를 받은 자

2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내용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 제27조의7 제1항 또는 제27조의34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49조** 제26조의15(제27조의3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제27조의14 제2항(제27조의19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강습, 시험사무, 교부 등 사무 또는 경영상황분석의 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등록강습실시기관(법인인 경우는 그 임원) 또는 그 직원, 지정시험기관 또는 지정자격자증교부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또는 등록경영상황분석기관(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그 직원(제51조에서 등록강습실시기관의 임직원이라고 함)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50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一 제5조(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제6조 제1항(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제출한 자
- 二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  
三 제11조 제5항(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따른 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

四 제27조24 제2항 또는 제27조의26 제2항의 신청서 또는 제27조의24  
제3항 또는 제27조의26 제3항의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

2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내용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다.

**제51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위반행위를 한 등록강습실시기관  
등의 임직원은 50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一 제26조의11(제27조의3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강습 또는 경영상황분석업무의 전부를 폐지하거  
나, 또는 제27조의13 제1항(제27조의19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시험사무 또는 교부사무 전  
부를 폐지한 경우
- 二 제26조의16(제27조의3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제27조의  
10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기재하지 않고, 또  
는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장부를 보전하지 않은 경우
- 三 제26조의16(제27조의3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제27조의  
12 제1항(제27조의 19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이하 동  
일)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요청받았으나, 보고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  
로 보고를 하거나, 또는 제26조의20(제27조의32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 또는 제27조의1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제52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一 제2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임기술자 또는 감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자
- 二 제26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
- 三 제29조의3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자
- 四 제27조의24 제4항 또는 제27조의26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자
- 五 제31조 제1항 또는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
- 六 제31조 제1항 또는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3조** 법인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 대해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벌금형을, 사람에게 대해서는 본 조의 벌금형을 처한다.

- 一 개인은 제47조를 적용하고, 법인은 1억 엔 이하의 벌금형
- 二 개인은 제50조 또는 제52조를 적용하고, 법인도 동일한 각 조의 벌금형

**제54조** 제26조의12 제1항(제27조의3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규정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준비하지 않거나, 재무제표 등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제26조의12 제2항 각 호(제27조의3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거부한 자는 20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5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一 제12조(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 한 자
- 二 정당한 이유 없이 제25조의1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두 요청에 따르지 않은 자
- 三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표식을 설치하지 않은 자
- 四 제40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
- 五 제40조의3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장부 또는 도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별표 1**

토목일식공사	토목공사업
건축일식공사	건축공사업
목공사	목공사업
미장공사	미장공사업
비계, 토공 · 콘크리트 공사	비계, 토공사업
석공사	석공사업
지붕공사	지붕공사업
전기공사	전기공사업
관공사	관공사업
타일, 벽돌, 블록공사	타일, 벽돌, 블록공사업
강구조물공사	강구조물공사업
철근공사	철근공사업
포장공사	포장공사업
준설공사	준설공사업
판금공사	판금공사업
유리공사	유리공사업
도장공사	도장공사업
내장마감공사	내장마감공사업
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기구설치공사업
단열공사	단열공사업
전기통신공사	전기통신공사업
조경공사	조경공사업
착정공사	착정공사업
창호공사	창호공사업

수도시설공사	수도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
청소시설공사	청소시설공사업
해체공사	해체공사업

**별표2 (제26조의6 관계)**

- 一 토목공학(농업토목, 광산토목, 삼림토목, 사방, 치산, 녹지 또는 조경에 관한 것을 포함)에 관한 학과
- 二 도시공학에 관한 학과
- 三 위생공학에 관한 학과
- 四 교통공학에 관한 학과
- 五 건축학에 관한 학과
- 六 전기공학에 관한 학과
- 七 전기통신공학에 관한 학과
- 八 기계공학에 관한 학과
- 九 임학에 관한 학과
- 十 광산학에 관한 학과

**[기타]**

1. 허가번호에 대해

(1) 허가번호는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인 경우에는 허가행정청명, 일반건설업 또는 특정건설업의 구분, 허가년도 및 업체번호를 기호 및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한다.

또한 업체번호는 1개 업체에 1개 번호를 원칙으로 하며, 일반건설업허가 및 특정건설업허가에서 동일번호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일반건설업허가를 내림에 있어서 제100호를 부여한 경우는 특정건설업허가를 내리는 경우도 동일한 번호를 부여한다.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 (반 or 특 - 13) 제 100호

- (2) 허가번호는 지방정비국 단위가 아닌 전국에 대해 허가한 순으로 부여한다.
- (3) 이미 받고 있는 허가가 효력을 잃은 경우(특정건설업허가 만을 받고 있던 자가 일반건설업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특정건설업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를 제외)의 허가번호는 다음 번호로 하며, 보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2. 법 등에서 「도급대금액」 등의 내용에 대해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는 소비일반에서 부담하는 간접세이며, 거래각단계에서 적정하게 전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입각하여, 법, 령 및 규칙의 규정 중 「도급대금액」의 개별 거래에 관한 도급대금액에 관한 용어는 해당 거래에 관한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3.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에 관한 허가요건 등의 확인에 대해

허가를 내리는 경우, 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경영업무의 관리책임자(법 제 7조 제1호 및 제15조 제1호) 및 영업소 별 배치해야 할 전임기술자(법 제 7조 제2호 및 제15조 제2호)가 법에 규정하는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 (1)부터 (3)에 열거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소 방문 검사를 실시한다.

### (1) 경영업무의 관리책임자에 관한 허가요건의 확인

경영업무의 관리책임자의 상근성 확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건강보험피보험자증카드(양면)의 복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신청자에게 요구하며, 경험년수의 확인([제7조 관련] 1.(6)의 경우를 제외)에 대해서는 상업등기부등본 등 건설업의 경영업무에 관한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신청자에게 요구하여 진행한다.

(2) 영업소 별로 배치하는 전임기술자 및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사용인에 관한 허가요건의 확인

영업소 별로 배치하는 전임기술자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에 관한 상근성의 확인은, 예를 들어 건강보험피보험증카드(양면)의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신청자에게 요구하여 진행한다.

(3) 영업소의 확인

영업소의 확인은 신청자에게 다음 ① 및 ②에 열거하는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하여 진행한다.

① 영업소의 지도 및 영업소의 사진

영업소의 지도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명기하고, 가까운 교통기관, 공공, 공익시설 등의 위치를 명시한 개략도를 의미한다. 또한 영업소의 사진은 영업소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영업소인 건물의 외관, 입구부근 및 영업소의 내부(규칙 제25조 제2항 전반에 규정하는 표식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를 찍은 것을 의미한다.

② 영업소를 사용하는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영업소를 사용하는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부동산임차계약서 등의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4. 건설업자의 합병에 관한 건설업 허가 관계 사무의 취급에 대해

(1) 합병에 따른 신고

① 법률 상 신설합병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합병등기 후이지만, 통상은 합병계약상 합병을 해야 하는 기간(이하 「합병기일」이라고 함)을 정해 합병등기를 기다리지 않고, 합병기일 이후는 실태 상 신설회사(신설합병에서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합병기일 이후 합병등기전의 상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4에서

도 동일)로서 활동하게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설회사로의 이동 실태적 내용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 (a) 합병기일에 합병계약에 기초하여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회사(이하 「소멸회사」라고 함)의 종업원이 신설회사에 실태 상 소속하는 등 소멸회사가 허가 요건을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법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며, 합병기일부터 2주간 이내에 동항의 신고를 해야 한다. 단 법 제1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 (b) (a) 이외의 경우에서 합병기일 이후 잔업정리 등을 실시하여 합병등기 전에 단계적으로 신설회사에 이동하는 경우  
소멸회사가 허가 요건을 명백하게 만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또는 폐업한 단계에서 법 제11조 제5항 또는 제1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 (c) (a) 및 (b) 이외의 경우(합병등기 단계에서 소멸회사의 실태가 소멸하는 경우)  
법 제1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동조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

② 흡수합병에서 소멸회사

법률상, 흡수합병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합병기일이기 때문에, 합병등기 전에도 법 제11조의 신고를 해야 하는 실태가 발생한 단계에서 해당 신고를 해야 한다.

(2) 건설업 허가신청의 취급

①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시기

소멸회사가 합병이전에 가지고 있던 건설업 허가에 대해서는 해당 합병에 따른 신 회사(흡수합병에서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존속회사」라고 함)에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 (a) 흡수합병에서 존속회사가 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고, 소멸회사만

이 허가를 가지고 있던 업종에 대해

(b) 신설합병에서 신설회사가 허가를 받고자 하는 모든 업종에 대해 각각 새로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가 일반건설업 허가를 가지고 있던 업종에 대해, 특정건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합병에 관한 건설업의 허가신청 취급에 대해서는 해당신청에 관한 건설업의 신 회사에 이행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a)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기일 후에 존속회사로부터 이들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는 소멸회사에 관한 동종 허가를 삭제하기 전에도 존속회사에 허가를 내릴 수 있으며, 소멸회사로부터 존속회사에의 이행을 원활히 하고, 사업 공백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한다.

또한 존속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던 허가의 갱신과 함께 [제3조 관련] 4에서 말하는 동일업자에 관한 2개 이상의 허가의 유효기간 조정(일원화)을 할 수 있다.

(b)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법률 상 합병 효과가 발생하여 신설회사가 설립되는 것은 합병등기 시점이며, 합병등록 후에 신설회사에 필요한 허가신청을 하게하고,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한다.

② 절차의 배려

심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합병에 따른 허가신청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진행하도록, 건설업자(허가신청을 하게 되는 자를 포함)를 지도한다.

### ③ 기타 유의사항

소멸회사로부터 신 회사에 이동에 따라 사업 내용에 변경사항이 다수 있는 경우는 심사에 상응기간이 필요하며, ①에서 든 취급은 합병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해 행정절차법(1993년 법률 제88호) 제6조의 표준처리기간을 기타 허가신청에 비교하여 단축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 (3) 관련 절차 상호 정합성의 확보

(1) 및 (2)의 절차에 대해 건설업자 간 상호 직접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소멸회사의 폐업신고 등이 제출되기 전에 신 회사의 허가신청도 가능하는 등 전후관계에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이러한 절차는 일련의 것이며, 관계 건설업자가 상호 협조하면서, 허가행정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절차가 진행되도록 이러한 관계 건설업자를 지도한다.

### (4) 소멸회사가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취급

소멸회사가 시공 중인 건설공사로 합병기일까지 완성하지 못한 것의 취급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발주자와 소멸회사의 도급계약에 의해 처리되므로(공공공사에서는 공공공사표준도급계약약관 제5조 참조), 해당 공사의 취급에 대해서는 합병 전에 발주자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관계 건설업자를 지도한다.

또한 건설업 허가에 관해서는 소멸회사에 관한 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 회사는 합병등기 전에도 허가가 취소된 자의 법 제29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 신 회사는 (2)①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동 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게 된다.

## [부록2]

# 일본 건설업법 시행령

[1956년 정령 제273호]

번역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조재용

[주 의]

- ※ 본 저작물은 참고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오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 본 저작물을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 본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금지합니다.

(지점에 준하는 영업소)

**제1조** 건설업법 제3조 제1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지점에 준하는 영업소는 상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건설업법 제3조 제1항 단서조항의 경미한 건설공사)

**제1조의2** 건설업법 제3조 제1항 단서조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는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건축일식공사는 1,500만 엔 미만인 공사 또는 연면적이 150㎡미만인 목조주택공사, 건축일식공사 이외의 건설공사에서는 500만 엔 미만인 공사를 말한다.

2 전항의 도급금액은 동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사 완성을 2개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는 각 계약의 도급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단 정당한 이유에 따라 계약을 분할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3 주문자가 자재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장가격 및 운송비를 해당 도급계약의 도급금액에 포함한 금액을 제1항의 도급금액으로 한다.

(건설업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금액)

**제2조** 건설업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은 4,000만 엔으로 한다. 단 동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이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6,000만 엔으로 한다.

(사용인)

**제3조** 건설업법 제6조 제1항 제4호(건설업법 제17조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건설업법 제7조 제3호, 건설업법 제8조 제4호, 제11호 및 제12호(이들 규정을 건설업법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건설업법 28조 제1항 제3호 및 건설업법 제29조의4의 정령에서 정하는 사용인은 지배인 및 지점 또는 제1조에 규정하는 영업소의 대표자(지배인인 자는 제외)인 자로 한다.

(건설업법 제8조 제8호의 법령 규정)

**제3조의2** 건설업법 제8조 제8호(건설업법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정령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공 또는 건설공사에서 종사하는 노동자 사용에 관한 법령 규정은 다음으로 정한다.

- 一 건축기준법 제9조 제1항 및 제10항 전반의 규정에 따라 특정행정청 또는 건축감시원의 명령에 위반한 자에 관한 동법 제98조 제1항(제1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
- 二 택지조성법 등 규제법 제14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전반의 규정에 따른 도도부현 지사의 명령에 위반한자에 관한 동법 제26조
- 三 도시계획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토교통성 장관, 도도부현 지사 및 시정촌장의 명령에 위반한자에 관한 동법 제91조
- 四 경관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촌장의 명령에 위반한자에 관한 동법 제101조
- 五 노동기준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관한 동법 제117조 또는 노동기준법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관한 동법 제118조 제1항
- 六 직업안정법 제44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관한 동법 제64조
- 七 노동자파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관한 노동자파견법 제59조

(허가수수료)

**제4조** 건설업법 제10조 제2호(건설업법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도 포함)의 허가수수료는 그 금액을 5만 엔으로 하고, 허가신청서에 이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붙여 제출해야 한다. 단 행정절차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행에서 규정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한 법 제3조 제1항의 허가 또는 동조 제3항의 허가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열람소)

**제5조** 국토교통성 장관 및 도도부현 지사는 열람소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열람소의 열람규칙을 정하고, 해당 열람소의 장소 및 열람규칙을 고시해야만 한다.

2 국토교통성 장관이 설치한 열람소는 허가신청서 등(건설업법 제13조에 규정하는 서류를 말함. 차 항에도 동일함)에서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에 관한 것을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만 한다.

3 도도부현 지사가 설치한 열람소는 해당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에 관한 허가신청서 등을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만 한다.

(건설업법 제15조 제2호 단서조항의 건설업)

**제5조의2** 건설업법 제15조 제2호 단서조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건설업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一 토목공사업
- 二 건축공사업
- 三 전기공사업
- 四 관공사업
- 五 강구조물공사업
- 六 포장공사업
- 七 조경공사업

(건설업법 제15조 제2호 ㄹ의 금액)

**제5조의3** 건설업법 제15조 제2호 ㄹ의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은 4,500만 엔으로 한다.

(건설업법 제15조 제3호의 금액)

**제5조의4** 건설업법 제15조 제3호의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은 8,500만 엔으

로 한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제5조의5**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가 건설업법 제1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동항에서 규정하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조치(이하 이 조에서 「전자적조치」라고 함)를 강구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계약의 상대방에 대해 그 강구한 전자적조치의 종류 및 내용을 제시하고, 서면 및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것(차 항에서 「전자적방법」이라고 함)에 의해 승낙을 받아야만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승낙을 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도급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적방법에 의한 해당승낙을 철회하는 취지의 연락이 있을 때에는 건설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 대신에 전자적조치를 강구해서는 아니 된다. 단 해당 계약의 상대방이 다시 동항의 규정에 따라 승낙을 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현장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한 통지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제5조의6** 도급인은 건설업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항에서 규정하는 현장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발주자에 대해 동항 전반에 규정하는 방법(이하 이 조에서 「전자적방법」이라고 함)의 종류 및 내용을 제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방법에 의해 승낙을 받아야만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승낙을 받은 도급자는 해당 주문자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적방법을 통해 전자적방법에 의한 통지를 접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는 경우, 해당 주문자에게 현장대리인에 관한 사항 통지를 전자적방법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단 해당 주문자가 다시 동항의 규정에 따라 승낙한 경우는 가능하다.

**제5조의7** 주문자는 건설업법 제1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향에서 규정하는 감독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도급인에게 동향전반에 규정하는 방법(이하 이 조에서 「전자적방법」이라고 함)의 종류 및 내용을 제시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방법에 의한 승낙을 받아야만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승낙을 받은 주문자는 해당 도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적방법을 통해 전자적방법에 의한 통지를 접수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급인에게 감독원에 관한 사항의 통지를 전자적방법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단 해당 도급인이 다시 동향의 규정에 따라 승낙한 경우는 가능하다.

(건설공사의 견적기간)

**제6조** 건설업법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견적기간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2호 및 제3호의 기간은 5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 一 공사 한 건의 예정가격이 500만 엔 미만인 공사는 1일 이상
- 二 공사 한 건의 예정가격이 500만 엔 이상 5,000만 엔 미만인 공사는 10일 이상
- 三 공사 한 건의 예정가격이 5,000만 엔 이상의 공사는 10일 이상

2 국가가 입찰 방법을 통해 경쟁에 붙이는 경우는 예산결산 및 회계령(1947년령 제165호)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을 전항의 견적기간으로 간주한다.

(보증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공사)

**제6조의2** 건설업법 제21조 제1항 단서 조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500만 엔 미만인 공사를 말한다.

(일괄하도급 금지 대상이 되는 복수의 자가 이용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에 관한 중요 건설공사)

**제6조의3** 건설업법 22조 제3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중요한 건설공사는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일괄하도급의 승낙에 관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제6조의4** 발주자는 건설업법 제2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동조 제3항의 승낙하는 취지의 통지(차 항에서 「승낙통지」라고 함)를 하고자하는 때에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원도급자에게 동조 제4항 전반에 규정하는 방법(이하 이 조에서 「전자적방법」이라고 함)의 종류 및 내용을 제시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방법을 통해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른 승낙을 받은 발주자는 해당 원도급자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적방법을 통해 전자적방법에 의한 통지를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연락이 있는 경우, 해당 도급인에게 전자적통지를 통해 승낙통지를 해서는 안된다. 단 해당 도급인이 다시 동항의 규정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하도급인의 선정 승낙에 관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제7조** 발주자는 건설업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조 제1항 단서의 승낙하는 통지(차 항에서 「승낙통지」라고 함)를 하고자하는 때에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동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자를 선정하는 자(차 항에서 「하도급자선정자」라고 함)에게 종류 및 내용을 제시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방법에 의해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승낙을 받은 주문자는 하도급자선정자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적방법을 통해 전자적방법에 의한 통지를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연락이 있는 경우, 하도급자선정자에게 전자적통지를 통해 승낙통지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단 하도급자선정자가 다시 동항의 규정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건설업법 제24조 제1항의 금액)

**제7조의2** 건설업법 제24조 제1항의 법령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은 4,000만 엔으로 한다.

(건설업법 제24조의6 제1항의 법령 규정)

**제7조의3** 건설업법 제24조의6 제1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공 및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사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一 건축기준법 제9조 제1항 및 제10항(이들 규정을 동법 제8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준용하는 경우도 포함) 및 제90조
- 二 주택조성 등 규제법 제9조(동법 제1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및 제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三 노동기준법 제5조(노동자파견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 제6조, 제24조, 제56조, 제63조 및 제64조의2(노동자파견법 제44조 제2항(건설노동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따라 이들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 제96조의2 제2항 및 제96조의3 제1항
- 四 직업안정법 제44조, 제63조 제1호 및 제65조 제8호
- 五 노동안전위생법 제98조 제1항(노동자파견법 제45조 제15항(건설노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
- 六 노동자파견법 제4조 제1항

(건설업법 제24조의7 제1항의 금액)

**제7조의4** 건설업법 제24조의7 제1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은 4,000만 엔

으로 한다. 단 특정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한 건설공사가 건축일  
식공사인 경우에는 6,000만 엔으로 한다.

(명부의 작성)

**제8조** 건설공사분쟁심사회(이하 「심사회」라고 함)는 해당 심사회의 위원 또  
는 특별위원의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2 제1항의 명부 기재사항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다.

(특별위원의 의견 진술)

**제9조** 특별위원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  
을 진술 할 수 있다.

(심사회의 회의)

**제10조** 정령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  
회가 정한다.

(중앙건설공사 분쟁심사회의 사무)

**제11조** 중앙건설공사 분쟁심사회(이하 「중앙심사회」라고 함)의 사무는 국토  
교통성 토지건설산업국 건설업과에서 처리한다.

(지정직원)

**제12조** 심사회의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국토교통성장고나 또는 도도부  
현 지사가 지정한 자(이하 「지정직원」이라고 함)는 심사회가 실시하는 분쟁  
처리에 입회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기타 분쟁처리에 관한 심사회에서 지시하  
는 사무를 취급한다.

(분쟁처리 신청서 기재사항)

**제13조** 법 제25조의10의 서면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

명날인을 해야 한다.

- 一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二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건설업자인 경우는 그 허가를 발급한 행정청의 명칭 및 허가 번호
  - 三 알선, 조정 또는 중재를 요구하는 사항
  - 四 분쟁의 문제점 및 교섭경과의 개요
  - 五 공사현장 등 분쟁처리에 참고가 되는 사항
  - 六 신청수수료 금액
  - 七 심사회의 표시
  - 八 신청 년월일
- 2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1항의 서면(이하 「신청서」라고 함)에 첨부해야 한다.
- 3 법 제25조의9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를 통해 관할심사회가 결정된 경우는 그 합의를 증명하는 서면
- 4 당사자의 일방이 중재 신청을 하는 경우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법에 의한 중재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대리권의 증명)

**제14조** 법정대리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은 심사회에 대해 서면으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

(공공성이 있는 시설 또는 공작물)

**제15조** 법 제25조의11 제二호의 공공성이 있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 一 철도, 궤도, 삭도, 도로, 교량, 호안, 제방, 댐, 하천에 관한 공작물, 사방용공작물, 비행장, 항만시설, 어항시설, 운하, 상수도 또는 하수도

- 二 소방시설, 수방시설, 학교 또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관청, 공장, 연구소 또는 시험소
- 三 전기사업용시설(전기사업용으로 제공하는 발전, 송전, 배전 또는 변전 등 전기시설을 말함) 또는 가스사업용시설(가스사업용으로 제공하는 가스의 제조 또는 공급을 위한 시설을 말함)
- 四 앞 각 호에서 열거하는 것 외에 분쟁에 의해 해당 시설 또는 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공기가 지연되는 등 적정한 시공이 방해됨에 따라 공공복지에 현저한 장애가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 국토교통성장관이 지정하는 것

(분쟁처리의 통지)

**제16조** 심사회는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분쟁처리의 신청이 된 경우에는, 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상대방에게 법 제25조의11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결의를 한 경우, 당사자 쌍방에 대해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의 변경)

**제16조의2** 알선,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인은 서면을 통해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이렇게 함으로서 해당 알선, 조정 또는 중재의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심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동 항의 서면(이하 「변경신청서」라고 함)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알선 또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제17조** 심사회는 법 제25조의14 규정에 따라 알선 또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에 대해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중재위원의 선정 등)

**제18조** 심사회는 중재신청이 있던 경우, 당사자에게 제8조 제1항의 명부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중재위원이 될 사람을 선정한 경우, 그 자의 성명을 전 항의 명부의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기간 내에 동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없었을 때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중재위원이 될 사람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중재위원으로 지명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있는 경우, 그 자의 성명을 전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심사회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2 회장은 법 제25조의19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해 중재위원을 지명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중재위원을 지명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그 자의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중재위원이 빠진 경우의 조치)

**제20조** 심사회는 중재위원이 사망, 해임, 사임 등의 이유에 의해 빠진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앞 2조의 규정은 중재위원이 빠진 경우 후임 중재위원이 되어야 하는 자의 선정 및 후임중재위원의 지명에 대해 준용한다.

(중재판단의 작성)

**제21조** 심사회는 중재판단을 위한 심문 등 필요한 조사를 완료한 경우, 신속하게 중재 판단을 하여야 한다.

2 중재판단의 정본과 등본에는 지정직원이 정본 또는 등본임을 알리는 취지의 부기 및 기명날인을 하고, 정본은 심사회의 도장을 찍는다.

3 중재판단의 정보는 그 한 통을 중재판단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22조 삭제

(조서의 작성)

**제23조** 지정직원은 심사회가 실시하는 분쟁처리의 절차에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알선 또는 조정 절차에서 심사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사의 촉탁)

**제24조** 심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실 조사를 관공서 등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촉탁할 수 있다.

(분쟁처리의 절차에 필요한 비용)

**제25조** 분쟁처리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가운데 분쟁처리 절차에서 심사회가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정산은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바를 따른다.

- 一 위원, 특별위원 및 지정위원의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차운임, 일당, 숙박료 및 식비는 중앙심사회에서는 국가공무원 등의 여비에 관한 법률(1950년 법률 제114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도도부현 건설공사분쟁심사회(이하 「도도부현심사회」라고 함)에서는 해당 도도부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二 증인 및 감정인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는 민사소송의 예에 따라 중앙심사회에서는 국토교통성장관, 도도부현심사회에서는 해당 도도부현지사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三 감정인의 특별수당(감정에 대해 특별기술 또는 비용 또는 장시간을 요하는 경우에 감정인에게 지급하는 특별수당을 말함)은 중앙심사회에서는 국토교통성장관, 도도부현심사회에서는 해당 도도부현지사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四 집행관의 수수료 및 대납금은 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칙 (1966년 대법원 규칙 제15호)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五 배송에 필요한 비용, 전보 요금 및 전화 요금은 실비로 한다.

六 전 각 호에서 열거하는 것 외에 필요로 하는 비용은 실비로 한다.

(신청수수료)

제26조 법 제25조의24의 신청수수료 금액은 다음 표의 상란 신청구분에 따라 각각의 하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항	상란	하란
一	알선 신청	알선을 구하는 사항의 가격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하여 얻은 금액 (一) 알선을 구하는 사항의 가격이 100만 엔 이하 : 1만 엔 (二) 알선을 구하는 사항의 가격이 100만 엔 초과 500만 엔 이하 금액 분 : 1만 엔 당 20엔 (三) 알선을 구하는 사항의 가격이 500만 엔 초과 2,500만 엔 이하 금액 분 : 1만 엔 당 15엔 (四) 알선을 구하는 사항의 가격이 2,500만 엔 초과하는 금액 분 : 1만 엔 당 10엔
二	조정 신청	조정을 구하는 사항의 가격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하여 얻은 금액 (一) 조정을 구하는 사항의 가격이 100만 엔 이하 : 2만 엔 (二) 조정을 구하는 사항의 가격이 100만 엔 초과 500만 엔 이하 금액 분 : 1만 엔 당 40엔 (三) 조정을 구하는 사항의 가격이 500만 엔 초과 1억 엔 이하 금액 분 : 1만 엔 당 25엔 (四) 조정을 구하는 사항의 가격이 1억 엔 초과하는 금액 분 : 1만 엔 당 15엔
三	중재 신청	중재를 구하는 사항의 가격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하여 얻은 금액 (一) 중재를 구하는 사항의 가격이 100만 엔 이하 : 5만 엔 (二) 중재를 구하는 사항의 가격이 100만 엔 초과 500만 엔 이하 금액 분 : 1만 엔 당 100엔 (三) 중재를 구하는 사항의 가격이 500만 엔 초과 1억 엔 이

		하 금액 분 : 1만 엔 당 60엔 (四) 중재를 구하는 사항의 가격이 1억 엔 초과하는 금액 분 : 1만 엔 당 20엔
--	--	------------------------------------------------------------------------

- 2 제1항의 경우에 알선, 조정 또는 중재를 구하는 사항의 가격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격을 500만 엔으로 간주한다.
- 3 신청수수료는 분쟁해결신청서에 신청수수료의 금액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 4 알선, 조정 또는 중재를 구하는 사항의 가격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 후의 가격에 대해서 납부해야할 신청수수료 액과 증가 전의 신청에서 납부한 신청수수료 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변경신청서에 붙여 제출해야한다.

(신청수수료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제26조의2** 알선 또는 조정의 신청인이 법 제25조의15 제2하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알선 또는 조정의 목적이었던 사항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해당 알선 또는 조정의 신청에서 납부한 신청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청수수료의 환불)

**제26조의3** 심사회는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신청에 대해 각각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된 신청수수료의 금액(제2호에서 열거하는 신청에서는 전 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 금액을 제외)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 一 알선 또는 조정 신청 : 알선 또는 조정의 첫 번째 기일 완료 전에 취하
- 二 중재 신청 : 구두심리를 거치지 않고 중재절차 완료를 결정 또는 구두심리의 첫 기일의 완료 전에 취하

(전임 주임기술자 및 감리기술자를 필요로 하는 건설공사)

**제27조** 법 제26조제3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중요한 건설공사는 다음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3,500만 엔(해당 건설공사가 건축일식공사인 경우에는 7,000만 엔)이상 인 것으로 한다.

- 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발주자인 시설 또는 공작물에 관한 건설공사
- 二 제15조 제一호 및 제三호에서 열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에 관한 건설공사
- 三 다음의 시설 또는 공작물에 관한 건설공사
  - イ 석유 파이프라인사업법(1972년 법률 제105호) 제5조 제2항 제二호에 규정하는 사업용 시설
  - ロ 전기통신사업법(1984년 법률 제86호) 제2조 제五호에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동법 제9조 제一호에 규정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는 것에 한정)가 동조 제 四호에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
  - ハ 방송법(1950년 법률 제132호) 제2조 제二十三호에 규정하는 기간방송사업자 또는 동 조 제二十四에 규정하는 기간방송국 제공사업자가 동 조 제一호에 규정하는 방송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철골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 및 이와 유사한 시설로 한정한다)
  - ニ 학교
  - ホ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또는 전시장
  - ヘ 사회복지법(1951년 법률 제45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에서 활용하는 시설
  - ト 병원 또는 진료소
  - チ 화장터 또는 도축장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 リ 열공급사업법(1972년 법률 제88호)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열공급시설

- ㄫ 집회장 또는 공회당
- ㄴ 시장 또는 백화점
- ㄷ 사무소
- ㄹ 호텔 또는 여관
- ㄹ 공동주택, 기숙사
- ㅋ 공중목욕탕
- ㄷ 댄스홀
- ㄴ 신사, 사원 또는 교회
- ㅇ 공장, 부두 또는 창고
- ㅈ 전망대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밀접한 관계가 있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동일한 건설업자가 동일한 장소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전임 주임기술자가 건설공사를 관리할 수 있다.

(등록 유효기간)

**제27조의2** 법 제26조의7 제1항(법 제27조의3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정령에서 정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국토교통성장관이 실시하는 강습수수료)

**제27조의2의2** 법 제26조의18 정령에서 정하는 수수료 금액은 10,500엔으로 한다.

(기술검정 종목 등)

**제27조의3**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정은 다음 표 검정항목란에서 열거하는 항목에 대해 동 표의 검정기술란에 열거하는 기술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검정항목	검정기술
------	------

건설기계시공	건설공사 실시에 있어, 건설기계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건설기계운용을 능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토목시공관리	토목일식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공계획의 작성 및 해당공사의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공사 시공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건축시공관리	건축일식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공계획 및 시공도 작성 및 해당공사의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공사 시공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전기공사시공관리	전기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공계획 및 시공도 작성 및 해당공사의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공사 시공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관공사시공관리	관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공계획 및 시공도 작성 및 해당공사의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공사 시공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전기통신공사시공관리	전기통신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공계획 및 시공도 작성 및 해당공사의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공사 시공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조경시공관리	조경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공계획 및 시공도 작성 및 해당공사의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공사 시공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2 기술검정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건설기계시공, 토목시공관리 및 건축시공관리에 관한 2급 기술검정(건축시공관리에 관한 2급 기술검정은 실기시험으로 한정)은 해당 종목을 국토교통성장관이 정하는 종별로 세분하여 실시한다.

(기술검정의 방법 및 기준)

**제27조의4** 실기시험은 그 회 차의 기술검정에서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 및 제27조의7 규정에 따라 학과시험 전부를 면제받은 자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토교통성장령에서 정하는 종목 및 급에 따른 기술검정의 실기시험은 종목 및 급과 동일하게 기술검정에서 학과시험을 수험한 자 및 동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학과시험 전부를 면제받은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의 과목 및 기준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다.

(응시자격)

**제27조의5** 1급 기술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一 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26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 구대학령(1918년 칙령 제388호)에 의한 대학을 포함)을 졸업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하여 지도감독적 실무경험 1년 이상을 포함한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로 재학 중에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학과를 이수한 것
- 二 학교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및 고등전문학교(구 전문학교령(1903년 칙령 제61호)에 따른 전문학교를 포함)를 졸업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지도감독적 실무경험 1년 이상을 포함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로 재학 중에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학과를 이수한 것
- 三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대해 2급 기술검정에 합격한 후 해당 종목에 관하여 지도감독적 실무경험 1년 이상을 포함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 四 국토교통성장관이 앞 호에서 열거한 자와 동등 이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인정한 자

2 2급 기술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종목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 一 건설기계시공 : 다음에서 열거하는 시험 구분에 따라 각각에서 정하는 자
  - ㄱ 학과시험 : 해당학과시험이 실시되는 날이 포함된 년도의 말일에 17세 이상인 자
  - ㄴ 실기시험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학교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구 중등학교령(1943년 칙령

제36호)에 따른 실업학교를 포함. (2) 및 다음 호 ㄱ(1)에서도 동일) 또는 중등교육학교를 졸업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별에 관하여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로 재학 중에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학과를 이수한 것

(2) 학교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중등교육학교를 졸업한 후 건설기계시공에 대해 응시하고자 하는 종별에 관한 1년 6개월 이상의 실무경험을 포함한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로 재학 중에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학과를 이수한 것

(3) 응시하고자 하는 종별에 대해 6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4) 건설기계시공에 관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종별에 관하여 4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포함한 8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5) 국토교통성장관이 (1)부터 (4)까지 열거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자로 인정하는 자

二 토목시공관리, 건축시공관리, 전기공사시공관리, 관공사시공관리, 전기통신공사시공관리 및 조경시공관리 : 다음에서 열거하는 시험의 구분에 따라 각각에서 정하는 자

イ 학과시험 : 해당학과시험이 실시되는 날이 포함된 년도의 말일에 17세 이상인 자

ㄱ 실기시험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학교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중등교육학교를 졸업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토목시공관리 또는 건축시공관리)에 대해서는 종별. (2)에서도 동일)에 관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로 재학 중에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학과를 이수한 것

(2)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하여 8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

진 자

- (3) 국토교통성장관이 (1)부터 (2)까지 열거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자로 인정하는 자

(응시 결격)

**제27조의6** 국토교통성장관이 종목 별로 해당 종목에 관하여 건설공사에 종사함에 있어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함을 가진 자는 전 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종목의 기술검정을 받을 수 없다.

(시험의 면제)

**제27조의7** 다음 표의 상란에 열거되는 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각각 동 표의 하란에 열거하는 시험을 면제한다.

1급 기술검정의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	동일종목 차 회의 1급 기술검정 학과시험 전부
2급 기술검정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	동일 종목(건설기계시공 또는 토목시공관리에서 종목 및 종별) 2급 기술검정(검정종목 등의 사항을 감안하여 국토교통성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실시되는 것에 한정)의 학과시험 전부
1급 기술검정에 합격한 자	2급 기술검정 학과시험 또는 실기시험에서 국토교통성장관이 정하는 일부
2급 기술검정에 합격한 자	동일종목 1급 기술검정의 학과시험 또는 실기시험에서 국토교통성장관이 정하는 일부
다른 법령 규정에 따른 면허로 국토교통성 장관이 정하는 시험을 받은 자 또는 국토교통성장관이 정하는 검정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	국토교통성장관이 정하는 학과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칭호)

**제27조의8** 법 제27조 제5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칭호는 급 및 종목의 명칭을 붙이는 기사(技士)로 한다.

(합격 취소 등)

**제27조의9** 국토교통성장관은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기술검정을 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 결정을 취소하거나, 기술검정을 받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합격 결정이 취소된 자는 합격증명서를 국토교통성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3 국토교통성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술검정을 받을 수 없게 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 등)

**제27조의10** 학과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응시수수료 금액은 다음 표를 따른다. 단 제27조의7 규정에 따라 학과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은 자가 해당 학과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과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대해서 동 표에서 열거하는 금액에서 국토교통성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차액으로 한다.

검정종목	1급		2급	
	학과시험	실기시험	학과시험	실기시험
건설기계시공	10,100엔	27,800엔	10,100엔	21,600엔
토목시공관리	8,200엔	8,200엔	4,100엔	4,100엔
건축시공관리	9,400엔	9,400엔	4,700엔	4,700엔
전기공사시공관리	11,800엔	11,800엔	5,900엔	5,900엔
관공사시공관리	8,500엔	8,500엔	4,250엔	4,250엔
전기통신공사시공관리	13,000엔	13,000엔	6,500엔	6,500엔
조경시공관리	10,400엔	10,400엔	5,200엔	5,200엔

2 기술검정 합격증명서의 교부 또는 재교부 수수료는 2,200엔으로 한다.

(국토교통성령에의 위임)

**제27조의11** 정령에서 정하는 것 외에 기술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다.

(자격자증 교부 등 수수료)

**제27조의12** 법 제27조의21 제1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은 7,600엔으로 한다.

(공공성이 있는 시설 또는 공작물에 관한 건설공사)

**제27조의13** 법 제27조의23 제1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건설공사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법인세법(1965년 법률 제34호) 별 표 제1에서 열거하는 공공법인(지방공공단체를 제외)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법인이 발주자이며, 또한 공사 1건 당 도급대금액이 500만 엔(해당건설공사가 건축일식공사인 경우에는 1,500만 엔) 이상인 것으로 다음 건설공사 이외의 것으로 한다.

- 一 제방의 결손, 도로의 매몰, 전기설비의 고장, 기타시설 또는 공작물의 파괴, 매몰 등으로 이를 방지할 경우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건설공사
- 二 제1호에서 열거한 것 외에 경영사항심사를 받지 않은 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한 것에 대해 긴급 등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성장관이 지정한 건설공사

(국토교통성장관이 실시하는 경영규모 등 평가 등 수수료)

**제27조의14** 법 제27조의30 정령에서 정하는 수수료 금액 가운데 경영규모 등 평가의 신청에 관한 것은 8,100엔을 기본으로, 법 제27조의2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설업자가 심사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차 항에서의 「심사대상 건설업」이라고 함) 1종류 당 2,300엔으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27조의30 정령에서 정하는 수수료 금액 가운데 종합평정치의 청구에 관한 것은 400엔을 기본으로, 심사대상건설업 1종류 당 200엔으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국토교통성장관이 실시하는 경영상황분석 수수료)

**제27조의15** 법 제27조의35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7조의30 정령에서 정하는 수수료 금액은 15,900엔으로 한다.

(현장검사를 하는 직원의 자격)

**제28조** 법 제3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현장검사를 할 수 있는 직원은, 일반 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1950년 법률 제95호) 제6조 제1항 제一호1에서 규정하는 행정직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도도부현 공무원이어야 한다.

(중앙건설업심의회의 소관사무)

**제28조의2** 중앙건설업심의회의는 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48호) 제17조 제3항 및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한 사항을 처리한다.

(중앙건설업심의회의 사무)

**제29조** 중앙건설업심의회의는 위원 총수의 1/2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

2 학식경력자,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가운데 한 가지에 속하는 위원의 출석자 수가 출석위원 총 수의 1/2를 넘을 때에는 의결을 할 수 없다.

3 중앙건설업심의회의의 의사는 출석위원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가부 동일 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부회)

**제30조** 중앙건설업심의회의는 정하는 바에 따라 부회를 둘 수 있다.

2 부회는 각각 학식경험자,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인 위원 가운데

회장이 지명한 자가 조직한다. 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 3 부회에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의 장을 둔다.
- 4 부회의 장은 부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 5 중앙건설업심의회는 정하는 바에 따라 부회의 의결을 중앙건설업심의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 6 전 조의 규정은 부회의 의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 조 제3항 가운데 「회장」은 「부회의 장」으로 대체한다.

(중앙건설업심의회의 사무)

**제31조** 중앙건설업심의회의 사무는 국토교통성 토지·건설산업국 건설업과에서 처리한다.

(중앙건설업심의회의 운영)

**제32조** 이 정령에서 정하는 것 외에 중앙건설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건설업심의회의가 정한다.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제33조** 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여비, 일당 등의 비용은 국토교통성장관에게 의견을 요구받아 출두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등의 여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지사에게 의견을 요구받아 출두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해당 도도부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권한의 위임)

**제34조** 이 정령에서 규정하는 국토교통성장관의 권한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정비국장 또는 홋카이도개발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일본 건설산업 생산시스템 분석 및 시사점

---

2018년 6월 인쇄  
2018년 6월 발행

발행인 서명교

발행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3층(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TEL (02)3284-2600

FAX (02)3284-2620

홈페이지 [www.ricon.re.kr](http://www.ricon.re.kr)

등록 2007년 4월 26일(제319-2007-17호)

인쇄처 경성문화사(02-786-2999)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8